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546-10



PART

I

정신건강사업 개요

1. 국가정신건강정책 방향성	3
가. 비전과 추진전략	3
나. 추진방향	4
2.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관소개	6
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6
나. 기관소개	7
1) 보건복지부	7
2) 국립정신건강센터	8
3)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9
4)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11
5)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4
6) 주요 민간단체	15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16
4.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18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18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18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심사	20
라.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20
5. 정신건강사업 연혁	22

PART

II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1

가. 센터 설치	31
1) 목적 및 주요기능	31
2) 법적근거	31
3) 설치사항	31
4) 기본시설	32
나. 센터 운영	33
1)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33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5
3)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역할	37
4)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39
다. 종사자 관리	40
1) 종사자 기준 및 자격요건	40
2) 채용사항	41
3) 호봉관리	42
4) 직급별 업무 및 역할	46
5) 종사자 근무기준	48
6) 종사자 교육	51
라. 행정 사항	53
1) 예산관리	53
2) 안전관리	65
3) 기록물 보호·관리	67
4) 개인정보 보호	68

2.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69

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69
1)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	69
2) 기초·중독센터 지원업무	71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73

4)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78
5)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79
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80
7) 중독관리지원사업	81
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82
1) 사업대상	82
2)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83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87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90
5)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93
6)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94
7)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95
8)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홍보·협력체계 구축	95
9) 중독관리 지원사업	96
다.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97
1) 광역중독관리사업 기획 및 운영업무	97
2)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업무	99
3)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사업	100
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101
1) 사업대상	101
2)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102
3)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103
4) 지역사회 중독정신건강증진사업	105
5) 청년중독관리사업	105
6) 노숙인 등 취약계층 관리사업	106
7)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107
마. 성과관리 및 평가	108
1)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관리	108
2) 2026년('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109
3)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112

PART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117

- 가. 사업 목적 117
- 나. 법적 근거 117
-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117
-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118
- 마. 입·퇴원절차 124
- 바. 행정 사항 141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145

- 가. 사업 목적 145
- 나. 근거 법령 145
- 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145
-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148
- 마. 행정 사항 159
- 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163

3.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 176

- 가. 사업 목적 176
- 나. 법적 근거 176
-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176
 - 1) 시설의 정의 176
 - 2) 시설의 종류 176
 - 3) 시설기준 177
 - 4) 설치·운영자 180
 - 5) 설치신고 구비서류 180
 - 6) 안전관리 180

라. 정신재활시설 운영	182
1) 운영목표	182
2) 운영방침	182
3) 입소·이용 대상	182
4) 등록 및 입소·이용 관리	184
5)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184
6)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186
7) 급식 등	186
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187
1) 인건비 및 운영비	187
- 유형별 인력기준	188
2) 인력 관리	195
바. 행정 사항	204
1) 회계 및 물품관리	204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04
3) 후원금 관리	205
4) 문서관리	205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206
6) 지도감독	206
7) 보고	206
8) 미인가시설 관리	207
9)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207
사.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사업	209
1) 생활시설	209
2) 주간재활시설	214
3) 공동생활가정	217
4) 지역사회전환시설	222
5) 직업재활시설	225
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229
7) 중독자재활시설	231
8) 생산품판매시설	234
9) 종합시설	236

PART

IV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통추진사업

1.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241
가. 재난 규모별 심리지원 서비스 의사결정 및 인력구성	241
나. 재난 정신건강 기관별 역할	242
다. 재난 대응	243
라. 재난 심리지원 이후 관리	247
마. 심리지원 물품 요청	249
2.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50
가. 목적 및 근거	250
나. 사업 개요	250
다. 지원대상 세부항목	253
라. 신청 및 지급	256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58
4.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61
5.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266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276
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81
8.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83

PART
V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인식개선

1. 권익보호	287
가. 인권교육	287
나. 권익보호 방안	289
다. 인신보호법 안내	293
2. 인식개선	295

PART
부록

부 록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299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17개소)	299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246개소)	300
다.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6개소)	310
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57개소)	311
마. 자살예방센터(독립) 설치운영 현황(6개소)	314
바.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369개소)	315
사.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59개소)	331
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현황(13개소)	334

PART

서식

서 식

1. 지역사회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운영 337

[별지 제Ⅱ-1-1호]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조사표 337

[별지 제Ⅱ-1-2호]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현황조사표 339

[별지 제Ⅱ-1-3호] 자살예방센터 현황조사표 341

[별지 제Ⅱ-1-4호] 종사자 현황조사표 343

[별지 제Ⅱ-1-5호] 정신건강복지센터 표준지도점검표 344

[별지 제Ⅱ-1-6호] 지도점검결과표(정신센터·중독센터 공통) 348

[별지 제Ⅱ-1-7호] 기관 및 종사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49

[별지 제Ⅱ-2-1호]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예시) 350

[별지 제Ⅱ-2-2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참여현황 351

[별지 제Ⅱ-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53

[별지 제Ⅱ-2-4호~10호] 업무실적표 7종 354

[별지 제Ⅱ-2-11호] 시·도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 실적총계 359

2.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360

[별지 제Ⅲ-1-1호]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 360

[별지 제Ⅲ-1-2호]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결과 361

[별지 제Ⅲ-1-3호]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정기 현황조사표 362

[별표 제Ⅲ-1-1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363

[별표 제Ⅲ-1-2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366

[별표 제Ⅲ-1-3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 367

[별지 제Ⅲ-2-1호] 입소통지서 369

[별지 제Ⅲ-2-2호] 촉탁의 업무 협약서 370

[별지 제Ⅲ-2-3호]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표 371

[별지 제Ⅲ-2-4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373

[별지 제Ⅲ-2-5호] 시설안전사고보고서 374

[별지 제Ⅲ-2-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75

[별지 제Ⅲ-2-7호]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376

[별지 제Ⅲ-3-1호]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 377

[별지 제Ⅲ-3-2호]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381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1]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 보고 ... 382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2] 잔여재산 활용 신청서 383

3.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통추진사업 384

[별지 제Ⅳ-4-1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84
[별지 제Ⅳ-4-2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385
[별지 제Ⅳ-4-3호]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387
[별지 제Ⅳ-4-4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388
[별지 제Ⅳ-4-5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389
[별지 제Ⅳ-4-6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정신보건시설확충)	390
[별지 제Ⅳ-5-1호] 20년 ()분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391
[별지 제Ⅳ-5-2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392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93

[별표 제Ⅴ-1-1호] 격리 및 강박 지침	393
[별지 제Ⅴ-1-1호] 격리·강박 기록지	400
[별지 제Ⅴ-1-2호] CCTV 설치안내(예시)	401
[별표 제Ⅴ-1-2호] 작업치료지침	402
[별지 제Ⅴ-1-2호] 작업치료기록지	406
[별지 제Ⅴ-1-3호] 현금인출증	407
[별지 제Ⅴ-1-4호] 작업치료 평가서	408
[별표 제Ⅴ-1-3호] 인신보호제도 안내	409
[별지 제Ⅴ-1-5호] 구제청구서	412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3.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p> <p>가. 사업 목적 나. 법적 근거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라.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바. 회원관리 사. 행정사항 아. 사회재활활동, 직업재활활동 등</p>	<p>3.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p> <p>가. 사업 목적 _____ 나. 법적 근거 _____ 다. <u>정신재활시설 설치</u> 1) 시설의 정의 2) 시설의 종류 3) 시설기준 4) 설치·운영자 5) 설치신고 구비서류 6) 안전관리 라. <u>정신재활시설 운영</u> 1) 운영목표 2) 운영방침 3) 입소·이용 대상 4) 등록 및 입소·이용 관리 5)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6)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7) 급식 등 마. <u>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u> 1) 인건비 및 운영비 - 유형별 인력기준 2) 인력 관리 바. <u>행정 사항</u> 1) 회계 및 물품관리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3) 후원금 관리 4) 문서관리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6) 지도감독 7) 보고 8) 미인가시설 관리 9)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사. <u>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서비스</u> 1) 생활시설 _____ 2) 주간재활시설 3) 공동생활가정</p>	<p>• 사업 추가 및 순서 재조정</p>	<p>iv</p>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u>지역사회전환시설</u> 5) <u>직업재활시설</u> 6) <u>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u> 7) <u>중독자재활시설</u> 8) <u>생산품판매시설</u> 9) <u>종합시설</u> 		
<p>2.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관소개 나. 기관소개 1)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 <생략> •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p>	<p>2.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관소개 나. 기관소개 1)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 <생략> • 마약류 중독·치료 실태조사 • <u>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u> • <u>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지원·평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 중독치료 업무 추가 	7
<p>5)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다) 직무범위 • 자살통계 데이터 구축·분석 및 품질 관리와 자살예방 연구·개발 등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수행 • 자살실태조사 지원과 생애주기별 취약대상자 관리·지원 등,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언론·미디어 자살유발·유해정보 예방 및 차단,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통계, 사업, 정책 지원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정책 수립 지원 • 심리부검 기획·운영, 결과 분석과 자살 관련 상담 및 면담체계 운영,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등을 통한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 • 지역 자살예방 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컨설팅,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지역 자살예방 사업 실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한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 관련 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 기획·운영 및 기부금 모집·관리와 국제협력 체계 구축 수행</p>	<p>5)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다) 직무범위 (1)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 운영 ● 자살예방 홍보 및 대국민 캠페인 기획·운영 ● 자살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지원 ● 언론·미디어 자살유발·유해정보 예방 및 대응 (2) 자살예방 정책 근거자료 구축 및 연구·개발 ● 자살통계 데이터 구축·분석 및 품질관리 ● 자살실태조사 등 자살예방 관련 연구 개발 수행 ● 심리부검 면담 및 분석 (3) 지역 자살예방 추진체계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이행·평가 지원 및 컨설팅 ●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자 교육 ●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 자살예방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4) 자살 사후대응 및 심리·위기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자살 시도자 및 유족 지원 ●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 자살예방 상담전화(109)·SNS상담(마들랜) 운영 (5)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기부금 모집·관리 ● 국제협력 및 해외 정보 교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범위 작성 내용 명확화 	14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p>	<p>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현황보고서에 맞춰 현황 변경 	16-17
<p>4.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1) 법적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p>4.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1) 법적근거</p> <p>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1) 법적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20820호, 2025.03.18)에 따라, 내용 현행화 필요 	18
<p>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1) 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9호) 제2조 (수련기관 지정신청), 제3조(수련기관 지정) 	<p>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1) 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8호) 제2조 (수련기관 지정신청), 제3조(수련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20820호, 2025.03.18)에 따라, 내용 현행화 필요 	18
<p>2) 수련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가) 수련기관 신청 및 지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생략> <p>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p>	<p>2) 수련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가) 수련기관 신청 및 지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생략> <p>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제20820호, 2025.03.18)에 따라, 내용 현행화 필요 	18-19

현행(2025년도)	개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의료기관만 해당)</p> <p>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p> <p>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함.</p>	<p>의료기관만 해당)</p> <p>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p> <p>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함.</p> <p><u>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u></p>		
<p>나) 수련기관 현황</p> <p><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현황></p> <p><시도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현황></p>	<p>나) 수련 <u>운영가능기관</u> 현황</p> <p><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u>운영가능기관</u> 현황></p> <p><시도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u>운영가능기관</u> 현황></p> <p><본문 참고></p>	<p>• 2025년 12월 기준 수정</p>	19
<p>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p> <p>가. 센터설치</p> <p>1) 목적 및 주요기능</p> <p>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중독관리 체계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p>	<p>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p> <p>가. 센터설치</p> <p>1) 목적 및 주요기능</p> <p>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연계, 중독관리 체계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p>	<p>• 역할 명확화</p>	31
<p>다. 종사자관리</p> <p>2) 채용사항</p> <p>● 적격자의 채용 및 결격사유 확인</p> <p><생략></p> <p>-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및 제3항, 기타 관련 법령 규정상의 결격 사유를 준용</p> <p><참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결격사유</p>	<p>다. 종사자관리</p> <p>2) 채용사항</p> <p>● 적격자의 채용 및 결격사유 확인</p> <p><생략></p> <p><삭제></p>	<p>• 결격사유 법적 근거에 따라 내용 삭제</p>	41
<p>● 최종합격 예정자는 센터에서 요청한 아동·노인·장애인학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발급받아 센터에 제출하거나, 범죄전력조회에 동의하여야 함</p> <p><참고> 범죄경력조회</p>	<p>● 센터장은 채용 전 「<u>아동복지법</u>」, 「<u>노인복지법</u>」, 「<u>장애인복지법</u>」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u>채용 예정자에 대한 아동·노인·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취업제한사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u></p> <p><참고> 범죄경력조회</p>	<p>• 취업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내용 수정</p>	41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5) 종사자 근무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의 부여 - 법정휴가 <p><참고> 법정휴가(「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p> <p><중략></p> <p>② 출산 전·후휴가(단체아일 경우: 출산 전·후 90일, 다테아일 경우 출산 전·후 120일 보장): 유산·사산에도 별도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함 ※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p> <p>③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 부여 (‘25.2.22.까지는 최대 10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 (‘25.2.23.부터는 최대 20일,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p> <p><생략></p>	<p>5) 종사자 근무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의 부여 - 법정휴가 <p><참고> 법정휴가(「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p> <p><중략></p> <p>② 출산 전·후휴가(단체아일 경우: 출산 전·후 90일, 미숙아 100일, 다테아일 경우 출산 전·후 120일 보장): 유산·사산에도 별도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함 ※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p> <p>③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 부여 (최대 20일,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4항 반영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의 부여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의 부여 - 유급병가 <p><참고> 유급휴가(20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15조)</p> <p>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법인·시설 등의 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는 최소 연 30일 이상이 될 것을 권고함 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p> <p>2.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p> <p>3.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시설별로 운영중인 유급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본 조항을 이유로 유급병가의 기간 조건 등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시설별 개별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급병가 내용 추가 	49
<p>6) 종사자 교육</p> <p>(나) 내부교육</p> <p>(1) 안전관리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내부교육 진행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된 '종사자의 안전 및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개선'외 같은 내용의 온라인 교육 진행 	<p>6) 종사자 교육</p> <p>(나) 내부교육</p> <p>(1) 안전관리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내부교육 진행 또는 <u>종사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내용의 온라인 교육 진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간소화 	52

현행(2025년도)	개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2) 인권교육 ●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증진인식 및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령 시행규칙 제50조(인권교육)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실시(전 종사자 대상 연 1회 이상)	2) 인권교육 ●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증진인식 및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인권교육)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실시(전 종사자 대상 연 1회 이상)	●법적근거 명시	52																																																						
라. 행정사항 1) 예산관리 나) 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2) 세부지급기준 <생략> * (참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1) 예산관리 나) 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2) 세부지급기준 <생략> * (참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일당 200,000원(서면심사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 반영	58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60																																																						
<table border="1"> <thead> <tr> <th>수령 종류</th> <th>지급 대상</th> <th>지급액</th> <th>지급횟수 및 지급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가족 수당</td> <td rowspan="5">부양 가족이 있는 종사자</td> <td>배우자</td> <td>40,000원</td> </tr> <tr> <td>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 <td>20,000원</td> </tr> <tr> <td>첫째</td> <td>30,000원</td> </tr> <tr> <td>둘째</td> <td>70,000원</td> </tr> <tr> <td>셋째이후</td> <td>110,000원</td> </tr> <tr> <td colspan="3"></td> <td>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 ※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td> </tr> <tr> <td rowspan="2">시간 외 근무 수당 등</td> <td rowspan="2">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연장 근무를 한 종사자</td> <td colspan="2">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td> </tr> <tr> <td colspan="2">연장근로를 한 다음보수지급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td> </tr> </tbody> </table>	수령 종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가족 수당	부양 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이후	110,000원				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 ※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연장 근무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보수지급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수령 종류</th> <th>지급 대상</th> <th>지급액</th> <th>지급횟수 및 지급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가족 수당</td> <td rowspan="5">부양 가족이 있는 종사자</td> <td>배우자</td> <td>40,000원</td> </tr> <tr> <td>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td> <td>20,000원</td> </tr> <tr> <td>첫째</td> <td>50,000원</td> </tr> <tr> <td>둘째</td> <td>80,000원</td> </tr> <tr> <td>셋째이후</td> <td>120,000원</td> </tr> <tr> <td colspan="3"></td> <td>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 지급 ※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td> </tr> <tr> <td rowspan="2">시간 외 근무 수당</td> <td rowspan="2">규정된 근무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한 종사자</td> <td colspan="2">(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td> </tr> <tr> <td colspan="2">(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td> </tr> <tr> <td colspan="3"></td> <td>시간외 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td> </tr> </tbody> </table>	수령 종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가족 수당	부양 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이후	120,000원				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 지급 ※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	시간 외 근무 수당	규정된 근무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 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수령 종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가족 수당	부양 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첫째	30,000원																																																						
		둘째	70,000원																																																						
		셋째이후	110,000원																																																						
			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 ※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연장 근무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보수지급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수령 종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가족 수당	부양 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이후	120,000원																																																						
			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 지급 ※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																																																						
시간 외 근무 수당	규정된 근무 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 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2) 안전관리</p> <p>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을 위한 주체별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p><추가></p>	<p>2) 안전관리</p> <p>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을 위한 주체별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p><생략></p> <p>- <u>종사자 안전관리 관련 기준 마련, 기관별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역할 추가 	65								
<p>3) 기록물 보호·관리</p> <p><각종 기록의 작성·보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록 종류</th> <th>최소보관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td> <td>5년 (종사자 퇴사 후)</td> </tr> </tbody> </table> <p>* 향후 경력 증명 등을 위해 5년 이상 추가 보존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의 동의 필요</p> <p>※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개인정보 처리방침, 각종 기록의 작성·보관표를 참고하되, 지방자치단체 기준(규정, 규칙 등)을 준용</p>	기록 종류	최소보관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	5년 (종사자 퇴사 후)	<p>3) 기록물 보호·관리</p> <p><각종 기록의 작성·보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록 종류</th> <th>최소보관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td> <td>3년 (종사자 퇴사 후)</td> </tr> </tbody> </table> <p>* 경력증명서 발급기간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유하는데 대해서는 동의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근로자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참고(24.12.))</p> <p>※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개인정보 처리방침, 각종 기록의 작성·보관표를 참고하되, 지방자치단체 기준(규정, 규칙 등)을 준용</p>	기록 종류	최소보관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	3년 (종사자 퇴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근거하여 수정 	67
기록 종류	최소보관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	5년 (종사자 퇴사 후)										
기록 종류	최소보관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	3년 (종사자 퇴사 후)										
<p>4) 개인정보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 <p>-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 이용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 필요</p> <p>※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법령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p>	<p>4) 개인정보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 <p>-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 이용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 필요</p> <p>※ 개인정보 동의서는 [별지 제11-2-3호]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고지 및 동의 필수 안내 	68								
<p>2.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p> <p>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p> <p>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p> <p>가) 위기개입팀 운영</p> <p>(4)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내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 경찰 등과 함께 대응 <p>*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p> <p>- 자해에 위험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여부, 정신적인 위기평가 수행을 통한 구급대원</p>	<p>2.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p> <p>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p> <p>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p> <p>가) 위기개입팀 운영</p> <p>(4)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내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 경찰 등과 함께 대응 <p>*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p> <p>- 자해에 위험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여부, 정신과적 위기상황 평가수행을 통한 구급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명확화 	73								

현행(2025년도)	개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및 경찰의 현장대응 지원</p> <p><중략></p> <p>(5) 사업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시 정신과적 평가 필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자 	<p>및 경찰의 현장대응 지원</p> <p><중략></p> <p>(5) 사업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시 정신과적 위기상황 평가 필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자 		
<p>(6)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개입 전·후 상황에 따른 주요업무 - 위기개입 요청 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척도(CRI) 활용,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위험평가 안내 2.0」 참고 	<p>(6)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개입 전·후 상황에 따른 주요업무 - 위기개입 요청 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 한국형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척도 단축형 (CRI-SF) 활용,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의 위험평가 안내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도구 및 참고자료 수정, 추가 	74,87
<p>다) 1577-0199 정신건강 상담 전화 운영</p>	<p>다)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명확화 	77,89
<p>4)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광역단위 재난심리지원업무</p> <p>(2)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심리지원 시점 등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 	<p>4)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광역단위 재난심리지원업무</p> <p>나)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심리지원 시점 등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재난 심리지원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 내용 반영 	78
<p>5)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p> <p><마음안심버스></p> <p><중략></p> <p>(4) 운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5대(광역 9대, 기초 36대) 배치 ※ 세부사항은 마음안심버스 운영 안내 참조 	<p>5)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p> <p><마음안심버스></p> <p><중략></p> <p>(4) 운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5대(광역 10대, 기초 35대) 배치 ※ 세부사항은 마음안심버스 운영 안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현행화 	79
<p>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p> <p>나) 사업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 34세 청년 - 초발정신질환 청년(정신질환 발병 5년이내) - 정신증 고위험군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정동장애(F31) 등 조현병 범주장애 	<p>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p> <p>나) 사업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 34세 청년 ※ 지역여건에 따라 15~39세 청년대상서비스 제공 가능 - 초발정신질환 청년(정신질환 발병 5년이내) - 정신증 고위험군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p>다)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제공 연령 확대 및 내용 간소화 	80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장애(F32~34), 불안장애(F41) 등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 불안장애 그외 F코드로 진단을 받은 자(차매, 지적장애 제외) <p>다)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지원* 연계를 통한 정신증 고위험군 발굴, 인식개선 등 * 대학교, 병무청, 청년센터,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대상자 연계·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지원*을 통한 정신증 고위험군 발굴, 인식개선 등 * 대학교, 병무청, 청년센터,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p>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p> <p>2)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p> <p>가) 조기발견</p> <p>(3)주요 협력기관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청, Wee센터), 복지기관(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병무청, 고용센터, 청년센터, 주민센터(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보건소(방문건강관리팀) 등 	<p>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p> <p>2)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p> <p>가) 조기발견</p> <p>(3)주요 협력기관의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청, Wee센터), 복지기관(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병무청, 고용센터, 청년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보건소(방문건강관리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부 연계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협력 기관 추가 	83
<p>나) 사례관리</p> <p>(2)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요구에 따른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요구도 평가에 기반하며, 초기평가 이후 6개월 간격 1회 이상 수립 	<p>나) 사례관리</p> <p>(2) 서비스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요구에 따른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요구도 평가에 기반하며, 초기평가 이후 180일 간격 1회 이상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립일자 구체화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 보건복지 자원연계를 통한 요구도 반영 필요 - 정신건강서비스 외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관리, 돌봄, 직업재활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지역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 사례관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과 연계지원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행복e음 연계 메뉴 활용해 보건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수신 ※ 지역유관기관과의 연합사례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 보건복지 자원연계를 통한 요구도 반영 필요 - 정신건강서비스 외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관리, 돌봄, 직업재활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지역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 사례관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과 연계지원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행복e음 연계 메뉴 활용해 보건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수신 ※ 지역유관기관과의 연합사례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u>권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석 명료화 	84

현행(2025년도)	개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다) 재활지원</p> <p><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 <중략> (3)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지원가 지원: 동료지원가 양성, 회복경험 공유, 가정방문동행, 프로그램 지원 등 	<p>다) 재활지원</p> <p><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 <중략> (3)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지원가 지원: 동료지원가 양성, <u>활동지원</u> (회복경험 공유,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동행, <u>교육</u> 및 <u>프로그램</u>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85
<p>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p> <p>다) 사업내용</p> <p>(2) 치료연계 및 치료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1인당 연 40만원 이내 	<p>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p> <p>다) 사업내용</p> <p>(2) 치료연계 및 치료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1인당 연 <u>50만원</u>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인상 	91
<p>9) 중독관리 지원사업</p> <p>나) 관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독사업 대상자 의뢰연계, 관리체계 활성화 ● 적절한 평가도구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통한 사정평가 	<p>9) 중독관리 지원사업</p> <p>나) 관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독사업 대상자 의뢰연계, 관리체계 활성화 ● <u>중독관련검진도구</u>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사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 표준사례관리 매뉴얼 문구 반영 및 삭제를 통한 문맥 명확화 	96
<p>III.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p> <p>1.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p> <p>라. 정신의료기관 운영</p> <p>3) 입·퇴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퇴원신청서,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등 입·퇴원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심사 청구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p>III.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p> <p>1.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p> <p>라. 정신의료기관 운영</p> <p>3) 입·퇴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퇴원신청서, <u>환자</u>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등 입·퇴원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 <u>심사</u> 청구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재 서류 (입원동의서) 삭제 ● 법 명시에 따라 '환자' 추가 	119
<p>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4호, 보존 내용)</p> <p>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p> <p>나. 영 제20조 각 호의 사항</p> <p>다.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른 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p> <p>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p>	<p>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4호, 보존 내용)</p> <p>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p> <p>나. 영 제20조 각 호의 사항</p> <p>다. <u>입원과정, 입원적합성 신고기관, 입원유형, 증빙서류 등 신고서 작성에 따른 사항</u></p> <p>라. <u>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확인 가능한 권리고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 신고서 작성에 따른 사항 추가 ●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참고 서식 내용 추가 	120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수령일, 심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및 확인서 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 수령일, 심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5) 환자권익보호 <추가>	5) 환자권익보호 ●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공 (정신건강복지법 제 38조의2) -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가 주도적으로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조력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함	● 절차조력 서비스 안내 내용 명시	122
마. 입퇴원절차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법 제43조) 가)입원절차 <중략> ●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면서 구두로 설명 ※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와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모두에게 [참고서식 제1호]를 활용하여 각각 고지하여야 함. [참고 서식 제1호]는 고지대상의 서명을 받아 1부를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참고서식 제1호]는 법정서식이 아닌 참고 서식으로 이 서식대로 하지 않고 이를 참고 하여 달리할 수 있음	마. 입퇴원절차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법 제43조) 가)입원절차 <중략> ●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면서 구두로 설명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 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는 입원 환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법 제6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변경된 고지 절차 반영 수정	127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추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127, 135, 138
※ 보호입원에 필요한 서류 <본문 참고> 2. 구비서류 2-1.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보호입원에 필요한 서류 <본문 참고> 2. 구비서류 2-1.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1부	● 단어 추가	130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제39조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p> <p><중략></p> <p>-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2018.4.15. 시행)</p>	<p>▶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제39조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p> <p><중략></p> <p>-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제2021-2호)</p>	• 해당 고시 기재	132
<p>※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호, 제20호 활용</p> <p><중략></p> <p>※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참조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정신건강사업부-자료실)</p>	<p>※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호, 제20호 활용</p> <p><중략></p> <p>※ '2025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참조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사업부 자료실)</p>	• 내용현행화	132
<p>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법 제44조)</p> <p>다) 입원연장절차</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 → 첫 3개월 이후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 이내 입원연장 가능 → 지지체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 <p><중략></p>	<p>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법 제44조)</p> <p>다) 입원연장절차</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 → 첫 3개월 이후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 이내 입원연장 가능 → 지지체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 <p><중략></p> <p>※ 추가진단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 치료 불필요' 소견(1,2차 전문의 진단(소견 불일치)인 경우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가 불가하므로 퇴원 계획을 수립하여 퇴원</p>	• 참고서식 제8호 개정 사항 반영	136
<p>바. 행정사항</p> <p>1) 지도감독</p> <p>나) 부적합 기관 행정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부적합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함 	<p>바. 행정사항</p> <p>1) 지도감독</p> <p>나) 부적합 기관 행정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부적합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함 	• 의미 명확화	141
<p>3)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p> <p>가)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p>3)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p> <p>가)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시행 및 결과 환류로 자발적 질 관리 문화 	• 평가인증제도 취지에 맞게 수정	143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형성을 통한 정신의료 질 향상																												
<p>나)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p>나)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추가 	143																										
<p>다) 사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및 평가 주기 내에 전체 대상기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 신청에 따라 시행 -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www.koiha.or.kr)에서 작성 	<p>다) 사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및 평가 주기 내에 전체 대상기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u>시행</u> - <u>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평가 대상 및 신청 개별 안내</u> ※ 단, 정신병원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u>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ae.koiha.or.kr)</u>을 통해 <u>자율적으로 신청</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무에 따른 '자율'내용 삭제 ● 평가와 인증을 구분하여 현행화 	143																										
<p>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p> <p>다. 정신요양시설 설치</p> <p>4) 입소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장애인시설 등 타 입소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소 제한 ※ 지적장애, 치매 등 질환자는 장애인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해당 시설 입소 강력 권고 	<p>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p> <p>다. 정신요양시설 설치</p> <p>4) 입소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장애인시설 등 타 입소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소 제한. 단, <u>정신 질환 소견서가 있고, 촉탁의사에 정신요양시설 입소 필요 소견이 있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 가능</u> ※ 지적장애, 치매 등 질환자는 장애인시설, 장기 요양시설 등 해당 시설 입소 강력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절차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146																										
<p>6) 인력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종사자의 수 및 자격</th> </tr> </thead> <tbody> <tr> <td>간호사</td> <td>입소현원 25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단,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td> </tr> <tr> <td>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td> <td>입소현원 8명당 1명, 80명 초과시 입소현원 10명당 1명 (교대근무실시분 포함)</td> </tr> <tr> <td>영양사</td> <td>1명 이상 (입소현원 50명 미만인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td> </tr> <tr> <td>사무원</td> <td>입소현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명 초과 2명 이상</td> </tr> <tr> <td>전문요원</td> <td>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단, 여성입소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반드시 포함)</td> </tr> </tbody> </table>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간호사	입소현원 25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단,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현원 8명당 1명, 80명 초과시 입소현원 10명당 1명 (교대근무실시분 포함)	영양사	1명 이상 (입소현원 50명 미만인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사무원	입소현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명 초과 2명 이상	전문요원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단, 여성입소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반드시 포함)	<p>6) 인력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종사자의 수 및 자격</th> </tr> </thead> <tbody> <tr> <td>간호사</td> <td>입소현원 25명당 1명 이상.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td> </tr> <tr> <td>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td> <td>1) 입소현원 80명 이하: 입소현원 8명당 1명 이상 2) 입소현원 80명 초과: 입소현원 10명당 1명 이상</td> </tr> <tr> <td>영양사</td> <td>1명 이상. 다만, 입소현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td> </tr> <tr> <td>사무원</td> <td>1) 입소현원 50명 이상: 2명 이상 2) 입소현원 50명 미만: 1명 이상</td> </tr> <tr> <td>전문요원</td> <td>1)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2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 미만: 시설당 1명 이상</td> </tr> <tr> <td>작업지도원</td> <td>1명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간호사	입소현원 25명당 1명 이상.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1) 입소현원 80명 이하: 입소현원 8명당 1명 이상 2) 입소현원 80명 초과: 입소현원 10명당 1명 이상	영양사	1명 이상. 다만, 입소현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사무원	1) 입소현원 50명 이상: 2명 이상 2) 입소현원 50명 미만: 1명 이상	전문요원	1)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2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 미만: 시설당 1명 이상	작업지도원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 반영 	147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간호사	입소현원 25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단,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현원 8명당 1명, 80명 초과시 입소현원 10명당 1명 (교대근무실시분 포함)																												
영양사	1명 이상 (입소현원 50명 미만인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사무원	입소현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명 초과 2명 이상																												
전문요원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단, 여성입소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반드시 포함)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간호사	입소현원 25명당 1명 이상.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1) 입소현원 80명 이하: 입소현원 8명당 1명 이상 2) 입소현원 80명 초과: 입소현원 10명당 1명 이상																												
영양사	1명 이상. 다만, 입소현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사무원	1) 입소현원 50명 이상: 2명 이상 2) 입소현원 50명 미만: 1명 이상																												
전문요원	1)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2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 미만: 시설당 1명 이상																												
작업지도원	1명 이상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입소현원 70명 미만: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 입소현원 70명 미만인 남녀공용시설에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 이전에 채용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명인 경우 기존의 기준 초과인력은 해당 인력의 퇴직시까지 계속인정	조리원	1) 입소현원 70명 미만: 3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 ~ 120명: 4명 이상 3) 입소현원 121명 ~ 200명: 5명 이상 4) 입소현원 201명 ~ 300명: 6명 이상 5) 입소현원 301명 ~ 400명: 7명 이상 6) 입소현원 401명 이상: 8명 이상		
직업지도원	시설당 1명 (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위생원	입소현원 150명 이하: 1명 이상 입소현원 151명 ~ 250명: 2명 이상 입소현원 251명 ~ 350명: 3명 이상 입소현원 351명 ~ 450명: 4명 이상 입소현원 451명 이상: 5명 이상		
조리원	입소현원 70명 미만: 3명 입소현원 70명 이상~120명: 4명 입소현원 121명 이상~200명: 5명 입소현원 201명 이상~300명: 6명 입소현원 301명 이상~400명: 7명	관리인 또는 경비원	1명 이상		
위생원	입소현원 150명 이하: 1명 입소현원 151명 이상~250명: 2명 입소현원 251명 이상~350명: 3명 입소현원 351명 이상~450명: 4명 입소현원 451명 이상: 5명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관리인 또는 경비원	시설당 1명	※ 비교 1. 위 표에 따른 입소현원당 인력 기준을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2. 시설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다. 3. 시설장 외의 종사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모두 겸할 수 있다. 4.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에는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5. 직업지도원은 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전관리요원	시설당 1명				
※ 비교 1.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또는 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자격)중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음 2. 정신요양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가 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3) 입소자 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 시설장은 입소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구성: 보호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추가>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3) 입소자 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 시설장은 입소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구성: 해당 시설 입소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회의는 전체단원 2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내용의 기록 및 보고: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전체 단원에게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 <생략>		● 인권지침 실효성 제고 및 행정 효율성 강화	151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4) 입소자 건강관리 <추가></p>	<p>4) 입소자 건강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사 등 부재로 부득이한 경우 비의료인의 입소자 투약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입소자 투약 관련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의 입소자 투약(경구투약 포함)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투약 보조 가능 “부득이한 경우”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투약 업무가 가능한 의료인이 연차 등의 사유로 정신요양시설에 부재하여 입소자 투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 예시: 정신질환자들이 신체활동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 약을 먹을 때 입으로 손을 정확하게 위치 시켜주기 정신요양시설 내 비의료인의 투약 보조는 다음과 같이 진행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자에게 정해진 약(정신건강전문의의 처방을 기준으로 받은 약물)을 손으로 건네주거나, 알아서 가져가게끔 약이 들어있는 통, 접시 등 전달 입소자가 먹는 것을 안내 (예시: 입소자 A씨에게 “약 먹을 시간이니 이거 드셔야합니다” 안내) 입소자가 약을 먹었는지 확인 (예시: A씨에게 “약 먹었는지 확인할게요 아 해주세요” 묻고 확인)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 인력 부재 시 투약 공백 방지를 통한 치료 연속성 확보 	152
<p>5) 영양보호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은 입소자가 외출외박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동의를 얻고 외출 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p>5) 영양보호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은 입소자가 외출외박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동의(법 제41조 <u>자의입소자는 제외</u>)를 얻고 외출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대상 추가 	152
<p>6)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중략> <추가></p>	<p>6)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은 입소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u>작업치료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작업의 종류·시간·위험성·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의 청소·취사·세탁 등 단순 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함</u> 작업치료는 <u>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작업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u>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3<신설 2024. 12. 27.> “정신요양시설의 이용·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작업치료 규정 현행화 	153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은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계획하고, 소속 종사자에게 업무를 분장하여 부여할 수 있음 - 지역사회 통합 활동 지원: 입소자의 대인관계 증진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외출외박 동행, 지역사회 시설 이용 지원 등 제반 활동 - 치료적 환경 조성 및 유지 활동: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소자 참여기반의 원예 활동, 시설 내·외부, 생활 편의를 위한 유지보수 활동 등 										
<p>8) 종사자관리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은 계약의 및 촉탁의가 주당 총 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방문 시에는 투약관련 의학적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의 및 촉탁의 계약시, 근무 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근무일 조정 및 합의 가능함 ※ 촉탁의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III-2-2호] 업무협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 시설장은 응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시에 계약의 및 촉탁의가 입소자의 정신과 외래진료 시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p>8) 종사자관리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은 계약의 및 촉탁의가 주당 월 4회 방문(32시간)이상 시설 방문하여 정기 진료를 실시하고, 방문 시에는 투약관련 의학적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모든 입소자들은 한달 1회 이상 진료를 원칙으로함) * 계약의 및 촉탁의 계약시, 근무 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근무일 조정 및 합의 가능하며, 1회 방문 시 입소 현원 1/4 이상 진료, 진료 일지 작성 시 8시간 근무 간주 ※ 촉탁의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III-2-2호] 업무협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 촉탁의 계약은 촉탁의(개인) 또는 촉탁병원과 체결 가능 ● 시설장은 응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시에 계약의 및 촉탁의가 입소자의 정신과 외래진료 시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추가 및 수정 	155								
<p>10) 장부비치 및 기록관리</p> <table border="1" data-bbox="232 1665 642 1768"> <thead> <tr> <th>장부 및 서류명</th> <th>보관비치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td> <td>3년</td> </tr> </tbody> </table>	장부 및 서류명	보관비치기간	●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3년	<p>10) 장부비치 및 기록관리</p> <table border="1" data-bbox="660 1665 1065 1768"> <thead> <tr> <th>장부 및 서류명</th> <th>보관비치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접수 발송문서</td> <td>3년</td> </tr> </tbody> </table>	장부 및 서류명	보관비치기간	● 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접수 발송문서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기록 장성 보관 기록 종류 추가 및 보관기간 수정 	156
장부 및 서류명	보관비치기간										
●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3년										
장부 및 서류명	보관비치기간										
● 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접수 발송문서	3년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장부 및 서류명	보관비치기간	장부 및 서류명	보관비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영구		
<p>11) 입소료 징수 및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입소료 중 '2025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급여 지급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료입소자 생계비 통장에 입금하여 유료입소자의 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하여야 함 * 유료입소자의 주식비 및 부식비는 시설 수급자의 주식비 및 부식비에 상응하는 비용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함(시설 후원금과 후원물품 포함함) - 유료입소료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단, 유료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설치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 관리감독 부서에 승인받아야 함) ※ 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의 지출은 특정 항목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유료입소료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함.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p>11) 입소료 징수 및 사용</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입소료 중 '2026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급여 지급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료입소자 생계비 통장에 입금하여 유료입소자의 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하여야 함 * <u>유료입소자 생계비 최소 기준('2026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 급여 지급액'의 50% 이상) 충족 여부 산정 시, 전체 식자재 후원금품 총 가액을 유료입소자 생계비 계좌 입금액과 합산하여 산정함. 이때, 입소자 유형(유료/무료)에 따른 후원금품 가액 안분 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함</u> - 유료입소료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단, 유료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설치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 관리감독 부서에 <u>보고</u>받아야 함) ※ 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의 지출은 특정항목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입소자 생계비 산정 기준 명확화 	157
<추가>		<p>13) 입소자 특성을 고려한 종사자 배치 및 자립생활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 원칙) 시설장은 입소자의 입소 유형, 정신건강 상태, 자립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사자 근무 위치(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관련 기준 준수), 순회 점검 방식 등 최적의 안전관리 및 생활지원 방안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자립생활관 운영) 시설장은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와 자립 동기 부여가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특정 생활관을 '자립생활관'으로 지정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의 자립 동기 부여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립생활관 운영 근거를 신설 	158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1. 종사자는 해당 생활관 내(침실, 거실 등 사적 공간) 상주를 지양하고, 생활관에 인접한 별도 사무공간(동일 동 내)에서 근무 가능.</p> <p>2. 제1호의 경우, 시설장은 입소자의 안전 확보와 증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p>										
<p>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 국고환원 ('15년~)</p> <p>1) 지원 기준</p> <p>(2) 종사자수 지원기준</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초과 인력이 퇴직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대체인력(신규 포함) 채용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도 내 정신요양시설에 자연감소(퇴직 등) 인력이 발생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 할 경우에 시도 내 시설 간 인력배치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원 미달 인력이 많은 시설의 대체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단, 정원초과인력이 자연감소(퇴직 등) 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시까지만 정원 초과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하고, 자연감소 후 정원초과인력 대체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음 	<p>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 국고환원 ('15년~)</p> <p>1) 지원 기준</p> <p>(2) 종사자수 지원기준</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초과 인력이 퇴직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대체인력(신규 포함) 채용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도 내 정신요양시설에 자연감소(퇴직 등) 인력이 발생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 할 경우에 시도 내 시설 간 인력배치의 균형을 고려하여, 직종별 정원 미달 인력이 많은 시설의 대체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단, 직종별 정원초과인력이 자연감소(퇴직 등)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시까지만 직종별 정원초과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하고, 자연감소 후 직종별 정원초과인력 대체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별 정원 관리 및 우선 지원 원칙 명문화 	163								
<p><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p> <p><표 생략></p> <p>※ 개별시설에서 인건비 지원 권고기준 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음 (사무원,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p>	<p><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p> <p><표 생략></p> <p>※ 시설 운영 상 불가피하게 특정 직무 공백 발생 시, 법정 필수 인력·자격 기준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시설장은 지원 총원 내 타 종사자에게 해당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음. (단, 이는 직종별 정원 조정이나 대체 채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종별 결원에 의한 직무 공백 시 업무 조정 근거 명시 	164								
<p><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기준 적용지침</th> </tr> </thead> <tbody> <tr> <td>간호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수를 25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25×A+B ▷ 간호사 지원인원수 - B가 10이상 120이한인 경우: A명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기준 적용지침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수를 25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25×A+B ▷ 간호사 지원인원수 - B가 10이상 120이한인 경우: A명 	<p><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기준 적용지침</th> </tr> </thead> <tbody> <tr> <td>간호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수를 25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25×A+B ▷ 간호사 지원인원수 - B=0 경우:A명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기준 적용지침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수를 25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25×A+B ▷ 간호사 지원인원수 - B=0 경우:A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3<신설 2024. 12. 27.> 	165
구분	지원기준 적용지침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수를 25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25×A+B ▷ 간호사 지원인원수 - B가 10이상 120이한인 경우: A명 										
구분	지원기준 적용지침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수를 25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25×A+B ▷ 간호사 지원인원수 - B=0 경우:A명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구분	지원기준 적용지침	구분	지원기준 적용지침		
	<p>- B가 130이상 240이하인 경우: (A+1)명</p> <p>적용예 1) 입소현원수: 219명 $219명 = 25 \times 8 + 19$ 간호사 지원인원수 = (8+1)명 = 9명</p> <p>적용예 2) 입소현원수: 229명 $229명 = 25 \times 9 + 4$ 간호사 지원인원수 = 9명</p>		<p>- B>0 경우:(A+1)명</p> <p>적용 예 1) 입소인원수 : 150명 $150명-25 \times 6$ 간호사 지원인원수=6명</p> <p>적용 예 2) 입소인원수 : 151명 $151명-25 \times 6 + 1$ 간호사 지원인원수=(6+1)명=7명</p>	<p>“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근거하여 입소현원당 인력 기준을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는 계산식 반영.</p>	
생활 지도원 또는 생활 복지사	<p>○ 입소현원 80명 이하인 경우 ▷ 입소현원수를 8로 나누어 A와 B 산출입소현원수 = $8 \times 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B가 1이상 40이하인 경우: A명 - B가 50이상 70이하인 경우: (A+1)명</p> <p>○ 입소현원 80명 초과인 경우 ▷ 입소현원수-80을 10으로 나누어 A와 B 산출입소현원수-80 = $10 \times 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B가 1이상 50이하인 경우: (10+A)명 - B가 60이상 90이하인 경우: (10+A+1)명</p> <p>적용예 1) 입소현원수: 55명 $55명 = 8 \times 6 + 7$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7명</p> <p>적용예 2) 입소현원수: 235명 $235명 - 80 = 10 \times 15 + 5$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10+15=25명</p>	생활 지도원 또는 생활 복지사	<p>○ 입소현원 80명 이하인 경우 ▷ 입소현원수를 8로 나누어 A와 B 산출입소현원수 = $8 \times 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B=0 경우:A명 - B>0 경우:(A+1)명</p> <p>○ 입소현원 80명 초과인 경우 ▷ 입소현원수-80을 10으로 나누어 A와 B 산출입소현원수-80 = $10 \times 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B=0 경우:(10+A)명 - B>0 경우:(10+A+1)명</p> <p>적용예 1) 입소인원수 : 150명 $150-80명=10 \times 7$ 생활복지사 지원인원수=(10+7)명=17명</p> <p>적용예 2) 입소인원수 : 151명 $150명-80=10 \times 7 + 1$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10+7+1)명=18명</p>		
(4) 보수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 시) 종사자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채용 할 수 있음 	(4) 보수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자의 경우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u>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 평등법 의 육아휴직 기간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체인력 채용 범위를 현행화 및 법적 부합성 확보 	167
(5) 수당 지급: 2026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급 예산규모에 따라 	(5) 수당 지급: 2026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급 예산규모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공휴일의 세부 범위를 구체적으로 	169-170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생략> - 법정공휴일은 별도 휴일수당 지급 <추가></p>	<p>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생략> - 법정공휴일은 별도 휴일수당 지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법정공휴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div>	<p>명시하여 휴일수당 지급 기준의 명확성 확보</p>									
<p>나) 관리 운영비의 지원 기준 <생략> <추가></p>	<p>나) 관리 운영비의 지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로 구입 가능한 소모품의 범위 규정</u> - <u>소모품*은 관리운영비(일상생활용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로 지출할 수 있음</u> * (소모품)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비 지원대상 항목 중 일상생활용품비 항목 내용 구체화 	171								
<p>2025년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지원 항목명</th> <th style="width: 80%;">지 원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일상생활용품비</td> <td>○ 일상생활용품 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하는 집기류를 제외한 생활용품 구입)</td> </tr> </tbody> </table>	지원 항목명	지 원 내 용	2) 일상생활용품비	○ 일상생활용품 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하는 집기류를 제외한 생활용품 구입)	<p>2026년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지원 항목명</th> <th style="width: 80%;">지 원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일상생활용품비</td> <td>○ 입소자의 생활 공간(생활실, 거실 등)에 비치되어 입소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입소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 등 * (구입가능 품목예시) TV, 선풍기, 에어컨, 건조기, 침대, 옷장, 사물함, 주방물품(숟, 냄비) 등</td> </tr> </tbody> </table>	지원 항목명	지 원 내 용	2) 일상생활용품비	○ 입소자의 생활 공간(생활실, 거실 등)에 비치되어 입소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입소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 등 * (구입가능 품목예시) TV, 선풍기, 에어컨, 건조기, 침대, 옷장, 사물함, 주방물품(숟, 냄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비로 지출 가능한 소모품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 	175
지원 항목명	지 원 내 용										
2) 일상생활용품비	○ 일상생활용품 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하는 집기류를 제외한 생활용품 구입)										
지원 항목명	지 원 내 용										
2) 일상생활용품비	○ 입소자의 생활 공간(생활실, 거실 등)에 비치되어 입소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입소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 등 * (구입가능 품목예시) TV, 선풍기, 에어컨, 건조기, 침대, 옷장, 사물함, 주방물품(숟, 냄비) 등										
<p>3.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3) 시설기준 <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기준 > (제17조제1항제3호 관련) 비고: 1. 정신재활시설(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p>	<p>3.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3) 시설기준 <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기준 > (제17조제1항제3호 관련) 비고 : 1. 정신재활시설(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별표 7] 2024.12. 27. 개정에 따른 '또는 이용정원' 삭제 	177-179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중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등을 추가로 입소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u>입소정원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등을 추가로 입소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음.</u></p>		
<p>라. 정신재활시설 운영</p> <p>1) 운영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재활시설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 및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도모 	<p>라. 정신재활시설 운영</p> <p>1) 운영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재활시설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를 <u>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구 수정 	182
<p>2) 운영방침</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보건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임상기술이 있는 전문인력 위주로 운영하여야 함 자원봉사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활용하고 교류를 촉진하여야 함 회복된 정신질환자의 재활·사회복귀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함 	<p>2) 운영방침</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임상기술이 있는 전문인력 위주로 운영하여야 함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촉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활용하고 교류를 촉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용어통일 운영방침 명료화 	182
<p>바. 회원관리</p> <p>1)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재활시설을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장은 당해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이용자”)의 입소·이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함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및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시설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명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p>4)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중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려는 정신질환자 등은 <u>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u>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등은 <u>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u> 시설장은 당해 시설 입소자의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함.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및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단, 긴급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 입소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은 「국민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이용자 내용 분리 긴급입소 시 제출기한 명시 안내사항 명시 	184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은 개인별 이용시간표 또는 출·퇴근 기록표를 비치하고 이용현황을 월별로 정리·보존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이 끝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도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p>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 질환자등에 우선하여 입소·이용시켜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명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을 원하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게 미리 입소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재할 및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이 끝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도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p>5)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추가></p>	<p>5)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가) <u>인권보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입소·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인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만, 고충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입소·이용자와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함</u> ● <u>입소·이용서비스 선택 및 동의를 입소·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u>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규정에 맞도록 시설 내 진정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진정서가 있을 시 봉인하여 즉시 인권위원회에 발송하여야 함 ● <u>연 1회 입소·이용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u> ● <u>입소·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내용과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외부 유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나 치료적인 목적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제공가능함</u> ● <u>가족 및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 입소·이용 금지</u> ● <u>직업재활을 빙자한 강제노역 금지</u> ● <u>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입소·이용자 관리 금지</u> ● <u>시설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금지</u> ● <u>통신, 면회 등 행동제한 기타 인권유린 행위 금지</u> ● <u>입소·이용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 실시</u> <p>나) <u>고충처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입소·이용자들의 의견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분장표에 명시하여야 함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u> ● <u>고충 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 과정을 마련하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자 인권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명시 	<p>184-185</p>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그 처리결과를 안내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충처리 접수, 회의 등 과정 및 결과는 해당 입소자에게 공지한 후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15일 이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함(홈페이지, 건의함, 고충처리함 등) 		
<p>6)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p>6)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은 입소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구 삭제 	186
<p>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p> <p>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p> <p>나) 입소·이용시설 지원 권고기준</p> <p>(1)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아래 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아래 표 참조)” 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되, 주 52시간제 시행* 및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 생활시설 교대인력 및 휴일근로수당 확보 등 시도별로 추가 내지 확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5-49인 시설('21.7월~) ** 5-29인 시설('22.1월~) 	<p>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p> <p>1) 인건비 및 운영비</p> <p>가)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아래 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시·도내 정신재활시설의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종사자 법정 미배치로 인하여 감사 지적 사례 및 행정처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함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아래 표 참조)” 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되, 주 52시간제 시행 및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 교대인력 및 휴일근로수당 확보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포괄 예산 확보 문구 추가 근로기준법 준수사항 명시 	187
<p><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이용)현원은 입소(이용) 정원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종사자 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입소 현원 수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연평균 입소 현원 수는 매년 1월말까지 산출하여야 함 ※ 지역사회전환시설의 단기 및 일시보호 이용자는 매월 말 입소 현원 산정 시 1인으로 적용 </div>	<p><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현원은 입소정원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대상 종사자 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입소 현원 수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연평균 입소 현원 수는 매년 1월말까지 산출하여야 함 ※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안정화 쉽터는 매월말 입소 현원 산정 시 1인으로 적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규칙 [별표7] 개정에 따른 삭제 기능에 따른 명칭 변경 	188
<p>< 시설 유형별 지원 기준 ></p> <p><본문참고></p>	<p>< 시설 유형별 지원 기준 ></p> <p><본문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189-192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인력 지원 기준 강화											
<p>(4) 프로그램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 및 이용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생활훈련, 직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 진행비 및 재료비용 등)으로서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p>라) 프로그램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소 및 이용인원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생활훈련, 직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 진행비 및 재료 비용 등)으로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구 수정 	194										
<p>이용인원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내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재활시설의 특성상 직업재활,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table border="1"> <thead> <tr> <th>이 용 유 형</th> <th>관 련 기 록</th> </tr> </thead> <tbody> <tr> <td>미등록회원의 내소이용</td> <td>출근기록</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의해 내소이용, 방문상담 등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SNS, 영상통화, 온라인 교육, 전화상담 등 원격통신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p><중략></p> <p>4) 미등록회원의 내소 이용: 정신질환자들이 시설 이용을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등록전 안내, 초기상담을 거쳐 적응기간에 참여중인 경우와 다른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보건소 정신보건프로그램 등) 및 지역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되어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 미등록 이용인원으로 인정함</p>	이 용 유 형	관 련 기 록	미등록회원의 내소이용	출근기록	<p>이용인원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내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재활시설의 특성상 직업재활,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table border="1"> <thead> <tr> <th>이 용 유 형</th> <th>관 련 기 록</th> </tr> </thead> <tbody> <tr> <td>미등록회원의 내소</td> <td>출근기록, 방문기록, 지원기록</td> </tr> <tr> <td>지역사회 연계 이용</td> <td>프로그램일지, 지원기록 등</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 재난 상황과 내소이용, 방문상담 등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SNS, 영상통화, 온라인 교육, 전화상담 등 원격통신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p><중략></p> <p>4) 미등록회원의 이용: 정신질환자들이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등록전 안내, 초기상담을 거쳐 적응기간에 참여중인 경우와 다른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보건소 정신보건프로그램 등) 및 지역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되어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미등록 이용인원으로 인정함</p>	이 용 유 형	관 련 기 록	미등록회원의 내소	출근기록, 방문기록, 지원기록	지역사회 연계 이용	프로그램일지, 지원기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194-195
이 용 유 형	관 련 기 록												
미등록회원의 내소이용	출근기록												
이 용 유 형	관 련 기 록												
미등록회원의 내소	출근기록, 방문기록, 지원기록												
지역사회 연계 이용	프로그램일지, 지원기록 등												
<p>2) 인력관리</p> <p>나) 호봉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p>3.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 10할(100%) 인정</p>	<p>2) 인력관리</p> <p>나) 호봉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p>3.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u>자살예방센터</u>(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 10할(100%)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예방센터 추가 반영 	198										
<p><2025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p> <p>▶ 2025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직위 분류표</p> <p><표생략></p>	<p><2026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p> <p>▶ 2026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직위 분류표</p> <p><표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201										

현행(2025년도)	개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p>	<p>※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3년(4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p>														
<p>●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p> <p><추가></p>	<p>●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법정공휴일은 별도 휴일수당 지급 가능</p>	<p>● 근로기준법 준수사항 명시</p>	202												
<p>사. 행정사항</p> <p>1) 회계 및 물품관리</p> <p>●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프로그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https://ceu.ssis.go.kr))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시 회계프로그램(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을 보완·강화하여야 함</p>	<p>바. 행정사항</p> <p>1) 회계 및 물품관리</p> <p>●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프로그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https://ceu.ssis.go.kr))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시 회계프로그램(사회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을 보완·강화하여야 함</p>	<p>● 시스템명칭 수정</p>	204												
<p><신설></p>	<p>사.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 사업안내</p> <p><본문참고></p>	<p>● 유형별 기능 역할 명확화</p>	209-237												
<p>4.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통추진사업</p> <p>1. 재난 정신건강</p> <p>가. 재난 규모별 심리지원 체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재난 규모</th> <th style="width: 40%;">재난 심리지원 관련 결정주체</th> <th style="width: 50%;">재난심리지원 총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규모</td> <td>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td> <td>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td> </tr> </tbody> </table>	재난 규모	재난 심리지원 관련 결정주체	재난심리지원 총괄기관	소규모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p>4.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통추진사업</p> <p>1.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p> <p>가. 재난 규모별 심리지원 서비스 의사결정 및 인력구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재난 규모</th> <th style="width: 40%;">재난 심리지원 관련 결정주체</th> <th style="width: 50%;">재난심리지원 총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규모</td> <td>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td> <td>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td> </tr> </tbody> </table>	재난 규모	재난 심리지원 관련 결정주체	재난심리지원 총괄기관	소규모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p>●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내용 반영</p>	241
재난 규모	재난 심리지원 관련 결정주체	재난심리지원 총괄기관													
소규모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재난 규모	재난 심리지원 관련 결정주체	재난심리지원 총괄기관													
소규모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p>나. 기관별 업무 및 역할</p> <p>1) 국가트라우마센터</p> <p>●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총괄</p> <p><중략></p> <p>●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소진예방 및 관리</p> <p>●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관리 및 직무교육 총괄</p>	<p>나. 재난 정신건강 기관별 역할</p> <p>1) 국가트라우마센터</p> <p>● 대규모 재난 발생 시 <u>정신건강서비스 영역에서의 심리지원 서비스 총괄</u></p> <p><중략></p> <p>● 재난 정신건강 관련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p>	<p>●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내용 반영</p>	242-243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정신건강 관련 협력 체계 구축 <p><추가> <생략></p> <p>2) 권역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심리지원 시점 등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재난 심리지원 실시 ●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참여 ● 재난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의학적·심리학적 회복·지원 ● 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활동 자문 및 지원 ● 권역별 재난 정신건강 지원 인력 양성·관리 ● 권역내 재난심리지원 담당인력 관리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통보 ● 재난심리지원 담당인력 직무교육프로그램 <p>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p><생략></p> <p>2) 권역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심리지원 시점 등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재난 심리지원 <u>총괄기관으로서 역할 수행</u> ● 권역별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양성·관리 ● 권역 내 재난심리지원 담당인력 관리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에 <u>명단 통보</u> ● <u>권역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직무교육 수행</u> ●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재난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의학적·심리학적 회복 지원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 <u>재난 경험자 회복프로그램 운영</u>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활동 자문 및 지원 <p>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p>다. 재난 시 대응</p> <p>1) 재난정보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규모, 발생상황, 재난경험자 현황 파악 ● 자원정책 및 자원정보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의료기관 리스트 <p>2) 재난심리지원 계획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물리적 공간 마련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교육장소 또는 비대면 전달체계 ● 재난심리지원 자원준비 - 비상연락망점검및연락 - 대상자별담당인력배치 - 재난경험자의현위치,피해상황등을고려 - 재난정신건강서비스매뉴얼및서식(상담서식지·개인정보제공동의서·정신건강척도지·타기관 의뢰서 등) - 재난심리지원물품준비(심리지원안내지, 	<p>다. 재난 대응</p> <p>1) 재난정보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규모 및 발생 상황, 재난 경험자 현황 파악 ● 자원정책 및 자원정보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u>정신의료기관</u> 리스트 <p>2) 재난심리지원 계획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물리적 공간 마련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교육장소 또는 <u>화상회의 가능 공간</u> ● 재난심리지원 자원준비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 - 대상자별 담당인력배치 - <u>재난관련 심리지원 매뉴얼 및 서식(상담서식지·개인정보제공동의서·정신건강척도지·타기관 의뢰서 등)</u> - 재난심리지원물품준비(심리지원안내지, 심리안정용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내용 반영 	<p>243-244</p>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심리안정용품등) <중략> ●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계획 ● 주간·야간 핫라인 운영 계획</p>	<p><중략> ●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운영 ● 주간·야간 핫라인 운영</p>																						
<p>3) 현장 가동 ● 필요시 독립된 장소에 현장상담소 설치 ●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핫라인 설치 - 필요시 재난 관련 정보제공 및 지역주민 홍보를 통해 재난상황이 일차종결된 후에도 일정기간 핫라인운영 ● 재난대응수준 결정 및 지휘·보고체계 확립</p>	<p>3) 현장 가동 ● 필요시 독립된 공간에 현장상담소 설치 ●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핫라인 운영 - 필요시 재난 관련 정보제공 및 지역주민 홍보를 통해 재난상황이 일차종결된 후에도 일정기간 핫라인 유지 ● 재난대응수준 결정 및 지휘·보고체계 유지</p>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내용 반영	245																				
<p>4) 재난심리지원 실시 ● CGI-S 평가 기준 및 기준에 따른 개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CGI-S 2~3점</td></tr> <tr><td>조금 괜찮다</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이 다소 의심되거나 약간 나타남 경미한 슬픔, 분노 등이 상황에 적합한 반응이라고 판단되며 일상 생활에 복귀하여 심리적 안정감 유지 시 종료 요청 시 대국민 심층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원 연계 	CGI-S 2~3점	조금 괜찮다	<p>4) 재난심리지원 실시 ● CGI-S 평가 기준 및 기준에 따른 개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CGI-S 2~3점</td></tr> <tr><td>조금 괜찮다</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이 다소 의심되거나 약간 나타남 경미한 슬픔, 분노 등이 상황에 적합한 반응이라고 판단되며 일상 생활에 복귀하여 심리적 안정감 유지 시 종료 요청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원 연계 	CGI-S 2~3점	조금 괜찮다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내용 반영	246																
CGI-S 2~3점																							
조금 괜찮다																							
CGI-S 2~3점																							
조금 괜찮다																							
<p>● 재난 심리지원 제공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 대상자 연계 사항 파악</td> <td>2) 심리지원 안내 및 발송</td> <td>3) 심리지원 제공</td> <td>4) 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td> <td>5)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부상자·가족, 목격자 등 연락처 확인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상담정보, 정신건강 평가(링크) 등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렛, 심리안정용품 등 지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제공 필요 시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제공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연계 외래기관,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제공 (트라우마센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모니터링 (예:1,3,6개월) 필요시 지속 상담 또는 연계 </td> </tr> </table>	1) 대상자 연계 사항 파악	2) 심리지원 안내 및 발송	3) 심리지원 제공	4) 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	5)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부상자·가족, 목격자 등 연락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상담정보, 정신건강 평가(링크) 등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렛, 심리안정용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제공 필요 시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연계 외래기관,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제공 (트라우마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모니터링 (예:1,3,6개월) 필요시 지속 상담 또는 연계 	<p>● 재난 심리지원 제공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 대상자 연계 사항 파악</td> <td>2) 심리지원 안내 및 제공/개입</td> <td>3) 심리지원 제공</td> <td>4) 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td> <td>5)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부상자·가족, 목격자 등 연락처 확인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상담정보, 정신건강 평가(링크) 등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렛), 심리안정용품 등 지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제공 정신건강 평가의 목적 및 목적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렛), 심리안정용품 등 지원 재난 경험자의 증상(및) 일상생활 기능의 중립평가 (CGI-S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심층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연계 외래기관,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재난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모니터링 (예:6,12개월) 필요시 지속 상담 또는 연계 </td> </tr> </table>	1) 대상자 연계 사항 파악	2) 심리지원 안내 및 제공/개입	3) 심리지원 제공	4) 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	5)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부상자·가족, 목격자 등 연락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상담정보, 정신건강 평가(링크) 등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렛), 심리안정용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제공 정신건강 평가의 목적 및 목적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렛), 심리안정용품 등 지원 재난 경험자의 증상(및) 일상생활 기능의 중립평가 (CGI-S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심층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연계 외래기관,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재난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모니터링 (예:6,12개월) 필요시 지속 상담 또는 연계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내용 반영	247
1) 대상자 연계 사항 파악	2) 심리지원 안내 및 발송	3) 심리지원 제공	4) 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	5)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부상자·가족, 목격자 등 연락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상담정보, 정신건강 평가(링크) 등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렛, 심리안정용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제공 필요 시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연계 외래기관,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제공 (트라우마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모니터링 (예:1,3,6개월) 필요시 지속 상담 또는 연계 																			
1) 대상자 연계 사항 파악	2) 심리지원 안내 및 제공/개입	3) 심리지원 제공	4) 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	5)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부상자·가족, 목격자 등 연락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상담정보, 정신건강 평가(링크) 등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렛), 심리안정용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제공 정신건강 평가의 목적 및 목적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렛), 심리안정용품 등 지원 재난 경험자의 증상(및) 일상생활 기능의 중립평가 (CGI-S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심층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연계 외래기관,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재난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모니터링 (예:6,12개월) 필요시 지속 상담 또는 연계 																			
<p>라. 재난 심리지원 이후 관리 2) 지역사회 지속관리 서비스 제공</p>	<p>라. 재난 심리지원 이후 관리 2) 지역사회 지속관리 서비스</p>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내용 반영	248																				
<p>마. 심리지원 물품 요청 나) 국가트라우마센터 책자 및 자료 이용 시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생산된 자료 이용 시 '자유이용허락동의서' 제출</p>	<p>마. 심리지원 물품 요청 나) 국가트라우마센터 책자 및 자료 이용 시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생산된 자료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발간물 이용</p>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운영 내용 반영	249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된 자료(동영상) 및 책자의 척도는 국가 트라우마센터 자료에만 사용하도록 저작권자에게 승인받았으므로, 외부기관 사용 시 재허가 필요 (저작권 문의:02-2204-1442) 	<p>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생산된 자료(동영상 포함) 및 척도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자료에만 사용하도록 저작권자에게 승인받았으므로, 외부기관 사용 시 재허가 필요 (저작권 문의:02-2204-1442)</u> 		
<p>2.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p> <p>가. 목적 및 근거</p>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 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정신응급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복지부 선정 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총 11개소('24.9.6. 기준)(서울) 서울의료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p>2.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p> <p>가. 목적 및 근거</p>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 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정신응급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복지부 선정 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총 13개소('25.12월 기준) (서울)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현행화 	250
<p>나. 사업개요</p> <p>2) 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p>나. 사업개요</p> <p>2) 신청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u>예외적으로 예산 소진시에도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 한해 치료비 지원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 가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지침 반영 	251
<p>3) 지원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 	<p>3) 지원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u>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u>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지침 반영 	251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p>																																																																								
<p>5) 지원종류 및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선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발병초기 정신질환</td> <td rowspan="3">기준 중위소득 120%이하</td> </tr> <tr> <td>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td> </tr> <tr> <td>정신응급</td> </tr> </tbody> </table> <p>※ 발병초기 지원 가능 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p>	종 류	선정기준	발병초기 정신질환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p>5) 지원종류 및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선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발병초기 정신질환</td> <td rowspan="3">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이하</td> </tr> <tr> <td>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td> </tr> <tr> <td>정신응급</td> </tr> </tbody> </table> <p>※ 발병초기 지원 가능 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분위별 건보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산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가구 원수</th> <th rowspan="2">소득기준</th> <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th> </tr> <tr> <th>직장 가입자</th> <th>지역 가입자</th> <th>혼합</th> </tr> </thead> <tbody> <tr><td>1인</td><td>3,078,000</td><td>110,969</td><td>32,899</td><td>-</td></tr> <tr><td>2인</td><td>5,040,000</td><td>183,365</td><td>123,644</td><td>185,675</td></tr> <tr><td>3인</td><td>6,431,000</td><td>232,890</td><td>168,649</td><td>236,378</td></tr> <tr><td>4인</td><td>7,794,000</td><td>284,951</td><td>233,292</td><td>290,169</td></tr> <tr><td>5인</td><td>9,069,000</td><td>327,091</td><td>284,606</td><td>337,647</td></tr> <tr><td>6인</td><td>10,268,000</td><td>374,300</td><td>338,641</td><td>390,974</td></tr> <tr><td>7인</td><td>11,419,000</td><td>432,308</td><td>404,529</td><td>457,613</td></tr> <tr><td>8인</td><td>12,570,000</td><td>457,613</td><td>435,046</td><td>490,306</td></tr> <tr><td>9인</td><td>13,721,000</td><td>535,512</td><td>525,833</td><td>584,741</td></tr> <tr><td>10인</td><td>14,872,000</td><td>535,512</td><td>525,833</td><td>584,741</td></tr> </tbody> </table>	종 류	선정기준	발병초기 정신질환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이하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위별 건보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6년 건보료 기준 금액(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금액 산정) 산출 	252
종 류	선정기준																																																																								
발병초기 정신질환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종 류	선정기준																																																																								
발병초기 정신질환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이하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가구 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p>3) 건강보험가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병초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 가입 및 기준 중위소득 120%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p>3) 건강보험가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병초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 가입 및 기준 금액 이하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지침 반영 	254																																																																						
<p>4) 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확인 증명서류: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 	<p>4) 외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확인 증명서류: 여권, 주민등록등본,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지침 반영 	254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증명서 중 1개의 서류 제출		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1개의 서류 제출			
라. 신청 및 지급 3) 신청서류		라. 신청 및 지급 3) 신청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지침 반영	256- 257
구분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제출 <생략>	공통 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대상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제출 <생략>		
		외래 치료 지원	○ 외래치료지원(연장) 결정서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나)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 지정현황(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현황자료 가능)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나)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 지정현황(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현황자료 가능)		• 현황 현행화	259- 260
지역	구분	병원명 (2024.11월기준)	지정 병상 수(개)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25	02-300-8114	
	광진구	* 국립정신건강센터	2	02-2204-0114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2	051-507-3000	
	사상구	부산시립정신병원	8	051-310-7710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2	053-560-7575	
	동구	* 대동병원	25	053-663-1008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2	032-580-6000	
	서구	* 인천참사랑병원	50	032-571-9111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	5	062-949-5200	
대전	중구	* 참다남병원	4	042-222-0122	
	서구	마인드병원	2	042-528-6550	
울산	남구	마더스병원	10	052-270-7000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5	031-828-5000	
	용인시	용인정신병원	10	031-288-0114	
	용인시	* 경기도립정신병원	10	031-330-6200	
	의왕시	계요병원	10	031-455-3333	
	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	031-269-5665	
	이천시	이천소양병원	5	031-637-7400	
지역	구분	병원명 (2026.1월기준)	지정 병상 수(개)	대표번호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10	02-300-8114	
	광진구	* 국립정신건강센터	2	02-2204-0114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2	051-507-3000	
	사상구	부산시립정신병원	8	051-310-7710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2	053-560-7575	
	동구	* 대동병원	25	053-663-1008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2	032-580-6000	
	서구	* 인천참사랑병원	50	032-571-9111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	5	062-949-5200	
	서구	다사랑병원	5	062-380-3800	
	북구	천주익성오한병원	2	062-510-3114	
대전	중구	* 참다남병원	4	042-222-0122	
	서구	마인드병원	2	042-528-6550	
울산	남구	마더스병원	10	052-270-7000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5	031-828-5000	
	용인시	용인정신병원	10	031-288-0114	
	용인시	* 경기도립정신병원	10	031-330-6200	
	의왕시	계요병원	10	031-455-3333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지역	구분	병원명 (2024.11월기준)	지정 병상 수(개)	대표번호	지역	구분	병원명 (2026.1월기준)	지정 병상 수(개)	대표번호				
	부천시	더블유진병원	1	032-321-1433		수원시	이주편한병원	2	031-269-5665				
강원	원주시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	033-741-0114		이천시	이천소망병원	5	031-637-7400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10	033-260-3000	강원	원주시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	033-741-0114				
충북	청주시	청주의료원	2	043-279-0114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10	033-260-3000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2	041-850-5700	충북	청주시	청주의료원	2	043-279-0114				
전북	익산시	* 원광대학교병원	2	1577-3773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2	041-850-5700				
	김제시	신세계병원	32	063-545-8700	전북	익산시	* 원광대학교병원	2	1577-3773				
	완주군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4	063-240-2100		김제시	신세계병원	32	063-545-8700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10	061-330-4114		완주군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4	063-240-2100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3	054-247-0551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10	061-330-4114				
경남	창녕군	* 국립부곡병원	90	055-536-6440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3	054-247-0551				
	양산시	양산병원	2	055-379-0202	경남	창녕군	* 국립부곡병원	90	055-536-6440				
제주	제주시	* 연강침병원	2	064-759-9641	경남	양산시	양산병원	2	055-379-0202				
합계				31개 의료기관	341	-	합계				32개 의료기관	332	-
* 권역 치료보호기관				* 권역 치료보호기관									
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사업) 3) 주요내용 < 대상자 기준 > ❶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중략> <추가>				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3) 주요내용 < 대상자 기준 > ❶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주민등록지 시군구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발급 원칙 (단, 증빙 제출 시 근무지 또는 학교 소재지에서 발급 가능)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중략> ❷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사업명칭 변경 및 재난 피해자 내용 추가	281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및 대상자 상황 등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및 대상자 상황 등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u>사용기간</u> 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단어 수정	281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 일부 구간	282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p> <p>*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30%</p> <p>- 단, 법정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을 0%</p> <p><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수정></p>	<p>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p> <p>*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자부담 3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50%</p> <p>- 단, 법정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을 0%</p> <p><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본문참고></p>	<p>본인부담을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피해자 추가 	
<p>4) 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p>4) 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서류 지참 강조 	282
<p>5.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인식개선</p> <p>1. 권익보호</p> <p>가. 인권교육</p> <p>1) 목적</p> <p>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p>	<p>5.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인식개선</p> <p>1. 권익보호</p> <p>가. 인권교육</p> <p>1) 목적</p> <p><u>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지침 반영 	287
<p>3) 교육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p>3) 교육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구 수정 	287
<p>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의 장은 피교육생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p>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피교육생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지침 반영 	287
<p>5)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교육대상기관: 정신의료기관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의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며, 1병상 이상 낮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도 포함됨. <p><중략></p>	<p>5)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교육대상기관: 정신의료기관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며, 1병상 이상 낮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도 포함됨.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허가신고된 전체 시설임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지침 반영 	288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구 분	의무교육대상	권장교육 대상	구 분	의무교육대상	권장교육 대상		
정신의료 기관 (의무교육 대상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행정, 원무, 관리 전담직원 등 직접 고용된 직원	학생·실습생 ·용역직원	정신의료 기관 (의무교육 대상자)	의료인, 사회복지사, 심리사, 치료사, 치료보조원(보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행정, 원무, 관리, 전담직원 등 직접 고용된 직원	학생·실습생 ·용역직원		
<p>● 교육시간</p> <p>-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인권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4시간을 1단위로 하여 4시간 미만 교육시간은 계산 시 '버림'으로 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함 <추가></p>			<p>● 교육시간</p> <p>-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인권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4시간을 1단위로 하여 4시간 미만 교육시간은 계산 시 '버림'으로 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시간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총 4시간 과정)」 이수 → 인정 가능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각각 이수하여 이수증이 여러 개인 경우 → 불인정(시간 합산 불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3시간 과정)」 만 이수 → 불인정(4시간 미만) </div>			<p>●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시 추가</p>	288
<p>부록</p> <p>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p> <p>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547개소)</p> <p>바.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366개소)</p> <p>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현황(11개소)</p>			<p>부록</p> <p>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p> <p>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577개소)</p> <p>바.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369개소)</p> <p>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현황(13개소)</p>			<p>● 정신건강증진 기관 현황화</p>	299-334
<p>서식</p> <p>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조사표</p> <p>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p> <p>업무실적표 및 작성요령</p>			<p>서식</p> <p>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조사표<수정></p> <p>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수정></p> <p>업무실적표<수정> 및 작성요령<삭제></p> <p>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정기 현황조사표 <신규></p> <p>ccctv 설치안내<신규></p> <p><본문 참고></p>			<p>● 서식 현행화</p> <p>● 별도 안내서 발간에 따른 삭제</p>	337-401
<p>서식</p> <p>격리 및 강박 지침</p> <p>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p> <p>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p> <p>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될 수 있다.</p> <p>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p>			<p>서식</p> <p>격리 및 강박 지침</p> <p>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p> <p>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3시간 이하이다.</p> <p>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1시간) 처방될 수 있다.</p> <p>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p>			<p>● 격리강박 개정에 따라 반영</p>	396-397

현 행(2025년도)		개 정(2026년도)		개정사유	페이지																																						
<p>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생략> <추가></p>		<p>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6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p> <p><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 목욕, 침구교환 등 환자와 격리실 위생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격리·강박 해제로 보지 않는다. </p>																																									
<p><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성인(19세이상)</th> <th colspan="2">미성년자(19세미만)</th> </tr> <tr> <th>격리</th> <th>강박</th> <th>격리</th> <th>강박</th> </tr> </thead> <tbody> <tr> <td>1회 최대시간</td> <td>12시간</td> <td>4시간</td> <td>6시간</td> <td>2시간</td> </tr> <tr> <td>연속 최대시간</td> <td>24시간</td> <td>8시간</td> <td>12시간</td> <td>4시간</td> </tr> </tbody> </table>		구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p><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성인(19세이상)</th> <th colspan="2">미성년자(19세미만)</th> </tr> <tr> <th>격리</th> <th>강박</th> <th>격리</th> <th>강박</th> </tr> </thead> <tbody> <tr> <td>1회 최대시간</td> <td>12시간</td> <td>3시간</td> <td>6시간</td> <td>1시간</td> </tr> <tr> <td>연속 최대시간</td> <td>24시간</td> <td>6시간</td> <td>12시간</td> <td>2시간</td> </tr> </tbody> </table>		구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3시간	6시간	1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6시간	12시간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강박 개정에 따라 반영 	397
구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구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3시간	6시간	1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6시간	12시간	2시간																																							
<p>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생략><추가></p>		<p>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생략> <u>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격리 강박 환자의 관찰 (모니터링)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보호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한다.</u>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 다음 사항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장소) 보호실 내부를 촬영, 환자 및 의료진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보호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 ■ (인권 보호 노력) 환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 - CCTV로 인해 환자의 증상 악화나 자해위험이 없도록 매립형을 권장 ■ (기기 사양 및 화질)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 보유 ■ (안내판 설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동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 V-1~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강박 개정에 따라 반영 	398																																						

PART

01

정신건강사업 개요

- 1 국가정신건강정책 방향성
- 2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관소개
-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 4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 5 정신건강사업 연혁

1 국가정신건강정책 방향성

가,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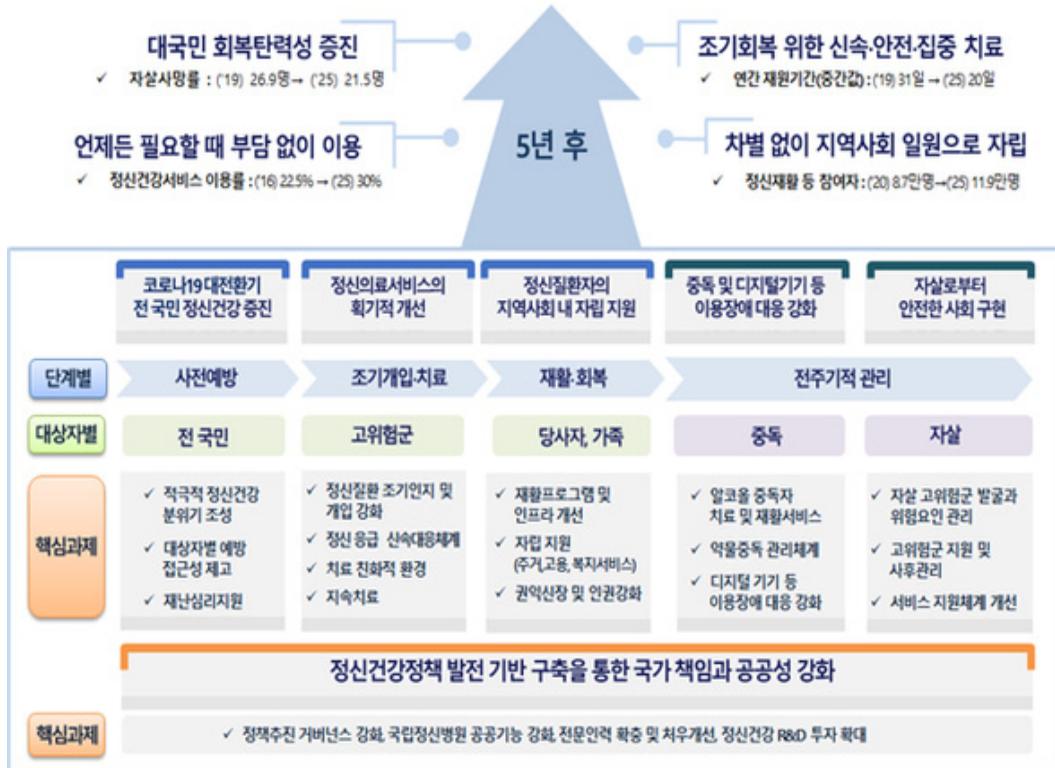
정책 목표	I. 재난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 II. 전 국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III.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 IV. 정신질환자가 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V. 약물중독, 이용장애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VI. 자살 충동, 자살 수단,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

정책목표	전 략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1. 적극적 정신건강증진 분위기 조성 2. 대상자별 예방 접근성 제고 3.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정신의료서비스 / 인프라 선진화	1. 정신질환 조기인지 및 개입 강화 2. 지역 기반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3. 치료 친화적 환경조성 4. 집중 치료 및 지속 지원 등 치료 효과성 제고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1. 지역사회 기반 재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2.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3.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중독 및 디지털기기 이용장애 대응 강화	1.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 강화 2. 마약 등 약물중독 관리체계 구축 3.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1.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험요인 관리 2.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 3.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1. 정책 추진 거버넌스 강화 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3. 공공자원 역량 강화 4. 통계 생산체계 정비 및 고도화 5. 정신건강분야 전략적 R&D 투자 강화

나 추진방향

- “정신건강 없이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도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 국민의 전주기적 건강 관리를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
-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발표)
 -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통해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예방부터 회복에 이르는 전주기 4대 전략을 발표

비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 예방부터 회복까지 -

핵심
목표

- ❖ '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 ❖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 ❑ 국민 100만명에 전문심리상담 지원
- ❑ 청년·학생 검진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
- ❑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 ❑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 ❑ 정신응급대응 강화
- ❑ 입원제도개선, 수가확대 등 의료질 향상
- ❑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 ❑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
- ❑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 지원
- ❑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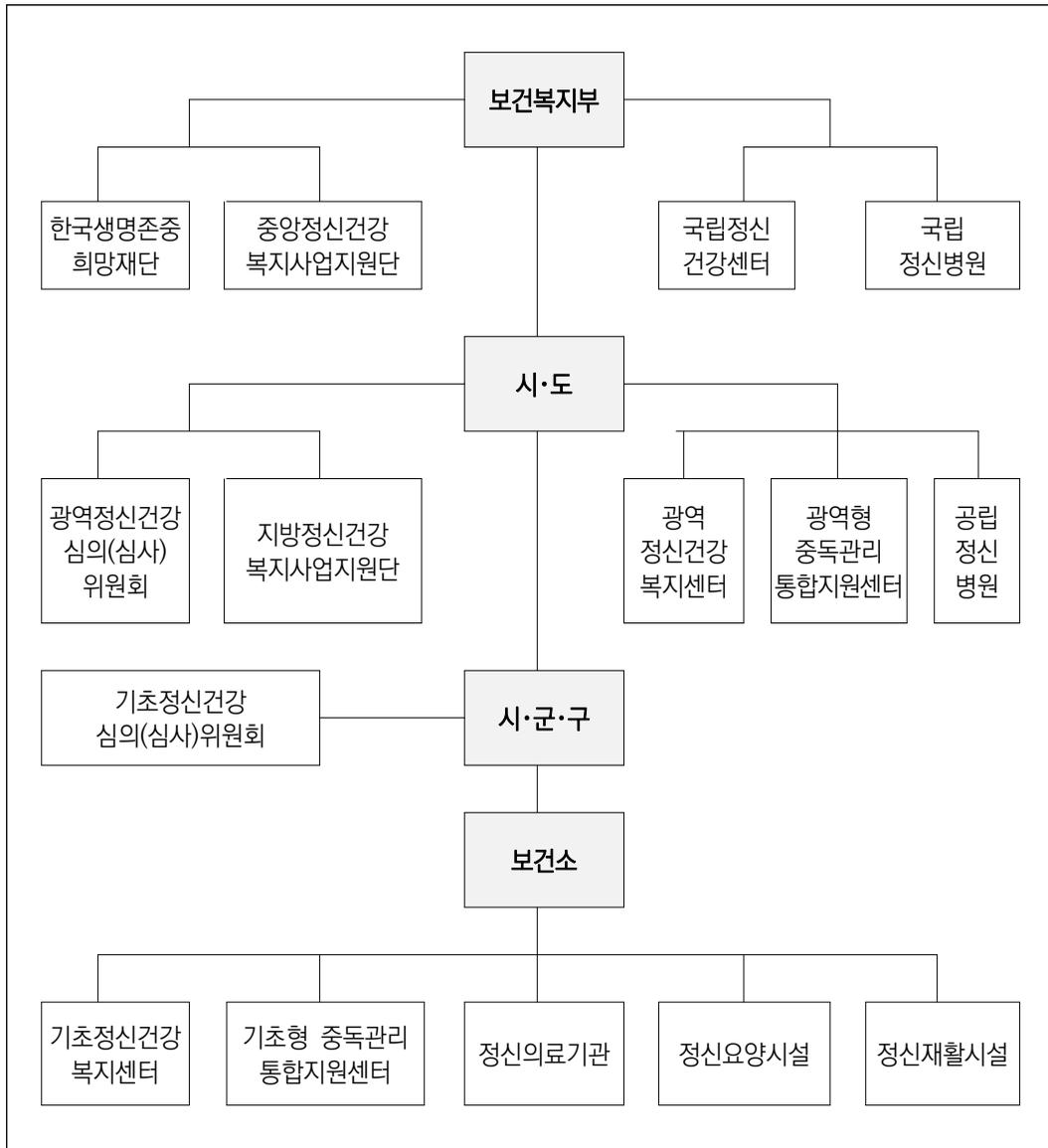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 ❑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
- ❑ 자살예방교육(의무) 1,600만명 실시
-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운영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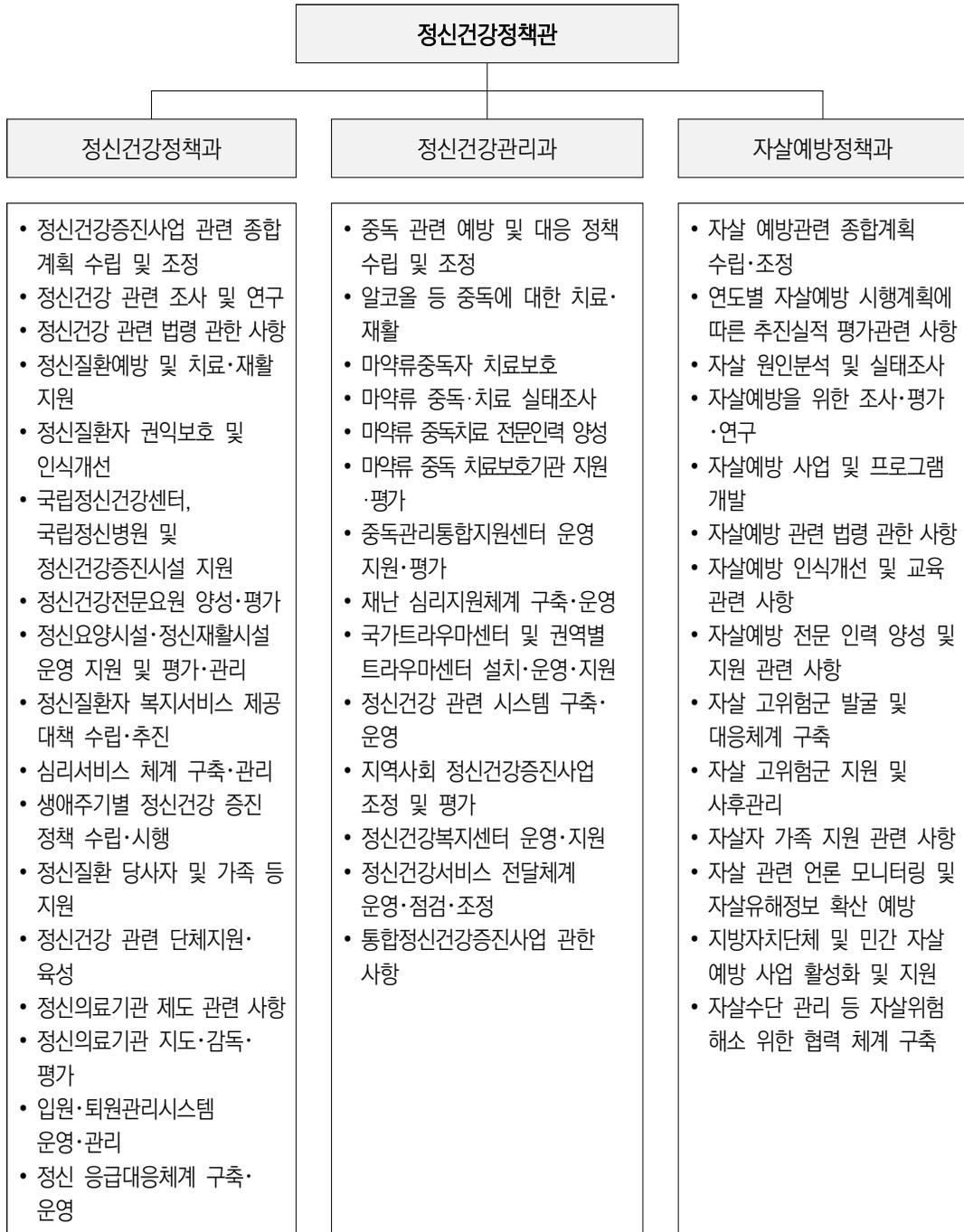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관소개

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나 기관소개

1) 보건복지부



2) 국립정신건강센터

가) 운영목적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필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정신 건강 정책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연구 및 지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실시. 또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달체계 강화하기 위함

나) 법적근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제19조(직무)

다) 직무범위

-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
- 정신질환 진료 관련 조사 연구, 지표 및 표준 개발·보급
- 국가 정신건강증진기관 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관련 총괄
-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업무 지원
-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훈련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관리 및 수련기관 관리
- 정신건강 연구·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
-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 국제교류 및 협력
-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수행
- 국가트라우마 설치·운영
-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가) 사업목적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수도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충청권)는 해당 권역 내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지원 제공

나)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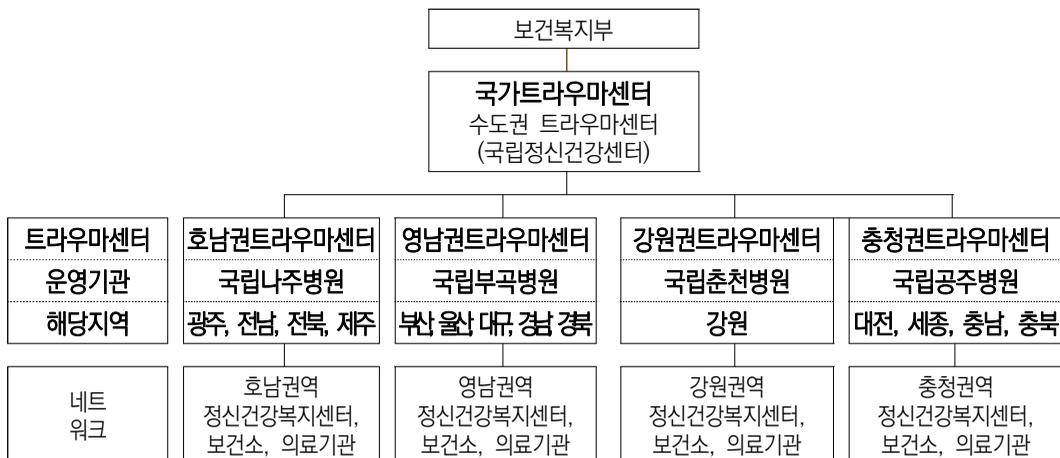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권역별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다) 추진체계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4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로 구성

- 2018년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 2019년 5월 국립부곡병원에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
- 2021년 6월 호남권(나주병원), 강원권(춘천병원), 충청권(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 추가 개소

〈 트라우마센터 심리 대응체계 〉



라) 직무범위

-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직·간접 지원
- 권역별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 찾아가는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행
- 재난 정신건강 전문인력교육 및 강사양성
- 재난 정신건강전문인력 소진예방 및 관리
- 트라우마 경험자 연구 및 서비스 개선 연구
-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마)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현황

센터	전화번호
국가트라우마센터 (수도권 트라우마센터)	02-2204-0001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061-330-7724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055-520-2777
강원권 트라우마센터	033-260-3271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041-850-5883

4)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가) 운영목적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각 시·도에는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나)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다)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 및 단원구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름

라) 주요업무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국가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과약 및 통계 수집·분석 또는 그 지원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지원
 -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지역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 지역계획의 관할 시·군·구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 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해당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분석 또는 그 지원
-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마) 인력관리

- 사무처·국 인력관리
 - 인력기준과 자격요건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요건에 준하되,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 인력채용 및 관리기준
 - 단장은 종사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 단장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정신건강 및 해당 전문분야의 보수교육 이수를 위하여 직원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음
 - 단장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임신, 육아, 출산,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수행인력의 결원이 발생 시,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는 수탁기관의 복무규정에 준함
- 인건비와 호봉산정 기준은 해당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 보조 기준>을 준용함

바) 사무처·국 위탁 사항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처·국의 경우 보건복지부예규 제28호에 따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위탁할 수 있음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처·국의 경우 자치법규를 따르거나, 명시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예규를 준용할 수 있음
- 사무처·국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 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 시 사무처·국의 수행 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 하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사) 업무실적 보고

(1)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가)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매해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2.1.13.)

(나) 정례회의 운영 및 보고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 및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사항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2)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가)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매해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나) 정례회의 운영 및 보고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은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 및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사항은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3) 행정사항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반기별(상반기~7.30.까지, 하반기~다음연도 1.30.까지) 운영실적을 시도지사로 보고

아)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1)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사업예산의 집행은 매년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된 예산집행계획에 맞춰 집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배정 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예산 비목간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예산에서 집행 가능('13년부터는 지자체별 자체 예산을 편성·확보하여 운영)

5)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가) 운영목적

자살예방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기여함

나) 법적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설립허가)

다) 직무범위

- (1)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 운영
 - 자살예방 홍보 및 대국민 캠페인 기획·운영
 - 자살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지원
 - 언론·미디어 자살유발·유해정보 예방 및 대응
- (2) 자살예방 정책 근거자료 구축 및 연구·개발
 - 자살통계 데이터 구축·분석 및 품질관리
 - 자살실태조사 등 자살예방 관련 연구 개발 수행
 - 심리부검 면담 및 분석
- (3) 지역 자살예방 추진체계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이행·평가 지원 및 컨설팅
 -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자 교육
 -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 자살예방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 (4) 자살 사후대응 및 심리·위기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자살 시도자 및 유족 지원
 -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 자살예방 상담전화(109)·SNS상담(마들랜)운영
- (5)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기부금 모집·관리
 - 국제협력 및 해외 정보 교류 추진

6) 주요 민간단체

기관명	주소	연락처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90, 2층	062-267-5510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240번길 6	010-6535-5044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106호	02-859-3590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406호	02-719-0581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빌 216호	02-313-9181~2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88번길 9	042-252-0360
한국자살예방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 재능빌딩 11층	02-413-0892~3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 5108호	044-868-9324-5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59, 3층	02-712-0386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5가길 28, 108호	02-425-1271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 410호	02-702-5638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503호	02-3672-0616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522호	02-537-6171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 1107호	02-576-3302
한국정신간호학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번지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041-580-2714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종합연구동 1303호	02-711-9665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15, b1층 02호	010-2954-6991
한국임상심리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901호	1877-6308
(사)한국심리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섬로1길 25, 906호	02-567-0102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의료원 7층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607호	-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4가길 16-3, 2층	02-2272-2541
(사)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62 정동빌딩 506호	032-861-9191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로는 정신의료기관 2,300개소, 정신재활시설 366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기관수	주요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	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재활 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 기관유형별 기관 수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tr> <td>광역</td> <td>기초*</td> </tr> <tr> <td>17</td> <td>246</td> </tr> </table> * 인천중구·동구→제물포구, 고양아청→고양정신(통합) 인천영종구, 검단구 2개소 추가 ※ 운영유형별 기관 수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tr> <td>직영</td> <td>위탁</td> </tr> <tr> <td>95</td> <td>168</td> </tr> </table>	광역	기초*	17	246	직영	위탁	95	168
광역	기초*									
17	246									
직영	위탁									
95	16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 훈련 ※ 기관유형별 기관 수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tr> <td>광역형</td> <td>기초형</td> </tr> <tr> <td>6</td> <td>57</td> </tr> </table> * 서울강남, 경기용인, 경북안동 3개소 추가 ※ 운영유형별 기관 수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tr> <td>직영</td> <td>위탁</td> </tr> <tr> <td>5</td> <td>58</td> </tr> </table>	광역형	기초형	6	57	직영	위탁	5	58
광역형	기초형									
6	57									
직영	위탁									
5	58									
정신재활시설	3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정신요양시설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정신의료기관	2,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계	3,051									

※ 2025 전국 정신건강관련기관 현황집 기준

〈 시·도별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정신 재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정신 의료기관
	광역	기초	독립	부설	광역형	기초형			
계	17	246	6	49	6	57	366	59	2,300
서울	1	25	2	-	-	4	102	3	692
부산	1	16	-	2	-	3	18	3	192
대구	1	9	-	1	-	2	16	3	114
인천	1	12	1	3	-	5	14	2	95
광주	1	5	-	1	-	5	11	4	65
대전	1	5	-	1	-	5	31	4	92
울산	1	5	-	1	-	2	3	1	33
세종	1	1	-	-	-	-	3	1	17
경기	1	36	3	29	1	10	70	6	495
강원	1	18	-	5	1	3	4	0	47
충북	1	14	-	-	1	1	10	4	56
충남	1	17	-	3	-	2	23	10	65
전북	1	14	-	-	1	3	24	4	75
전남	1	23	-	-	-	2	3	4	58
경북	1	24	-	1	-	3	19	5	71
경남	1	20	-	1	1	5	8	4	100
제주	1	2	-	1	1	2	7	1	33

※ 2025 전국 정신건강관련기관 현황집 기준

* 기초센터: 인천중구·동구→제물포구, 고양아청→고양정신(통합), 인천영종구, 검단구 2개소 추가

* 중독센터: 서울강남, 경기용인, 경북안동 3개소 추가

4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1)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수련기관 평가),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8호) 제2조 (수련기관 지정신청), 제3조(수련기관 지정)

2) 수련기관 지정기준 및 현황

가) 수련기관 신청 및 지정기준

-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
 -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함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나) 수련 운영가능기관 현황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운영가능기관 현황 〉

(2025.12월 말 기준, 단위: 개)

수련기관 수	수련과정 수				
	계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326	452	42	251	156	3

〈 시·도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운영가능기관 현황〉

(2025.12월 말 기준, 단위: 개)

지역	총계	정신 의료기관	정신 재활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 요양시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센터
계	326	183	78	56	1	7	1
서울	67	30	27	9	0	1	0
부산	26	15	7	4	0	0	0
대구	21	10	7	4	0	0	0
인천	22	12	2	7	0	0	1
광주	9	8	1	0	0	0	0
대전	12	5	4	2	0	1	0
울산	5	2	0	2	0	1	0
세종	0	0	0	0	0	0	0
경기	66	38	12	12	0	4	0
강원	11	6	1	4	0	0	0
충북	17	7	5	5	0	0	0
충남	17	14	1	2	0	0	0
전북	17	8	6	3	0	0	0
전남	8	7	0	0	1	0	0
경북	14	10	4	0	0	0	0
경남	9	7	0	2	0	0	0
제주	5	4	1	0	0	0	0

다) 수련과정

- 1급(3년)·2급(1년)으로 구분되며, 연차별 수련시간은 1,000시간
 - 2급, 1급 1년차 및 2년차: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 1급 3년차: 이론 100시간, 실습 88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심사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2) 처리절차



-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포함한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제출
-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2450)을 통해 전자문서 등록 및 자격증 신청

라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2) 보수교육 대상 및 시간

-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3)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가) 보수교육 면제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보수교육 유예

- 다음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육아, 가사, 유학, 연수 군복무 등의 사유로 휴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다) 면제 또는 유예 신청

-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신청
-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2450)을 통해 증빙서류 목록 확인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4) 보수교육 위탁기관(2023년~2025년)

가) 공통과정 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공주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나) 개별과정 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공주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임상심리학회
-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 교육기관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관리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www.ncmh.go.kr: 2450)에서 확인

5

정신건강사업 연혁

연도	주요업적
1984	보건사회부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무허가시설 양성화 시작) 정신질환 역학조사
1985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정신요양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1986	제12대 국회 회기 만료로 정신보건법안 자동 폐기 정신요양시설 52개소 운영 지원
1987	OECD 차관으로 정신병원 건립 지원 정신요양시설 65개소 운영 지원
1988	정신질환자 치료유병률 제1차 조사 정신요양시설 71개소 운영 지원
1989	정신요양시설 73개소 운영 지원
1990	정신요양시설 74개소 운영 지원
1991	보건사회부 질병관리과로 정신보건 업무 이관
1992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1993	정신질환자 치료유병률 제2차 조사
199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연구용역
1995	정신보건법 제정(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강남구) 정신요양시설 75개소 운영 지원
1996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수원시, 양평군) 정신요양시설 76개소 운영 지원
1997	정신보건법 시행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보건국 정신보건과 신설 정신보건법안 제1차 개정(정신요양병원제도 폐지) 정신재활시설 2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78개소 운영 지원

연도	주요업적
1998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4개소 시작 (서울 성동, 서울 성북, 강원 춘천, 울산 남구) 정신재활시설 10개소 설치·운영 정신요양시설 중 10개소 정신의료기관(9개소) 및 정신재활시설 (1개소)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7개소 운영 지원(1997년말 1개소 폐쇄조치)
1999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14개소로 확대 (서울 성동, 부산 금정, 대구 서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울산 남구, 경기 부천, 강원 춘천, 충북 청원, 충남 아산, 전북 군산, 전남 영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시작 정신재활시설 19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중 4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3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1차 평가 정신질환 예방·홍보사업 실시
2000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16개소로 확대 정신건강복지법 제2차 개정(행정규제 정비) 정신재활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중 8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55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2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4개소 시작
2001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로 확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정신재활시설 64개소 운영 지원 정신재활시설 제1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9개소로 확대
2002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6개소 시작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14개소로 확대 정신재활시설 86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3차 평가
200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69개소(모델형 16, 기본형 53)로 확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6개소 지원 정신재활시설 90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및 본사업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2교대제 도입 정신보건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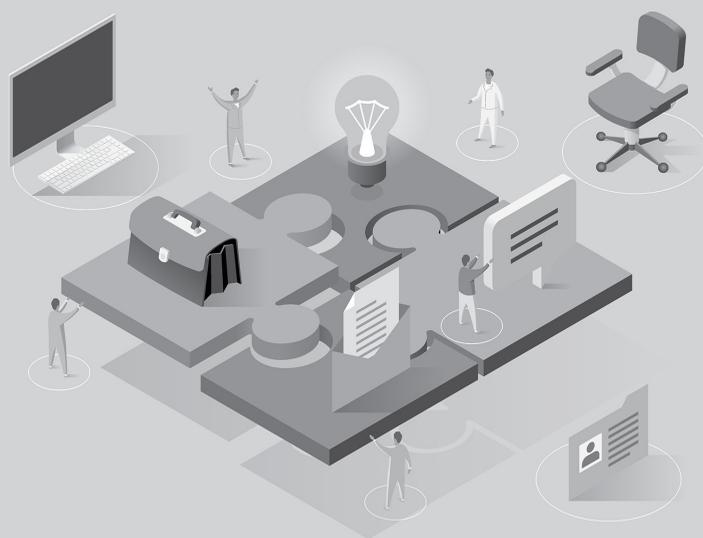
연도	주요업적
2004	정신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88개소(모델형 23,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4개소로 확대, 정신재활시설 101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법적 기구화
200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97개소(모델형 32, 기본형 65)로 확대 지방비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 총 126개소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1개소로 확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 지방 이양 알코올상담센터 20개소 운영 지원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200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105개소(모델형 40,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강화 음주폐해예방 및 알코올중독 치료·재활지원(알코올상담센터 26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보건지도자 교육·훈련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0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151개소로 확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검진사업 강화('07년 16세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 포함)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지원(알코올상담센터 30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연계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상시 지도체계 마련
2008	기본형과 모델형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표준형으로 통합하고 광역형을 신설(표준형 148개소, 광역형 3개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검진사업 강화 (35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중·고 정신건강검진사업 실시)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지원(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마련·발표)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정신보건법 개정, '08.3.2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08.9.29., 식약청에서 업무이관) 국립서울병원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의 개편 계획 수립·추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금주구역 지정 등) 인터넷중독 폐해예방 및 치료사업 추진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연계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보건소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사업 종료

연도	주요업적
2009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09.3.22.)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 지원(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주류판매금지시설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총 156개소(표준형 153개소, 광역형 3개소)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시행,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차단 및 집단자살예방대책 수립) 인터넷중독 피해예방 및 치료사업 부내 업무이관
2010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0.1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표준형 158개소, 광역형 5개소)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시행, 인터넷을 통한 자 살유해정보 유통 및 동반자살 차단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알코올상담센터 41개소 운영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20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표준형 158개소, 광역형 6개소) 알코올상담센터 43개소 운영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42개소)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실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11.3.30.) 검찰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201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표준형 174개소, 광역형 9개소) 지역사회정신보건 시범사업 실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42개소)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12.6.)
201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기초 189개소, 광역 11개소) 지역사회정신보건 시범사업 실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전담요원 배치(100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요원 배치(200명)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13.12.3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전국 25개 응급의료기관) 지역사회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2개소) 알코올 상담센터 50개소 운영('14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기능 개편)
2014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기초 195개소, 광역형 13개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15개 시·도) 국가 정신건강 증진 마스터 플랜(2016~2020) 계획 수립 연구 중앙심리부검센터 운영 지원 복지부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25개소 → 27개소)

연도	주요업적
201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기초 209개소, 광역형 15개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15개 시·도)
2016	국립정신건강센터 설립 및 국립정신병원 내 정신건강사업과 신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기초 209개소, 광역형 16개소)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발표('16.2.25.) 정신건강복지법 전부 개정('16.5.29.)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실시
20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7.5.3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27개소 → 42개소)
2018	자살예방정책과 신설('18.2.6.)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시행('18.4.)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18.5.) 정신건강복지법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18.6.12., '18.12.13. 시행) 정신건강복지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근거 신설('18.12.11., '19.6.12. 시행)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42개소 → 52개소)
2019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신설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19.5.) 포항트라우마센터 개소('19.11.) 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보건수첩', '퇴원등 사실의 통보' 등 신설('19.4.23., '19.10.24. 시행)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52개소 → 63개소)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시범사업) 실시(인천, 강원, 광주)
2020	정신건강정책관 승격('20.9.), 정신건강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통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기초 244개소, 광역형 16개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20.) 및 응급개입팀 운영('20.7.) 코로나19 심리지원 시행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63개소 → 88개소)
202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법인 설립허가('21.1.) 정신건강실태조사 실시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추가 개소('21.6.)
2022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범평가 실시 : 14개 광역센터(충북, 전남, 세종 제외) 및 2개 충북·전남 산하 기초·중독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50개소 → 58개소) 청년중독관리사업 실시(8개소) 국가트라우마사업부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로 명칭 변경

연도	주요업적
2023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대통령 주재)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12.5)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의사반영을 지원하는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지원, 동료지원인 양성 및 지원, 동료지원센터 법제화('23.12.8, 국회본회의 통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확대(8개소 → 10개소)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 구성·운영('23.2~)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20.1월 55개소~ '23.12월 84개소) * 급성기 치료 활성화 + 병원기반 사례관리 +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21개소→25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58개소→60개소)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범평가 실시 : 16개 광역센터(세종 제외), 기초센터 94개소, 중독센터 50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지정 및 직무교육 실시('23. 下)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발표('23. 4월) 자살예방법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정('23.7.11.) 자살실태조사 실시('23.5.2~12.15)
2024	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사업 확대(6개소→9개소)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109) 도입('24.1.1.)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개선 모형 적용(부산광역시, '24.4.1.) SNS 기반의 자살예방상담 '마들랜' 개통('24.9.10.)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지정(25개소→31개소)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9개소)
2025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지정(31개소→32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60개소→63개소)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2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ART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운영**

02

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가 센터 설치

1) 목적 및 주요기능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연계, 중독관리 체계구축,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2)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15조제2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제15조제3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 근거 준수 가능

3) 설치사항

가) 설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나) 설치기준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도별 1개소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군·구별 1개소 설치
 - ※ 기초지자체 산하 행정구, 행정시나 출장소가 있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 인구 60만 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 인구 20만 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다) 설치 장소

- 보건소 내 또는 관내 공공시설 내 설치를 우선으로 함(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단체는 센터 내 기본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경우에 따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민간건물의 임대도 가능함
- 민간건물 임대 시 전·월세 보증금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월세 및 관리비, 사무실 이전비 등 소모성 예산은 센터운영비(부족 시 사업비)에서 활용 가능

라) 설치 절차

- 신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 지자체는 설치 필요성 검토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전 공문 송부 및 협의

4) 기본 시설

-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쾌적한 330㎡(약100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화장실 공간은 공동 이용 가능)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교육실(프로그램실), 휴게실,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실을 확보하도록 함.
 - 사무실: 센터 종사자수별 기준 1인당 6.6㎡이상
 - 휴게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센터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단, 센터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미만인 경우 크기 및 위치 기준 제외)

설치기준	단독휴게시설	공동휴게시설
①크기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 천정높이는 모든지점에서 2.1m이상 * 남녀구분설치를 권장하나 어려운 경우 남녀간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 다른 사업주와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사업장수*6㎡ 이상일 것.
②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이며, 다음의 장소와 떨어진 곳 1.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소음이 있어 휴식하기 어려운 장소	*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휴게 시설까지 왕복이동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을 것.

※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그 외 설치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안내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나 센터운영

1)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가) 기본사업 추진방향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공적기관으로서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조정 및 수행
-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치료·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연계체계 구축

나) 운영유형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팀 또는 부설로 설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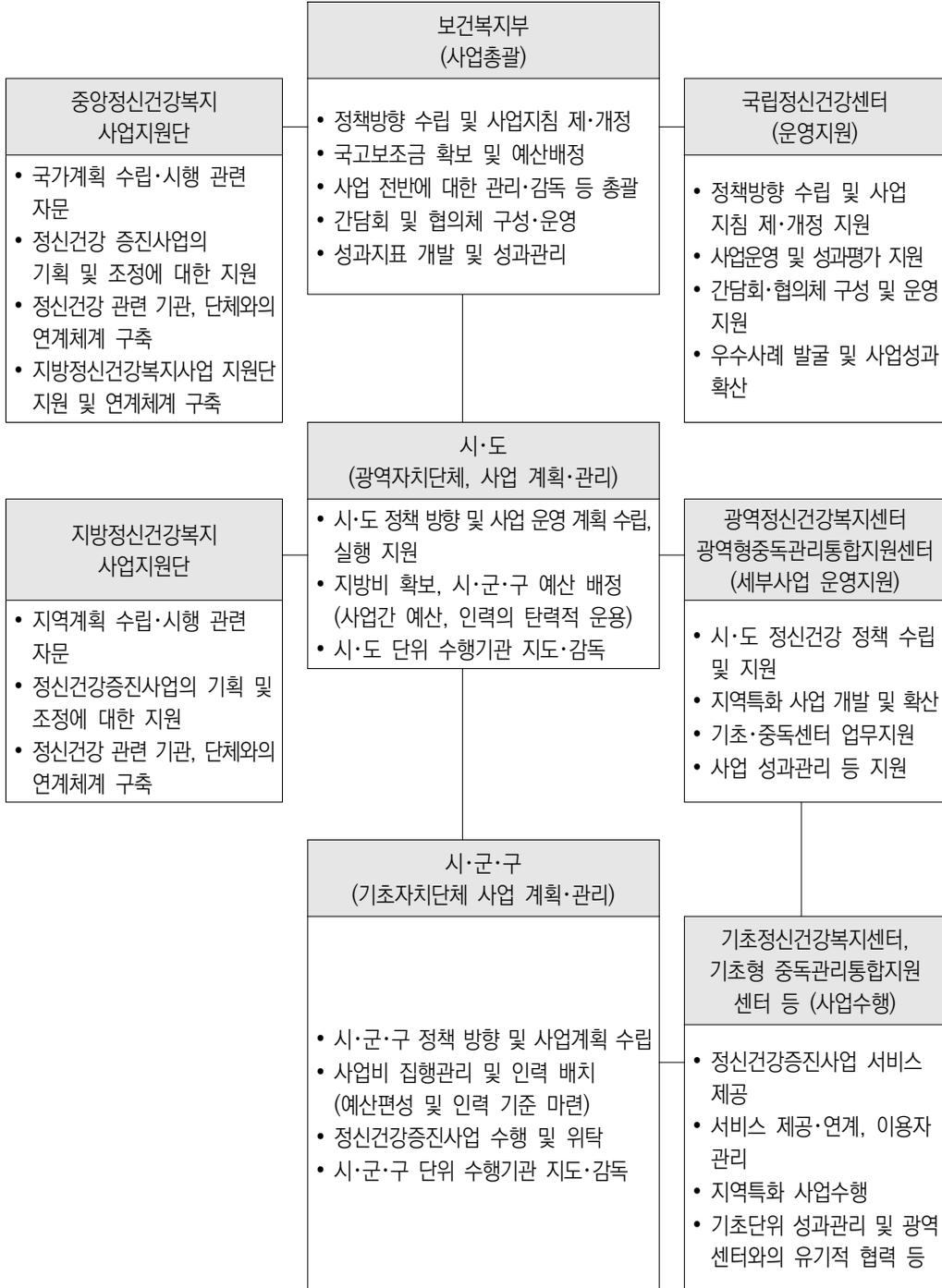
(1) 직영형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2) 위탁형

- 지자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다수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나, 각 센터별로 회계 및 인력관리는 별도로 하여야 함.

다) 추진체계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가) 운영체계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예방관리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 관련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3
- 관할구역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행정적인 지원 및 지도·감독 수행
-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설치를 권장하며 최소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함
 -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을 가급적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정신건강증진업무 및 중독예방관리사업 담당 공무원은 정신건강사업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시·도와 시·군·구 간 정신건강증진, 중독예방관리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공간과 시설 확보
- 시·도가 설치·운영 지원하는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홍보자료 개발, 공동행사 추진 등의 사업 지원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표(정신건강복지센터: 별지 제Ⅱ-1-1호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별지 제Ⅱ-1-2호) 작성 및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작성 및 소관 지자체에 제출 → 시·도지사에게 보고(~익년 1월 15일) → 시·도지사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제출(~1월 20일)

나) 예산지원

- 관할 구역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예방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의뢰하는 환자의 신체 질환에 대한 검진 및 진료 지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대체인력 등 기간제 포함)에게도 지급함

* 종사자 처우를 위한 수당: 복지포인트, 특별수당, 장려수당, 복지수당, 처우개선비 등

※ 종사자 기본수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유형 참고

다) 지도·감독

- 사업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업수행기관(수탁기관 등)의 관리하에 두며 사업목적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센터 소관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지자체 행정업무를 센터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
- 지자체의 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지도·감독 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권 유린행위 및 안전관리, 이용료 부당징수, 금전 및 물품 출납서류 등 미작성·미제시할 경우 당해 시설을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관리할 수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
- 지자체의 장은 반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20일까지 지도점검결과[별지 제 II-1-6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정신건강복지센터 표준지도점검표 [별지 제 II-1-5호] 참고하여 지도·점검 실시
 - ※ 관련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7항

3) 수탁기관의 선정·계약·역할

가) 사업수탁 근거법령 및 자격

(1) 정신건강복지센터

-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
- 자격: 지자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참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2
- 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수탁기관 선정절차

-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
 - 신청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 가능.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 위탁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경우 우선 준용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 및 학교 법인 대표 등 협력기관장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운영 가능

다) 위탁 계약체결 및 종사자 고용안정

- **(위탁기간)** 5년 이내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정함.
 -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 ※ 계약사항 위반, 법적 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19.5.1. 계약분부터 적용)
- **(계약 내용)** 위탁 계약 체결 시 지자체 조례 내용을 우선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기존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이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함.
 - *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 **(운영주체의 변경)** 치료적 관계 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위탁/직영)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 변경 시 기존 인력 고용승계가 원칙.
 - 기초지자체는 수탁기관 변경 시,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고용승계 여부 반드시 포함)
- **(고용승계의 논의)** 고용승계와 관련 논란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가능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21.5.) 참고 권고
- **(계약 해지)** 위탁자는 수탁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위탁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허가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라) 수탁기관의 역할

-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탁운영자로서 사업계획을 입안, 수행
- 센터장 파견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게 하며, 비상근인 경우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 사업 운영에 일차적 책임성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함
- 연간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계획과 실적은 센터를 통해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퇴사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센터장의 공석 시 수탁기관은 지자체에 1개월 내 통보. 하고, 수탁기관 내 센터장 지정(변경)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4)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가) 운영위원회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전분기의 사업 실적과 차분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시·도 및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직원경력 산정 등 센터운영 등에 대해 협의

나) 운영위원회 구성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센터장(또는 상근부센터장)(운영위원장), (상임)팀장
 -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
 - 시·도 담당 공무원
 - 임상자문의, 외부전문가 및 당사자 등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센터장(또는 상근 부센터장)(운영위원장), (상임)팀장
 -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
 - 보건소 담당 공무원
 - 임상자문의,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용자(또는 이용자 가족) 등

다) 운영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분기별 1회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시로 업무 회의를 진행해야 함
 - ※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관련 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참석자(담당 공무원·센터 인력 외)에게 회의 개최 시 수당 지급가능

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설치·운영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센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신고하여야 함
-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 중 1인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 ※ 법령을 참고하여 별도 규정 마련

다 종사자 관리

1) 종사자 기준 및 자격요건

구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자격	가형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②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경력 1년 이상 (공중보건기사 제외)	
		나형	①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경력 10년 이상	
		다형	-	
	근무형태	가형	상근(주5일)을 원칙 비상근인 경우 주 1일(8시간)이상 근무	①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경력 8년 이상
		나형	상근	직영형 : 보건소장
	임면	수탁 기관장(시·도지사)와 협의) 직영형인 경우 시·도지사		수탁 기관장(시·군·구청장)과 협의) 직영형인 경우 시·군·구청장
비고	센터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닌 경우, 사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임상자문의로 위촉하여야 함			
부센터장	자격	①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근무경력 8년 이상		
	임면	센터장이 비상근일 경우 부센터장을 두어야 함(상시 근로자 30인이상 필수)		
상임팀장	자격	①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경력사항 중 정신·자살·중독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 포함		
	임면	센터 전체 팀원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총 1명의 상임팀장 임면 가능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비상근인 경우 인력규모에 상관없이 상임팀장을 임면할 수 있음)		
팀장	자격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② 경력사항 중 정신·자살·중독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		
	임면	팀원 매 4인마다 팀장 1인 임면 가능 ※ 센터 전체 팀원이 3인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팀장 1인을 임면할 수 있음 (단, 상근 센터장이 있는 경우 제외)		
행정팀장	자격	정신건강사업 외 필요부서의 경우 행정팀장 임면 가능 ① 재무·회계, 인사업무 경력 2년 이상 ② 정신·자살·중독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		
팀원	자격	팀원1	정신건강전문요원	
		팀원2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사업수행 지원인력	업무	행정 및 회계를 포함한 사업수행인력 지원업무(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포함)		
임상 자문의	자격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자격이 2개 이상(①, ② 등)이 제시된 경우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자

※ 센터장 및 임상자문의 외에는 상근(주5일) 채용이 원칙

※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경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희망재단, 트라우마센터(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에 한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경력을 포함(정신요양시설 근무제외)

2) 채용사항

● 채용절차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신규, 휴직, 대체인력 등)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 임면(채용)함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 채용기준, 채용방법 및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함
- 센터장은 종사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채용 시 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채용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함

● 채용 시 유의사항

- 채용과정에서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직무에 기반을 둔 능력 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적격자의 채용 및 결격사유 확인

- 센터장은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여야 함
※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기준을 준용함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요건·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증빙자료 검토 결과 합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여야 함

- 센터장은 채용 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채용예정자에 대한 아동·노인·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취업제한사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참고〉 범죄경력조회

▶ ①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②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 ③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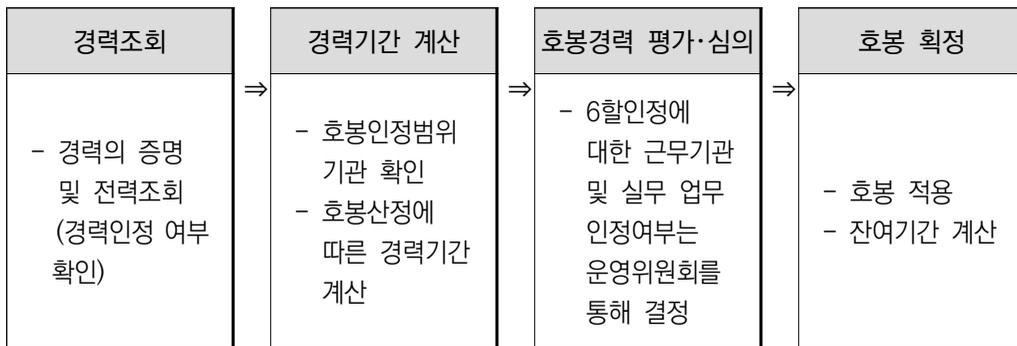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3) 호봉관리

가) 근무연수(호봉) 산정

- 근무연수(호봉)의 산정

〈 근무경력(호봉) 산정 절차 및 방법 〉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경력 기간 계산을 참고하여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경력 기간을 계산함
- 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함
- **(호봉의 승급)**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시킬 것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 **(재산정)**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대해 근무경력을 산정받지 못한 경우 재확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을 재확정함
 -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개정된 사업안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함(단, 개정된 사업안내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에 해당하는 급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타)**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상근 근무기간이 중간에 있을 경우 비상근 근무기간을 제외한 상근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

나)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 아래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활용하여, 종사자의 근무경력을 산정·반영할 수 있음
- 종사자가 근무경력 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함

구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근무경력 인정범위
10할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법 개정 전의 정신건강증진센터 경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력으로 인정함 • 정신재활시설 • 정신의료기관¹⁾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사례관리업무수행) •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담당자) 및 자살예방상담팀 •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과) •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²⁾
8할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노숙인·부랑인시설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 절차조력지원사업 수행기관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등) 관련 기관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만 인정
6할 인정	<p>아래 기관 등에서 정신건강 실무 업무에 근무한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³⁾ 근무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학교⁴⁾, 병·의원 근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따른 기관으로, 정신과 의원은 제외함
 2)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의무 복무한 기간에 대해서 인정(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복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인정)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
 4) ‘학교’라 함은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6할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근무기관 여부 및 실무업무 관련성 판정

다) 경력증명 및 계산

(1)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센터장, 지사체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증명 시 확인사항으로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종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 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2) 경력기간의 계산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되, 별도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 제160조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있어 입사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종사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임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며,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함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확정하여야 함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종사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호봉을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이하 경력은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확정함

〈 인정대상 경력기간(소수점이하 절사) 〉

$$\text{시간제근무기간} \times \frac{\text{시간제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40\text{시간}}$$



예 시

〈사례 1〉
 입사('13.1.5) '14.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14.3.9)
 |-----|-----|-----|-----|-----|
 1년 1월 1월 4일(3.9 퇴직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14. 2. 5일부터 '14. 3.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 ~ 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사례 2〉
 ■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제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1년 2월 19일**
 - 6월 × (22시간/44시간) = 3월 ☞ 2004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4시간
 - 12월 × (22시간/42시간) = 6.29월 = 6월 8.7일(30×0.29) ☞ 2005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2시간
 - 9월 × (22시간/40시간) = 4.95월 = 4월 28.5일(30×0.95) ☞ 2006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0시간
 - 22일 × (22시간/40시간) = 12.1일
 - 합계 = 13월 49.3일(소수점이하 절사) ⇒ 1년 2월 19일

〈사례 3〉
 ■ 2017년 2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호봉산정은?
 ☞ **경력기간 : 5년 7월 18일**
 - 2017년 7월 1일~2021년 12월 21일 = 4년 10월 8일 × 80% = 3년 10월 18일
 - 2022년 4월 1일~2023년 12월 31일 = 1년 9월 8일 × 100% = 1년 9월 8일
 - 합계 = 5년 7월 18일

〈사례 4〉
 ■ 호봉 재획정('12.7.1)
 - 해당경력 환산율을 8할→10할로 상향조정된 경우
 = 경력계산방법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10할 = 10년
 ∴ 재획정 호봉 : 10년 +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3월) + 1호봉 = 11호봉
 (잔여기간 3월)
 ∴ '12.7월부터 11호봉 기준의 보수 지급

※ 세부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참고

4) 직급별 업무 및 역할

가) 센터장 및 상근 부센터장

- 센터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자
 - 수탁기관을 대표해서 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과 자체사업 평가지도 및 조정
 -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재
- 교육 및 슈퍼비전
 - 센터 교육 체계구축과 지도
 - 월 1회 이상의 심층적 사례검토 및 슈퍼비전 주관
 - 팀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의 사례회의 주관(임상자문위가 대리수행 가능)
 - 팀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지도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구축
 - 지역 보건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정신건강 및 중독 네트워크 구축
 - 대외적 대표 업무 수행(회의참석 등)

나) 상임팀장 * 조직의 규모에 따라 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행정업무 조정
 - 팀 간 업무 및 역할 조정
 - 팀 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조정
 - 행정 및 회계 업무 조정 및 지도
 - 업무회의 총괄
 - 센터 운영회의 주관
- 교육 및 슈퍼비전
 - 센터 교육 체계 수립 및 조정
 - 슈퍼비전 체계 운영
- 실무 대표로서의 대외적 역할 수행
 - 지역 보건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 지역 정신건강 및 중독 네트워크 참여 등
- 사례관리 체계구축 및 조정

다) 팀장

- 팀 내의 행정 및 회계 업무에 대한 일차적 책임 업무 수행
- 팀 내 교육 체계구축 및 지도
- 팀 내 수퍼비전 체계 운영
- 팀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 업무 수행

라) 팀원

- 사례관리 업무 수행
- 행정기본업무 수행
-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조직사업(지역사회 교육 등) 수행

마) 임상자문의

- 사례 수퍼비전
 - 주간 및 월간 사례회의 주관 업무를 센터장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수시 사례 수퍼비전 및 정기교육
- 전문의 상담서비스 업무
 - 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상담·진단적 평가 등 직접적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 및 퇴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등 관련사항 자문
- 프로그램 수행 및 지원 또는 수퍼비전
 - ※ 행정업무 및 결재라인에서 제외

5) 종사자 근무기준

● 운영규정(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마련

- 종사자의 근무기준 및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일반 근로자/공무원)에 따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센터별 운영 규정(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 참고.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으며(변경시에도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유의 필요

(참고: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 근로계약서의 작성

- 센터와 종사자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 근로계약서(서식)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종사자에게 주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임금(항목·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센터와 근로자 간 서면 합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법령에 의해 근무기준 및 복무사항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주어야 함

● 근무형태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의 근무형태는 상근을 원칙으로 함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기본사업수행인력 중 비상근인력은 2인 이내만 활용할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받고 있는 직원 제외 2인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센터 외의 타 기관에 종사(자격증 대여 포함) 불가

● 휴가의 부여

- 법정휴가

☑ <참고> 법정휴가(「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①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 부여함*

*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 외

- (신입사원)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다음 월부터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

근속 연수	1년 미만	1~ 2년	3~ 4년	5~ 6년	7~ 8년	9~ 10년	11~ 12년	13~ 14년	15~ 16년	17~ 18년	19~ 20년	21년 이상
휴가 일수	11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 ② 출산 전·후 휴가(단태아일 경우: 출산 전·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인 경우 출산 전·후 120일 보장) : 유산·사산에도 별도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함
 ※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 ③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 부여 (최대 20일,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④ 육아휴직: 임신중임 여성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청구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 휴직 가능
- ⑤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
- ⑥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⑦ 생리휴가: 월1일 무급휴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함
 ※ 센터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나,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참고(고용노동부)

- 유급병가

☑ **<참고> 유급휴가(20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15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법인·시설 등의 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는 최소 연 30일 이상이 될 것을 권고함
 - 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나.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3.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시설별로 운영중인 유급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본 조항을 이유로 유급병가의 기간·조건 등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시설별 개별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른 휴가 외에 취업규칙, 운영규정 등에 따라 약정휴가 부여 가능
 - 예시 경조사휴가, 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사업수행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함
- 공가 및 특별휴가의 사용에 있어 센터 운영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
- 개인적인 외부기관 교육(주간대학원, 정기적인 외부강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 단 소속기관의 장 허가를 득한 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을 위한 근무시간 중의 근무지 이탈 가능(해당 시간은 연차사용 또는 무급으로 함. 직원 수련 등 근무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무일, 급여체계 등 결정)

6) 종사자 교육

가) 5대 법정 의무교육

구분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 '보건업'으로 등록되었 으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경우 제외가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 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조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 * 사무직 / 판매업 매분기 3시간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권고)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	가능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이거나 어느 한 성(性)으 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가능	가능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 자료 배포·게시 또는 전자 우편 송부 등으로 실시 가능	가능 * 이메일 등으로 서면 교육 자료 배포 가능
강사 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	없음	없음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퇴직연금사업자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없음 ※ 사고 발생시 과징금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처	•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안전보건교육 포털	고용노동부	• 한국인터넷 진흥원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포털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제외대상인지 확인

※ 기타 법정 의무교육: 소방안전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장애인·노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살예방 교육 등 센터현황에 따라 실시

나) 내부 교육

- 안전관리교육, 인권교육, 신규종사자교육 등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실시
* 교육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센터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1) 안전관리교육

-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교육실시(전체 종사자 대상 연 1회 이상)
- 교육내용 중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협받는 다양한 상황의 예방방법, 대응방법, 사후관리 내용을 포함
- 자체 내부교육 진행 또는 종사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내용의 온라인 교육 진행

(2) 인권교육

- 종사자들의 정신건강증진인식 및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인권교육)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실시(전 종사자 대상 연 1회 이상)
- 인권강사 자격을 가진 강사가 내부교육 진행, 외부 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

(3) 신규종사자교육

- 센터의 기초적인 업무 이해를 위해 신규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기관 비전 및 목적, 운영체계, 근무규정 및 업무, 안전관리, 인권교육, 개인정보보호, MHIS, 행정업무 전반, 사례관리, 정신건강사업 이해, 사업결과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신규종사자교육 진행

(4) 기타교육

- 사업결과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교육 등 센터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음

라 행정사항

1) 예산관리

가) 예산편성·집행기준

(1) 예산의 편성

-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지역 실정에 알맞게 조정하되, 시·도가 지방비 부담액의 50% 이상 부담 필요
- 건물의 임대료 및 유지보수료,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인건비,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편성
- 위탁기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비(예: 회계관리, 운영 관리 등)지급 여부 및 비용규모는 시·도(보건소)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산출하고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총 예산의 2% 이하로 지급할 것을 권장함

(2) 예산의 집행

- 예산의 집행책임
 -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에게 예산집행 책임이 있음
 -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관장에게 예산집행책임이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이 지도·감독
- 보건소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또는 위탁기관장 명의 또는 기관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 위탁기관 예산 배정·집행
 - 위탁기관은 매분기 시작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의 예산사용계획서를 해당 시·군·구 보건소(광역센터의 경우 시·도)에 제출하며, 보건소(시·도)에서는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을 개설된 통장으로 매분기 시작 이전 일괄 지급하며, 분기별 사업 잔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집행함 (다만, 예산 통보 지연, 지자체 및 센터 상황상 부득이한 경우, 분기 시작 15일 이전에 계획·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인터넷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서 집행 가능(예산에서 수수료 집행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예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부 연구비, 위탁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추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광역센터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외의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고, 이중 당해연도 집행 잔액은 차기 년도 이월 사용 가능
-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회계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https://ceu.ssis.go.kr>) 사용 가능
- 기타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칙」,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함.
- 다만, 위의 규정에 없는 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 재무회계 운영지침」 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적인 관행 등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가능

(3)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함
- 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함
 -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 구분
- * 예시 전년도 10월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다음 해 2월에 입금되었을 경우 전년도 회계로 구분
- 출납기한은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완결해야 함

(4) 예산의 전용

-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관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건비 및 사업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 등의 예산 항목 간 합리적 전용을 결정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종사자 인건비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인건비와 사업비 분리하여 예산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및 위기개입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내역으로 예산편성 필요

* 2025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분리하여 예산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내역으로 예산편성 필요

- 다년간 경력자의 채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족분에 한하여, 사업비(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집행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확충예산과 사업비(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의 경우 인력 채용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잔여분과 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간 전용(비목 변경 등) 가능하므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 필요함
- 관의 전용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이 필요함
 - 관 간 전용: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 동일 관 내 항 간 전용: 운영위원회의 의결 필요
 - 동일 항 내 목 간 전용: 기관장이 전용 가능
- e나라도움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단, 부득이하게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시행 '18.1.2.)

(5) 회계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내에서 출력된 자료로 회계 장부를 갈음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6조)
 - 예산 계획서 및 정산서: 5년간 보관
 - 회계장부: 5년간 보관
 - 재무회계 관련 공문: 5년간 보관

(6) 정산보고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장, 기초형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1.31.까지 전년도 사업비 정산 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광역형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사업비의 집행액과 집행 잔액을 구분하여 3월까지 [정산보고서](202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산운용지침 참조) 서식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1) 기본사항

- 종사자가 보건소(시·도) 정규직인 경우 보건소(시·도) 인건비 지급규정에 준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인력확충)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방비 확보를 통한 인건비 예산마련 등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한하여, 인건비 사용 가능함
-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여 지급함
- 사업자등록을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이들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함
- 상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에서 집행 가능
- 위탁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규정에 준할 수 있음
- 퇴직금 적립은 가능한 한 기관의 퇴직연금제도 형태로 적립(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가능)
 -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음
 -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퇴직 시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예산의 특별수입으로 포함시켜 사업비 또는 인건비로 활용
- 퇴직적립금을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에 적립한 경우 1년 단위 사업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당해연도 1년을 근무한 상근인력의 퇴직금 정산
 - * 연말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센터에서의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비 또는 인건비로 활용함
- 퇴직금 관련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용

(2) 세부지급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 상근 센터장

구분	지급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며 센터장으로만 상근하는 경우, 매월 1,633,350원의 5배 범위 안에서 월지급액을 정하여 연봉계약 가능 *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중 상여수당을 제외한 수당지급 및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월 지급액은 계약연봉의 1/12로 산정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상근부센터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수당 지급 기준을 따름

- 비상근 센터장

주 1회 이상 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 근무 ※ 퇴직금 적립대상 아님

구분	자격	월 기준액
A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소지 - 정신건강증진기관 3년 이상 근무 - 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의 자격 보유 	(1,633,350원* × 주당 계약근무일수) 이하 *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인건비 1/2
B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A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980,010원* × 주당 계약근무일수) 이하 * A그룹의 60%

* 고려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인건비 지급기준 관련하여 위의 사항을 준용하되,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

※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차등수가제' 관련) 의사인력 산정 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비상근 센터장 (임상자문의 포함)으로 활동 시 아래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력기준을 적용

센터 활동시간 및 유형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8시간 주 1회 - 1일 4시간 주 2회 	의사인력 1인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8시간 초과 	의사인력 0.5인 인정 (단, 소속 의료급여기관 근무시간이 주3일 이상이면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구분	지급기준
상근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급: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을 따름 수당: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을 따름
비상근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급: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을 따름 수당: 지급하지 않음
산후대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급: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해당 자격에 기준하여 호봉을 산정하여 적용 수당: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p>※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예산 범위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p>
행정인력 (행정팀장, 행정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조건 및 담당업무 범위, 업무난이도 등이 센터별로 상이하므로 운영 위원회를 통해 인건비 결정 필요

● 임상자문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자문의에게는 매 사안별로 자문위원 수당체계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자문위원, 운영위원 수당

회의참석 및 자문위원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함 단, ‘변호사, 회계사 등 위 수당으로 지급이 곤란한 전문가의 자문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별도 책정 가능

* (참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일당 200,000원(서면심사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

(단위: 원)

직위(호봉)	센터장(상근) 부센터장	사업수행인력		
		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팀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
1호봉	2,980,600	2,683,200	2,477,200	2,360,100
2호봉	3,082,400	2,769,600	2,538,600	2,416,400
3호봉	3,186,800	2,870,500	2,606,200	2,485,000
4호봉	3,305,300	2,973,900	2,712,200	2,553,200
5호봉	3,440,900	3,095,900	2,824,500	2,621,900
6호봉	3,582,800	3,221,100	2,940,500	2,717,800
7호봉	3,724,600	3,345,900	3,061,500	2,815,600
8호봉	3,871,200	3,489,100	3,183,000	2,918,600
9호봉	4,018,900	3,637,600	3,301,000	3,037,600
10호봉	4,159,300	3,778,200	3,426,800	3,137,400
11호봉	4,310,200	3,915,700	3,542,900	3,237,200
12호봉	4,437,500	4,027,400	3,647,900	3,326,300
13호봉	4,556,000	4,132,400	3,739,600	3,401,300
14호봉	4,652,800	4,231,300	3,828,600	3,482,900
15호봉	4,750,300	4,326,700	3,914,000	3,561,300
16호봉	4,842,600	4,402,200	3,994,600	3,636,700
17호봉	4,929,200	4,481,600	4,071,400	3,707,600
18호봉	5,011,100	4,561,200	4,146,100	3,775,900
19호봉	5,087,700	4,632,100	4,212,000	3,839,400
20호봉	5,156,000	4,700,700	4,277,800	3,901,200
21호봉	5,223,300	4,767,900	4,338,700	3,964,000
22호봉	5,287,900	4,829,900	4,397,700	4,018,500
23호봉	5,348,200	4,888,800	4,453,600	4,070,900
24호봉	5,404,900	4,943,900	4,502,900	4,121,000
25호봉	5,460,400	4,998,800	4,551,900	4,174,400
26호봉	5,505,800	5,046,700	4,599,700	4,221,600
27호봉	5,552,100	5,091,700	4,640,000	4,260,000
28호봉	5,592,400	5,132,200	4,680,800	4,300,400
29호봉	5,623,300	5,166,100	4,718,300	4,337,900
30호봉	5,649,300	5,202,100	4,753,400	4,371,900
31호봉	-	5,235,300	4,785,000	4,405,000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

(단위: 원/월)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휴직자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 공무원 기준 준용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자녀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이후		120,000원
특수근무수당	팀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	5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팀장 ¹⁾	70,000원			
	부센터장, 상임팀장 ²⁾	100,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 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적용 원칙〉

- 당해연도 인건비(기본급, 수당) 지급기준을 원칙으로 함.
 - 각 지방자치단체와 센터의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별도 수당지급기준을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위험근무수당 등 지급 권고)
-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동 지침의 직위별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명절휴가비는 명절당일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산휴가 등으로 '휴가' 중에 있는 자는 전액 지급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대체휴무)를 줄 수 있음
- 가족수당 지급기준
 - ① 가족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② 센터 사업수행인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명 이내로 함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 ③ 부양가족이란 센터 사업수행인력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특수근무수당 지급기준
 - 1) 팀장을 포함 팀원(센터장 제외)이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 5만원/월 지급
 - 2) 팀원이 10명 이상이 되어 임면된 상임팀장에게는 특수근무수당으로 정액 10만원/월 지급
 ※ 팀장업무 대행을 하는 사업수행인력의 경우에는 팀장(정액 7만원/월) 기준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가능

다) 예산사업별 편성·집행기준

● 건물 임대료 및 유지보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
- 부득이하게 일반건물을 임대할 경우 위치선정 및 임대계약은 시·도 및 시·군·구가 수행하고 전·월세보증금은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함
- 매월 임대료 및 각종 공공요금 등 소모성 사업비(센터운영)에서 지출 가능

● 구조개선비 및 비품구입비

- ※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구조개선비, 기타운영비 등의 예산 항목 간 합리적 전용 결정
- 1차 사업년도에는 센터 예산*의 30% 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 가능
- 2차 사업년도 이후에는 센터 예산*의 10% 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배정 가능
- 다만, 센터 위탁 및 운영연도와 관계없이 장소 이전 및 확장 시에는 센터 예산*의 30% 내에서 구조개선비와 비품구입비 등 배정 가능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및 사업비

- 사업예산으로 구입한 비품의 소유권은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게 있고 관리책임은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장에 있음
- 물품구입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증빙자료 등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따름
- 사업 운영비 지출 기준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준용하여 적용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비품목록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품의 소유권, 품명, 수량, 구매단가, 구매처, 구매일자 등 명시

●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비

-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비용 계상·집행과 이에 필요한 운영물품(약보관함, 일상생활용품, 스트레스완화용품 등) 제공 가능
- 비용 산출내역에는 단가, 예상평균인원, 운영횟수, 총 사업기간 등 명시
- 일정소득 이하의 등록대상자에게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필요한 특정 프로그램비용, 교통비 및 식대를 실비로 지원 가능

※ 소득기준 및 금액기준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서 회원이 원할 경우 재료를 구입하여 참여 가능

- 자원봉사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 중의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 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에 소요되는 이송비용 또는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급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예산 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 가정방문 등 사업에 이용되는 개인차량에 대한 운행보조비, 가정방문 등에 소요되는 출장비, 사례관리 시 소요되는 휴대전화 통신비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예산계획 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계상 가능

※ 마음안심비스 운영비(유류비, 보험료, 홍보물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에서 사용

● 교육비

- 종사자의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참여시 참가비와 여비 지원
- 종사자의 정신건강증진관련 워크숍, 세미나, 평가대회 등 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 참가비와 여비 지원 가능

※ 개별 욕구에 따른 교육은 지원 제외

- 종사자의 국외연수 시 보건소장(혹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요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연수보고서를 해당 보건소(혹은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운영비

- 특수한 사업수행 또는 예기치 못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기타 운영비 편성·집행

● 물품 구입

- 품의서를 내부기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예산사용 전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지출결의를 하여, 관련서류를 함께 보관

● 행사 및 홍보비

- 정신건강증진 관련 행사
- 정신건강증진 관련 행사 홍보물(브로셔, 홍보 책자, 홍보물품 등) 및 기념품 제작·배포

※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가능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 요망
 - * 국제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 지역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 입금 활용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전용 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 기타사항: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10.4.19.)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 사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시행함
 - * 사업유형에 따라 복수의 보조금 통장 사용 가능(지자체가 결정)

라) 기타 행정사항

- 후원금품(지정기탁금)의 관리
 - 후원금품 관리는 후원회장 또는 정신보건가족협회장 명의의 통장을 통한 관리, 협력 기관이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등의 지정기탁금(용도가 지정된 후원금)을 통한 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접 관리 등의 방법이 있음
 - 보건소 직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후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후원회장 또는 정신보건가족협회장을 통한 관리하에 후원금 모금에 대한 홍보 지원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실무 지원 가능
 - 위탁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직접 관리하거나 협력기관 등을 통하여 전달된 후원금을 센터가 집행하는 경우는 후원금(지정기탁금)을 사업예산 및 결산에 포함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위탁기관은 후원자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후원금품은 후원자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의 용도지정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처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 소식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 이용료 및 수익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환자/가족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의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규정에 의한 보조시설 중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 기준으로 관할 시·도 및 시·군·구가 정한 비용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 가능
 - 차상위 계층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료 및 식대 감면 가능
 - 위탁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이용료 수입을 사업비로 활용 가능
 -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 참여자에게 지급

2) 안전관리

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을 위한 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 지자체와 기관의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
- 국립정신건강센터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안전관리 지침 및 매뉴얼 마련
 - 지자체와 기관의 위험 상황 대응 및 사후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등과 연계하여 진행 지원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안전 설비와 보호 장치 구축을 위한 예산 및 지원 방안 마련
 -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지원 제공
 - 종사자 직급별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지원
 - 종사자 안전관리 관련 기준 마련, 기관별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 수탁기관 및 센터장
 - 위험 상황 대응 대처 전략을 구축하고, 구축된 대응시스템을 종사자에게 교육
 - 예방대책 마련,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팀장급 이상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
 - 종사자 단체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필요성에 따라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
 - 분기별 기관 및 종사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안전벨, 녹음가능한 전화기, 상담실 등 공개된 장소에 CCTV**설치, 종사자 보호에 필요한 안전물품 등을 구비

* 부록 [별지 제 11-1-7호] 기관 및 종사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 CCTV 설치 시 의견수렴 필요

 -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과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 민원통화·면담 등 전체 녹음 및 녹음 전화 상담 시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안전 관련 교육 내용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에 기록하도록 교육
- 종사자 개인
 - 안전 및 권익 보호 매뉴얼을 숙지하며,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이수

나) 종사자 보호방안

-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폭언 및 모욕, 욕설, 협박, 성희롱, 폭행, 스토킹, 센터 기물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 상담·통화 중인 경우 종료를 안내하고 즉시 종료하며, 사례관리 대상자의 행위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 종사자를 분리
 - 필요시 증거 수집, 수사 의뢰 및 고소·고발 등 검토
- 기관별로 1회당 통화면담 권장시간을 정하고, 단순 민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는 경우 종결 가능
 -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 아닌 단순 민원성 전화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
- 충분한 설명 또는 상담이 이루어진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 상담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
 - 동일·유사내용에 대한 3회 이상의 상습적 반복 전화나 면담(요구)은 다른 내담자에 대한 대응 및 긴급 조치를 어렵게함을 안내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후 반복전화 등 종결 처리 권고

- ▷ 해당 센터의 권한이 아니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처분, 조치 등 요구
- ▷ 사인 관계 등 민원처리와 관련 없는 사항
- ▷ 기타 다른 회원의 상담·센터 이용을 방해하는 내용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 종사자 안전 및 권익 보호 매뉴얼(국립정신건강센터) 참고

3) 기록물 보호·관리

가) 보존기간이 경과 된 기록물 폐기방법

- 비전자 기록물(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 매체)의 폐기
 -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
 - ※ 기관 외부의 민간업체에 위탁한 경우 기록물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관계자가 참석·감독
- 전자기록물의 폐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삭제한 기록물을 복구하여서는 안됨
 - 전자기록물의 폐기를 위하여 보존매체 또는 저장매체 등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에는 담당자와 기관장의 책임하에 보완 조치를 해야 함
 - 전자기록물의 폐기 시에는 담당자, 관리자 등의 책임하에 집행

〈 각종 기록의 작성·보관 〉

기 록 종 류	최소보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및 제규정, 운영위원회 회의록 • 재산목록관련 기록, 등기 문서 등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 공사, 구매 관련 계약서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받은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MHIS 상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회원, 접수상담, 의뢰·연계관리, 회원관리, 외뢰/연계, 사례관리 탭 등 	10년 (서비스 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및 회계, 물품에 관한 장부 및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 대장·자재(원료) 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 매출 대장 • 세무관계 문서 •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 각종 실적 보고서, 운영에 관한 각종 대외 보고서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 	3년 (종사자 퇴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일지,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업무실적일지 •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각종 회의 기록부 	3년

* 경력증명서 발급기간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유하는데 대해서는 동의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근로자 퇴직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참고(24.12.))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개인정보 처리방침, 각종 기록의 작성·보관표를 참고하되, 지방자치단체 기준(규정, 규칙 등)을 준용

4) 개인정보 보호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
 -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 이용 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 필요
 - ※ 개인정보 동의서는 [별지 제Ⅱ-2-3호] 참고
 -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 목적 외 이용 시 대상자의 동의 필요
 -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보호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처리방침 수립 및 변경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하여야 함
 - ※ 자격: 시설의 대표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 안내판의 내용: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가능)

※ 참고: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구분	사업영역	세부사업
기본 사업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정신건강 연구조사 및 확산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정신질환·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홍보·캠페인
	기초·중독센터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교육 과정 지원 지역 맞춤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확산 센터 평가업무 및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개입팀 운영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운영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단위 재난심리지원 업무
특화 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중독관리 지원사업	

※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기본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 특성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

1)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

가) 지역 정신건강 연구조사 및 확산

(1) 사업목적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현황 파악,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예방사업을 개발, 수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사업운영

● 사업내용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지역현황 조사·분석 및 정신건강서비스 요구도 조사

예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현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현황, 중독문제, 재난 정신건강 등

● 활용가능자료

정신건강실태조사,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 자살실태조사, 사망원인통계, 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 등

● 조사·분석 결과 활용방안

- 사업계획서 및 매체 개발, 성과 모니터링
- 기초·중독센터 업무지원 시 활용
- 지역사회 공유 및 언론홍보 등

나)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1) 주요역할 및 목적

- 광역단위 정신건강서비스 협력체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응급대응, 사업기획, 사업 확산 등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의 활성화·전문화 기여

(2) 사업내용

- 지역사회 새로운 유관기관(자원) 발굴 및 현황파악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유관기관(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 사업특성에 따른 연계망 구축 및 자원 활용(응급대응, 인식개선 홍보 등)
- 네트워크 구축·유지를 위한 사업기획 및 수행 등

다) 정신질환·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홍보·캠페인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대상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 중독문제 관련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도모

(2) 사업내용

- 광역단위(광역 내외) 및 관할 지자체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수행
 - (역할) 홍보·캠페인 기획, 연계수행, 광고 및 홍보매체 제작, 연계확산 등

2) 기초·중독센터 지원업무

※ 중독센터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시·도의 경우에만 해당

가) 직원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 교육과정 지원

(1) 사업목적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2) 사업내용

- 기초·중독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종사자(직급 및 경력, 면허사항 등 고려) 대상 교육 수요조사
 - 정신건강 국가정책동향 및 지역현안, 주민수요 등 분석
 - 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교육매체 개발
 -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현업적용 가능성, 난이도의 적합성 등) 관리
 - (주요내용) 정신건강 국가정책동향 및 지역현안, 주민수요 등 분석, 정신질환자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실적관리, 재난심리지원 등 필수사업 및 현안사업, 신규 종사자를 위한 교육(업무 안내, 1577-0199 전화상담 실무, 사업계획서 및 실적서 작성법 등), 타 기초·중독센터 우수사례, 지역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활성화 방안 등
- 광역단위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초·중독센터 내부 자체교육과정 지원
 - 종사자(직급 및 경력, 면허사항 등 고려) 대상 교육 수요조사, 공통사항 도출
 - 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교육매체 개발·지원
 -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현업적용 가능성, 난이도의 적합성 등) 관리

나) 지역 맞춤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확산

(1) 사업목적

지역사회 현황,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한 정신건강, 중독사업 기획·개발 및 확산을 통한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도모 및 사업 효율화 실천

(2) 사업내용

- 지역 현안, 주민수요, 이해관계자 의견, 국내·외 우수사례 등 조사·분석
- 프로그램 기획·사업계획 내 반영
- 센터 내·외부 실행체계 구축, 활용매체 개발 등 실행
-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 우수 프로그램의 경우 광역 내·외부 및 지자체(기초·중독센터)로의 확산·발전

(3) 활용가능자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매뉴얼,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집, 정신건강 검진도구 및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 등

다) 센터 평가업무 및 컨설팅 지원

(1) 사업목적

기초, 중독센터의 정신건강사업 수행 수준을 파악하고, 최소 또는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 모색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기초·중독센터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담당자 또는 전담팀 지정
- 기초·중독센터 평가지표 및 운영체계 등 세부내용 파악
- 기초·중독센터 종사자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평가업무 안내
- 기초·중독센터 정량지표 항목 평가 수행
- 평가자료 취합, 자체평가서 작성법, 평가지표 의의 등 안내
- 평가위원 구성·운영 지원, 수당지급 등 행정사항 수행
- 센터별 평가·컨설팅 일정 조정 등 평가과정 운영
- 센터별 평가결과, 개선사항 등 취합·정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제출
- 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한 컨설팅(환류) 수행, 향후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고도화 지원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가) 위기개입팀 운영

(1) 사업목적

광역 및 거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설치·운영을 통해 자·타해 위험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경찰, 구급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2) 설치 및 운영기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필수 설치, 지역상황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추가 설치 권장

(3) 관할지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응급출동 요청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관할하며, 시도 전 지역으로 범위확대 필요
 - 광역센터와 거점 기초센터에 분할 설치된 경우, 담당 지역 구분 필요

(4) 역할

- 관할지역 내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 경찰 등과 함께 대응
 -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
 - 자·타해 위험대상자의 정신질환 관련 여부, 정신과적 위기상황 평가 수행을 통한 구급대원 및 경찰의 현장대응 지원
 - 자·타해 위험대상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요청 및 협조 지원
 - 응급상황 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사례관리 연계 실시
 -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대상자의 경우 동의자에 한해 단기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5) 사업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 * 조현병, 급성정신병, 주요우울증,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알코올사용장애, 약물 남용 등의 물질 관련 장애
 - ※ 단순 주취자, 심한 만취상태로 상담 및 평가가 불가한 경우,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적 평가보다 신체적 처치가 우선인 경우 등은 대상이 아님
-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시 정신과적 위기상황 평가 필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자

(6) 사업내용

※ 현장대응은 2인 이상 배치하여 종사자 안전보장 필요

● 위기개입 전·후 상황에 따른 주요업무

- 위기개입 요청 시 대응

-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 한국형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척도 단축형(CRI-SF) 활용,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의 위험평가 안내 참고

- 현장대응, 전화상담, 내소상담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

-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 자원과약 및 정보제공, 응급입원 대응지원

- 자·타해 위험성이 높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경찰·소방 등 정신응급 대응기관과 협력하여 개입

- 응급입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대응

-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지인에게 정신질환 상황안내 및 퇴원 후 서비스 안내

- 응급입원 등 의료기관 퇴원 후 개입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맞춤 서비스* 제공 및 의뢰

* 개별상담,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치료연계, 자조모임, 치료비 등 지원

- 대상자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과약 및 정보제공 등

● 상시 주요업무

- 1-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과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참여를 통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수행 등 지원

*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운영은 시도에서 주관하며, 광역센터에서 지원함

-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에 관한 사례연구 및 교육참여 등 종사자 역량강화

(7) 위기대응 업무 추진체계

추진 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국고보조금 교부 등
국립정신건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팀 운영 및 정책 지원
광역자치단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팀 운영 지원·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 관할 경찰서, 소방본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제공 • 위기개입팀 근무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 지원 등 • 지방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언론대응 등 행정지원
위기개입팀 설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팀 운영 지원·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운영에 대한 지원 • 위기개입팀 근무자에 대한 채용·배치·복무관리 지원 • 관할 경찰서,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행정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 및 위기개입팀 설치된 기초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팀 운영 및 정신 응급상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 대상자 안전 확인 및 모니터링, 현장출동 등 응급상황 관리 • 24시간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112 및 119 출동 및 위치추적 요청 - 필요 시 현장 출동 또는 유선 지원을 통한 위기개입 • 중·장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등록·연계 • 사업계획 수립·운영·보고 • 위기개입팀 근무자에 대한 채용·복무관리·교육 등 • 1577-0199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및 공휴일 정신건강 상담 운영 및 권역형 위기개입팀 연계지원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출동·안전 및 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시도자 및 정신과적 응급대상자 신변확보 및 보호조치 • 위치추적 및 보호자 정보수집 후 제공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입원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대상자 구조·구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시도자 및 정신과적 위기대상자 구조·구급 활동 수행 • 위치추적 지원 • 대상자 이송 •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8) 위기개입팀 운영사항

● (운영시간) 주중 야간, 주말·공휴일 주야간

※ 주중 주간에 발생하는 위기개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담당

● (운영유형) 다음의 유형 중 시·도 여건에 맞게 운영

※ 출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추가 설치 및 경찰합동대응팀 운영 고려 필요

- 위기개입팀

- 경찰합동대응팀(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 합동 근무)

● (운영형식)

- 24시간 365일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개입팀은 교대제로 근무조를 편성·운영하며 인력 등을 감안하여 근로유형 및 근무순환방식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3인 1조 구성 원칙. 상황에 맞게 팀 및 조별 구성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 동일근무 시간 내 및 출동은 2명 이상 배치하여 안전보장 필요
(단, 경찰 및 소방 개입 상황에 따라 1명 출동 가능)
※ 예: 평일 야간당직, 공휴일 2교대 / 2인 출동, 1인 대기

● (기타사항)

- 근무편성에 따른 근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운용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근로자 협의에 따라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으며 보상휴가 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도 여건에 맞춰 근로형태 설정 가능(탄력적근무시간제* 등)

* [별지 제II-2-1호]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예시)

※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가이드북 참고(고용노동부)

- 위기개입팀 건강권 보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연 1회)

※ 특수 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나)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1) 목적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 및 지자체별 정신건강, 경찰, 소방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정신 위기상황 시 신고, 현장대응, 이송, 사후관리 및 예방 등 각 단계별 안전보장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2) 협의체 구성(※ 아래 각 기관별 담당자 필수참여)

- (시·도) 협의체 운영총괄, 정신건강 담당 부서장(위원장, 당연직)
- (정신건강전문기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의료기관 담당, 응급진료협력병원 관계자
- (경찰) 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
- (소방) 지방소방청 담당 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
- (그 외)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3) 협의체 주요안건

- 지역사회 정신 위기대응 현황 및 추진체계 점검,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를 위한 지정 협력병원 현황점검
- 지역 내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현황점검
- ‘정신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지역 내 적용
- 지역 내 정신 위기대응 관련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 논의·적용

(4) 협의체 운영방안

-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고, 협의체를 대표함
-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가능
* 수시 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

(5)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정신건강 협의체 구성 및 정신건강문제 위기대응 현황, 정신의료기관 대상 응급진료를 위한 협력병원 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지체없이 제출 필요

다)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다)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운영 내용 참조

4)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광역단위 재난심리지원업무

가) 사업목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

나) 사업내용

- 중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심리지원 시점 등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재난 심리지원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 재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2인 이상) 지정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통보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5)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가) 사업목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확대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

나) 사업대상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위기가구, 취약지구 아파트 단지 내 취약계층, 상담창구 방문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시설 등

다) 사업내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심리지원 인프라·역량 강화, 세부 운영관리 및 연계체계 구축, 사업성과관리 등 지원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지역)을 대상으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

☑ < 마음안심버스 >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재난 심리지원 실시

(2) 사업내용

- (홍보 및 캠페인) 정신건강, 중독, 자살 문제 등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 수행
-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선별검사
-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연계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
 - 취약지역 중심 운영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연계
 -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

(4) 운영기관

- 총 45대(광역 10대, 기초 35대) 배치

※ 세부사항은 마음안심버스 운영 안내 참조

6)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가) 사업목적

청년층 중증정신질환을 조기발견·개입하여 빠른 회복 및 만성화 방지 지원

나) 사업대상

- 19세 ~ 34세 청년
 - ※ 지역여건에 따라 15~39세 청년대상서비스 제공 가능
 - 초발정신질환 청년(정신질환 발병 5년이내)
 - 정신증 고위험군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다)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자원*을 통한 정신증 고위험군 발굴, 인식개선 등
 - * 대학교, 병무청, 청년센터,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 조기개입
 - 맞춤형 사례관리, 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 프로그램* 등
 - * 인지행동치료, 증상관리교육, 가족중재, 신체건강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 또래 자조모임 운영·지원 등
 - ※ 정신증 초발, 고위험군 청년은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인접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으로 우선 의뢰

〈 청년마음건강센터 〉

- 전국 17개 시·도 운영(독립형 2개소, 부설형 15개소)
 - 독립형: 충남아산시, 전남순천시
 - 부설형: (광역)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기초) 부산진구, 광주북구, 경기남양주시, 강원춘천시, 경북포항북구
 - ※ 세부사항은 청년마음건강센터 안내서 참조

7) 중독관리 지원사업

- 지역사회 중독건강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확산
- 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및 콘텐츠 기획·개발 및 확산
- 중독예방 인식개선 등 홍보, 교육, 캠페인
-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 중독 정신건강 인적자원 개발 등

※ 세부내용은 다.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참조

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구분	사업영역	세부사업
기본 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 •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지원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위기개입업무 •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지원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특화 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 찾아가는 심리지원
		• 기초단위 재난심리지원업무
		•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홍보·협력체계 구축
		• 중독관리 지원업무

※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기본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

1) 사업대상

가)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주민

나) 등록기준

-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로, 센터 등록에 동의한 자
 - 정신질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뇌전증, 치매, 지적장애, 발달장애는 제외
 - ※ 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 의뢰할 수 있음.

다) 퇴록기준

- 사망(질병, 각종사고, 자살, 기타), 전출·연계(전출일반, 기관연계), 서비스 종결(협의종결, 부재종결, 기관종결, 본인희망), 자살위험감소, 오등록, 기타
 - ※ 세부 내용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매뉴얼 참고

2)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가) 조기발견

(1) 사업목적

- 초발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등 조기개입을 통해 치료의 효과성을 높여,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 예방
- 관리·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수요에 맞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2) 사업내용

- 지역사회 자원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초발정신질환자 조기발견
 -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 주기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기관별 역할구분 및 사례공유 등 상시 협력체계 마련
 -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기관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 의뢰 시 사전에 대상자 동의를 받아서 연계
- 등록 전 대상자의 포괄적 사정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면·비대면 접촉하여 증상, 치료 여부 등 파악하고 등록유도
 - ※ 자·타해 위험성 평가 등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방향을 결정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의뢰대상자(기관)에 현황을 공유, 타 지역자원 연계·의뢰 및 관리지원, 재의뢰 절차를 안내
 - 의뢰받은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거부시 의뢰기관과 센터 간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개입 및 서비스 제공 방법, 개입중단 등에 대한 결정 필요
- 정신건강 전문서비스 추진
 - 임상적 고위험군에 대한 일차적 평가체계 구비
 - 임상적 고위험군의 평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자문체계 운영
 -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초발중증정신질환자에 특화된 사례관리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운영

(3) 주요 협력기관의 예

- 학교(교육청, Wee센터), 복지기관(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병무청, 고용센터, 청년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보건소(방문건강관리팀) 등

나) 사례관리

(1) 사업목적

- 중증·만성질환자의 정신과적 증상관리 및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 안착과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서비스 내용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요구에 따른 개별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요구도 평가에 기반하며, 초기평가 이후 180일 간격 1회 이상 수립
 - 입·퇴원, 증상 및 기능의 변화시점에 수립 필요
 - 증상 및 기능 평가적 요소,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제시 필요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참여 권장
 - 사례관리 등록, 퇴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매뉴얼 구비 필요
 - ※ 사례관리 매뉴얼은 자체개발 또는 광역단위에서 개발하여 공통 적용 가능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역 보건·복지자원연계를 통한 요구도 반영 필요
 - 정신건강서비스 외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관리, 돌봄, 직업재활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지역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 사례관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과 연계·지원
 -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행복e음 연계 메뉴 활용해 보건·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수신
 - ※ 지역유관기관과의 연합사례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권고
 - 센터 이용대상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 재활지원

- 사례관리 기반으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로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주간재활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약물증상관리, 직업재활, 기타재활 등) 운영
 - 지역자원이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요구(need)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권고
 - 지역자원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재활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운영 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 포괄성 향상

☑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

(1)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의 자립도모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
- 지자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지역협력서비스 구축
- 중증정신질환자의 회복지원서비스 모형 확산

(2) 사업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에 동의한 자로 만 19세 이상 중증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우려가 적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 및 자립(주거·취업) 욕구가 있는 자

(3) 사업내용

- 장기입원(소) 및 고립된 정신질환자 발굴·지원
- 일상생활지원: 위생관리, 금전관리, 대중교통, 전자기기 사용, 지역사회초기적응지원 등
- 건강지원: 약물관리, 운동프로그램, 대사증후군 관리, 식단관리 등
- 취업지원: 직업상담, 면접준비, 직업훈련, 취업장 방문, 취업장 개발 등 고용활동 지원
- 주거지원: 주거자원 연계를 통한 독립생활 지원, 가사업무 코칭, 주거 위생·안전·환경 개선, 체험주택, 지원주택 등 제공
- 동료지원가 지원: 동료지원가 양성, 활동지원(회복경험 공유,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동행,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
- 회원자치활동: 회복지원공간 공동체생활로 부서활동(일 중심 일과) 추진
 - ※ 지역 여건 및 이용자 요구에 따라 지역특화프로그램 구성

(4) 운영기관

-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광주광역시, 용인, 화성, 구리, 춘천, 전주, 정읍, 구미, 제주)
- (정신건강협의체) 지자체 및 보건소
- (회복지원사업 전담팀) 정신건강복지센터
 - ※ 세부사항은 회복지원사업 안내 참조

라)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

(2) 지원종류 및 대상

- (행정·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보호 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 치료 지원
- (발병 초기) 조현병 등으로 처음 진단 받은 대상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여 지속 치료 유도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로,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에 해당되는 자
- (외래치료 지원) 퇴원 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3)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 조회에 회신
-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 세부내용은 IV.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통추진사업-3.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참고

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지원

(1) 주요업무

- 입원 연장 청구대상자에 대한 면접 평가 지원
-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집중적인 사례관리
 - * 상기업무는 시·도, 시·군·구의 업무수행체계 구성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수행할 수 있음

(2) 실적보고

- 시·도는 별도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기 시·군·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실적[별지 제Ⅳ-5-1호]을 취합하여 매 분기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지원함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가) 정신건강 위기개입업무

(1) 사업목적

자·타해 위험 등 지역사회 내 정신과적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2) 사업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 * 조현병, 급성정신병, 주요우울증,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알코올사용장애, 약물 남용 등의 물질 관련 장애
 - ※ 단순 주취자, 심한 만취상태로 상담 및 평가가 불가한 경우,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과적 평가보다 신체적 처지가 우선인 경우 등은 대상이 아님
-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시 정신과적 위기상황 평가 필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자

(3) 주요업무

- 현장대응은 2인 이상 배치하여 종사자 안전보장 필요
- 위기개입 요청 시 대응
 -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 ※ 한국형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척도 단축형(CRI-SF) 활용,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의 위험평가 안내 참고
 - 현장대응, 전화상담, 내소상담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
 -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 자원파악 및 정보제공, 응급입원 대응지원
 - 자·타해 위험성이 높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경찰·소방 등 정신응급 대응기관과 협력하여 개입
- 응급입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대응
 -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지인에게 정신질환 상황안내 및 퇴원 후 서비스 안내
- 응급입원 등 의료기관 퇴원 후 개입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담당자 배정·등록조치
 - * 개별상담,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치료연계, 자조모임, 치료비 등 지원
 - 대상자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파악 및 정보제공 등

나) 정신건강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지원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지자체 관할 정신건강, 경찰, 소방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지원

- 정신 위기상황 시 신고, 현장대응, 이송, 사후관리 및 예방 등 각 단계별 안전보장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성·지원

(2) 협의체 구성 (※ 아래 각 기관별 담당자 필수참여)

- (보건소) 협의체 운영총괄, 보건소장(위원장, 당연직)
- (정신건강전문기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의료기관 담당, 응급진료협력병원 관계자
- (경찰) 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
- (소방) 지방소방청 담당 부서장 또는 정신질환자 관리 담당
- (그 외)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3) 협의체 주요안건

- 지역사회 정신 위기대응 현황 및 추진체계 점검,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정신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지역 내 적용
- 지역 내 정신 위기대응 관련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 논의·적용

(4) 협의체 운영방안

-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고, 협의체를 대표함
-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가능
- * 수시 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함

(5) 행정사항

- 시·군구는 정신건강 협의체 구성 및 정신건강문제 위기대응 현황, 정신의료기관 대상 응급진료를 위한 협력병원 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지체없이 제출 필요

다)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1) 운영목적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국민의 정신과적 위기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

※ 법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8항, 제15조제9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2) 운영주체

- 주간(9:00~18:00): 이용자 거주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야간(18:00~익일9:00) 및 휴일: 위기개입팀

(3) 주요업무

- 자살 위기 및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상담
- 정신건강 정보 및 정신의료기관 등 안내
- 필요시 경찰·소방 등 개입요청 및 정신응급 대응

(4) 운영방식

- 24시간 전국 어디든지, 누구나 정신과적 위기상황 시 공통 번호(1577-0199)로 전화 가능
- 정신건강위기상담 발신 시 휴대전화 이용자 기준 기지국을 경유해 가장 가까운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라우팅 서비스 제공

(5) 운영원칙

- 운영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 우선적으로 배치
 - ※ 불가피하게 전문요원이 아닌 자를 배치할 경우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교육 이수 필요
- 정보공유: 자·타해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에 개입요청
- 기록관리: 수신, 발신(재상담 포함) 모든 상담 건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작성
- 대상자의 폭언 등 대처를 위해 녹음 전화 등 운영할 수 있음
 - 녹음에 대해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녹음 중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저장된 녹음파일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처리

(6) 행정사항

- 1577-0199 착신번호 신규등록 및 번호변경: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에 문의

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가)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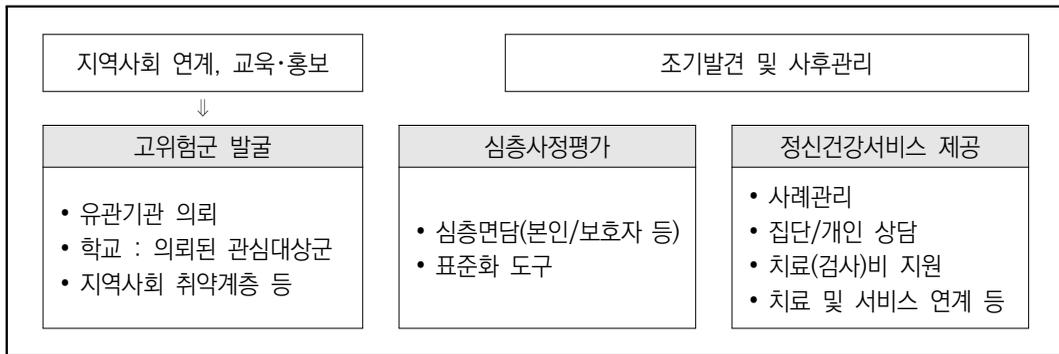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 지원

나) 사업대상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고위험군
※ 본인 및 보호자 동의 필수

다)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사업 추진 체계도 〉



(1) 사례관리

- (발굴) 지역사회 유관기관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 모집 등에 의해 대상자 발굴
- (심층사정평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사정
 - 심층사정평가는 필요한 경우 대상자 가정이나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담당자가 진행하되, 담당자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등 활용
- (서비스 제공) 심층사정평가를 통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정신건강 문제의 종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서비스 결정
 -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학교 간 연계를 통해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운영
 - 사례관리자는 시설(학교)을 방문하거나, 센터로 내소시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전화상담, 가정·지역사회 방문 등도 실시(서비스 이용 여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평가) 제공 전과 등록이후 6개월 마다 SDQ-Kr[별지 제 II-2-2호] 점수 변화를 측정

(2) 치료연계 및 치료비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긴급복지 지원중인 아동·청소년까지 지원 가능
 -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대상 및 규모, 기본방침 등 결정
- (지원금액)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또는 센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치료비용(약제비 포함),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치료 및 약물 복용의 순응정도, 증상의 호전, 기타 어려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함.
 - 지자체의 다른 사회복지사업 또는 청소년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 (증빙자료) 진료비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그 외 센터에서 필요한 서류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원 비용이 정신의료기관 진료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 사용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
 - 진료비 영수증 접수 시 진료비 지원 즉시 처리 필요
 - * 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3)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할 수 있는 체계 안내
 - * 교육청, 학교(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사법기관(소년원 등), 직업시설 등
 - ** 정신건강고위험군의 범위: 척도검사상 고위험으로 선별된 자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선별검사 관리안내 교육 등
 - *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관찰, 특이사항, 대면 기술, 아동청소년 우울 및 자살 예방 교육 등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1) 사업대상 (다음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인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로 센터 담당자가 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2) 제공비용/지원기간: 월 18만원 / 12개월(재판정 1회)

〈 서비스 비용 부담비율 〉

구분	1등급(수급자,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6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2) 연계방법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 추천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의로 발급하고, 서비스 신청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 아동·청소년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 선정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 내 제공기관 확인 가능

5)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

가) 사업목적

- 청년층 중증정신질환을 조기발견·개입하여 빠른 회복 및 만성화 방지 지원

나) 사업대상

- ※ 지역여건에 따라 15~39세 청년대상서비스 제공 가능
- 초발정신질환 청년(정신질환 발병 5년 이내)
- 정신증 고위험군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다)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자원*을 통한 정신증 고위험군 발굴, 인식개선 등
 - * 대학교, 병무청, 청년센터,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 조기개입
 - 맞춤형 사례관리, 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 프로그램* 등
 - * 인지행동치료, 증상관리교육, 가족중재, 신체건강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 또래 자조모임 운영·지원 등
 - ※ 정신증 초발, 고위험군 청년은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인접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으로 우선 의뢰



< 청년마음건강센터 >

- 전국 17개 시·도 운영(독립형 2개소, 부설형 15개소)
 - 독립형: 충남아산시, 전남순천시
 - 부설형: (광역)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기초) 부산진구, 광주북구, 경기남양주시, 강원춘천시, 경북포항북구
- ※ 세부사항은 청년마음건강센터 안내서 참조

6)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가)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확대 및 정신건강증진 도모

나) 사업대상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위기가구, 취약지구 아파트 단지 내 취약계층, 상담창구 방문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시설 등

다) 사업내용

- (방문상담) 지역 복지체계에서 발견된 정신건강 위기가구가 이동취약계층일 경우, 복지담당자가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 시 방문상담 제공
 - (출장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요 마을 단위로 상설 또는 비상설 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 (상담창구 개설) 기초자치단체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상담창구를 개설,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이 출장 상담 제공
 - (마음안심버스)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
- ※ 위에서 제시한 4개 사업내용 중 지자체 상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 사업추진 필요



< 마음안심버스 >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재난 심리지원 실시

(2) 사업내용

- (홍보 및 캠페인) 정신건강, 중독, 자살 문제 등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캠페인 수행
 -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선별검사
 -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연계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 고위험군 사례관리 연계
-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

※ 세부사항은 마음안심버스 운영안내 참조

7)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기초단위 재난심리지원 업무

가) 사업목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

나) 사업내용

- 소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총괄
-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재난 경험자 사례관리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재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2인 이상) 지정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통보

8)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홍보·협력체계 구축

가) 사업목적

지역사회 대상 정신건강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신건강·중독문제 관련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 도모,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지원 강화

나) 사업내용

- **(교육)**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선별검사 관리안내 교육 등 시행
- **(홍보)**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수행
-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유관기관(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 협의체에 정기적으로 운영·참여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

예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협의체, 위기대응협의체, 인권개선협의체 등

※ 중앙·광역단위에서 마련한 교육·홍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자체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캠페인 운영에 과도한 인력·예산 지출 지양하고 최소한 필요한 수준으로 운영

9) 중독관리 지원사업

가) 관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 중독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로서 중독대상자 조기발견 및 의뢰

나) 관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독사업 대상자 의뢰연계, 관리체계 활성화
 - 중독관련 검진도구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사정평가
 - 치료연계 및 모니터링
 -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운영
- ※ 세부내용은 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참조

다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구분	사업영역	세부사업
기본 사업	광역단위 중독사업 기획 및 운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확산 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및 콘텐츠 기획·개발 및 확산 중독예방 인식개선 등 홍보·교육·캠페인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기초중독센터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중독 정신건강 인적자원 개발
특화 사업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기본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

1) 광역중독관리사업 기획 및 운영업무

가)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확산

(1) 사업목적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문제 현황 및 치료·재활 인프라, 서비스 이용현황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광역중독관리사업을 개발 및 수행하기 위한 근거마련

(2) 사업내용

- 지역사회 중독질환 유병률 및 위험요인 현황 분석
 - 지역사회 중독문제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 지역 내 중독질환의 치료·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이용현황 등 조사·분석 등
- * 관할지역 내 중독질환 치료 의료기관 및 치료·재활 지원 시설·기관(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스마트쉼센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

(3) 참고자료

- 정신건강실태조사,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등
- 마약류 범죄백서, 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등 각종 중독 관련 조사 및 통계 등

나) 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및 콘텐츠 기획·개발 및 확산

(1) 사업목적

지역사회 중독문제, 중독 정신건강 서비스 현황,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중독사업 기획·개발·확산을 통한 지역주민의 중독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사업 효율화 실천

(2) 사업내용

-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관련 현안, 지역주민의 중독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needs), 이해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자문, 국내외 우수사례 등 조사분석
- 지역 맞춤형 중독 정신건강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계획 내 반영, 시범사업 실시
- 지역 맞춤형 중독 정신건강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 지역 내외로의 확산·발전을 위한 중독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

다) 중독예방 인식개선 등 홍보·교육·캠페인

(1) 사업목적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이용률 제고

(2) 사업내용

-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유관 시설, 제공서비스 등 광역중독관리체계 홍보
- 지역사회 중독문제의 현황 및 치료·관리의 필요성 교육 및 홍보

(3) 사업운영

- 광역단위(광역 내외) 및 관할 지자체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수행
 - (역할) 홍보·캠페인 기획,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연계확산 등
 - (홍보 매체) 홈페이지 운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용 카드뉴스, 어플리케이션 활용, 포스터, 리플렛, 교육 책자, 언론 기고 등

라)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중독 정신건강 유관기관 등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지역사회 내 중독 정신건강 유관 기관의 분포, 인프라 현황 관련 조사·분석 및 지역주민 대상 안내
 - 시군구 지역별 중독유형별(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 서비스 지원체계 안내
- 지역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중독 정신건강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 중독 관련 문제(응급·일반)시 상호협력 및 연계를 위한 공동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확산

2)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업무

가)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운영지원 및 관리

(1) 사업목적

-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련 서비스의 질, 전문성 제고
-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에서 제공되는 중독관리 서비스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평가·관리를 통한 효과적 중독관리 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시·도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컨설팅 지원
-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실무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홍보·교육 지원
- 지역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기타 중독 치료·재활 지원시설·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지역 중독관리서비스 유형 및 내용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외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평가 및 관리

나) 중독 정신건강 인적자원 개발

(1) 사업목적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2) 사업내용

-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실무자 대상 중독 관련 전문교육 운영
 - 실무자(직급, 경력, 면허사항 등 고려) 대상 교육 수요조사
 - 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예시 신규 종사자 교육 및 보수교육, 기타 중독관련 센터 간 교환 교육 운영 및 지원 등
- 교육과정 운영 및 만족도(현업적용 가능성, 난이도의 적합성 등) 관리

3)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사업

가)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지원

(1) 사업목적

중독 회복자 중심의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모델 구축, 이를 통해 당사자 중심 회복지원 기반마련 및 동료지원가 활동참여자의 자활자립 제공

(2) 사업내용

- 시·도 내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자 대상 중독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홍보
-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및 관련 지원
- 지역 내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
- 지역 내 활동 중인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슈퍼비전 및 역량강화교육 시행
-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외부 확산

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구분	사업영역	세부사업
기본 사업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전 대상자 상담 • 단기개입상담(SBIRT)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 • 가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서비스 - 교육 및 프로그램
특화 사업	지역사회 중독정신건강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실태조사 •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중독관리사업 (해당 사업예산을 받는 경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 취약계층 관리사업 (해당 사업예산을 받는 경우 필수) •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기본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사업 추진

1) 사업대상

가)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주민

나) 등록기준

- 지역사회 내 중독문제가 있어 고위험군 이상으로 선별된 대상자 및 가족
 - 정신질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뇌전증, 치매, 지적장애, 발달장애는 제외
 - ※ 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연계, 의뢰할 수 있음.

다) 퇴록기준

- 사망(질병, 각종사고, 자살, 기타), 전출·연계(전출일반, 기관연계), 서비스 종결(협의종결, 부재종결, 기관종결, 본인희망), 자살위험감소, 오등록, 기타
- ※ 세부 내용은 2024년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매뉴얼, 2023년 개정판 중독정신건강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2)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가) 등록 전 대상자 상담

(1) 사업목적

개인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경찰, 행정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의뢰접수 된 대상자에게 조기선별 및 중독상담 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내소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가정방문 및 지역 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사정평가
- 초단기개입을 통해 단기개입 및 집중단기개입으로 연계되도록 동기 강화

나) 단기개입상담(SBIRT :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

(1) 사업목적

중독자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SBIRT :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 적용 단기개입 서비스를 통한 중독 고위험군 조기 중재 및 의뢰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중독 고위험군 조기선별 및 단기개입
 - 타 기관에서 조기선별 및 현장단기개입(On site) 1회기 후 의뢰한 경우, 의뢰서를 통해 최초 상담 입력 후 바로 집중단기개입 시행
 - 중독센터에서 조기선별부터 바로 개입하는 경우, 조기선별도구(AUDIT-K 등)를 활용한 선별 및 초단기개입 실시
 - 중독 고위험군으로 선별시, 1회기 단기개입, 3회기 이상 집중단기개입, 치료 의뢰 서비스 수행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체계 구축
- ※ 단기개입서비스는 반드시 대면상담으로 수행

〈 조기발견 및 단기치료-SBIRT 흐름도 〉



3)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가)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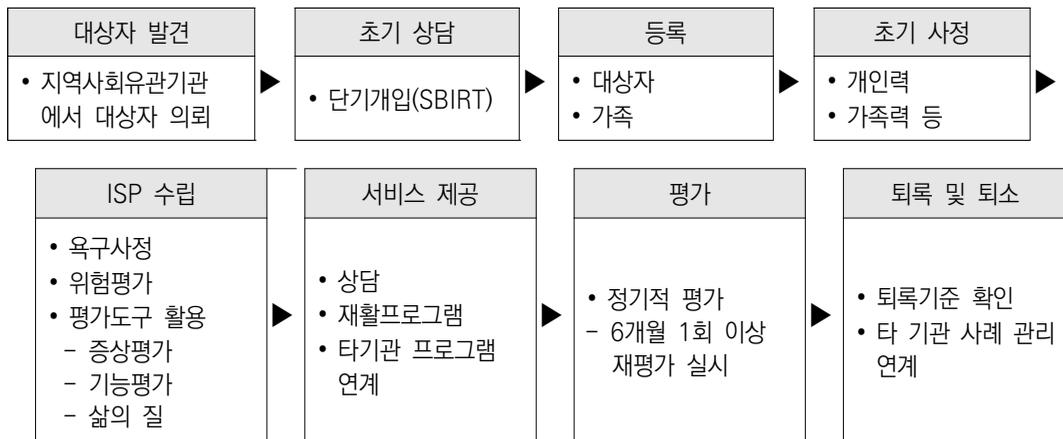
(1) 사업목적

중독질환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중독질환의 효과적 관리

(2) 사업내용

- 중독자 고위험군 등 등록 및 맞춤형 ISP 수립
 - 지역사회 유관기관(경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서 의뢰된 대상자 등 신규 발견된 중독질환자와 가족에 대해 사례관리 대상자 등록 면담, ISP 수립 등의 사례등록 수행
 - 초기사정: 대상자의 욕구 및 개인력, 병력, 치료력, 가족력 등을 사정(문제 개선 욕구, 자원 및 강점 등을 사정)
 - ISP 수립: 대상자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계획 수립
 - ※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관련 세부사항은 「중독 정신건강 표준사례관리 매뉴얼」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참조
- 등록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개별 및 가족상담(가정방문 및 내소상담), 자원관리 및 조정, 퇴원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조정, 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대상자 욕구에 따른 타기관 서비스 연계, 반기별 ISP 수립 수행
 -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외부 슈퍼비전 체계 운영

〈 지역사회 내 중독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과정 〉



나) 중독질환자 재활프로그램

(1) 사업목적

중독질환자의 재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지를 통한 재발방지 및 사회적 관계 지지 형성

(2) 사업내용

- 중독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독 정신건강 교육, 인지행동, 재발예방, 12단계 촉진, 동기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관계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등 네트워크 형성
 - 정기적으로 재활 프로그램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포괄성 향상

다) 가족지원 사업

(1) 사업목적

중독질환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독질환자·가족의 변화 및 회복 도모

(2) 사업내용

- 중독질환자 가족 신규발굴 및 상담서비스
 - 중독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등록관리 서비스 운영
 -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족모임 지원 프로그램
 - 중독질환자 가족모임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 시행
-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신규 발견된 고위험군, 등록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실행
 - 집단상담, 명상, 야외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가족을 위한 중독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중독정신건강증진사업

※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부재 지역의 경우, 아래의 광역형 사업 중 선택하여 특화 사업으로 실시가능하며, 사업 세부사항은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참조

가) 지역사회 중독 정신건강 실태조사

- 지역사회 중독질환 유병률 및 위험요인 현황 분석
 - 지역사회 중독문제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 지역 내 중독질환의 치료·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이용현황 등 조사·분석 등
- * 지역 내 중독질환 치료 의료기관 및 치료·재활 지원 시설·기관(기초형 중독관리 센터, 스마트쉼센터, 도박문제관리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

나)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홍보

- 지역사회 중독관리체계 홍보 및 중독문제 현황·치료·관리 필요성 관련하여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배포,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 연계확산 등 시행
-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직장인, 노인, 지역주민 등) 대상의 중독문제 예방 교육 시행

5) 청년중독관리사업

가) 사업목적

청년층 대상 알코올·마약류 등 중독 정신건강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상담·치료관리·자조모임 등 운영)

나) 사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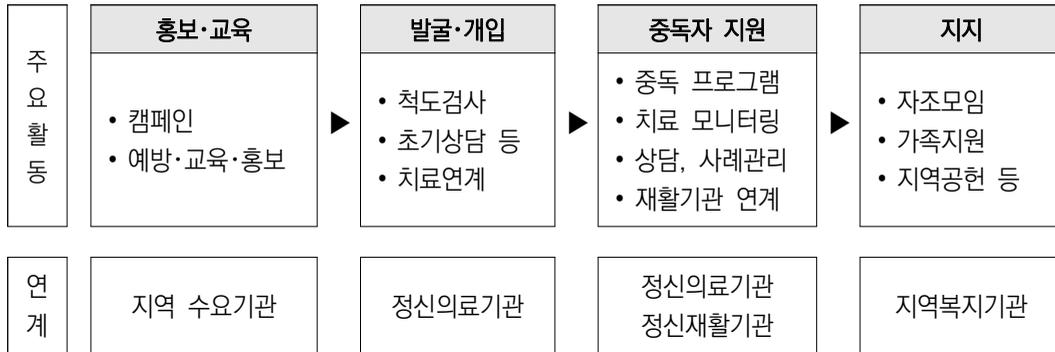
지역 내 청년(만15~39세)

다) 사업내용

- 홍보·교육
 - 유관 지역자원 연계,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교육 실시 및 지원
 - 청년층 집중지역·시설(대학, 직장,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병무청 등) 등 유관 지역자원과 협력해 예방 등 홍보·교육
- 발굴·개입
 - 연계 또는 직접 발굴 통해 검사·초기상담 및 등록·치료 연계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병무청, 청년센터, 지역고용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영서포터즈 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지원 및 검사, 초기상담 등 연계체계 구축

- 지원
 - 중독자 사례관리, 주·야(·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치료연계 및 동기강화를 통한 중증·만성화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 지지
 - 자조모임, 중독자 가족지원, 지역공헌활동(인식개선) 등 운영·지원

〈 사업체계 〉



6) 노숙인 등 취약계층 관리사업

가) 사업개요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나) 사업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 지원 또는 연계할 기관 및 자원 현황 파악
 - ※ 지원대상기관: 노숙인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법무부 보호관찰소, 경찰서, 소방서, 종합사회복지관, 가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 연계기관과 MOU 체결 등 공식적 협력체계 망을 구축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마련
 - 연계기관과의 정기적 업무회의, 통합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기관 및 종사자 간의 상시협력
- 유관기관 역량강화 지원
 -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이 중독문제 선별 및 기본적 예방교육 등을 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할 중독 관련 예방교육 개발 및 운영 지원
 -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연계, 협력 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유관기관 내 중독자 발견 및 사례관리, 교육 서비스**
 - 유관기관 내 사업대상자에 표준화된 도구(AUDIT 등)를 활용한 중독문제 선별과 피드백 및 단기개입 서비스의 직접 제공 또는 지원(진단적 평가 및 ISP 수립 등)
 - 사례관리 서비스는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례관리 과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 관리·감독하며, 지원대상 기관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치료 내용 및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의 증상, 동기수준에 맞추어 상담·교육 프로그램 구성
 - 집단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공동 개발

〈 사업체계 〉

구분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강화지원	유관기관 중독자 발견/사례관리, 교육서비스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 현황 파악 • MOU 체결 • 통합사례회의 •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 중독관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및 운영지원 • 연계기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문제 선별 및 단기개입서비스 • 유관기관 등록 대상자 사례관리 • 복지 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지원 • 교육콘텐츠 지원 및 공동개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관련시설 • 보호관찰소 • 경찰 및 소방 • 행정복지센터 •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체결유관 기관 • 수요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체결유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체결 유관기관

7)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지원

- 중독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홍보
-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운영 및 관련 지원
- 지역내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
- 지역내 활동중인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슈퍼비전 및 역량강화교육 시행
-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외부 확산

마 성과관리 및 평가

1)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관리

가) 운영목적

- 지역 및 기관간 정보연계를 강화하여 퇴원·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고 보건·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통합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간 연계의뢰 활성화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수립

나) 시스템 주요기능

- (정신건강 접수상담) 접수상담 대상자에게 대면·비대면 상담 내용 관리기능 제공
- (정신건강 사례관리)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욕구사정 평가, 개별서비스 계획(ISP) 수립·제공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사례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지원
- 타 기관과의 연계 및 서비스의뢰 등 지속적인 대상자에 대한 개입에 대한 관리기능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업무지원) 정신건강증진 영역의 예방 및 증진사업(교육, 홍보, 행사, 캠페인, 세미나)에 대한 관리기능 제공
- 지역사회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 및 지역사회 기반 조사연구 수행에 대한 관리기능 제공
- (통계 및 실적관리)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실적, 통계자료 등을 제공

다) 시스템 탭별 주요관리 정보 현황

- (접수상담) 등록 전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및 정보제공
- (등록회원 사례관리) 등록회원에 대한 사정평가, 평가도구, 개별서비스계획(ISP), 개별상담, 자원조정, 그룹프로그램 운영 등 사례관리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관리
- (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한 교육, 행사, 조사·연구
-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사업(교육, 행사, 캠페인, 세미나)에 대한 기록관리
- 지역사회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은 ‘자원관리’ 탭에 기록 관리
- 지역사회기반으로 조사나 연구사업 수행시 ‘조사/연구’ 탭에 기록 관리
- (대상자 의뢰·연계)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의뢰연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읍면동) 등 보건복지 관련 기관 간 대상자 개입 및 서비스 제공
- 정신의료기관 등 퇴원·퇴소자에 대한 퇴원통보 정보 수신 및 처리

- 범정부 기관(병무청 등)에서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의뢰
- (유틸리티) 시스템 사용에 있어 유용성 있게 사용하도록 회의록, 근무일지, 출장내역, 일정 관리 등 유틸리티 기능 지원
- (통계 및 지표) 등록된 회원명부, 등·퇴록 회원현황, 의뢰·연계 내역, 평가도구 및 ISP실적 등 전반적인 실적 통계관리

라) 업무실적표

※ 업무실적표는 [별지 제 II-2-4호~10호] 참고

- 조회일자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실적 등 사업별 업무 실적표 14종 실시간 확인 가능
- 업무실적표(마감) 조회처리 방법
 - 기준 연월을 기입하고 추출하고자 하는 업무실적표 양식과 기관유형을 선택
 - 인쇄하여 출력하거나 필요시 다운로드 사유 입력 후 엑셀다운 받아 활용
- 업무실적표(마감)는 익월 15일 이후에 데이터가 생성되고 마감 이후 데이터 보정 불가(시도, 보건복지부 업무실적 제출 시 활용)

2) 2026년('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가)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내 등록된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과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를 파악하여 정신건강현황 파악
 - * 해당연도 기관 내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
 - * 해당연도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 (평가목적)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의 전문인력·인프라 확충 유도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개입 환경 구축
- (평가대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자살예방센터(독립형)

나) 2026년('25년 실적) 방문건강관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추진방향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및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등록된 정신질환자수 증가를 추이를 파악하여 일반 국민대상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필요

- 정신건강사례관리수준 평가를 통해 적정 사례관리자수 확보와 지역정신건강 관리서비스 내실화

〈 2026년('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

국정 목표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약속	4-15.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국정 과제	4-15-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지표명	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지표 성격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국가주요시책, 국고보조사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17. 5. 30. 시행)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책임성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의 내실화 및 일반 국민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필요 - 사회서비스일자리 로드맵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인력 충원 및 관련기관 확충을 통한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유도			
지표 유형	정량	공동	정순	계속(변경)
지표 설명	지표명 설명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수준 점검 1.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 2.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평가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평가목적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의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신건강관련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개입 환경구축 실현기대		
	기대효과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증가, 국정과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년)의 적극적 실행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의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 활성화 필요		
측정 방법	○ 산식 1.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60점) $= \frac{\text{당해연도 신규 등록자 수 (A)}}{\text{전체 등록자 수 (B)}} \times 100$ 2.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40점) $= \frac{\text{분기별 등록자 수의 합 (E)}}{\text{분기별 사례관리자 수의 합 (F)}}$			

○ 산식 설명

1.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①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②③}

- ①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자살예방센터(독립형)
- ② (전체 등록자 수) 해당년(1.1.~12.31.) 동안 지역 센터 등록자 실인원*
* MHIS 산출기준^{①②③} 모두 만족(① 사정평가 인적정보 입력, ② ISP 수립, ③ 개별상담실시) MHIS) 통계 및 지표) 정부합동평가 조회(신규등록률): 전체등록자 수(실인원) 1~12월
- ③ (당해연도 신규 등록자 수) 해당년(1.1.~12.31.) 동안 지역 센터에 신규로 등록된 실인원* (1년 이내 재등록자 제외)
* MHIS 산출기준^{①②③} 모두 만족(① 사정평가 인적정보 입력, ② ISP 수립, ③ 개별상담실시) MHIS) 통계 및 지표) 정부합동평가 조회(신규등록률): 신규등록자 실인원 1~12월+재등록자 실인원 1~12월
- ④ (평가기준) 신규등록률(0~15%*) x 3 + 15점
* 등록률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15%(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① 사례관리자^②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③④}

- ①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기초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자살예방센터(독립형)
- ② (사례관리자)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의 상근인력* 중 사례관리하는 회원이 1명 이상인 종사자
* 주 5일 및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이며, 센터장은 제외
**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상근인력 인정
- ③ (등록 정신질환자) 해당 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
- ④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분기별로 사례관리자*, 등록 정신질환자**를 집계하여 사례관리자별 담당하는 분기별 정신질환자 수의 합 산출
* 별도 수기 조사 (국립정신건강센터)
** MHIS) 통계 및 지표) 업무실적) 마감통계(3,6,9,12월)) 월말 회원 수(가족 등록자 제외)
- ⑤ (평가기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1인당 담당 정신질환자 수 축소 지향

초과(명)	-	29.4~	32.4~	35.4~	38.4~	41.4~	44.4~	47.4~
이하(명)	29.4	32.4	35.4	38.4	41.4	44.4	47.4	-
점수(점)	40	37	34	31	28	25	22	20

- 목표치: 80점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전체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의 합 기준
- 평가기준일: 2026.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구분	1. 정신질환자 신규등록률				2.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총점 1+2
	당해연도 신규 등록자 수(A)	전체 등록자 수(B)	신규 등록률 (C)= A/B ×100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반올림)	점수배점 기준 (D)= C(0-15) C(15-19)	1.점수 =D)×3 +15점	등록 정신질환자 수(E)	사례 관리자 수 (F)	1인당 등록 정신 질환자 수 (G)= E/F	
○○사도 (○○○○합계)									
○○시									
○○군									
○○구									

※ : 직접 입력 / : 자동계산

3)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가) 센터평가 개요

- (관련근거)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6-1-3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해 서비스 제공역량 강화('23~)
- (필요성)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내용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
- (평가목적)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사업수행 수준을 평가하고, 최소 또는 적정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으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평가대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단, 운영기간 3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유예)
- (평가주체)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평가주기) 2년에 1회 실시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초·중독 평가	(기초·중독 컨설팅)	기초·중독 평가	(기초·중독 컨설팅)
(광역센터 컨설팅)	광역 평가	(광역센터 컨설팅)	광역 평가

- (평가내용) ① 기관운영(지속가능한 정신건강사업 운영시스템 체계의 적정성), ②사업운영(주요사업성과, 효율성의 조화, 서비스 만족도 등 사업운영활동 성과의 적정성)
- (평가방법) 광역센터-현장평가, 기초·중독센터-서면평가
 - 광역센터: 평가지표별 획득한 합산점수에 따라 평균점수 기준으로 PASS/FAIL 구분

등급구분	PASS	FAIL
평점	70점 이상	70점 미만

- 기초·중독센터: 총 100점 만점(평가지표별 획득한 점수 합산), 합산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등급구분	최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매우미흡(D)
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70점	70점-60점	60 미만

● (결과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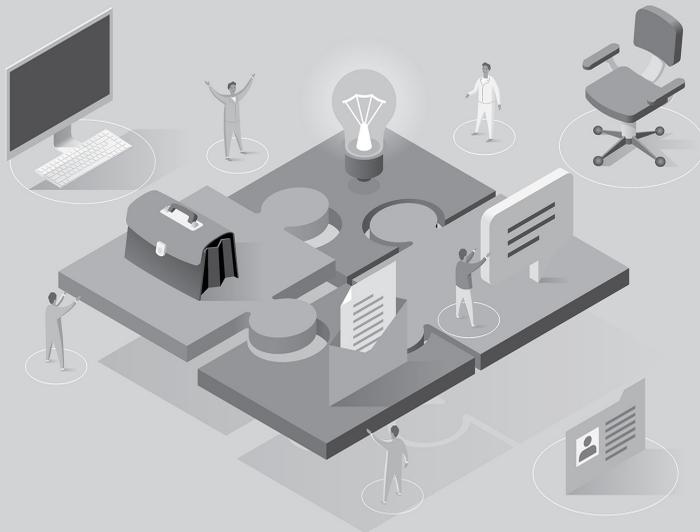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장관표창 등) 수여
- 평가결과 부진기관 지원(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
- 모범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나) 평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구분		센터유형	서면평가	현장평가
연구 수행	'21년	서면평가 추진하였으나(기초 205개소) 평가유예('21년) 신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연구* 수행		
시범 평가	'22년 (1차 시범)	광역센터		14개소
		기초·중독센터	39개소 (기초 36개소, 중독 3개소)	
	'23년 (2차 시범)	광역센터		16개소 (세종제외)
		기초·중독센터	144개소 (기초 94개소, 중독 50개소)	
본 평가	'24년	288개소, 기초센터(238개소)·중독센터(50개소)		
	'25년	광역센터(17개소)		
	'26년	291개소, 기초센터(238개소)·중독센터(53개소)		

* ①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체계 및 지표개발 연구, ② 정신건강증진 사업기관 역할 정립 및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 1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 3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
-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ART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03

1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급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치료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나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1) 정 의(법 제3조제5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2) 설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의사

3) 허가·신고권자: 시·도지사(병원급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원)

4) 입원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내지 제44조, 제50조에 의하여 입원이 필요한 자

5) 정신의료기관의 설치·규모의 제한 등

● 설치의 제한(법 제19조제2항)

-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 개설에 제한을 받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행위

1. 입원 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2. 시·군·구청장의 입원조치 해제요구에도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응급입원 이외의 경우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한 자

● 규모의 제한(법 제19조제3항)

- 300병상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존 병상을 증설할 수 없음(낮 병상은 제외)

● 설치기준

-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의료법 제3조 내지 제3조의5,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및 [별표 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자(신고수리자 포함)는 입원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환자간 접촉 방지 및 위생을 위하여 개별 침대형(Bed) 병상, 개인별 사물함 등의 설치와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의 개선을 권장할 수 있음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1) 목 표

급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통해 일상생활 유지 및 조기 사회복귀 도모

2) 정신의료기관장의 의무(법 제6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을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함

3) 입·퇴원 관리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퇴원신청서,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등 입·퇴원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보호의무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
-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된 정신질환자로서 입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입원 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연번	구 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1호	입원 당시 대면진단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주된 증상, 진단명, 입원등의 필요성, 자신의 건강·안전에 대한 위험 및 타해 위험 여부 다. 대면진단일시 라. 진단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소속, 연락처 마.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10년
2호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에서 퇴원등의 정기적 의사확인	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환자의사의 확인일시 다. 환자의 퇴원여부 의사표시 라.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 마. 환자의 퇴원여부 의사를 확인한 담당자 및 작성일	3년

연번	구 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3호	환자의 퇴원등 신청 및 거부	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퇴원등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퇴원신청일시와 퇴원신청사유 다. 퇴원등을 거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성명, 면허번호, 소속, 연락처, 퇴원등 거부사유와 환자에 대한 소견 라. 퇴원등 거부의 일시 마. 퇴원등 신청보호의무자에 대한 통지여부 및 통지내용 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여부와 전환일시	3년
4호	입원적합성심사 위원회 신고, 진단 및 조사, 결과	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영 제20조 각 호의 사항 다. 입원과정, 입원적합성 신고기관, 입원유형, 증빙서류 등 신고서 작성에 따른 사항 라. 대면조사 신청 여부를 확인 가능한 권리고지 및 확인서 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 수령일, 심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5년
5호	입원등연장심사 청구 및 결과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나. 동호인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보호입원등의 경우에 한한다) 다. 최초 입원등의 연월일 라. 입원등연장이 필요하다는 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 마.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수령일, 심사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10년
6호	투약 등 치료내용 진료기록	가. 투약 등 치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투약 등 치료지시자와 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다. 투약 등 치료의 일시와 내용	
7호	치료 프로그램	가. 치료프로그램 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치료프로그램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다. 치료프로그램의 일시와 내용	
8호	격리·강박	가. 격리·강박을 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격리·강박을 한 사유와 내용 다. 격리·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격리·강박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마. 격리·강박의 개시·종료시간 바. 격리·강박 중 감시조치의 일시, 수행자, 감시조치의 내용 사. 격리·강박의 종료사유 아. 약물 등을 통한 화학적 강박의 경우 그 약물의 투약일시, 약물의 명칭과 투약량, 횟수 등	5년
9호	통신·면회 제한	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다.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종료시간	

연번	구 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10호	작업치료	가. 작업치료를 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작업치료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다. 작업치료의 수행일자, 개시·종료시간 라. 작업치료의 내용과 활동내역 마. 작업치료에 따른 보수지급이 있는 경우, 보수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3년
11호	특수치료	가. 특수치료를 받은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특수치료의 명칭, 치료일자, 개시·종료시간 다. 특수치료의 방법과 내용 라.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마.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바. 특수치료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사. 특수치료를 위한 협의체 구성원의 회의내용 및 결정내용, 회의일시 및 장소	
12호	퇴원등	가. 퇴원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퇴원등 일시와 퇴원등의 사유 다. 퇴원등을 하는 경우 퇴원통지 수령자 및 통지일자 라. 퇴원등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 후 지원조치 동의여부, 통보기관 및 통보일자	
13호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 (청구의 결과가 나온 후에 기록 하는 것으로 한다)	가.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퇴원등 처우개선 심사청구의 일시, 취지, 사유 다. 심사청구의 담당기관 송부일 라. 심사청구의 내용과 결과	5년
14호	법원 인신보호 청구 및 국가 인권위원회진정 (인신보호청구나 진정의 결과가 나온 후에 기록 하는 것으로 한다)	가. 청구자 또는 진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청구 또는 진정의 일시, 취지, 사유 다. 청구 또는 진정의 담당기관 송부일 라. 청구 또는 진정의 심문 또는 조사의 내용과 결과	

※ 구분별 보존 내용을 보존 내용의 각 항목을 같음할 수 있는 서식 또는 별지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로 같음할 수 있으나, 보존 내용과 그 내용이 없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명기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7호 치료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하에 전문가(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등 종사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로 각 항목 중 정신과의사 외의 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작업 및 오락요법, 정신과적재활요법과 이에 준하는 것임

5) 환자권의 보호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입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공(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2)
 -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신질환자가 주도적으로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조력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원내 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한 환자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법 제72조)
-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법 제74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
- 격리 등 제한의 금지(법 제75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음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시설 안에서 하여야 함
 - 격리 시 과도한 물리력을 자제하고, 의료도구 외의 불법수단에 의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별표 V-1-1]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룹별 (권익보호 체계 등)로 임의분류하여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

6) 작업치료 실시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됨(법 제69조제3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순 기능 작업을 시킬 수 있음 (법 제76조제1항, 시행규칙 제52조)
-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함 (법 제76조제2항)
- 환자의 작업치료는 안전시설을 갖춘 직업재활훈련실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시 관련 규정(법 제76조, 시행규칙 제52조)과 「V-1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부분의 나-4) 작업치료 규정의 준수 항목 및 [별표 제 V-1-2호] 작업치료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7) 시설 안전관리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지하에 입원실 혹은 격리실 등이 설치된 경우 즉시 지상으로 이전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병동내 주간·야간 상시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각 층마다 열쇠를 휴대한 직원이 상주하여 상황발생시 즉각 긴급조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감시카메라,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소화시설·장비*를 재해 구호 및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소방시설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자·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동내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종사자 관리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표 제Ⅲ-1-2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직무·보수교육, 화재 등을 대비한 안전교육, 인권교육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마 입·퇴원절차

이하에 표기된 '별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참고서식'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사업부 자료)”에 수록된 서식을 말함
 ※ '참고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이 서식을 참고하여 달리할 수 있음

1) 자의입원(법 제41조)

자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1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가)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 → 본인이 [별지 제 14호서식]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 제출 → 입원

나) 퇴원절차: 본인이 퇴원 신청 → 지체없이 퇴원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 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퇴원의사 확인: 정신의료기관장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확인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를 확인

☞ 대면진단: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킬 수 없음

☞ 권리고지: 모든 입원 공통사항

- 정신의료기관장은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별지 제14호] 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면서 구두로 설명해야 함
- 권리고지는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는 입원 환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 방법에 필요한 서류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2) 동의입원(법 제42조)

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2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 가능

가)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 본인이 [별지 제14호]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 제출 → 입원

나) 퇴원절차

- 본인이 퇴원 신청 → 지체없이 퇴원
 -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보호의무자란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체없이 퇴원
- 퇴원 제한 요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동안 퇴원 거부 가능하며 [참고서식 제6호]를 활용하여 고지
 - ※ 동의입원 퇴원 제한 요건 : 아래 ①, ②, ③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①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②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을 것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 ※ 72시간의 기산점(주말 및 공휴일 포함): 환자가 퇴원의사를 구두로 밝히거나 퇴원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둘 다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간 순서 상 우선한 것을 기준으로 함
- 입원유형 전환
 -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별지 제1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진단 결과서와 보호의무자 2명이 서명한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입원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령 → 보호입원으로 전환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 ※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한 경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내에 보호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작성한 [별지 제16호서식] 진단결과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진단을 위한 2주간 행정입원 의뢰 → 행정입원으로 전환 →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고 권리고지 등 진행

※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한 경우 72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내에 보호입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입원은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접수하고 입원 수속을 밟은 날부터 시작

다) 퇴원의사 확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동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확인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를 확인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법 제43조)

보호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보호 의무자	1.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 요건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위 1·2·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 기간	1. 입원 후 2주 이내에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상(3개월 이내) 입원 유지 가능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 처음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심사 및 승인필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진단	위의 1, 3, 4, 5를 위한 입원 시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필요 (그 중 1인은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여야 함)
입원 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인 이상 동의
연장 청구기간	입원기간 만료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원 절차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 (입원 필요성 + 자·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 가)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별지 제16호서식] 진단결과서)
 → 보호의무자 2인이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증명) 서류 제출 → 최초입원(2주 이내) → 추가진단 전문의 진단(최초입원 후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입원 필요 조건) → 환자 본인에게 [참고서식 제7호] 입원등 및 입원등 기간 연장통지서를 서면통보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 입원 유지
- ※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등 권고서에 해당
 - ※ 2인 이상 전문의 중 1인 이상은 법 제21조 또는 제22조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여야 함
 - ※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시 지체없이 환자와 동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의 퇴원 요구에도 안내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주의(대법원 2006다19832, 2009.1.15. 판례)
- 보호입원이 결정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는 입원 환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이 결정되면 입원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자의 입원 사실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45조제2항), 신고한 내용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법 제67조제2항). 이때, 입원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www.amis.go.kr)에 등록 후 신고 버튼까지 눌러야 최종 신고 절차가 완료됨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됨
 - ※ 입원등 신고서 및 권고서 작성 후 추가진단 배정 신청 시 신고 절차 완료

- 신고된 입원이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법 제47조제2항) 이 때,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참고서식 제22호)'를 활용할 수 있음

나) 퇴원절차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 → 지체 없이 퇴원
 -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를 퇴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참고서식 제11호]를 활용 가능
 -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음.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보호의무자란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 ※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적 보호의무자라면 누구나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거부 가능
 - ※ 보호입원 퇴원 제한 요건 : ①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②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③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④ 위 ②와 ③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법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참고서식 제6호]를 활용 가능
 - ※ 참고서식 제6호는 환자의 서명을 받아 1부를 환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정신의료기관은 참고서식 제6호(또는 이를 참고한 서식)을 보호의무자에게 직접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등의 방식으로 송부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심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이며, 이때 '그 보호의무자'는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른 해당 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있는 자를 포함함

다) 입원연장절차

-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보호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 3개월에는 전문의 2인의 진단을 위한 2주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기간 1개월이 모두 포함됨
-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매 입원기간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 각 주기별로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입원등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지자체장에게 연장심사를 청구해야 함
 - ※ 정신의료기관장은 [참고서식 제9호] 입원등 연장 심사청구서를 활용하여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입원기간 연장 심사 등을 할 때에는 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때 ‘(입원등 기간 연장 및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심사)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정신건강심사위원회 표준심사지침 참고서식 제1호)’를 활용할 수 있음
-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다음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보호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 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②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③ 위의 ① 과 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입원등 연장 심사 결과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에 입원연장의 기간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6개월이 지난(초과한) 날로부터 계산하나, 입원등 연장 심사 결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입원기간 만료일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함

라)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의 범위 등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임.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 *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되지만,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 근거하여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함

※ 관련 민법 조문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

- 보호의무자의 신청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것으로(보호의무자가 1인만 있는 경우 1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서는 반드시 입원 전에 제출되어야 함



※ 보호입원에 필요한 서류

1. 입원 신청서식

- 1-1. 보호입원등 신청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필수)

2. 구비서류

2-1.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1부

* 「여권법」 개정에 따른 시행(2020.12.21.)으로 이후 발급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 이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입원 시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환자 얼굴과 신분증 사본을 대조하고, 신분증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확인(가능한 사진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 따라서 이후 발급한 여권을 제출하려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필요

2-2. 보호의무자 관련(입원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가. 후견인 관련

-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개시심판문 등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후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입원허가판결문 1부

※ 후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대리권등목록'을 통해 피후견인(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후견인인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재원증명서(시설입소확인서), 시설등록증(사업자등록증), 후견인지정서(지자체장 발급), 후견인 지정 판결문(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인 개시 확인 서류) 등
 - ※ 미성년후견인 증빙서류는 피후견인(환자)의 시설 구분(공설/사설) 및 시설 거주 여부, 고아(부양 의무자 유무)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나. 부양의무자 관련('상세' 내역 서류 구비 / 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서류 등
- 다. 입원등 권고서 관련
 - 진단 결과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

● 보호의무자의 순위

-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후견인이 우선함
- 후견인이 없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 간 입원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협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해오도록 한 후 선순위 부양의무자의 의견에 따름.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원의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의 자·타해 위험과 치료 필요성에 따라 행정입원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법 제39조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법 제39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시행규칙 제31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시행규칙 제31조)
 1.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제2021-2호)
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 상기의 사람이 출소, 의사결정 능력 회복, 부양의무 이행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호, 제20호 활용

- 부양 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보호의무자 본인이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참고서식 제19호] 활용)
- 보호의무 이행불가 소명서를 제출하고([참고서식 제20호] 활용) 이를 지자체가 확인하는 경우
 - ※ 부양 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나, 장기간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의무자 본인의 서면 거부 및 포기 의사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확인 절차에 준하여 지자체가 이를 확인한 경우 (거부 또는 포기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 ※ '2025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 참조(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사업부 자료실)
- 이때 부양 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모든 부양 의무 이행의 거부 또는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
- 예시)

- 이혼한 한부모 가구로 부(또는 모)가 재혼 등 이후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부양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경우
-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 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자격 관련 Q&A

- 1) ‘직계혈족’이란?
 - 민법 제768조에 따라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가 포함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반면,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 2) 부부와 입양한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인지 친족인지 여부
 -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입양의 효력) 제1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부부와 입양자녀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이 된다.
 - 참고로,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와의 관계(계부, 계모)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혹은 입양절차를 따로 거쳤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보호의무자가 된다.
 - ※ 단,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민법 제974조제3호(기타 친족간)에 해당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만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친권자’의 확인은 필요할 것이며,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원에 대한 친권자의 의사 또한 확인해야 한다.
- 3)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의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
 -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소송이 계속중인 자”가 아닌 것 뿐이지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해당되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참고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 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소송’에는 민사소송, 가사소송(이혼소송)은 포함되나, 고소나 고발, 협의이혼, 후견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 등 비송사건은 제외됨
- 4)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방계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입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 동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를 말함
 - 또는,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함
 - ※ 입원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을 하려는 시점에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함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법 제44조)

행정 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 및 제62조)
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신청 :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작성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입원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5. 추가진단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3개월 이내, 지정정신의료기관) ※ 단,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입원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 2.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 심사 (최초입원 시에는 3개월,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 그 후 매 6개월마다)

가) 입원절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발견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상기의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경찰관은 상기의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가능) →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 진단의뢰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 의뢰서로 입원 의뢰(진단을 위한 입원) →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참고서식 제14호] 행정입원 의뢰서로 입원 의뢰(치료를 위한 입원)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 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 경찰관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경찰이 직접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는 없음
- ※ 행정입원은 환자 발견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통해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처리하도록 하며, 단 환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처리는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 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
- ※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보호자(법령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보호자여도 무방) 또는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권리고지 제공. 다만, 정신질환자가 따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입원 시 확인되는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는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이 결정되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사실을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67조제2항,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함. 신고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www.amis.go.kr) 이용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각 관할별로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입·퇴원관리 시스템 입력 사항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신고됨

나) 입원 해제

- 지자체장은 최초 입원일(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일과 다를 수 있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 입원을 한 날로부터 입원이 만료되는 3개월(또는 6개월) 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입원연장 청구 또는 입원연장 사실 통보가 없으면 입원 후 3개월(또는 6개월)이 되는 날 행정입원은 만료됨
- 지자체장은 참고서식 제15호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행정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 [참고서식 제15호]대로 하지 않고 달리할 수 있음
-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행정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입원을 의뢰한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 권고 →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입원 해제 사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통지 → 지체없이 퇴원
 - ※ 입원 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함

다) 입원연장절차

-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은 최초로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 또한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마다 할 수 있음
-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 → 첫 3개월 이후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 1차 입원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기간 연장은 6개월 이내 입원연장 가능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 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
 - ※ 행정입원의 입원기간 연장 요건: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 ※ 추가진단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입원 치료 불필요' 소견(1,2차 전문의 진단(소견) 불일치)인 경우 입원기간 연장 심사 청구가 불가하므로 퇴원 계획을 수립하여 퇴원
- 법 제51조(신상정보 확인)에 의해서도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입원기간 연장 심사 때마다 신상정보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지자체장은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 요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결과 등을 소명하여야 함

5) 응급입원(법 제50조)

응급 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입원 신청 절차와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호송 3. 응급입원 결정시 정신의료기관장은 대상자를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이 기간 동안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 - 계속 입원 필요 시 3일 이내 입원 유형(자의·동의·보호·행정입원) 전환 - 기한 내에 전환하지 못한 경우 입원 기간 만료로 퇴원

가) **입원절차:**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발견 →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8호서식] 응급입원의뢰서를 이용하여 입원 의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 응급입원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경찰관의 서명이 된 [별지 제18호서식] 응급입원 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1항의 발견자가 의사나 경찰관인 경우 발견자 본인의 동의로 의뢰할 수도 있으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응급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다른 의사 또는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응급입원을 위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동안 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119 구급대원이 호송하여야 하고, 119 구급대가 호송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함께 호송할 수 있음

● 응급입원 된 대상자와 파악된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입원등을 할 때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면서 구두로 설명

※ 권리고지는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참고서식 제1호의2호)'를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의무자(보호자)에게 각각 고지하고, 해당 서식을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 때, 고지받은 대상자의 서명은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에 받아 확인담당자 서명 후 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권리고지 및 확인서(참고서식 제1호)'는 입원 환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해당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응급입원의 경우 응급상황으로 인해 입원 전에 권리고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입원 후에 권리고지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구두로 설명. 다만 환자가 권리고지에 서명하지 못할 경우 서명불능사유 기재 후, 서명불능사유가 해소된 즉시 다시 고지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자에게만 고지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고지내용

-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나) 퇴원절차

-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자·타해의 위험 및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퇴원
- (2) 응급입원 기간(공휴일 제외 3일) 만료 시 퇴원

다) 입원형태 전환 절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

6) 기 타

가) 신상정보의 확인(법 제51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회 요청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에 입원기간 연장 심사 요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결과 등을 소명하여야 함

나)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법 제52조)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음
 - ※ 퇴원사실의 통지는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통지에 대한 동의는 환자의 자유사항으로 강압이나 퇴원 조건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부동의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의 진단한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를 이용하여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함)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함
- 정신의료기관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를 할 수 없음. 다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등의 사실 통보여부 심사청구 가능함
 -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및 ① 퇴원 및 퇴소 대상자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퇴원 및 퇴소 대상자가 퇴원 및 퇴소 후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가 진단한 소견서를 모두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법원의 재판에 의한 치료 위탁

- ▶ 법원과 미리 협의 후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하여 법원은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환자를 병원에 위탁 가능
- ※ 이러한 법원의 치료 위탁에 따른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이 아니므로 국가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음

〈가정보호/아동보호/소년보호 사건에서의 입원 치료 위탁 근거 법령〉

근거법령	대상	요건	절차	효과	기타 요건	법원의 감독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40조, 44조, 45조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중 의학적인 치료 혹은 전문가의 진단소견이 필요한자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법원판단) (1개월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자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법원판단) (6개월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21조, 36조, 37조, 38조, 47조, 51조, 52조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중 의학적인 치료 혹은 전문가의 진단소견이 필요한자	검사의 청구, 검사나 법원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법원판단) (2개월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검사나 법원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법원판단) (1년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2년 까지 연장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은 아동	직권,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	입원 혹은 통원치료 (병원 및 피해자 측 판단) (1년이 원칙이되 4년까지 연장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소년법 제18조, 32조,	범죄 등을 저질러서 소년부로 송치된 미성년자	직권	법원의 결정	입원(6월이 원칙이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법원의 사전 기관 위촉 필요	사전·사후

바 행정 사항

1) 지도·감독

가) 기관 운영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공무원의 지도·감독 의무 불이행 관련 판례 : 부산지법 2006.2.10.선고 2005나142판결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부적합 기관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음
- 부당입원, 인권유린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안전관리 부실 등이 적발되거나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미작성, 미제시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기관이 특별관리할 수 있음(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
-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부적합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함

다)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제19조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음 (각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제Ⅲ-1-3호]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름)
 - 이후 재차 위반(적발) 시에는 바로 누적차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며, 차수 누적에 따른 사업정지, 허가취소, 시설폐쇄에 별도의 시정명령을 명하지 아니함
 - ※ 결국, 동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행정처분 누적차수를 적용 시에 시정명령은 1회만 발하게 됨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이때,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별표 제Ⅲ-1-3호]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 기준 중 「○ 개별 기준」의 각항(가, 나, 다...)을 기준으로 하되, 가의 1)항의 경우는 인력기준과 시설·장비 기준을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적용
 -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 같은 위반행위 내에서 시설·장비는 그 종류와 수량에 구분 없이 위반차수는 1차로 처리하고, 인력기준은 종사자의 종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에의 구분 없이 1차로 처리하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행정처분 기준의 수준별로 적용함
 -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인력기준을 동시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처분을 택일하여 처분하며, 인력기준의 대상인 입원환자 및 종사자는 [별표 제Ⅲ-1-2호] 인력기준을 적용하되, 연평균 1일 기준 입원환자·종사자 수로 계산하여 처분하여야 함
-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그 외의 처분에 대한 내용은 [별표 제Ⅲ-1-3호]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 기준을 참조하고,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함

라) 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체계 수립·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등 진단 및 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함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해당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충실한 현지도도 및 실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표 2〉 국립정신병원별 담당권역(지역) 현황

구 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권역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강원)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2) 보 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입원환자 현황[별지 제Ⅲ-1-1호](반기별), 지도점검 현황[별지 제Ⅲ-1-2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현황[별지 제Ⅳ-5-2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제출시기 별도 안내)

3)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가) 사업 목적

- 정신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시행 및 결과 환류로 자발적 질 관리 문화 형성을 통한 정신의료 질 향상

나) 사업 내용

- 법적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 평가 대상
 - 정신병원, 정신과 입원병상(폐쇄 및 개방병상 포함)을 보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정신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으로 시행(자율인증으로 전환, '21년~)하며 인증 시행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갈음할 수 있음

〈표 3〉 인증제도와 평가제도 비교

구분	인증제도	평가제도
주 기	4년	3년
조사대상	정신병원	정신병원, 설치과 및 의원
조사방법	현지조사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
평가항목수	282개	정신병원 201개, 설치과 130개, 의원 78개
등급판정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합격, 불합격

다) 사업 현황

- 4주기('25~'28) 정신병원 인증 시행
- 5주기('24~'26) 정신병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의원 평가 시행
- 인증 및 평가 주기 내에 전체 대상기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평가 대상 및 신청 개별 안내
 - ※ 단, 정신병원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ae.koiha.or.kr)을 통해 자율적으로 신청

[참고자료]

정신의료기관 대상 유사 평가 비교표

구 분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인증	정신의료기관 평가
주관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기관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위 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근 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법 제58조의4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
목 적	의료급여의 질 향상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의 제고	정신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의 제고
대 상	의료급여정신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정신과 병·의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신병원 포함)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의학과, 정신과의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기준 평가 시설·장비 기준 평가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정신의료기관의 진료 현황 및 실적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기준 선정·공표 서면평가(청구내용 분석) 현지 평가 실시 자료구축 및 종합분석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신청 및 신청서 접수 조사일정 통보 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제출 조사결과 이의신청 및 조정 조사결과 분석, 인증심의 위원회 인증결과 통보 인증결과 이의신청 인증결과 최종판정 및 통보 인증결과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정신의료기관 선정 평가대상 기관의 통지 평가 실시 전문가(평가반) 구성 및 교육 서면조사, 현지조사 평가 결과의 통지 평가결과 이의신청 평가결과 재검토 및 통보 결과의 공표
반 영	의료급여 수가 반영	우수기관 행정·재정 지원	우수기관 행정·재정 지원
시 기	매년 평가	인증유효기간(4년), 단 조건부인증은 1년	정기평가(3년), 수시평가
공 표	공표 의무 있음	공표 의무 있음	공표 의무 있음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가 사업 목적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나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 허가 등)

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1) 시설의 정의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설 치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3)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시설명칭, 시설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함

☞ 관련 서식 참조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

4) 입소대상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자
- 기존 장애인시설 등 타 입소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소 제한. 단, 정신질환 소견서가 있고, 촉탁의사에 정신요양시설 입소 필요 소견이 있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 가능
 - * 지적장애, 치매 등 질환자는 장애인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해당 시설 입소 강력 권고

5) 시설기준 및 입소인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수용인원 기준”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색

- 설치기준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입소자의 요양보호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10인 이하로 하여야 함
 - ※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생활자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1실의 생활인 수는 6인 이하를 권고함
 - ▷ ‘거실’은 입소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침실 및 응접실이 이에 해당하며, 단순 복도·통로 및 관리인 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은 제외
- 입소인원
 - 현행 규정에 따라 신설 허가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함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 바닥면적을 더한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입소 정원을 10명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입소 정원 산정

6) 인력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3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근거

구 분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1명 이상
간호사	입소현원 25명당 1명 이상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1) 입소현원 80명 이하: 입소현원 8명당 1명 이상 2) 입소현원 80명 초과: 입소현원 10명당 1명 이상
영양사	1명 이상. 다만, 입소현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사무원	1) 입소현원 50명 이상: 2명 이상 2) 입소현원 50명 미만: 1명 이상
전문요원	1)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2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 미만: 시설당 1명 이상
작업지도원	1명 이상
조리원	1) 입소현원 70명 미만: 3명 이상 2) 입소현원 70명~120명: 4명 이상 3) 입소현원 121명~200명: 5명 이상 4) 입소현원 201명~300명: 6명 이상 5) 입소현원 301명~400명: 7명 이상 6) 입소현원 401명 이상: 8명 이상
위생원	입소현원 150명 이하: 1명 이상 입소현원 151명~250명: 2명 이상 입소현원 251명~350명: 3명 이상 입소현원 351명~450명: 4명 이상 입소현원 451명 이상: 5명 이상
관리인 또는 경비원	1명 이상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소현원당 인력 기준을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
2. 시설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음.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음
3. 시설장 외의 종사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모두 겸할 수 있음
4.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에는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함
5. 작업지도원은 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4 이용·운영기준

1) 운영목표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개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요양 보호수준의 향상 도모

2) 입·퇴소 관리

- 시설장은 입·퇴소신청서, 보호의무자 동의서(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에 한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서류 및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시설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 중 사회복귀가능자 등은 퇴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으로 전원 조치하여 시설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킨 경우, 별지 제Ⅲ-2-1호] 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자의·동의입소한 사람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를 활용하여 2개월 마다 퇴소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중 사회복귀가능자 등은 퇴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으로 전원 조치하여 시설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소된 정신질환자로서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기간 내(입소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에 입소기간 연장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소시키거나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입소를 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참고서식 제7호]를 활용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를 퇴소조치하여야함

- ※ 단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입소자의 건강상태, 주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조치 아니할 수 있음
- ☞ 이때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에는 인권전문가와 해당 시·군·구 소속 정신요양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 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및 관계서류의 예〉

- 보호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 조회 요청한 기록 첨부)
-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방치·유기하는 등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에 근거하여 고발조치한 관계서류 첨부)
- 기타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 상황 등을 명시한 문서 등

- 시설장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려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입소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종사자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을 예방하여야 함



입소자 준수사항

- 입소자는 종사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입소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입소자가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종사자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 폭력) 욕설, 헐박, 위협 등
 -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 밀기, 멍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치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종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3) 입소자 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 시설장은 가족 및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작업치료를 병자한 강제노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입소자관리를 금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증언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감금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피해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증언을 확보하여야 함
 - 시설장은 필요 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증언능력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야 함
- 시설장은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격리방법의 적법성 확보
 - 시설장은 입소자의 격리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행해야 하며, 격리사실을 생활일지 등 일지형태로 기록하여야 함
 - 시설장은 격리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격리 시 과도한 물리력을 자제하고, 지정된 강박도구 외의 불법수단에 의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별표 V-1-1호]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시설장은 통신, 면회 등 행동제한 및 기타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시설장은 본 사업안내 V.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중 1.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의 가. 인권교육의 실시 부분을 참조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재산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입소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입소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입소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자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자의 금전 관리 지원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입소자의 금전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구성 : 해당 시설 입소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회의는 전체단원 2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내용의 기록 및 보고: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전체 단원에게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정기회의(연 2회 이상), 사례회의(연 1회 이상), 임시회의(필요 시)
 -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군·구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음

4) 입소자 건강관리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료 및 처방 등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진료 및 처방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실시)
- 시설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물을 입소자가 적절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투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실시)

- 시설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진료, 약물복용, 건강진단 등), 재할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생활일지, 업무일지 등 일지형태로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시설장은 당해 시설의 입소자에 대해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 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전염병(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가 합병증 등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중증의 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간호사 등 부재로 부득이한 경우 비의료인의 입소자 투약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함



입소자 투약 관련 원칙

- ◆ 의료인의 입소자 투약(경구투약 포함) 원칙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의료인이 환자 본인의 투약 보조 가능
 - “부득이한 경우”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투약 업무가 가능한 의료인이 연차 등의 사유로 정신 요양시설에 부재하여 입소자 투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보조” 예시: 정신질환자들이 신체활동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 약을 먹을 때 입으로 손을 정확하게 위치시켜주기
- ◆ 정신요양시설 내 비의료인의 투약 보조는 다음과 같이 진행 가능
 - ① 입소자에게 정해진 약(정신건강전문의의 처방을 기준으로 받은 약물)을 손으로 건내주거나, 알아서 가져가게끔 약이 들어있는 통, 접시 등 전달
 - ② 입소자가 먹는 것을 안내
(예시: 입소자 A씨에게 “약 먹을 시간이니 이거 드셔야합니다” 안내)
 - ③ 입소자가 약을 먹었는지 확인
(예시: A씨에게 “약 먹었는지 확인할게요 아 해주세요” 묻고 확인)

5) 요양보호

- 시설장은 입소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을 제공하여야 함
- 시설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적정수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가 주 1회 이상(6월에서 8월까지 주 2회 이상) 목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가급적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가 외출·외박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동의(법 제41조 자의입소자는 제외)를 얻고 외출·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6)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 시설장은 입소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작업치료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작업의 종류·시간·위험성·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의 청소·취사·세탁 등 단순 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함
- 작업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은 작업지도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작업지도원은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작업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장은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작업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계획하고, 소속 종사자에게 업무를 분장하여 부여할 수 있음
 - 지역사회 통합 활동 지원: 입소자의 대인관계 증진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외출·외박 동행, 지역사회 시설 이용 지원 등 제반 활동
 - 치료적 환경 조성 및 유지 활동: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소자 참여 기반의 원예 활동, 시설 내·외부, 생활 편의를 위한 유지보수 활동 등

7) 시설 안전관리

- 시설장은 시설 내 주간 및 야간 상시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하고, 근무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해 및 타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완비하여야 함
- 시설장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해빙기에는 특히 안전점검을 철저 (보일러·가스·전기 등)히 하여야 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예방 조치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우선 조치

- 지하에 격리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장소를 옮기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
- 폐쇄된 생활관의 경우는 동별로 직원이 상주토록 하고 생활실의 안팎에서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피난 대피로 확보
-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
- 소화시설·장비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설비는 소방법령의 재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점검
-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나) 사고 시 임시조직 및 임무규정

-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을 담당할 종합대책반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분기별 훈련 실시

-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과제를 정하여 훈련 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함. 단, 실제상황을 전제한 화재 대응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기타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정보/발간자료에 게재)」에 따라 시설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종사자 관리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202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II.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참고
- 시설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별표 5의3]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야 함
 - * 안전관리요원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함
- 시설장은 시설종사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 * 202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II.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참고
- 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함
- 시설장은 계약의 및 촉탁의가 주당 월 4회 방문(32시간)이상 시설 방문하여 정기 진료를 실시하고, 방문 시에는 투약관련 의학적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모든 입소자들은 한달 1회 이상 진료를 원칙으로함)
 - * 계약의 및 촉탁의 계약시, 근무 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근무일 조정 및 합의 가능하며, 1회 방문 시 입소 현원 1/4 이상 진료, 진료일지 작성 시 8시간 근무 간주
 - ※ 촉탁의 업무협약서는 [별지 제III-2-2호] 업무협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 ※ 촉탁의 계약은 촉탁의(개인) 또는 촉탁병원과 체결 가능
- 시설장은 응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시에 계약의 및 촉탁의가 입소자의 정신과 외래진료 시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회계 및 물품관리

- 시설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입소료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및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장은 예산(보조금, 입소료 수입금, 후원금 등) 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프로그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s://ceu.ssis.go.kr>)을 사용하여야 함

10) 장부비치 및 기록관리

-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관련 장부 비치·보존
 - 정신요양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함

장부 및 서류명	보관·비치기간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법인 정관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 재산목록과 그 관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일지	3년
•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 (이력서 및 해당 자격증의 사본을 포함한다)	5년
• 예산서 및 결산서	5년
•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지출보조부	5년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 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접수·발송문서	3년
• 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영구
• 입·퇴소자의 명단 및 신상기록, 요양보호경과, 진료, 투약, 작업, 면회, 외출 등 요양보호생활을 기록한 서류	10년
• 임금대장, 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작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년

11) 입소료 징수 및 사용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으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백원단위 금액은 절사)
- 시설장은 입소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월 570,000원 이하(‘26년)의 입소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시설의 현원이 입소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설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원의 50퍼센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를 입소 조치할 수 있음
- 유료 입소자로부터 징수한 입소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함. 단, 입소료 장기 체납으로 입소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체납 유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에 따라 다음 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유료 입소료 중 ‘2026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급여 지급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료입소자 생계비 통장에 입금하여 유료입소자의 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하여야 함
 - * 유료입소자 생계비 최소 기준(‘2026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 급여 지급액’의 50% 이상) 충족 여부 산정 시, 전체 식자재 후원금품 총 가액을 유료입소자 생계비 계좌 입금액과 합산하여 산정함. 이때, 입소자 유형(유료/무료)에 따른 후원금품 가액 안분 계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유료입소료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단, 유료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설치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 관리감독 부서에 보고받아야 함)
 - ※ 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의 지출은 특정항목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2026년 보장시설 규모별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

구 분	월평균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426,741원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372,206원
100인 이상~300인 미만 시설	350,882원
300인 이상 시설	350,841원

12) 시설의 개방

- 시설운영의 공개
 - 시설장은 요양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지역주민 등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하여야 하고, 그 보호의무자, 가족 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
 - 시설장은 체육·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에 입소자가족,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유도하여야 함
 - 시설장은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용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함”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민간자원의 활용
 - 시설장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종교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정신요양시설 지원을 적극 권장함
 - 시설장은 인근지역의 각종 단체 및 사업체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야 함

13) 입소자 특성을 고려한 종사자 배치 및 자립생활관 운영

- (배치 원칙) 시설장은 입소자의 입소 유형, 정신건강 상태, 자립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사자 근무 위치(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관련 기준 준수), 순회 점검 방식 등 최적의 안전관리 및 생활지원 방안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음
- (자립생활관 운영) 시설장은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와 자립 동기 부여가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특정 생활관을 '자립생활관'으로 지정 운영 가능.
 1. 종사자는 해당 생활관 내(침실, 거실 등 사적 공간) 상주를 지양하고, 생활관에 인접한 별도 사무공간(동일 동 내)에서 근무 가능.
 2. 제1호의 경우, 시설장은 입소자의 안전 확보와 증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마 행정 사항

1) 지도·감독

가) 시설 운영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축택의 근무상황 점검* 포함)
- * 근무상황: 업무범위,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음
- 부당입소, 인권유린행위, 예산 유용, 입소료 부당징수 등이 적발되거나 입·퇴소 및 요양기록, 금전 및 물품출납 서류 등 관계 서류를 미작성, 미제시 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시설을 특별 관리할 수 있음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강화 및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2) 보고

가) 입소조치 결과 보고

- 정신요양시설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소 조치한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별지 제Ⅲ-2-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

- 정신요양시설장은 입소자 및 종사자 월별 현황을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Ⅲ-2-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매반기별로 동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Ⅲ-2-3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지도·감독 결과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반기별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 III-2-4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기타

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시·도지사
 - 연 1회 이상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내 정신요양시설의 임시연락망을 작성하여 유사시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인명·재산의 피해 최소화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
 - 화재예방장비 비치·작동여부,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숙지여부, 직원 역할 분담의 적절성 및 신속한 구호활동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 정신요양시설장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별지 제 III-2-5호] 서식의 시설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사고발생시 정신요양시설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군·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고,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기에 물자 및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사회복지시설 공통

- 기타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인/시설/단체에 게재)”등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함

다) 미인가시설 관리

- 미인가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처벌대상이 되므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불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등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판명될 경우 허가된 시설로 전원하거나 귀가하도록 하여야 함

라)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 입소자 본인 사망 등으로 사실상 본인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의거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함
 -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공고를 실시한 지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 민법 제150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에 따라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할 수 있음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라 제1057조의2에 의해 분여되지 않을 경우 상속 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후 '민법' 검색 관련 조문 참조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시행일: 2021.6.30.]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시행규칙 제52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목록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1]
- 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2]



• 잔여재산 목록 작성 및 유류금품 평가

- 시설장은 사망자의 재산목록 작성 및 유류금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2명(내부1, 외부1 이상) 이상 동행 입회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여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의복, 신발, 가방, 침구, 가구, 가전류 등의 생필품과 10만원 이하 시계, 반지·귀걸이·장신구 등은 지자체와 협의 하에 재산목록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에서 자체 보관 및 처분할 수 있다.
- 잔여재산목록에는 작성일시, 장소와 사유, 청구인(시설장) 성명과 주소, 입회자, 동산 및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 채권과 채무의 표시,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유류금품의 평가

구 분	평 가 기 준
현금, 예·적금, 수표 등 현금성 자산	사망 시점 금액
귀금속류	금은방, 전당포 등 거래소 감정가
부동산·채권·주식 등	당시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되, 그 평가시점 및 방법·기준 등을 명시

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 국고환원('15년~)

1) 지원 기준

지방이양 이후 발생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수준 격차 해소

가) 인건비 지원 기준

(1) 인건비 기준

- 2026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2) 종사자수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 산정기준이 되는 입소 현원수 : 전년도 4/4분기 입소현원 수의 평균값
- 시설 입소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지원해 오던 시설 종사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
- 해당 초과 인력이 퇴직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대체인력(신규 포함) 채용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도 내 정신요양시설에 자연감소(퇴직 등) 인력이 발생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 할 경우에 시·도 내 시설 간 인력배치의 균형을 고려하여, 직종별 정원 미달 인력이 많은 시설의 대체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
 - ※ 단, 직종별 정원초과인력이 자연감소(퇴직 등)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시까지만 직종별 정원초과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하고, 자연감소 후 직종별 정원초과인력 대체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음

<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

※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 3868)로 문의

구 분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 종사자인건비		
- 시설장		- 시설당 1명(시설장은 상근의무). * 겸직에 따른 인건비 이중 지원은 불가. 시설장 인건비는 1개 시설에서만 지급
- 사무국장		- 시설당 1명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축탁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시설당 1명
- 간호사		- 입소현원 25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구 분	지원대상	지 원 기 준
-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 입소현원 80명 이하 : 입소현원 8명당 1명 이상 - 입소현원 80명 초과 : 입소현원 10명당 1명 이상
- 영양사		- 시설당 1명
- 사무원		- 입소현원 50명 이상 : 2명 이상 - 입소현원 50명 미만 : 1명 이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입소현원 70명 이상: 시설당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단, 여성입소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입소현원 70명 미만: 여성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 입소현원 70명 미만인 남녀공용시설에 2014년 정신 건강사업안내 개정 이전에 채용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2명인 경우 기존의 기준초과인력은 해당인력의 퇴직 시 까지 계속 인정
- 작업지도원		- 시설당 1명
- 조리원		- 입소현원 70명 미만: 3명 - 입소현원 70명~120명: 4명 - 입소현원 121명~200명: 5명 - 입소현원 201명~300명: 6명 - 입소현원 301명~400명: 7명 - 입소현원 401명 이상: 8명
- 위생원		- 입소현원 150명 이하: 1명 - 입소현원 151명~250명: 2명 - 입소현원 251명~350명: 3명 - 입소현원 351명~450명: 4명 - 입소현원 451명 이상: 5명
- 관리인 또는 경비원		- 시설당 1명
- 안전관리요원		- 시설당 1명
• 사용자부담금		
- 사회보험	- 인건비 지원대상 전원	-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회보험의 지급 비율에 따라 지원
- 퇴직금적립금	- " (적용제외 : 대표이사 겸 시설장)	- 임금총액의 1/12

※ 시설 운영 상 불가피하게 특정 직무 공백 발생 시, 법정 필수 인력·자격 기준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시설장은 지원 총원 내 타 종사자에게 해당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음. (단, 이는 직종별 정원 조정이나 대체 채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

구분	지원기준	지원기준 적용지침
간호사	입소현원 25명당 1명으로 산출 (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수를 25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25 \times A + B$ ▷ 간호사 지원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 경우:A명 - B>0 경우:(A+1)명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적용예 1) 입소인원수 : 150명 $150 \text{명} = 25 \times 6$ 간호사 지원인원수=6명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적용예 2) 입소인원수 : 151명 $151 \text{명} = 25 \times 6 + 1$ 간호사 지원인원수=(6+1)명=7명 </div>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현원 80명당 10명으로 산출, 80명 초과 시 입소현원 10명당 1명 (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 80명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수를 8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8 \times 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 경우:A명 - B>0 경우:(A+1)명 ○ 입소현원 80명 초과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현원수-80을 10으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80 = $10 \times 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0 경우:(10+A)명 - B>0 경우:(10+A+1)명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적용예 1) 입소인원수 : 150명 $150 - 80 \text{명} = 10 \times 7$ 생활복지사 지원인원수=(10+7)명=17명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적용예 2) 입소인원수 : 151명 $150 \text{명} - 80 = 10 \times 7 + 1$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10+7+1)명=18명 </div>

(3) 근무경력 인정범위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할(100%) 인정
 -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2.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10할(100%) 인정
3.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10할(100%) 인정
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절차조력지원사업 근무경력: 10할(100%)을 인정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1)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영양사, 조리사로서
 -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등에 의한 보건소 등(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 단, 간호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 ②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④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 6. 14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서 2002. 6. 15이후 근무경력(다만, 조건부신고 시설 근무경력자만 인정)
 -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3)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경력
 - 4)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 202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 경과조치

- ✔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 획정 및 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4) 보수의 지급

- 「선임 생활지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기준을 따름(단, 선임생활지도원 임명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2014년 3.1일부터 신규 임명되는 인력에 대해서 적용함)
 - 「선임 생활지도원」은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안전관리요원, 조리원 중에서 임명하며, 각 직위별 근무경력이 승진 최소연한 만 5년(6년차) 이상인 자
 - 시설의 선임생활지도원 인원수는 법인 및 시설의 재정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시설당 2인까지 임명할 수 있음
 - 선임 생활지도원 임명 시 법인 내 시설 및 임명하고자 하는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 근무경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생활지도원 중 사회복지사(1,2급) 자격취득자는 생활복지사 보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간호조무사, 사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자*의 경우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시설 입소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병·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2026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단위 : 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906,100	2,616,100	2,415,200	2,301,000	2,224,700	2,169,700	2,156,880
2호봉	3,005,300	2,700,300	2,475,100	2,355,900	2,266,200	2,207,900	2,166,500
3호봉	3,107,100	2,798,700	2,541,000	2,422,800	2,307,300	2,250,900	2,204,500
4호봉	3,222,600	2,899,500	2,644,300	2,489,300	2,351,200	2,292,300	2,245,100
5호봉	3,354,800	3,018,500	2,753,800	2,556,300	2,413,400	2,339,600	2,284,900
6호봉	3,493,200	3,140,500	2,866,900	2,649,800	2,475,200	2,379,200	2,336,200
7호봉	3,631,400	3,262,200	2,984,900	2,745,100	2,567,600	2,461,600	2,374,900
8호봉	3,774,300	3,401,900	3,103,400	2,845,600	2,669,100	2,550,200	2,437,600
9호봉	3,918,300	3,546,600	3,218,400	2,961,600	2,764,600	2,622,100	2,514,700
10호봉	4,055,300	3,683,700	3,341,100	3,059,000	2,848,200	2,713,800	2,600,900
11호봉	4,202,400	3,817,700	3,454,200	3,156,200	2,922,200	2,780,100	2,667,500
12호봉	4,326,500	3,926,700	3,556,700	3,243,100	2,986,000	2,855,100	2,732,600
13호봉	4,442,100	4,029,000	3,646,100	3,316,200	3,047,300	2,921,600	2,800,900
14호봉	4,536,400	4,125,500	3,732,900	3,395,800	3,109,700	2,959,700	2,852,700
15호봉	4,631,500	4,218,400	3,816,100	3,472,200	3,174,400	2,993,200	2,897,700
16호봉	4,721,500	4,292,100	3,894,700	3,545,800	3,244,700	3,051,500	2,942,600
17호봉	4,806,000	4,369,500	3,969,600	3,614,900	3,314,600	3,108,600	2,999,100
18호봉	4,885,800	4,447,100	4,042,400	3,681,500	3,381,200	3,165,700	3,054,100
19호봉	4,960,500	4,516,200	4,106,600	3,743,300	3,441,100	3,214,100	3,112,300
20호봉	5,027,100	4,583,100	4,170,800	3,803,600	3,499,500	3,260,700	3,161,400
21호봉	5,092,700	4,648,600	4,230,200	3,864,800	3,552,000	3,316,400	3,216,600
22호봉	5,155,600	4,709,100	4,287,700	3,918,000	3,604,900	3,379,500	3,280,100
23호봉	5,214,500	4,766,500	4,342,200	3,969,100	3,653,300	3,444,900	3,342,800
24호봉	5,269,800	4,820,300	4,390,300	4,017,900	3,701,100	3,505,500	3,404,700
25호봉	5,323,800	4,873,800	4,438,000	4,070,000	3,746,400	3,561,400	3,466,900
26호봉	5,368,100	4,920,500	4,484,700	4,116,000	3,788,000	3,610,400	3,524,700
27호봉	5,413,200	4,964,400	4,523,900	4,153,500	3,823,700	3,658,600	3,572,700
28호봉	5,452,500	5,003,800	4,563,800	4,192,800	3,858,900	3,691,800	3,608,500
29호봉	5,482,700	5,036,900	4,600,300	4,229,400	3,892,900	3,729,000	3,646,000
30호봉	5,508,000	5,072,000	4,634,500	4,262,500	3,925,100	3,751,800	3,679,100
31호봉	-	5,104,400	4,665,300	4,294,800	3,956,400	3,790,500	3,704,800

※ 축탁의사(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 기준: 3,266,700원

* 기능직: 위생원 등 / *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등

〈 2026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직위 분류표 〉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직위	정신요양시설의 직위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남녀공용시설은 시설당 2명까지 (단, 입소현원 70인 미만은 1명), 남자(또는 여자)전용시설은 시설당 1명까지 사무국장 기본급권고기준 적용 인정
과장 및 생활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생활복지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안전관리요원, 조리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기능직	위생원

(5) 수당 지급: 2026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 법정근로수당 보조
 - 시간외근로수당(지급 기준에 한함),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 특수근무수당 지급
 - 지급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국장
 - 지급액: 월 4만원 지급
- 유급병가 지급
 -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연간 30일 범위에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 지방자치단체 지침, 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에 따라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병가로 인한 입소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함
-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금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 월 35시간까지 인정
 - 일반 종사자(시설장 포함)*: 월 20시간까지 인정
 -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아님

- 시설장은 시설 특성에 따라 종사자 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아님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 지방비 매칭 예산’의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외 수당 추가지급 가능
- 지자체별로 시간외 수당 단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5시간, 월 20시간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인정 가능
- 법정공휴일은 별도 휴일수당 지급

☑ **법정공휴일**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교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행정사항**

- 본 기준은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기준이며,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 지도과”에 문의

〈 2026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단위: 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장기휴직자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40,000원	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 ※ 이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이후		120,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 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나) 관리 운영비의 지원 기준

-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함
 - 시설장은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서를 비치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의한 보고·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지급액은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다른 명목으로 사용 금지
-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로 구입 가능한 소모품의 범위 규정
 - 소모품*은 관리운영비(일상생활용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로 지출할 수 있음
 - * (소모품)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프로그램 운영비
 - 입소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관리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지출
- 기 타
 - 화재보험 가입: 대물보험 뿐 아니라 대인보험에도 가입,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되, 현재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적립기간 종료 시 운영비로 편입하여 활용
- 2026년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단가

구 분	지원단가(원/1인/1년)
입소현원* 100명 이하	1,910,160
입소현원 101~200명	1,820,520
입소현원 201~300명	1,736,520
입소현원 301~400명	1,649,640
입소현원 400명 초과	1,561,440

* 입소 현원 수: 전년도 4/4분기(무료+유료) 입소 현원 수의 평균값

- 매월 무료입소자 관리운영비 지원액 :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단가/12)×전월말 무료 입소 현원 수
 - 매월 30일 초과 입원 또는 외박 입소자는 전월말 입소 현원 수에서 제외하고 지원
 - 월중 퇴소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운영비는 일단위로 계산(1원 이하 절사)하여(퇴소 당일 포함) 관리운영비 지급
- 매년 유료입소자 1인당 관리운영비 차등 지원
 - 매 회계연도 전년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중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의 1인당 월 평균급여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이하 절사)’ (a)를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인당 월 입소료’에서 차감한 금액(A)을 산출
 -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차감액은 ‘금액(A)에 12를 곱한 금액’(B)
 -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액’은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액에서 (B)를 차감한 금액
 - 유료입소자 1인당 월 입소료 수납액이 ‘30인 이상 100인 미만 시설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100원단위 절사)(a)’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지원액은 무료입소자와 동일함



유료입소자 관리운영비 차등 적용 예

〈A시설〉

- 입소 현원 수(전년도 4/4분기 평균): 250명(무료 입소자 200명, 유료입소자 50명)
- 당해연도 무료입소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지원단가: 1,315,510원
- 당해연도 2월말 입소자 수: 입소자 250명(무료 입소자 200명, 유료 입소자 50명)
- 전년도 유료 입소자 1인당 월 입소료: 360,000원
 (전년도 30인 이상 100인 미만 보장시설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120%
 = 236,251원 × 120% = 283,501원 → 283,500원(원 이하 절사)
 (a) = 283,500원(※매년 보장시설 급여액에 따라 변동)
 (A) = 360,000원 - 283,500원 = 76,500원
 (B) = 76,500원×12개월 = 918,000원/연

유료입소자 1인당 연간관리운영비 = 1,315,510원 - 918,000원 = 397,510원
A시설 2월 관리운영비 보조금(월) = 200명×(1,315,510원/12) + 50명×(397,510원/12)

- 1인당 월 입소료 수납액이 283,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입소자는 무료입소자와 동일하게 연간 1,315,510원 관리운영비 지원
- 매년 6월말 현재 입소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의 체납기간 동안에 매월 차감한 관리운영비 지원액을 소급하여 당해연도 7월 또는 8월 관리운영비 지급 시 보전

〈유료입소자 관리운영비 차감액 소급보전 적용 예시〉

✓ 소급보전금액: (무료입소자 월 관리운영비-유료입소자 월 관리운영비)×체납개월수

* 체납개월수 = 매년 6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입소료 체납자의 체납기간(~ 매년 6월까지)

* 소급보전하는 체납기간은 '17년 1월부터 포함(소급보전금액을 지급한 체납기간은 체납개월수에 미포함)

(적용예 1) '20년 1월~6월 체납자 10명의 관리운영비 차감액 소급 보전
 : (1,315,510원/12월-397,510원/12월)×6개월×10명 → '20. 7월~8월에 4,590,000원 소급보전 지급

다)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부적정 예방 철저

- ○○년도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에서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관련 근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2조, 제82조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 「정신건강사업 안내」 Ⅲ-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지적 내용

- ▲ 「정신건강사업 안내」 Ⅲ-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에서 정한 정신요양시설 유료 입소자와 무료 입소자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단가를 월단위로 환산한 후 전월 말 유료 입소자 및 무료 입소자 현원수를 곱하여 합산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순수군은 “순수정신요양원” 관리운영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시 월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관리운영비를 계산하여 초과 또는 과소 교부하였고, 무료 입소자 현원이 120명임에도 불구하고 101~200명 기준 단가가 아닌 100명 이하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관리운영비를 과다 교부**

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예산확정통보(전년도 12월, 복지부 → 시·도)
 - 확정내시 공문 발송 및 D-brain 시스템 통보
 - 각 시·도 및 시·군·구 내시 배분(전년도 12월)
 - D-brain 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 매칭 완료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복지부)
 - 교부 차수 전월 말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정신요양시설운영비)
[별지 제Ⅲ-2-6호] 서식에 따라 신청
 - 보조금 교부(복지부 → 시·도)
 - 교부 차수 해당 월 10일까지 교부
- 집행실적 보고
 - 예산 집행 후 e-호조 시스템 실적 즉시 입력
 - 보조사업 완료 후(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정신요양시설운영비)
[별지 제Ⅲ-2-7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일 엄수 제출
 - '17년부터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s://ceu.ssis.go.kr>) 사용 가능

[참고자료]

2026년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원 항목명	지 원 내 용	비고
가. 입소자보호비	※ 시설내 입소자의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입소자의 간식, 우유 등 생계 외의 급식 제공을 위한 비용	
2) 의약품비	◦ 입소자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수용기관경비	◦ 입소자의 편의 증진 및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비누, 샴푸, 세제, 면도기, 치약, 칫솔, 수건, 화장품, 침구류, 생리대, 기저귀 등) 구입비	
나. 시설관리비	※ 시설물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입소자의 생활 공간(생활실, 거실 등)에 비치되어 입소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입소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 등 * (구입가능 품목예시) TV, 선풍기, 에어컨, 건조기, 침대, 옷장, 사물함, 주방물품(숟, 냄비) 등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 중인 시설 업무용 차량의 연료비, 수리비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전기·우편·전화·운송료 등	
6) 오페수정화시설 운영비	◦ 오페수 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 등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 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상해보험료 및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건강보험 건강진단 추가비용에 한함)	
9) 수용비 및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퇴직연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등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제외)	
10) 체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공과금 ◦ 협회(가입)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관련협회에 한함) ◦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등	
다. 프로그램 운영비	◦ 입소 인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생활훈련, 직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 진행비 및 재료비용 등의 프로그램 비용	
라.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마.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 인권지킴이단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바. 운영위원회 운영비	◦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입소자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3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

- ▶ 정신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사업법”,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정보 → 법인/시설/단체에 게재)”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및 지침을 적용함

가 사업 목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거주·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

나 법적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1) 시설의 정의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2) 시설의 종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시행규칙 제19조 관련)”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검색

〈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종류		사업
1.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 등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 훈련 시설	가. 주간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들에게 직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공동 생활가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 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직업 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들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 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종합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 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 으로 제공하는 시설

3) 시설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 참조

*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중 “거실”은 입소·이용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침실 및 응접실이 이에 해당하며, 복도·통로 및 관리인 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은 제외함.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무실, 상담실로 사용하는 공간과 주방공간 (조리/식사)은 거실면적에 포함됨

〈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기준 〉(제17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세부유형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1. 공통사항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할 것 나. 입소자·이용자의 건강·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소화 및 비상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마. 적당한 냉방장치·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춘 것 바.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춘 것. 다만,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은 식당 및 조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사.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부지면적을 확보할 것 아. 제2호에 따른 생활시설, 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지역사회전환시설, 제4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 및 제6호에 따른 종합시설이 남·녀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침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고, 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할 것
2. 생활시설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춘 것. 이 경우 입소자가 24시간 휴식, 취침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응접실과 침실을 말하는 거실(복도·통로, 관리인 침실, 사무실, 상담실, 다락,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등은 제외)의 면적(이하 이 표에서 “거실면적”이라 한다)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1)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 2) 침실 3) 목욕실 4) 재활훈련실 5)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 6) 세탁장 및 건조장 나. 정원: 입소정원 50명 이하
3. 재활 훈련 시설	가. 주간 재활 시설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춘 것 가) 재활훈련실(면적은 이용자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휴게실 다) 집단활동실
	나. 공동 생활 가정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춘 것.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가)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 나) 침실(입소정원 4명인 시설은 1실당 2명 이하, 입소정원 5명 이상인 시설은 1실당 3명 이하여야 함) 다) 목욕실 라) 세탁장 및 건조장 마) 상담실 및 사무실(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2) 정원: 입소정원 4명 이상 6명 이하

구분	세부유형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다. 지역 사회 전환 시설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추어 줌.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가)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 나) 침실 다) 목욕실 라) 재활훈련실 마)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대기실 또는 휴게실 바) 세탁장 및 건조장 2) 정원: 입소정원 25명 이하
	라. 직업 재활 시설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추어 줌 가) 직업재활훈련실(면적이 이용자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재활상담실, 사무실 및 휴게실(재활상담실, 사무실 및 휴게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다) 근로활동을 위한 시설
	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1)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추어 줌 가)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의 시설(식당 및 조리실은 제외) 나) 휴게실 다) 프로그램실(면적은 이용자 1인당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4. 중독자 재활시설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추어 줌. 이 경우 거실면적은 입소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1) 응접실(독립된 방이 아닌 개방공간을 포함) 2) 침실 3) 목욕실 4)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 5) 휴게실 6) 세탁장 및 건조장 나. 정원: 입소정원 50명 이하	
5. 생상품 판매시설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추어 줌 1) 판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2) 상담실 및 사무실(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6. 종합시설	가. 시설: 다음 시설을 갖추어 줌 1) 강당 또는 회의실 2) 2개 이상을 결합한 각각의 정신재활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비고 :

- 정신재활시설(제3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입소정원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등을 추가로 입소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위 표 제5호에 따른 생상품판매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이용하거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함.
- 2의2.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및 중독자재활시설에는 입소자의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 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4) 설치·운영자(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소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1.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2.시설 소재지 / 3.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 4.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 / 5.정신재활시설의 종류)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함

5) 설치신고 구비서류(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 설치신고서 1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설치신고확인증(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 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관리

- 시설장은 시설유형에 따라 시설 내 주간 및 야간 상시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토록 하고, 근무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자해 및 타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설장은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를 갖추고 동절기·해빙기에는 특히 안전점검을 철저(보일러·가스·전기 등)히 하여야 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

가) 사고예방 조치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의 중요성 및 각종 시설물 취급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항상 숙지하도록 지도하여 사고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우선 조치

- 지하에 이용공간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장소를 옮기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
- 폐쇄된 생활관의 경우는 동별로 직원이 상주도록 하고 생활실의 안팎에서 열쇠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 화재 조기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조기경보가 가능토록 조치
- 소화시설·장비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설비는 소방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직원이 수시로 확인·점검
- 화재대피훈련 등 방재훈련을 시설별로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나) 사고시 임시조직 및 임무규정

시설장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의료조치, 초기대응(화재진화 등), 외부연락 등을 담당할 종합대책반의 업무분장표를 작성, 직원들이 유사시 자신의 임무를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분기별 훈련 실시

시설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훈련을 실시하되 분기별 중점 훈련 과제를 정하여 훈련 시 문제점, 훈련성과 등을 점검하여야 함. 단, 실제상황을 전제한 화재대응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기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 시설장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피난방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고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발간자료에 게재)에 따라 시설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정신재활시설 운영

1) 운영목표

- 정신재활시설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

2) 운영방침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입소·이용 또는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분포, 지역 내 정신질환자 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정신건강복지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임상기술이 있는 전문인력 위주로 운영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활용하고 교류를 촉진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예방·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입소·이용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2항 참조
 - ※ 단,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 시설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상 연령기준을 따름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입소 가능
 - ※ 지적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함
-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이용 가능
- 시설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입소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종사자 인권보호 및 폭력예방을 하여야 함



입소·이용자 준수사항

- 입소·이용자는 종사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입소·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입소·이용자가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종사자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 폭력) 욕설, 헐박, 위협 등
 -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치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종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입소·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4) 등록 및 입소·이용 관리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중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려는 정신질환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등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장은 당해 시설 입소자의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하여야 함.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및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 단, 긴급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 입소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등에 우선하여 입소·이용시켜야 함
- 시설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명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을 원하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게 미리 입소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재활 및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이 끝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도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입소·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가) 인권보호

- 입소·이용자에 대한 권리와 인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만, 고충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입소·이용자와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함
- 입소·이용서비스 선택 및 동의를 입소·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규정에 맞도록 시설 내 진정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진정서가 있을 시 봉인하여 즉시 인권위원회에 발송하여야 함
- 연 1회 입소·이용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입소·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내용과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외부유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나 치료적인 목적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제공가능함
- 가족 및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위계 등에 의한 강제 입소·이용 금지

- 직업재활을 방해한 강제노역 금지
-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입소·이용자 관리 금지
- 시설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금지
- 통신, 면회 등 행동제한 기타 인권유린 행위 금지
- 입소·이용자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 실시

나) 고충처리

- 입소·이용자들의 의견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업무분장표에 명시하여야 함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 고충 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 과정을 마련하고, 그 처리결과를 안내하여야 함
- 고충처리 접수, 회의 등 과정 및 결과는 해당 입소자에게 공지한 후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15일 이내)
-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함(홈페이지, 건의함, 고충처리함 등)

다) 재산상 권리 보호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을 준수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입소(이용)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입소(이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입소(이용)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이용)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이용)자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이용)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이용)자의 금전 관리 지원 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하고, 입소(이용)자의 금전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이용)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입소(이용)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입소(이용)자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하여야 함

※ 시설장은 본 안내 V.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중 1.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의 가. 인권교육의 실시 부분을 참조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6)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

- 시설장은 입소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장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입소·이용자는 지체 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통보 및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재활훈련과 휴식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전염성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가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발생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입소·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관리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에게 재발의 징후, 문제행동 등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가족 또는 정신과전문의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정기적으로 입소·이용자의 외래치료여부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 입소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건강관리(진료, 약물복용, 건강진단 등), 재활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생활일지, 업무일지 등 일지형태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7) 급식 등

- 시설장은 이용자의 건강 유지와 효율적인 자립을 위하여 적절한 운동 등 신체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시설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적정수준의 급식을 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급식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 조리에 부적합한 자의 식사 조리를 금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수도물 외의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 후 사용하여야 함

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 권고기준(공통사항)

1.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원함
2. 지역의 수요 및 이용률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원함

1) 인건비 및 운영비

가)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아래 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 시·도내 정신재활시설의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해야 함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종사자 법정 미배치로 인하여 감사 지적 사례 및 행정처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함
-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아래 표 참조)” 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되, 주 52시간제 시행 및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 교대인력 및 휴일근로수당 확보 등 법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202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시설(원)장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종사자 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종사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 정기승급일: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 특수근무수당 지급: 사무국장(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4만원 지급
 - 사무국장은 법정인력은 아니나,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임명할 수 있음(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 이전에 임명된 사무국장은 퇴직 시까지 계속 인정)
 - 자격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정신재활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종사자
 - 시설규모: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 시) 종사자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 지원 기준

- **공통사항**
 -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인력지원 기준은 해당시설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을 기본(최소기준)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및 추가지원도 가능하며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 금지



- **입소현원은 입소정원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종사자 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입소 현원 수**
 - 전년도 연평균 입소 현원 수(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말 입소 현원 수를 모두 더하여 12로 나눈 값=A)를 계산하여 이를 종사자 지원기준이 되는 입소현원수(A)로 적용
→ 연평균 입소 현원 수 = [(1월말 입소 현원 수 + 2월말 입소 현원 수 + ... + 11월말 입소 현원 수 + 12월말 입소 현원 수)/12]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입원일수(1개월간 2회 이상 입원 시 각각의 입원일수를 더한 값)이 30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입소자는 매월말 입소 현원 수를 계산할 때 0.5인으로 적용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외박일수(1개월간 2회 이상 외박 시 각각의 외박일수를 더한 값)이 30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매월말 입소 현원 수를 계산할 때 0.5인으로 적용
 - 전년도 입소 현원 수(A)를 기준으로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1년간 동일한 입소 현원 수(A)를 적용
 - 전년도 연평균 입소 현원 수는 매년 1월말까지 산출하여야 함
※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안정화 쉽지는 매월말 입소 현원 산정 시 1인으로 적용
- **지원대상 종사자 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용 현원 수**
 - 전년도 연평균 이용 현원 수(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말 이용 현원 수를 모두 더하여 12로 나눈 값=A)를 계산하여 이를 종사자 지원기준이 되는 이용 현원 수(A)로 적용
→ 연평균 이용 현원 수 = [(1월말 이용 현원 수 + 2월말 이용 현원 수 + ... + 11월말 이용 현원 수 + 12월말 이용 현원 수)/12]
 - 전년도 이용 현원 수(A)를 기준으로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1년간 지원대상 종사자 수 결정
 - 전년도 연평균 이용 현원 수는 매년 1월말까지 산출하여야 함
- 연평균 입소(이용) 현원 수 산식에 따른 계산값이 소수인 경우 소숫점이하 첫 번째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연평균 입소(이용) 현원 수로 적용함(예: 150.6 → 151명, 150.4명 → 151명)
- 지역적으로 인력수급여건이 열악하여 아래 기준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에 한하여 재활활동요원 1명으로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음**
- 정신재활시설의 장이 공동생활가정을 2개 이상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상근이어야 함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기존의 주거제공시설이 결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주거제공시설에 대한 인력 지원은 입소 현원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거제공시설 개별 시설 인력지원기준(시설장 1명,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1명 등)을 적용함

〈 시설 유형별 지원 기준 〉

구분	세부유형	지원 기준
가. 생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소정원 12명당 1명을 두되, 정원에서 12명으로 나는 나머지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가. 입소현원 12명~17명: 전문요원 1명 나. 입소현원 18명~29명: 전문요원 2명 다. 입소현원 30명~41명: 전문요원 3명 라. 입소현원 42명~53명: 전문요원 4명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9명당 1명을 두되, 정원에서 6명으로 나는 나머지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가. 입소현원 9명~13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나. 입소현원 14명~22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다. 입소현원 23명~31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3명 라. 입소현원 32명~40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4명 4) 조리원: 2명 5) 영양사: 1명(집단급식소 신고시설)
나. 재활 훈련 시설	1) 주간 재활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소정원 12명당 1명을 두되, 정원에서 12명으로 나는 나머지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5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입소현원 12명~17명: 전문요원 1명 나. 입소현원 18명~29명: 전문요원 2명 다. 입소현원 30명~41명: 전문요원 3명 라. 입소현원 42명~53명: 전문요원 4명 이하생략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이용인원에서 15명으로 나는 나머지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9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15명~22명: 재활활동요원 1명 나. 이용현원 23명~37명: 재활활동요원 2명 다. 이용현원 38명~52명: 재활활동요원 3명 라. 이용현원 53명~67명: 재활활동요원 4명 이하생략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이용인원에서 30명으로 나는 나머지가 16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10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30명~45명: 재활활동보조원 1명 나. 이용현원 46명~75명: 재활활동보조원 2명 다. 이용현원 76명~105명: 재활활동보조원 3명 이하생략

구분	세부유형	지원 기준
		마) 영양사: 1명 (집단급식소 신고시설에 한함) 바) 조리원: 1명 (집단급식소 신고시설에 한함) 사) 사무원: 1명 (이용인원 40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함)
	2) 공동 생활 가정	가) 시설의 장: 1명 나) 시설의 장은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3개까지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음 다) 시설의 장이 2개 이상의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추가 시설당 재활활동요원 1명씩을 둠
	3) 지역 사회 전환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소정원 7명당 각 1명을 두되, 정원에서 7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가. 입소현원 7명~10명: 전문요원 1명 나. 입소현원 11명~17명: 전문요원 2명 다. 입소현원 18명~24명: 전문요원 3명 라. 입소현원 25명~31명: 전문요원 4명 다)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6명당 각 1명을 두되, 정원에서 6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가. 입소현원 6명~ 9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나. 입소현원 10명~15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다. 입소현원 16명~21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3명 라. 입소현원 22명~27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4명 라) 조리원: 2명
	4) 직업 재활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소정원 12명당 1명을 두되, 정원에서 12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5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입소현원 12명~17명: 전문요원 1명 나. 입소현원 18명~29명: 전문요원 2명 다. 입소현원 30명~41명: 전문요원 3명 라. 입소현원 42명~53명: 전문요원 4명 이하생략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67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15명~22명: 재활활동요원 1명 나. 이용현원 23명~37명: 재활활동요원 2명 다. 이용현원 38명~52명: 재활활동요원 3명 라. 이용현원 53명~67명: 재활활동요원 4명 이하생략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7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구분	세부유형	지원 기준
		가. 이용현원 30명~45명: 재활활동보조원 1명 나. 이용현원 46명~75명: 재활활동보조원 2명 이하생략 마) 영양사: 1명(집단급식소 신고시설에 한함) 바) 조리원: 1명(집단급식소 신고시설에 한함) 사) 사무원: 1명(이용인원 40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한다)
	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소정원 12명당 1명을 두되, 정원에서 12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5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입소현원 12명~17명: 전문요원 1명 나. 입소현원 18명~29명: 전문요원 2명 다. 입소현원 30명~41명: 전문요원 3명 라. 입소현원 42명~53명: 전문요원 4명 이하생략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이용인원에서 15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9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15명~22명: 재활활동요원 1명 나. 이용현원 23명~37명: 재활활동요원 2명 다. 이용현원 38명~52명: 재활활동요원 3명 라. 이용현원 53명~67명: 재활활동요원 4명 이하생략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이용인원에서 30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16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10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가. 이용현원 30명~45명: 재활활동보조원 1명 나. 이용현원 46명~75명: 재활활동보조원 2명 다. 이용현원 76명~105명: 재활활동보조원 3명 이하생략 마) 영양사: 1명 (집단급식소 신고시설에 한함) 바) 조리원: 1명 (집단급식소 신고시설에 한함) 사) 사무원: 1명 (이용인원 40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함)
다. 중독자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입소정원 12명당 1명을 두되, 정원에서 12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가. 입소현원 12명~17명: 전문요원 1명 나. 입소현원 18명~29명: 전문요원 2명 다. 입소현원 30명~41명: 전문요원 3명 라. 입소현원 42명~53명: 전문요원 4명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9명당 1명을 두되, 정원에서 6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구분	세부유형	지원 기준
		가. 입소현원 9명~13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나. 입소현원 14명~22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다. 입소현원 23명~31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3명 라. 입소현원 32명~40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4명 4) 조리원: 2명 4) 영양사: 1명(집단급식소 신고시설)
라.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마. 종합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가) 이용인원의 12명당 1명을 두되, 정원에서 12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가. 이용현원 12명~17명: 전문요원 1명 나. 이용현원 18명~29명: 전문요원 2명 다. 이용현원 30명~41명: 전문요원 3명 라. 이용현원 42명~53명: 전문요원 4명 이하생략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2명당 11명을 두되, 정원에서 12명으로 나눈 나머지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가. 입소현원 12명~17명: 전문요원 1명 나. 입소현원 18명~29명: 전문요원 2명 다. 입소현원 30명~41명: 전문요원 3명 라. 입소현원 42명~53명: 전문요원 4명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 30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이용현원이 7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1) 이용현원 30명~45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2) 이용현원 46명~75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이하 생략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9명당 각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입소현원이 3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1) 입소현원 9명~13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1명 2) 입소현원 14명~22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2명 3) 입소현원 23명~31명: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각 3명 이하 생략 4) 조리원: 1명(입소인원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함) 5) 영양사: 1명(집단급식소 신고시설) 6) 이용인원과 입소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52시간제가 시행관련 생활시설에서 필요한 교대인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유형별로 인력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나) 우수시설 종사자 성과금

- 지급 권고기준
 - 최우수등급(A) 시설: 1인당 30,000원/월
 - 우수등급(B) 시설: 1인당 20,000원/월
- 지급기한: 다음 평가에 의한 우수시설 결정 시까지

다)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용기준 등

-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함
 - 단, 시·도지사는 지출항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성격(경상보조)”에 어긋나지 않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항목’의 조정을 승인할 수 있음
 -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로 정신재활시설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시설장은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서를 비치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에 의한 보고·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입소·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금액 권고기준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지원 금액 기준 인상(100원 단위 절사)

(단위: 원/1인)

구 분	2024	2025	2026
입소자	1,099,000	1,131,000	1,188,000
이용자	751,000	773,000	850,000
프로그램비	358,000	368,000	405,000

- 매월 입소(이용) 현원 1인당 보조하는 관리운영비는 전월말 현재 입소(이용) 현원 수를 기준으로 함(지역사회전환시설의 안정화 쉼터는 전월말 입소 현원 산정 시 1인으로 적용)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입원일수(1개월간 2회 이상 입원 시 각각의 입원일수를 더한 값)가 30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입소자는 전월말 현재 입소 현원 수에서 제외하고 관리운영비 지원(공동생활가정에도 적용)

-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외박일수(1개월간 2회 이상 외박 시 각각의 외박일수를 더한 값)가 30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전월말 현재 입소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관리운영비 지원(공동생활가정에도 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유형별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라) 프로그램 운영비

- 입소 및 이용인원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생활훈련, 작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 진행비 및 재료비용 등)으로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이용인원 산정기준

- 정신재활시설 이용인원 산정 기준은 해당시설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되, 종전(2023년)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 금지
- 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은 등록회원 중 실제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을 운영일수(토, 일·공휴일은 제외)로 나눈 수로 산정
 -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 : 등록회원에 대해 면담·방문·훈련·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로서 외부 재활취업자 및 방문관리 대상자 포함
 - 시설의 운영일수 :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일수 조정 가능
-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 가급적 내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재활시설의 특성상 직업재활,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이 용 유 형	이용인원 가중치	관 련 기 록
• 등록회원의 내소이용	1	출근부
• 취업장 방문	취업인원	취업회원 사례, 취업장현황, 취업회원현황, 방문 및 상담기록
• 가정방문	1	가정방문기록
• 주말, 공휴일, 저녁시간 이용	1	프로그램기록
• 미등록회원의 내소	1	출근기록, 방문기록, 지원기록
• 가족의 내소이용	1	프로그램일지, 내소상담일지
• 비대면서비스	1	프로그램일지 등
• 지역사회 연계 이용	1	프로그램일지, 지원기록 등

- 감염병 등 재난 상황과 내소이용, 방문상담 등 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SNS, 영상통화, 온라인 교육, 전화상담 등 원격통신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 위 이용유형 외 지역사회 연계 이용(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인식개선 사업, 동료지원, 외래치료 동행 등 재활 서비스 이용), 재가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인정되는 경우 이용인원으로 산정 가능

- 주) 1) 취업인원: 시설에 등록중인 회원이 기관외부의 취업장에 취업하여 주 1회 이상 취업장 방문이나 상담을 실시한 경우 매일 이용하는 이용인원으로 인정
 - * 취업인원에 대한 이용인원 인정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외부의 임시취업, 지지취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국한됨. 시설내부의 보호작업은 일일 이용인원으로만 인정하며 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나 담당자의 지원 없이 이루어진 회원의 자발적인 독립취업의 경우는 이용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2) 가정방문: 1인을 이용인원으로 산정
- 3) 주말, 공휴일 등 이상적인 이용시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이용인원을 1인으로 간주
- 4) 미등록회원의 이용: 정신질환자등이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등록전 안내, 초기상담을 거쳐 적응기간에 참여중인 경우와 다른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보건소 정신보건프로그램 등) 및 지역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되어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미등록 이용인원으로 인정함
 - ※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 5) 타 시설(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원(소) 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일부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인원에는 포함시킬 수 없음
 - * 타 시설이라 함은 입원 및 입소시설로 24시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함
- 6) 가족의 내소이용 : 등록회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회원의 재활을 위한 가족의 내소상담에 참여한 경우 가족 1인을 일일 이용인원으로 인정함
- 7) 시설이용등록을 위한 정신질환자의 방문안내 및 상담, 전화상담의 경우 이용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 8) 시설은 매월 이용 및 입소인원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출근부와 함께 3년간 보존함
- 9) 지역사회 연계 이용 : 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지원 또는 사업, 동리지원, 외래치료 동행, 이동 및 동행 지원, 프로그램 이용 등을 실시한 경우 이용인원으로 인정함

2) 인력관리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 인력기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참고
- '16.1.1일 당시 정신재활시설의 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개정 규정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보는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17.1.1일까지 전문요원의 수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재활활동보조원 채용 시설은 정신질환 회복 당사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1.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 종사자 수의 기준

구분	세부유형	종사자의 수
가. 생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함)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함)
나. 재활 훈련 시설	1) 주간재활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마)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함)
	2) 공동생활 가정	가) 시설의 장: 1명 나) 시설의 장은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3개까지 공동생활 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음 다) 시설의 장이 3개의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둠
	3) 지역사회 전환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다)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함) 라)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함)
	4) 직업재활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5)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 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구분	세부유형	종사자의 수
다. 중독자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정원 15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3)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함) 4)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함)
라.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마. 종합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정신건강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함 3)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 30명당 각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0명당 각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끝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함 4) 조리원: 1명(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함)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함) 6) 이용인원과 입소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음

※ 비교 :

1. 지역적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인원수 중 1명은 재활활동요원 1명으로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음.
2.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을 2개 이상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 이어야 함
3.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자격
 - 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2) 정신건강전문요원
 - 3)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의 대표
 - 4)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5) 나목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또는 5년 이상 그 시설의 장으로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다만, 제1호나목2)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에 두는 재활활동요원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함
 - 1)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에서 스스로 회복하여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함
- 라.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함

나) 호봉관리

●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할(100%) 인정
 -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 단, 주거제공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경우에는, 이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중 ‘시설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자격(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8)을 취득한 날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10할을 인정하고, 해당 자격 취득이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7할을 인정함(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 이전에 이미 인정받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에는 계속 인정)
2.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10할(100%) 인정
3.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자살예방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 10할(100%) 인정
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절차조력지원사업 근무경력: 10할(100%) 인정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1)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영양사, 조리사로서
 -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 동종 직종: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 단, 간호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 ②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④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2002. 6. 14 이전에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서 2002. 6. 15 이후 근무경력(다만, 조건부 신고시설 근무경력자만 인정)
 -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3)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경력

4)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202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경력

●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 이 기준의 시행에 따른 호봉의 재확정 및 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함

● 기 타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야간근무 등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 가능(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초과비용은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지원)
- 소속법인 이사회의 결의 또는 시설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 권고기준 이상으로 지급 가능(증액분에 대한 사회보험 등은 시설운영자나 법인에서 부담)

다) 종사자 근무기준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202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참조

-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국고보조인원 이상의 시설종사자를 확보하되,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 ※ 202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등) 참조

- 시설장은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2026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 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 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1호봉	2,980,600	2,683,200	2,477,200	2,360,100	2,281,800	2,225,400	2,197,000
2호봉	3,082,400	2,769,600	2,538,600	2,416,400	2,324,300	2,264,500	2,222,100
3호봉	3,186,800	2,870,500	2,606,200	2,485,000	2,366,500	2,308,600	2,261,100
4호봉	3,305,300	2,973,900	2,712,200	2,553,200	2,411,500	2,351,200	2,302,700
5호봉	3,440,900	3,095,900	2,824,500	2,621,900	2,475,400	2,399,600	2,343,500
6호봉	3,582,800	3,221,100	2,940,500	2,717,800	2,538,700	2,440,300	2,396,200
7호봉	3,724,600	3,345,900	3,061,500	2,815,600	2,633,500	2,524,700	2,435,800
8호봉	3,871,200	3,489,100	3,183,000	2,918,600	2,737,600	2,615,600	2,500,200
9호봉	4,018,900	3,637,600	3,301,000	3,037,600	2,835,500	2,689,400	2,579,300
10호봉	4,159,300	3,778,200	3,426,800	3,137,400	2,921,200	2,783,500	2,667,700
11호봉	4,310,200	3,915,700	3,542,900	3,237,200	2,997,200	2,851,500	2,736,000
12호봉	4,437,500	4,027,400	3,647,900	3,326,300	3,062,600	2,928,400	2,802,700
13호봉	4,556,000	4,132,400	3,739,600	3,401,300	3,125,400	2,996,600	2,872,800
14호봉	4,652,800	4,231,300	3,828,600	3,482,900	3,189,500	3,035,600	2,925,900
15호봉	4,750,300	4,326,700	3,914,000	3,561,300	3,255,800	3,070,000	2,972,100
16호봉	4,842,600	4,402,200	3,994,600	3,636,700	3,328,000	3,129,800	3,018,100
17호봉	4,929,200	4,481,600	4,071,400	3,707,600	3,399,600	3,188,400	3,076,100
18호봉	5,011,100	4,561,200	4,146,100	3,775,900	3,467,900	3,246,900	3,132,500
19호봉	5,087,700	4,632,100	4,212,000	3,839,400	3,529,400	3,296,500	3,192,200
20호봉	5,156,000	4,700,700	4,277,800	3,901,200	3,589,300	3,344,300	3,242,500
21호봉	5,223,300	4,767,900	4,338,700	3,964,000	3,643,100	3,401,500	3,299,100
22호봉	5,287,900	4,829,900	4,397,700	4,018,500	3,697,400	3,466,200	3,364,200
23호봉	5,348,200	4,888,800	4,453,600	4,070,900	3,747,100	3,533,200	3,428,600
24호봉	5,404,900	4,943,900	4,502,900	4,121,000	3,796,000	3,595,400	3,492,000
25호봉	5,460,400	4,998,800	4,551,900	4,174,400	3,842,500	3,652,800	3,555,900
26호봉	5,505,800	5,046,700	4,599,700	4,221,600	3,885,100	3,703,100	3,615,100
27호봉	5,552,100	5,091,700	4,640,000	4,260,000	3,921,800	3,752,400	3,664,400
28호봉	5,592,400	5,132,200	4,680,800	4,300,400	3,957,900	3,786,500	3,701,100
29호봉	5,623,300	5,166,100	4,718,300	4,337,900	3,992,800	3,824,700	3,739,500
30호봉	5,649,300	5,202,100	4,753,400	4,371,900	4,025,800	3,848,100	3,773,500
31호봉	-	5,235,300	4,785,000	4,405,000	4,057,900	3,887,700	3,799,800

※ 축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3,266,700원

*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등 / *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등

〈2026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단위: 원/월)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40,000원	해당 사항 각각 지급하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 ※ 이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이후	120,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 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2026년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직위 분류표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직위	정신재활시설의 직위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영양사, 재활활동요원
생활지도원	재활활동보조원, 생산품판매시설의 사무원
관리직	생산품판매시설의 관리인
기능직	조리원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3년(4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수준은 복지서비스의 질과 밀접하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202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권고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계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법정공휴일은 별도 휴일수당 지급 가능
- 유급병가 지급
 -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연간 30일 범위에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 지방자치단체 지침, 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에 따라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병가로 인한 입소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함
-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금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 월 35시간까지 인정
 - 일반 종사자(시설장 포함)*: 월 20시간까지 인정
 -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아님
 - 시설장은 시설 특성에 따라 종사자 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아님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보조금 집행을 안내하는 최소지급기준으로 각 시설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 통상임금등 근로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

[참고자료]

2026년 정신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대상 항목 (예시)

지원 항목명	지 원 내 용	비고
가. 입소자보호비	※ 시설 입소자의 건강, 위생 등의 직접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입소자의 간식, 우유 등 생계 외의 급식 제공을 위한 비용	
2) 수용기관경비	◦ 입소자의 편의 증진 및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비누, 샴푸, 세제, 면도기, 치약, 칫솔, 수건, 화장품, 침구류, 생리대, 기저귀 등) 구입비	
3) 의약품비	◦ 입소자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나. 시설관리비	※ 시설물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일상생활용품 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하는 집기류를 제외한 생활용품 구입)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오폐수정화시설 운영비	◦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	
5)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PC, 책상, 의자, 테이블, 수납장 등)구입비	
6) 시설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비	
7)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 중인 시설 업무용 차량의 연료비, 수리비등	
8)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전기·우편·전화·운송료 등	
9)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10)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 등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 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상해보험료 및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건강보험 건강진단 추가비용에 한함)	
11) 수용비 및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퇴직연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등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제외)	
12)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공과금 ◦ 협회(가입)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관련협회에 한함) ◦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등	
13) 임차료	◦ 시설 소재지의 월 임차료	
다.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라.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 인권지킴이단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운영비
마. 운영위원회 운영비	◦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운영비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입소자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지자체 논의)

바 행정사항

1) 회계 및 물품관리

- 시설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수익금, 후원금, 입소·이용료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장은 예산(보조금, 입소료 수입금, 후원금 등) 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시설장은 비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프로그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https://ceu.ssis.go.kr>))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시 회계프로그램(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내용을 보완·강화하여야 함

2) 입소·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시설별로 정해진 비용수납 한도액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함(산출된 금액 중 백원 단위는 절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함
-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으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백원 단위 금액은 절사)

* '26년도 입소비용한도액: 월 570,000원

〈 2026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

구 분	월평균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426,741원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372,206원
100인 이상~300인 미만 시설	350,882원
300인 이상 시설	350,841원

- 보장시설 적용을 받지 않는 정신재활시설의 유료 입소(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입소(이용)비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입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단, 유료 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설치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 관리감독 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 입소(이용)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의 지출은 특정항목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입소(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후원금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후원금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맞도록 집행해야 함
 ※ 법인 산하의 시설이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4) 문서관리

- 시설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관련 장부 등을 비치·보존하여야 함

부책(장부)명	보관·비치기간
• 시설 설치신고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 입소·이용자의 명단, 생활상태, 진료·투약, 생활·작업훈련 내용에 관한 서류	10년
• 정신재활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5년
•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대장·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	5년
• 시설 운영일지	3년
•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3년
• 소속법인의 정관, 직원의 인사복무,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3년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시설장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별지 제 III-2-5호] 서식의 시설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해당란에 함께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대처할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도·감독

가) 시설 운영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부적합 시설 행정조치 강화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음
- 부당 입소·이용, 인권유린행위, 예산유용, 입소·이용료 부당징수 등이 적발되거나, 금전 및 물품 출납 서류 등 관계 서류를 미작성, 미제시할 경우 행정처분 후 당해 시설을 특별관리할 수 있음
- 차후 지속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관리할 수 있음
- 동일 위반사항이 재적발 되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강화 및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7) 보고

가)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 보고

- 정신재활시설장은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를 매 반기(6월, 12월) 다음달(7월, 1월) 7일까지 [별지 제 III-3-1호] 서식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매 반기별로 동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 III-3-1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미보조시설 현황 포함

나) 지도·감독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반기별 정신재활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 III-3-2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8) 미인가시설 관리

- 미인가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됨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불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진단이나 치료 등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로 판명될 경우 허가된 시설로 전원하거나 귀가하도록 하여야 함.

9)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 입소자 본인 사망 등으로 사실상 본인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의거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함
-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공고있는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 민법 제150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에 따라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할 수 있음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라 제1057조의2에 의해 분여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후 '민법' 검색 관련 조문 참조



사망자 유류금품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시행일: 2021.6.30.]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시행규칙 제52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목록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1]
- 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2]



• 잔여재산 목록 작성 및 유류금품 평가

- 시설장은 사망자의 재산목록 작성 및 유류금품을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2명(내부1, 외부1 이상) 이상 동행 입회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여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의복, 신발, 가방, 침구, 가구, 가전류 등의 생필품과 10만원 이하 시계, 반지·귀걸이·장신구 등은 지자체와 협의 하에 재산목록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에서 자체 보관 및 처분할 수 있다.
- 잔여재산목록에는 작성일시, 장소와 사유, 청구인(시설장) 성명과 주소, 입회자, 동산 및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 채권과 채무의 표시,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함



- 유류금품의 평가

구 분	평 가 기 준
현금, 예·적금, 수표 등 현금성 자산	사망 시점 금액
귀금속류	금은방, 전당포 등 거래소 감정가
부동산·채권·주식 등	당시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되, 그 평가시점 및 방법·기준 등을 명시

사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사업

1) 생활시설

가) 시설의 정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나) 주요 목적

정신질환자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재활훈련을 통해 자립과 회복을 도모

다) 운영 목표

- 의식주·건강·안전 등 기본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기 관리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적응 기술을 강화
- 개별서비스 계획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자립생활 준비 교육, 취업 및 교육 연계를 통해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입소자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회복 중심의 재활 서비스 실현

라) 입소 관리

- 입소자는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2020.4.24. 시행)
 - * 3회 연장하는 경우 총 입소기간은 5년(기본계약 2년+연장 3년)임
-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무연고자가 3회(기본계약2년 이후 1년 단위로 3회 연장한 경우)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경우, 매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사회 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받아야 함
- 입소자는 시설장과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분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하여야 함
- 단,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소·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 조치를 아니할 수 있음
- ※ 이때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심의 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및 관계서류의 예>**

- 보호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 조회 요청한 기록 첨부)
-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방치·유기하는 등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에 근거하여 고발조치한 관계서류 첨부)
- 기타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 상황 등을 명시한문서 등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 시설운영자가 해당 입소자(입소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
- ①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②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 ③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 ④ 생활부담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⑤ 독립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활이 가능한 경우
 - ⑥ 본인 또는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설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의료기관 장기입원 또는 장기외박으로 입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마) 주요 사업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장은 생활시설 입소자가 안정된 주거와 생활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증진하여 자립과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소 시 개별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1) 사회재활활동

-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 다음의 활동을 말함

(가) 생활지원활동

- 입소자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보장과 일상생활 유지·향상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의식주, 위생, 건강, 안전 등 기본 생활 유지와 관리 지원
 - 자기관리, 대인관계,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지도
 - 시설 내 자치활동, 자조모임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
 - 입소 시 주의사항 및 권리·의무 안내, 적응을 돕는 초기 지원

(나) 건강지원활동

-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치료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주치의와 정보교류 및 개별 상담·논의
 - 신규 입소자의 경우 주치의에게 시설 활동 정보를 제공(본인 동의 시)
 - 약물 및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긴장 완화 교육
 - 일반 및 구강 등 건강검진 실시

(다) 가족지원활동

- 입소자의 가족이 치료·재활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연간 가족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가정방문, 회의참여, 소식지·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보 제공
 -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 활동 운영
 - 가족 욕구 조사 및 그 결과를 서비스 계획에 반영

(라) 지역사회 연계활동

- 입소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사회재활, 직업재활, 교육·의료·복지자원 연계
 - 자원봉사 활동 및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인식 개선 활동 추진

(2) 직업재활활동

-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취업·교육기관 연계 및 훈련 지원
 -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 취업알선 및 취업 지원 활동
 - 취업자의 직업유지 및 관리 활동

(3) 자립지원활동

- 입소자가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의식주, 경제, 취업, 건강 등 영역별 퇴소 후 목표 설정
 - 개별 또는 집단 활동으로 자립생활 준비 교육
 - 지역사회 주거 이동 지원

바) 운영 방침

(1) 환경 및 위생관리

- 시설장은 입소자의 적절한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

(2) 입소자의 인권 보호

- 입소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 존중
-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입소자 중심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구성: 보호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인권지킴이단 운영: 정기회의(연 2회 이상), 사례회의(필요시), 임시회의(필요시)

(3) 행정사항

※ 시설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지급액 수준을 고려하여,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시설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평균 월 급여지급액 이상)의 입소료를 책정할 것을 권고함. 입소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다른 입소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소료 보다 입소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보장시설 수급자의 평균 월 급여 지급액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

- 국고보조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입소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우선하여 입소·이용토록 하여야 함
 - ※ 보장시설 적용을 받는 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입소시키고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음
- 보장시설 적용을 받는 생활시설은 유료 입소자로부터 징수한 입소비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함. 단, 입소료 장기체납으로 입소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체납 유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에 따라 다음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유료 입소료 중 ‘2026년 보장시설 수급권자 1인당 월 급여지급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료입소자 생계비 통장에 입금하여 유료입소자의 생계비(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하여야 함
 - ※ 보장시설 적용을 받는 생활시설의 수급자 급여 지급액은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연료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유료입소자의 주식비 및 부식비는 시설 수급자의 주식비 및 부식비에 상응하는 비용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함 (시설 후원금과 후원물품 포함)
 - 유료 입소료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입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단, 유료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설치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 관리감독 부서에 승인받아야 함)

2) 주간재활시설

가) 시설의 정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정신질환자들에게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 회복을 위한 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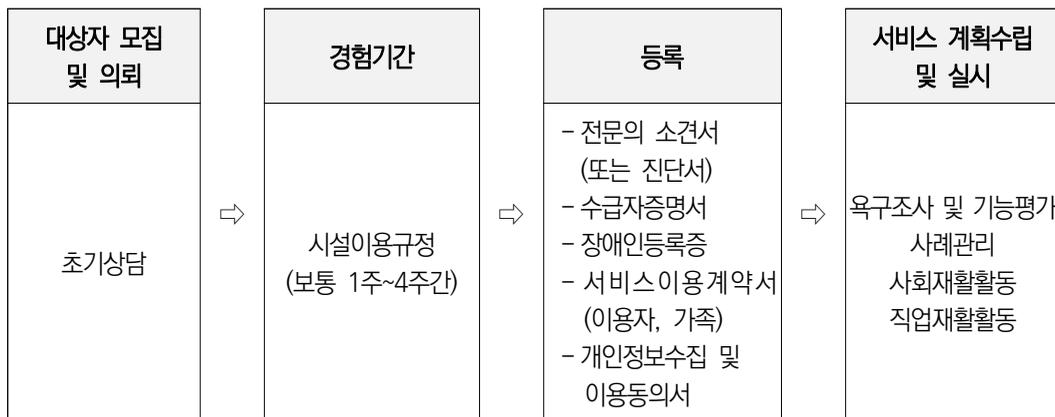
나) 주요 목적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직업적 자립을 목적으로 개인의 욕구를 존중한 재활 및 자립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

다) 운영 목표

- 시설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 훈련 서비스를 제공
- 정신질환자들의 의미 있는 낮 활동과 회복지향 일상을 조력
-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 및 제공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

라) 등록 및 이용절차



마) 주요 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1) 사회재활활동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가)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 지원

- 요리기술, 위생교육, 예절교육 등 일상생활기술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활동 지원

(나) 약물 및 증상 관리 지원

- 약물과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 신체건강을 위한 활동 지원

(다)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관리를 위한 지원
- 긴장 완화를 위한 정서관리 활동(글쓰기, 음악, 미술 등)을 위한 지원

(라) 동료 상담 등을 통한 소통 및 여가 및 문화 활동

- 동료상담가 양성 및 활동 지원
-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취미 활동 등 체험 위주의 여가활동 지원

(마)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 정규학교 지원 및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 교양,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권리이해를 위한 성교육, 인권교육 등 교육 지원

(바) 자조모임 및 자치활동

- 자조모임이나 자치회를 통한 이용자가 자조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 행사 참여 및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 기타

- 이용자와 그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합한 지역별, 시설별 서비스의 개발
- 시설장은 시설 운영 여건과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직업재활활동

-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정신재활 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 작업
 -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 시설장은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 직업재활 활동 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 내부고용인원을 포함한 직업재활 지원활동에 대한 정확한 안내사항을 마련하고, 직업재활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 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소·이용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정신재활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공동생활가정

가) 시설의 정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나) 주요 목적

지역사회 자립을 목적으로 공동생활 및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생활훈련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

다) 운영 목표

-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입소자에게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독립생활의 기초체계 제공
- 입소자의 재발 및 만성화 예방을 위해 회복 중심·개인 삶(재활)을 지원
- 일상생활관리, 복약관리, 자립을 위한 생활훈련으로 입소자의 자립역량 함양

라) 입소 관리

- 입소자는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2020.4.24. 시행)
- * 3회 연장하는 경우 총 입소기간은 5년(기본계약 2년+연장 3년)임
- 입소자가 무연고자이거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무연고자가 3회(기본계약2년 이후 1년 단위로 3회 연장한 경우)를 초과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경우, 매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소·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사회 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받아야 함
- 입소자는 시설장과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분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하여야 함
- 단,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소·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 조치를 아니할 수 있음

※ 이때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심의 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및 관계서류의 예>

- 보호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 조회 요청한 기록 첨부)
-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방치·유기하는 등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정신건강복지법 제84조에 근거하여 고발조치한 관계서류 첨부)
- 기타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 상황 등을 명시한문서 등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시설운영자가 해당 입소자(입소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

- ①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 ②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 ③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 ④ 생활부담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⑤ 독립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활이 가능한 경우
- ⑥ 본인 또는 보호자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설에서의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의료기관 장기입원 또는 장기외박으로 입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마) 주요 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1) 사례관리

시설장은 입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개인별 욕구사정 및 동원가능한 자원을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사례관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2) 사회재활활동·직업재활활동의 제공 및 연계

시설장은 입소자의 일상생활을 관리능력과 사회생활의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별 서비스 욕구에 따른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가) 사회재활활동

-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동료 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나) 직업재활활동

-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정신재활 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 시설장은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 직업재활활동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질환자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행할 것

-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 직업재활 활동 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 내부고용인원을 포함한 직업재활 지원활동에 대한 정확한 안내사항을 마련하고, 직업재활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소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정신재활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는 주간에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장 또는 학교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 시설장은 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입소자를 연계하여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운영 방침

(1)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 시설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적정수준의 급식을 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급식하여야 함
- 시설장은 전염성질환, 화농성장상 등 조리에 부적합한 자의 식사 조리를 금지하여야 함
 - ※ 단, 조리훈련을 병행하는 경우 종사자 및 입소자들이 훈련이 가능한 식단으로 구성하되 영양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급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시설장은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적절한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2) 입소자의 인권 보호

- 입소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 존중

(3) 행정사항

- 공동생활가정을 2개소 이상을 시설장 1명이 동일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내에 설치·신고하여 함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 공동생활가정에서 동일 건물 내의 사무실 및 상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동일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내 2개 이상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결합하여 공동생활가정 1개소로 운영할 수 있음
- '15.11.19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주거제공시설은 '17.12.31.까지 개정된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단, 수용인원 및 종사자의 수는 종전 규정을 따름)



개정이전 <주거제공시설>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1. 정원 1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함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 가. 거실
 -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 다. 세탁 및 건조장
 -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 공동생활가정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주거형태로 하되,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생활가정은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할 것
- 시설장은 종사자 수의 기준에 따라 시설내 근무자가 없는 시간대의 안전관리를 위해 입소자의 대응능력향상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야 함
-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에 따라 주 5일 또는 주 40시간, 상근을 원칙으로 함. 단 시설장이 2개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주 7일 중 근무요일을 정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의 재활활동요원의 근무 형태는 시설장과 협의하되, 야간근무를 전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함
 - ※ 지자체 권고로 인한 야간근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표준근로계약을 배포 및 근로기준법에의한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
- 시설장 및 종사자의 휴가 또는 병가, 공휴일에 대체 근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체 근무자의 인건비는 지자체가 확보 및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되,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부담 또는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한 주택자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에 관한 예산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은 보장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수준(보장시설 수급자 평균 월 급여지급액 이상)의 입소료를 책정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은 노유자시설을 적용받지 않으나 (건축법 시행령), 소방시설법에 의거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4) 지역사회전환시설

가) 시설의 정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지역 내 정신질환자들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주요 목적

- 정신의료기관 혹은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중인 정신질환자의 반복적, 장기적인 입원을 막고 지역사회 거주 기반의 일상회복과 지역사회통합을 도모하도록 함
- 지역내 정신질환자 등에게 일시 이용 및 단기 이용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상의 재발과 재입원을 막아 지역 내 회복과 자립을 도모하도록 함

다) 운영 목표

- 단기이용 입소,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유지율 제고
- 정신의료기관 연계 지원을 통해 외래유지율 제고
- 안정화 쉼터 제공을 통해 재입원을 감소

라) 주요 대상자

- 퇴원 후 재발로 반복적인 입원을 하는 대상자
- 자타해 위험은 높지 않으나 정신과 증상으로 일상이 불안정한 대상자
- 안전을 위한 단기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 퇴원 및 입원 합의를 위한 시도 과정이 필요한 대상자

마) 입소 관리

- 입소자는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한 달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최대 6개월). 단, 6개월을 초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입소자는 시설장과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분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음
- 시설장은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하여야 함

바) 주요 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1) 전환지원

-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 유도를 목적으로 지역사회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기강화형, 지속적 사후관리형 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의 경험을 통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로의 편입을 지향
 - 정신의료기관 혹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동기강화를 목적으로 운영
 - 1개월을 기본으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하면서 개별화된 맞춤형 정신사회재활서비스 체험
 - 참여 대상자에 대한 심리사회적사정 및 개별화된 자립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
 - 퇴소 유형(가정복귀, 기관연계, 독립생활 등)에 따른 자원연계
 - 가족지원, 응급/의료지원과 연계 사업
 - 지역사회 연계율 및 지역사회유지율 제고를 위하여 퇴소 후 6개월 이상 모니터링

(2) 안정화쉼터

-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쉼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지역에서 안정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발방지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 개별 대상자의 재발방지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적극적 사례관리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 거주 기반의 자립을 목표로 함
 - 퇴소 후 적극적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6개월 이상 모니터링
 - 정신질환자의 안정화, 가족의 부담 완화, 가족 간 의사소통 증진

(3) 자립지원

- 집중 사례관리를 통한 개별화된 자립지원 계획수립, 맞춤형 지역사회통합 지원, 지속적 사후관리 제공
 - 최대 6개월 간 입소를 통한 단기 집중 사례관리 제공
 - 정신건강 및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포괄성 확보
 - 응급/의료 지원과 연계사업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동료지원인 활용을 통한 당사자 중심의 지원
 - 강점 기반실천과 개별화된 회복지향 지원

(4)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지원

- 기관 내, 외에서 개별 혹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사회재활 훈련과 활동
 - 일상생활훈련: 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복장 및 미용관리, 금전관리, 주거관리 등
 -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훈련
 - 약물, 증상,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훈련
 - 여가, 운동, 문화 활동 지원
 - 취업 전 훈련

사) 운영 방침

(1) 환경 및 위생관리

- 시설장은 입소자의 적절한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장은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

(2) 입소자의 인권 보호

- 입소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생활 존중
-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입소자 중심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구성: 보호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인권지킴이단 운영: 정기회의(연 2회 이상), 사례회의(필요시), 임시회의(필요시)

(3) 행정사항

-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 산정방식은 전환시설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단기입소, 집중사례관리, 지속적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하기에 월별 입소인원 산정기준이 아닌 정원의 50% 이상 상시 현원을 유지해야 함.
 - ※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LH 등의 건물 사용 권장)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교통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확보된 일반주거형태를 지향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5) 직업재활시설

가) 시설의 정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나) 주요 목적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또는 직업생활 지원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확대 등) 등을 제공하여 직업활동을 통한 회복·자립을 도모

다) 운영 목표

- 직업재활개별지원서비스를 통해 직업능력평가 및 개별상담지원을 실시
- 직업능력 및 사회적기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과 교육을 실시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호고용 또는 작업활동을 실시
- 취업지원과 취업 후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직업생활을 지원
- 지속가능한 고용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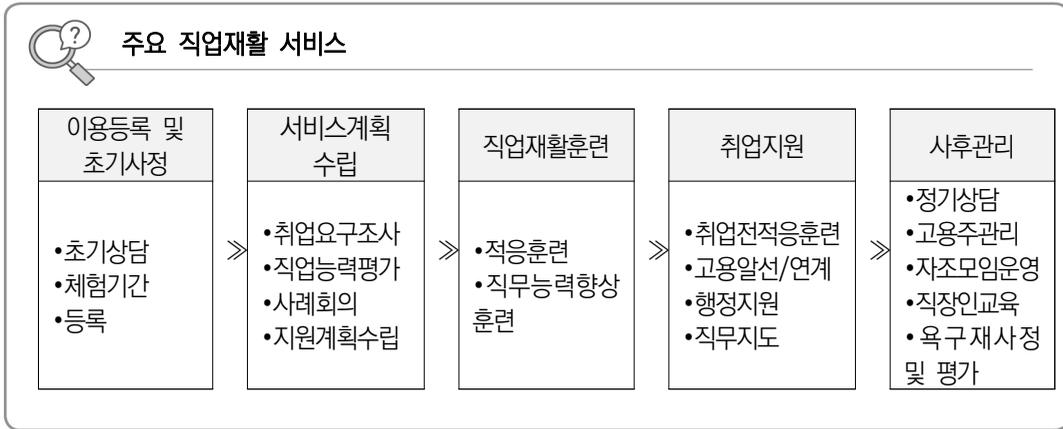
라) 주요 사업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1) 직업재활활동

-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정신재활 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 작업
 -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



- 시설장은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되,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 직업재활 활동 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 내부고용인원을 포함한 직업 재할 지원활동에 대한 정확한 안내사항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규정을 따름
-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정신재활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사회재활활동

-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동료 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마) 운영 방침

(1) 근로기준 및 준수사항

-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근로장애인으로 충원 또는 배치하는 이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근로장애인에 대해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훈련프로그램 시간(훈련프로그램 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한 별도의 훈련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근로장애인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 근로장애인 중 육아휴직 조건이 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 급여 등)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용 가능(30일 이상 사용시 휴직급여 최저 월 70만원)
 -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자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사업장(표준사업장 등)을 운영·생산하는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대상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 시설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활용과 직무 과정 변경 등을 배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장애인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생산품목과 서비스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설장은 산업재해 예방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시설장은 해당 매뉴얼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분기별 1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반기 1회, 모의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설장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함
 - 시설장은 시설 종사자·이용자 및 장비·설비 등 재난 등에 대비하여 대인·대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별로 요구되는 보험이 있는 경우 추가 가입

(2) 행정사항

-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품의 경우 판매수익금 포함)은 근로장애인의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자의 복리후생 개선, 직업재활활동을 위한 설비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함. 이밖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급여 체불 및 시설의 운영을 위해 일부 적립할 수 있음
- 다만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정신질환자들의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정신질환자들의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신축, 개축, 증축, 장비기능보강)을 5년에 1회이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침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준함

6)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가) 시설의 정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나) 주요 목적

정신건강의 어려움 및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개입

다) 운영 목표

-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의료-교육-심리-복지영역 간 통합적인 지역사회적응을 지원함

라) 이용 대상 및 기간

- 이용 대상
 - 만 3세~24세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으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없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또는 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 우선지원

마) 주요 사업

☑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의 장은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건강성을 증진하고, 사회적응능력 및 관계증진을 돕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통합적 치료프로그램 및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1) 아동·청소년 통합적 치료 프로그램 및 활동

- 심리정서 또는 발달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건강증진,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관계증진(또래, 가족)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아동·청소년 발달증진을 위한 활동
 - 심리정서적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감정 및 정서조절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활동
- 양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가족개입 활동
- 사회적응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 지역사회 연계 활동
- 그 외 이용자의 발달 및 심리정서적 건강성 증진에 도움을 주는 활동

바) 운영 방침

-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치료적 개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증상완화, 기능향상,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함
- 체계적인 치료적 개입과 서비스를 통해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정신건강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임상기술이 있는 전문 인력체제로 운영하여야 함
- 사회적응을 위한 예방·치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사업수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지역정신건강체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개발 및 활용하고 교류를 촉진하여야 함
- 이용자의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고충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및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음

7) 중독자재활시설

가) 시설의 정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나) 주요 목적

- 알코올, 약물 및 행위중독으로 인하여 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단주 및 단행으로 회복을 지원
- 자기성찰과 대인관계 회복 촉진 및 사회적응훈련과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
- 주거서비스와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재활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 지원

다) 운영 목표

- 정신재활시설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양질의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중독재활촉진을 도모
- 단주·단약 유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단계적 회복훈련
- 생활기술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증진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직업재활훈련과 취업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 단주회복 프로그램, 자기성찰, 동료상담 및 집단활동을 통해 회복 공동체 형성
- 개별 사례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복 단계별 지원을 강화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지원

라) 주요 대상자 및 입소관리

- 주요대상자
 - 알코올 및 약물 중독, 행위 중독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생활 적응에 곤란을 겪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관련 기관의 의뢰 또는 본인의 신청을 통해 입소할 수 있음
- 입소절차
 - ① 입소 상담 및 사례접수 → ② 진단 및 자격 심사 → ③ 입소 결정 → ④ 개별재활계획 (Individual Rehabilitation Plan, IRP) 수립 → ⑤ 초기 적응 프로그램 참여
- 등록·관리
 - 입소자는 등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재활계획 및 진행과정은 개별기록지에 작성·보관함.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를 거쳐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함

● 퇴소 및 사후관리

- 입소자는 회복 정도, 가족 및 지역사회 적응 수준 등을 고려하여 퇴소하며, 퇴소 이후에도 자조모임, 동료상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지원함.

마) 주요 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중독자재활시설의 장은 입소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중독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1) 회복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 단주 및 단약 회복 프로그램 운영
- 12단계 프로그램(AA, NA 등) 참여 지원
- 자기성찰 및 대인관계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2) 사례관리 및 개별지원

- 개별재활계획(IRP) 수립 및 정기 평가
- 회복 단계별 맞춤형 사례관리
-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연계사업

-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의료·복지·주거·고용 등 다학제적 네트워크 연계
- 퇴소자 사후관리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4) 사회재활활동

-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5) 직업재활활동

-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정신재활 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 작업
 - 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 시설장은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함
 -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 직업재활 활동 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 내부고용인원을 포함한 직업재활 지원활동에 대한 정확한 안내사항을 마련하고, 직업재활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 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소·이용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정신재활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바) 운영 방침

(1) 입소자의 건강관리

- 알코올·약물의존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하여 각종 중독재활활동을 지원
-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담, 투약 및 치료지원

(2) 환경 및 위생관리

- 시설장은 가정적 분위기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 ※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이용대상자를 '알코올 및 약물 중독, 행위 중독'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생활 적응에 곤란을 겪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은 자로 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의 '중독재활시설'과 그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본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8) 생산품판매시설

가) 시설의 정의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나) 주요 목적

- 직업재활시설의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
- 직업재활시설의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마케팅 및 판매 활성화

다) 운영 목표

-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
- 정신질환자 등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이나 홍보 지원
- 정신질환자 등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등 정보매체 활용한 판매 활동 지원

라) 주요 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상담사업, 홍보사업,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상담사업 : 생산품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개발사업 : 생산품의 판로 개척(협의, 계약 등)
- 조달사업 : 생산품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마) 운영 방침

동일한 운영 주체가 동일 지자체 내에서 여러 개의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예, 분점)

(1) 생산품 선정 및 관리

- 판매시설은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하는 물품만을 전시·판매하여야 함
-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익, 정신질환자 등의 생산수준과 지역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여야 함

(2) 판매기술의 확보

- 판매시설은 정신질환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홍보 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소비계층별 취향과 정신질환자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정신질환자 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함

(3) 행정사항

- 판매수입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과 수행사업비, 정신질환 생산품의 구입비, 관리 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정신질환자 등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 그 외 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판매수수료는 제품의 가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되 품목 별로 10% 이내로 정함
- 판매시설은 판매시설에서 직접 배송하지 않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직접 배송하는 생산품의 판매수수료보다 낮게 정하여야 함

9) 종합시설

가) 시설의 정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 등에게 생활지원, 주거 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나) 주요목적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거, 직업활동, 사회적응, 교육, 여가 및 문화생활, 사회 참여 등을 균형있게 경험하며 지속 가능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기능 재활서비스를 하나의 공간 내에서 연계하여 통합형 복지서비스 운영

다) 운영목표

- 정신질환자의 생활·직업·사회참여 등 다차원적 욕구를 반영한 연속적 서비스 제공 및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회복지향적 운영으로 당사자 중심 서비스 실현
-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
- 시설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질 높은 서비스 유지

라) 등록 및 입소관리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시설이 결합한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내용에 따라야 함

마) 주요 사업

✔

▷ 시설장은 해당시설이 결합한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더하여 다기능 통합시설로서의 특성과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반영하여 다음의 특화사업을 시설 상황에 맞게 구성·운영하여야 함

(1) 통합서비스 조정 및 연속성 관리

- 통합서비스 조정 및 연속성 관리는 입소·이용자의 개별특성과 욕구에 따라 생활·주간·직업·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조합하여 끊임없는 회복과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함

- 개별서비스계획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조합 및 단계적 실행
- 생활지원, 사회재활, 직업재활, 자립지원 등 다영역 활동의 통합 제공
- 회복 단계별 목표 설정과 주기적 진전 상황 점검
- 퇴소·자립 이후 사후관리 및 재적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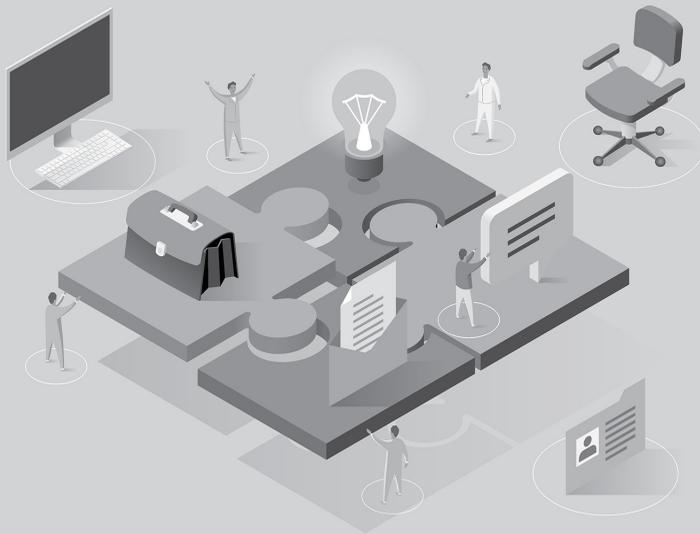
(2) 지역사회 거점 기능 및 지원

- 지역사회 거점 기능 및 지원은 종합시설이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함
 - 지역 내 정신재활시설(생활, 주간, 직업 등)과의 협력 및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복지관 등과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및 주민참여 활동 운영
 - 지역 자원의 발굴·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바) 운영방침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시설이 결합한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내용에 따라야 함

- 1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 2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4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5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 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8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ART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동추진사업**

04

1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가 재난 규모별 심리지원 서비스 의사결정 및 인력구성

재난 규모	재난규모 정의	재난 심리 지원 관련 결정주체		재난심리지원 총괄기관		조치사항	지원인력 구성
소규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는 재난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심리 회복지원 센터	보건소·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재난심리 회복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관련 정보 수집 및 상황 모니터링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재난 심리지원 활동 	재난 심리지원 총괄기관이 인력 구성 결정
중규모	재난 피해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일 경우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중 심리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된 재난	시도 재난심리 회복지원단		시도 정신건강 담당부서·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광역 트라우마 센터	시도 재난 담당부서·재난 심리회복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관련 정보 수집 및 상황 모니터링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필요시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재난 심리지원 활동 	재난 심리지원 총괄기관이 참여기관 구성 및 인력 조정 결정. 필요시 기초·광역센터, 권역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에 인력 요청 가능
대규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중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재난 또는 인명·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체심리회복 지원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중앙 재난심리 회복지원단		보건 복지부·국가 트라우마 센터	행정 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관련 정보 수집 및 상황 모니터링 유관기관 대응체계 구축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재난 심리지원 활동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시 현장상담소 및 마음 안심서비스 운영 	재난 심리지원 총괄기관이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및 참여기관 조정 결정

Part IV
 4.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나 재난 정신건강 기관별 역할

1) 국가트라우마센터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에서의 심리지원 서비스 총괄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운영
- 재난 정신건강 사업 시행, 평가, 홍보
-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연구
-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개발·보급
-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양성·관리 총괄
-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관리 및 직무교육 총괄
- 재난 정신건강 관련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업무 지원
- 언론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재난 발생여부 주기적 모니터링
- 그 밖에 재난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권역 트라우마센터(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 중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심리지원 시점 등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재난 심리지원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권역별 재난 정신건강 지원 인력 양성·관리
- 권역내 재난심리지원 담당인력 관리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명단 통보
- 권역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직무교육 수행
-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재난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의학적·심리학적 회복 지원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 재난 경험자 회복프로그램 운영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활동 자문 및 지원

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중규모 재난 발생 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서 심리지원 시점 등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재난 심리지원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 재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 재난심리지원 담당인력(2인 이상) 지정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통보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4)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소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총괄
- 재난 발생 시 재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재난 경험자 사례관리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재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2인 이상) 지정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통보

다 재난 대응

1) 재난 정보수집

- 재난 규모 및 발생 상황, 재난 경험자 현황 파악
- 재난 심리지원 활동 가능 인력 파악
 - 정신건강 또는 트라우마 관련 센터, 보건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
 - 외부 기관(관련 학·협회, 민간전문가 등)
 - 자원봉사단체 및 인력
- 자원정책 및 자원정보
 - 공공자원 지원 정책 확인
 - 관련예산 확인(치료비지원, 재난지원금 등)
 - 구호물자, 지원물품 확보 및 관리
 - 취약계층 지원기관 또는 단체
 -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 리스트

2) 재난심리지원 계획수립

- 재난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또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 참여
 - 필요시 통합심리지원단 구성하여 운영
-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총괄기관 결정 및 참여기관 결정
 -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총괄기관, 현장활동기관, 행정지원기관, 협력기관 등
- 재난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물리적 공간 마련
 - 현장상황실(컴퓨터, 인터넷, 실적현황판, 책상, 의자, 전화 등)
 - 독립된 상담 공간
 - 물품 보관실(상담일지, 지원물품 등)
 - 정신건강교육 장소 또는 화상회의 가능 공간
- 재난심리지원 자원준비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
 - 대상자별 담당인력 배치
 - 재난 관련 심리지원 매뉴얼 및 서식(상담서식지·개인정보제공동의서·정신건강척도지·타기관 의뢰서 등)
 - 재난심리지원 물품 준비(심리지원 안내지, 심리안정용품 등)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실무자 교육 계획
 - 실적보고 체계, 상담서식지, 고위험군 선별기준 등
-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운영
- 주간·야간 핫라인 운영
- 의사소통체계 구축
 -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실적 보고체계
 - 실시간 의사소통 채널
 - 외부기관 및 언론대응 담당자 지정
 -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유관기관 회의 및 체계 가동

3) 현장 가동

- 필요시 독립된 공간에 현장상담소 설치
-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핫라인 운영
- 필요시 재난 관련 정보제공 및 지역주민 홍보를 통해 재난 상황이 일차 종결된 후에도 일정 기간 핫라인 유지
- 재난 대응 수준 결정 및 지휘·보고체계 유지
- 관련 부서 필수요원 소집·근무
- 추가 피해·사고 현황 모니터링 및 내부 보고체계 유지
- 통합심리지원단이 구성된 경우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의사결정
-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유선·화상회의 개최
- 사례회의 주관 및 수퍼비전 실시
-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의 안전 및 소진관리

4) 재난심리지원 실시

- 사전 안내문자 발송
- 재난 심리지원 목적 및 서비스 안내
- 심리적 응급처치 및 초기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상담 및 필요 서비스 제공
- 개별 상담 및 정신건강 평가, 안정화 프로그램 등 제공
-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
- 필요시 대피소,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운영
-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 및 자원 연계
- 재난 경험자의 정신건강 및 일상생활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CGI-S 활용), 필요시 마음건강 검사(척도) 활용
※ CGI-S 척도: 상담자가 재난 경험자의 정신건강 및 일상생활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내용
① 정상	지난 일주일간 큰 어려움 없음
② 정상~경도	감지하기 어렵거나 병리적이라고 의심되는 정도
③ 경도	경미하지만 분명한 증상이 있으며 사회적, 직업적으로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④ 경도~중증도	약물치료를 고려할만한 명백한 증상이 있으며 그에 따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⑤ 중증도	직업적, 사회적 기능 손상이 명백하고 고통감을 느끼는 경우
⑥ 심함	증상이 개인의 행동과 기능에 빈번히 영향을 미치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⑦ 극심함	증상이 전반적인 일상생활 기능을 방해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CGI-S 평가 기준 및 기준에 따른 개입

CGI-S 1점	CGI-S 2~3점	CGI-S 4~5점	CGI-S 6~7점
괜찮다	조금 괜찮다	조금 안좋다	아주 안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음 최소 2주간 전화 상담 진행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감 유지 시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상이 다소 의심되거나 약간 나타남 경미한 슬픔, 분노 등이 상황에 적합한 반응이라고 판단되며 일상 생활에 복귀하여 심리적 안정감 유지 시 종료 요청 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명한 사회적 기능의 손상 또는 고통을 유발하는 증상이 나타남 지속상담 유지 대상자 동의 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혹은 병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지속적인 자살사고를 호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속관리 필요시 국가트라우마센터, 해당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 재난 심리지원 제공 절차

1) 대상자 인적 사항 파악	2) 심리지원 안내 및 최초개입	3) 심리지원	4) 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	5) 심리지원 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족, 부상자·가족, 목격자 등 연락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안내 문자 발송 - 상담정보, 정신건강 평가(링크) 등 제공 마음건강 안내서 (리플릿), 심리 안정용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지원 제공 정신건강 평가의 목적 및 절차 정보제공 재난 경험자의 정신건강 및 일상생활 기능의 종합평가 (CGI-S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집중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연계 * 의료기관,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재난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기적 모니터링 (예:6,12개월) 필요시 지속 상담 또는 연계

※ 구체적인 재난 심리지원 절차 및 방법은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참조

- 심리지원 실적은 일별, 월별, 분기별 실적 보고 이행(기초→광역(권역)→국가트라우마센터(보건복지부))

라 재난 심리지원 이후 관리

1) 대상자별 심리지원 종결 기준 및 관리방안

-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는 서비스에 동의한 재난경험자에게 재난 발생일 기준 3개월까지 제공하고 이후에는 대상자 상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관리
 - * 재난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파악된 대상자의 상태에 종결 여부를 판단하며, 종결 형태에 따라 추후 관리방안 수립

〈 종결 기준 및 관리방안 〉

구분	기준 내용	추후 관리방안
안정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CGI 1(괜찮다): 최소 2주간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감 유지시 CGI 2~3(조금 괜찮다): 경미한 슬픔, 분노 등이 상황에 적합한 반응이라고 판단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심리적 안정감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심리지원서비스에 동의한 모든 대상자에게 6개월, 12개월 시점에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고위험군은 단기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후 필요시 지역사회 지속 관리 서비스 등록하여 지속관리
연계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CGI 1~3(괜찮다~조금 괜찮다): 본인이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기관 등 관리 요청 시 CGI 4이상(조금 안좋다~아주 안좋다): 대상자 동의 시 지역사회 심리지원 서비스 또는 병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관리가 필요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한 경우로 연계 종결 후 6개월·12개월 시점에 모니터링 실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은 거부하였지만 정신의료기관 연계에 동의하여 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로 연계종결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모니터링
거부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및 모니터링에 대한 강력한 거부, 최초 상담연결 이후 3개월 이상 연결이 안되는 경우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후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제공 문자메시지 발송 후 종료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력히 거부한 경우 모니터링 미 실시 적극적 거부가 아닐 경우 6개월, 12개월 시점에 모니터링 실시
정보제공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심리지원 대상자이나 접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단제공 기관에 연락처 재확인, 변동 없을시 6개월, 12개월 시점에 모니터링 실시
기타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경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종결 처리 재난경험자가 아닌 경우 기타 종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경험자가 사망한 경우 재난경험자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사후 모니터링 동의 여부 확인 후 종결문자 발송

〈 모니터링 문자 (예시) 〉

귀하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향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때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각 기관 연락처, 예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000-000-0000)

2) 지역사회 지속관리 서비스

-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고위험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하여 관리
 - 상담 및 평가 이후 수퍼버전이 가능한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등록관리의 필요여부를 판단하고 등록시 개별서비스 계획수립

마 심리지원 물품 요청

1) 지원 내용

- 재난 경험자 및 일반국민을 위한 마음건강안내서 등(리플릿)
 - 재난경험자의 마음 안정을 도와주는 심리안정용품 제공
- 재난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지원 서비스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
 - 현장대응지침서, 유형별 가이드북 등

2) 심리지원 물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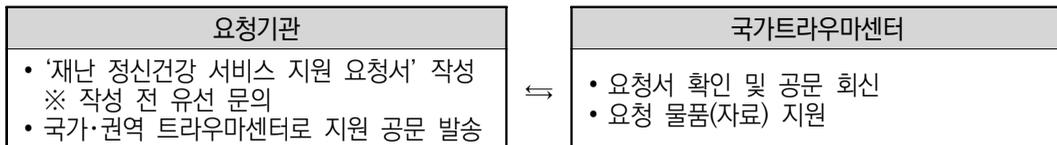
※ 심리지원 확대에 의해 각 기관의 물품 요청이 많아질 경우, 지원이 지연 또는 축소될 수 있음

-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제공: 마음건강안내서, 재난 정신건강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현장 대응 지침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가이드북, 재난대응 인력을 위한 소진관리 안내서

3) 심리지원 물품 요청 절차

가)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물품요청 접수 및 절차 안내

-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https://nct.go.kr>) 접속 후 공지사항의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자료 및 신청안내’ 확인(물품요청 문의: 02-2204-0001)
- 물품 요청 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유선 문의 후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요청서’ 작성하여 공문 발송



- 권역별 지원 담당 기관(신청 전 해당 기관과 지원 자료에 대한 사전 유선 문의 필요)

국가 트라우마센터	호남권 트라우마센터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강원권 트라우마센터	충청권 트라우마센터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02-2204-0001	061-330-7724	055-520-2777	033-260-3271	041-850-5883

나) 국가트라우마센터 책자 및 자료 이용 시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생산된 자료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발간물 이용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
- 생산된 자료(동영상 포함) 및 척도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자료에만 사용하도록 저작권자에게 승인받았으므로, 외부기관 사용 시 재허가 필요(저작권 문의:02-2204-1442)

2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가 목적 및 근거

1) 목적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
 - (응급·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보호 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 치료 지원
 - (발병초기) 조현병 등으로 처음 진단 받은 대상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여 지속 치료 유도
 - (외래치료 지원) 퇴원 후 치료 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정신응급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복지부 선정 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총 13개소('25.12월 기준)

(서울)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경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대전) 충남대병원, (전북) 원광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경북) 안동병원, 동국대 경주병원,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2) 법적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1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시행령 제5조의2, 제37조

-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및 외래치료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과 관련된 치료비 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에 대한 명시

나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 F20-29, F30, F31, F33, F34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적 처치를 받은 자

2) 신청기간

- (응급·행정입원)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응급입원 퇴원일은 입원 유형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예외적으로 예산 소진시에도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에 한해 치료비 지원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 가능
- (발병초기) 치료비 발생(마지막 외래일)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나 지체없이 신청 권장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며, 신청 마감일은 지자체 회계 처리 상황에 따라 상이

3) 지원항목

- 각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 참고: 지원 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치료비(예:MRI 등)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단, 응급입원·행정입원·광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 상급병실료
- 그 외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에 명시된 지원유형별 지원제외항목 등

4) 지원금액 :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5) 지원종류 및 기준

종 류	근 거	내 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5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발병초기 지원 가능 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분위별 건보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년 산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다 지원대상 세부항목

- 공통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 조회 가능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선 활용
 -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모두 지원 제외 항목(생계급여 수급자(일반·조건부)의 식대 등)은 지원 불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조건부)인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수급자 기준 적용
- 지원범위: 지원 가능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수급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차상위계층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범위: 지원 가능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 증명서류: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 종류에 따른 증명서(하단 표 참고)

〈차상위 계층 범위〉

종류(유형)	관련법령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건강보험가입자

- ※ 생계급여 수급자(일반·조건부)인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수급자 기준 적용
- ※ 지원 항목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응급·행정입원·외래치료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 무관
 - 지원범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증명서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발병초기·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지원대상: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이하
 - ※ 대상자의 등본상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
 - ※ 신청일 기준 전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적용
 - ※ 대상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
 - 지원범위: 지원 가능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
 -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 가입 및 기준 금액 이하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외국인

- ※ 지원유형별 지원 기준은 내국인과 동일
- 아래 1 또는 2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1.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2. 「출입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경우 지원이 원칙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 지원 제외 항목은 지원 불가
- 본인확인 증명서류: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1개의 서류 제출

5)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

※ 내국인, 외국인 동일 적용

- 정신과적 증상으로 장기간 가출, 배회,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등으로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대상이나, 주민등록 재등록 및 미납대금 납부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 재취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었다면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서식9호 첨부)에 의해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음

6) 중복지원 불가 대상자

- 중복 지원은 동일 영수증으로 다른 사업의 지원 또는 보상 등을 받는 등의 이중 수급을 의미
 - 지원 신청 전 국가지원 사업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아래 사항을 수시 확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또는 유사 사업에 의해 지원 처리(예정)된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지원 여부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대상 여부
 - 다른 법령 또는 유사 사업에 의한 수혜 여부에 대해 (대상자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1호]에 표기하여야 하고, 보건소장은 이를 토대로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등에 중복 지원 여부를 조회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 보건소장은 본인부담상한제 타 기관 지원내역(서식14호)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로 분기마다 제출

라 신청 및 지급

1) 신청장소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유형에 따라 주소지 외 지자체로 신청 가능
 - (응급입원) 응급입원 의뢰서 상 확인된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행정입원) 행정입원을 결정한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발병초기) 대상자가 등록서비스를 받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 소재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내린 시군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권역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재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지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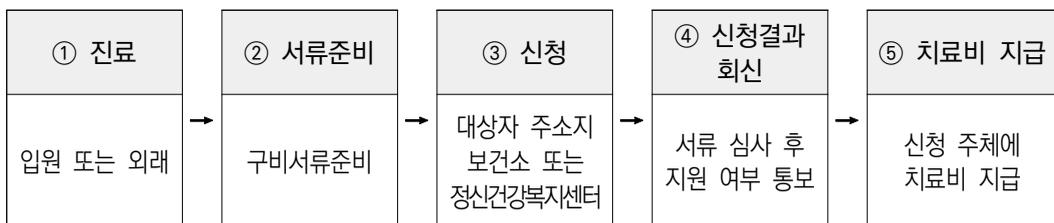
- 신청 주체에 지급
 - (정신의료기관 신청) 대상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한 경우 제출된 정신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 (대상자·보호의무자 신청) 대상자 등이 기납부한 경우 신청서상 기재된 계좌로 지급
 - ※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료보장 가입·구분 등의 변경 또는 지원 제외 항목 포함 등의 사유로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신청·지급 불가하며, 신청 마감일은 지자체별 회계 처리 상황에 따라 결정
 - ※ 전년도 예산 소진으로 미신청된 건 중 지원 유형별 신청 가능 기간 내 차년도 재신청에 따른 지급 가능

3) 신청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본인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모바일)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주민등록표등본,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제출

구 분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 신청 주제에 따른 통장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대상자·보호의무자) 신청서 상 기재된 통장 사본, (제3자 지급인 경우) 관계 증빙서류 ※ 기납부한 지원 대상자 명의 통장으로의 지급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 명의 통장으로 제3자 계좌 지급 가능 단, 제3자 계좌 지급인 경우 신청서에 제3자 계좌 지급 사유 작성 및 관계 증빙 서류 지원 대상자 명의 통장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제출 필수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최초 진단일 명시 필수) * 진료기록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의사소견서[서식 8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외래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치료지원(연장) 결정서
권역 정신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류 외 추가서류 없음

4) 지원절차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 사업목표

- 마약류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
- 마약류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연계를 통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및 사회복지지원 내실화
-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운영으로 마약류 투약사범들의 치료보호지원 활성화

2) 사업개요

- 근 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 주 관: 보건복지부(2008. 9. 29.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관)
- 내 용
 -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적 수단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종류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와 자의에 의한 치료보호가 있으며, 31개 지정 정신의료기관(국립 5개소, 민간 26)에서 입원·외래치료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
 - 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치료비 중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등은 전액 지원
 - 지정의료기관(치료보호기관)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시도를 통해 지급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 기소유예부 검찰의뢰 치료보호
 - 마약류 투약사범(중독자) →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 →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외래 치료 의뢰(검찰)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외래 치료 →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 검사의뢰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은 '2026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사업 안내' 참조

● 자의의뢰 치료보호

- 중독자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보호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외래치료 →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간 MOU 체결(11.6.27)에 따른 치료보호 가석방 제도는 자의치료보호형태로 운영

나)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 설치·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공립병원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지정

● 지정현황(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현황자료 확인 가능)

지역	구분	병원명(2026.1월 기준)	지정 병상 수(개)	대표번호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10	02-300-8114
	광진구	* 국립정신건강센터	2	02-2204-0114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2	051-507-3000
	사상구	부산시립정신병원	8	051-310-7710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2	053-560-7575
	동구	* 대동병원	25	053-663-1008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2	032-580-6000
	서구	* 인천참사랑병원	50	032-571-9111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	5	062-949-5200
	서구	다사랑병원	5	062-380-3800
	북구	천주의성요한병원	2	062-510-3114
대전	중구	* 참다남병원	4	042-222-0122
	서구	마인드병원	2	042-528-6550
울산	남구	마더스병원	10	052-270-7000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5	031-828-5000
	용인시	용인정신병원	10	031-288-0114
	용인시	* 경기도립정신병원	10	031-330-6200
	의왕시	계요병원	10	031-455-3333
	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	031-269-5665
	이천시	이천소망병원	5	031-637-7400

지역	구분	병원명(2026.1월 기준)	지정 병상 수(개)	대표번호
강원	원주시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	033-741-0114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10	033-260-3000
충북	청주시	주사랑병원	2	043-286-0692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2	041-850-5700
전북	익산시	* 원광대학교병원	2	1577-3773
	김제시	신세계병원	32	063-545-8700
	완주군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4	063-240-2100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10	061-330-4114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3	054-247-0551
경남	창녕군	* 국립부곡병원	90	055-536-6440
	양산시	양산병원	2	055-379-0202
제주	제주시	* 연강참병원	2	064-759-9641
합계		32개 의료기관	332	-

* 권역 치료보호기관

※ 자세한 내용은 「2026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사업 안내」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참조

4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 사업목적

- 정신재활시설 인프라 확대·노후화 개선, 장비 보강을 통해 정신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조기 사회복귀 지원
-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개선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입소 정신질환자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기여

가) 지원대상

-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신요양시설

나) 2026년 지원 단가: 국비(서울 50%, 지방 70%), 지방비(서울 50%, 지방 30%)

- 2,582,000원/㎡(신축, 증·개축)

- 698,000원/㎡(개보수)

*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 변동 가능

*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서울 50%, 지방 50%



<국비지원 고려사항>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지원
- 철거비(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포함) 지원
- 토지 구입비 및 차량구입 지원 불가

다) 행정사항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가) 공통사항

- 기능보강비 국고보조 교부신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 IV-4-1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가 작성·제출

- 동 신청서에 건축예정 장소, 건물배치도, 면적, 사업비 및 산출내역,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별지 제 IV-4-2호]서식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 IV-4-3호]서식 첨부 및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별지 제 IV-4-4호] 서식을 첨부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의 능력에 따라 자부담을 포함시켜 교부신청서 작성 가능
- 시설별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첨부
 - 건축예정장소,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구조·면적 및 용도, 사업비(설계비 포함 가능) 및 산출내역,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사업별 추진일정 등 포함
-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한 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및 기술직공무원 또는 감리회사 감리원의 설계검토 의견서 첨부
 - 다만,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설계 완료 후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관계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4분기내에 국고보조 교부신청 완료할 것

(2)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예산회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공사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사업수행 전반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내 환자의 발생추세, 시설의 입지조건, 신·증·개축, 개·보수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 신규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 시에는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치
- 시·도지사는 건축예정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여부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확인조사 후 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의 사업이 부실 또는 신설 부지 미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사항을 상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워 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단, 사업기간 변경사유 발생 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요청에 따른 승인이 완료된 경우 동 이월 승인 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비 부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가) 시설 신축·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

- 시설 건축예정지, 사업내용 및 필요성,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규모(사업량), 사업비 및 산출내용,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회사 감리원의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설계 완료 후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의료장비 및 재활프로그램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 의료 및 재활프로그램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신질환자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다) 설계 및 공사 집행

①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기능보강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고 성실성이 인정되는 업체로 선정해야 함
-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②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시설의 신축 등 단가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워 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3)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당초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변경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별지 제 IV-4-5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만, 아래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
 -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 * 단, 보조사업(기능보강)과 유사·동일 목적의 낙찰차액 사용은 가능

(4) 사업수행 실적 보고

(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 시·도지사는 동 사업이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3. 31.까지 [별지 제 IV-4-6호] 서식에 의거 사업수행 결과 작성·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표기하는 부기등기(부기등기)를 해야함(*16.4월 이후 교부보조금부터 적용)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원장 등)의 포기서와 시·도지사의 사업반납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납조치
 - ※ '17년부터 보조금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등록,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s://ceu.ssis.go.kr>) 사용 가능

2)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통사항

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국가청렴위원회 권고)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 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 1개월)을 부여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 ※ 예시 신축: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증·개축: 시설안전, 입소·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심의 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 기능보강사업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도지사는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나) 기능보강공사 기간 동안 생활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필요한 조치 방안을 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다)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 우선 지원(소방설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 시설 노후화 개·보수,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내진보강 등)

-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통계단* 및 배연창** 설치 예산 최우선 지원
 - * 직통계단: 최상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까지 복도 등을 통하지 않고 계단과 계단침(폭이 넓게 된 부분)의 연속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된 계단이나 경사로
 - ** 배연창: 화재발생 시 창문을 자동으로 강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5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1)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도)

● 구 성

- 시·도지사는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연임 가능)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각각 1명 이상 포함
- 다만,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 제5항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명 이상 포함



☞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법 제53조제5항제5호)

-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직 무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운영

-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단,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심사위원회도 동일)
- 입원 등 기간의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명령(기존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이 “외래치료 지원 결정,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으로 개정 시행됨 [시행일: 2020.4.24.])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료부터 재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2)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둠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제5항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단,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 **재심사의 회부 등(법 제61조)**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법 제57조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함(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당초 법 제57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한 해당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함(이 경우 법 제54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시·군·구)

● 구 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둠
 -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경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연임 가능)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각각 1명 이상 포함
- 다만,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제5항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법 제53조제5항제5호)

-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직 무

-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 법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 법 제62호제2항에 따른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
-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
 - ※ 기존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이 “외래치료 지원 결정,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으로 개정 시행됨(2020.4.24.)
-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운영

-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단, 심의 또는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 정신건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심사위원회도 동일)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척·기피·회피(법 제5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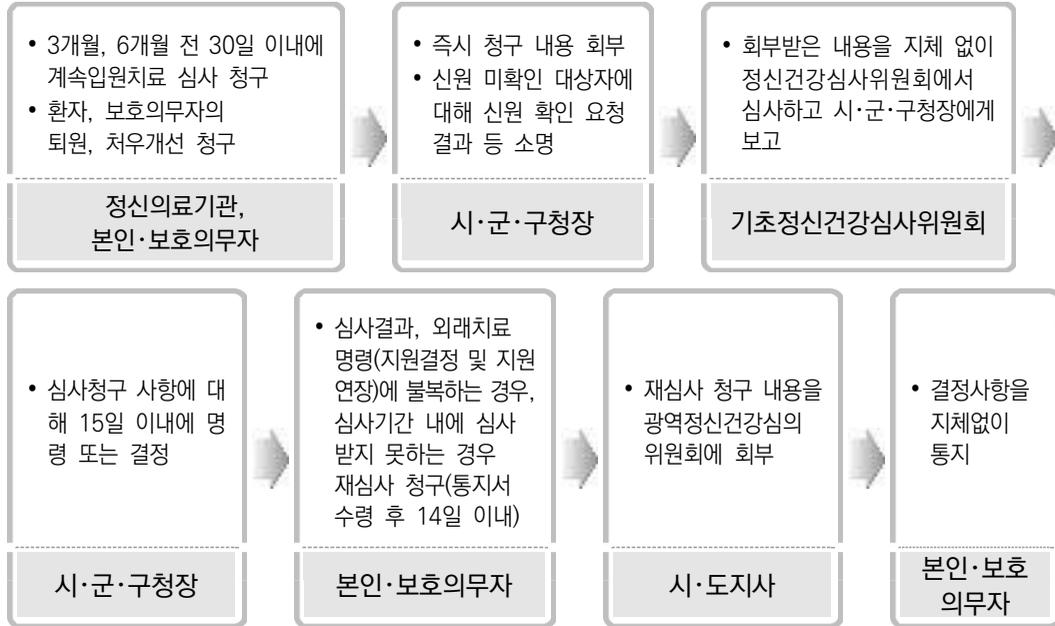
- 제척: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원(입소)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해당 정신질환자가 입원(입소)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제척해야 함(같은 위원회에서 다른 환자는 심의할 수 있음)
- 기피: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함(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다)
- 회피: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심사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 회피하여야 함

4)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둠
-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 제53조제5항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단,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미개최)

5) 입원 등 연장 청구 등의 심사

● 심사과정



● 심사방법

-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방문대상기관은 지역 및 청구서 검토를 통하여 매월 선정
- 심사대상이 매우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청구 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및 불승인(퇴원가능한) 예상자를 선별한 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사 가능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서 이외의 자료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예시와 목록을 병원에 사전 통지할 수 있음

● 계속입원치료 심사결정방법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 사업부 자료) 의하여 심사할 것을 권고하며, 광역 또는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해당 정신건강심사위원의 직접 토론 회의를 개최(서면심의 불가)하며, 합의체로 심사
 - ※ 합의체에 대한 의견은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내용과 같음
-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결과
 - 각각의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속입원치료 및 퇴원·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에 관련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환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결과 통지서로 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해당 심사기간 또는 연장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와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 신청 →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퇴원결정 시 지체없이 퇴원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명령 또는 결정은 심사 대상자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 명령
2.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3. 3개월 이내 재심사
4.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제41조의 자의입원등 또는 제42조의 동의입원등으로의 전환
6.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시행일 : 2020.4.24.]
7. 입원등 기간 연장 결정
8. 계속 입원등 결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6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 및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비교(기초를 중심으로) 〉

구 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회 설치	목적	정신건강에 관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 *법 제53조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법 제54조①
	구조	광역 - 시·도 기초 - 시·군·구 ¹⁾ *법 제53조①	광역 - 시·도 기초 - 시·군·구 ²⁾ *법 제54조②
	직무 ³⁾	1. 법 제43조 6항 입원 등 기간연장의 심사 2. 법 제52조 제4항 및 제66조 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3. 법 제55조 1항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4. 법 제62조 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지원 6.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53조③	1. 법 제43조 6항 입원 등 기간연장의 심사 및 제55조 1항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2. 법 제62조 2항의 환자의 3개월, 6개월 연장 심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지원 *법 제54조①
	보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영 제27조④	좌동
위원장	구성	위원장1, 부위원장 1인을 둠 *영 제26조①	위원장1, 부위원장 1인을 둠 *영 제28조①
	위원장 ⁴⁾	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영 제26조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영 제28조②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영 제27조①②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영 제28조⑤
위원 구성	6인이상 12인 이내로 구성, 임기는 2년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법 제53조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법 제54조②	

구 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각각 1인 이상을 포함(5종)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정신건강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의 자 (2명이상)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 운영자 나.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임강사 이상 자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53조⑤	심사위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위원을 필수적으로 구성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명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전문요원 1명 4.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임강사 이상 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명 이상 포함 *법 제53조⑤
	권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법 제53조⑥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	의무 개최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은 미개최 *법 제53조⑦	좌동 *법 제54조③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영 제27조③	좌동 *영 제28조③
	보고 위원장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영 제27조④	좌동(심의위 결과로 귀속) *영 제28조④
	운영 세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함 *영 제27조⑤	좌동 *영 제28조⑥

-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2) 이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 3)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② 재심사의 청구 ③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
 - 5)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경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6) 외래치료 지원

- 청구대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의2 추가)
 - 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의한 입원) 및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른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자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
 1. 자살시도, 자해 및 자해 시도
 2. 폭행, 폭언, 협박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3.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동
 -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거해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 일반적인 외래 치료는 해당되지않음.
- 지원절차
 -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제25호서식]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제출
 - ※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를 받은 지자체와 청구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이 다를 경우, 청구서는 청구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자체로 이송, 청구 대상자의 거주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또는 퇴원 후 거주 예정인 관할 지자체로 청구서를 이송
- 지원 관리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가 치료를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 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외래치료 지원 결정으로 하거나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상[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
 - 지자체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활용, 전년도의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함
 - ※ 단, 서식 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 처리하여 보고



지원결정 중단 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의 자타해 위험성을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 명령서[별지 제29호서식]를 활용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함)

- 지정정신의료기관 장은 평가를 의뢰한 지자체장에게[별지 제30호서식]을 활용한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를 송부해야 함
-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호송의뢰서[별지 제31호서식]을 서면으로 송부하여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1. 자의입원 신청
 2. 동의입원 신청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특별차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1)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서비스와 복지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증진

2) 사업대상

구분	사업대상
정신건강복지기관 → 지자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이용자 중 복지서비스(생계/임대주택/집수리/의료/교육/양육 지원 등) 제공 필요한 자
지자체 → 정신건강복지기관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필요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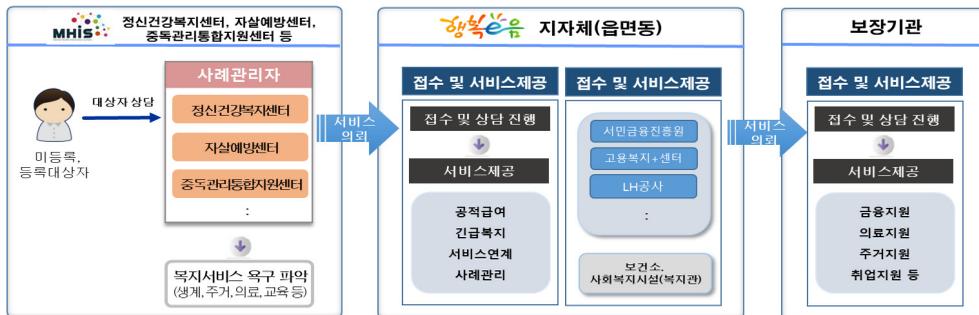
3) 추진체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 행복e음 연계 메뉴단을 활용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의뢰신청 및 수신

4) 보건-복지서비스 의뢰 업무처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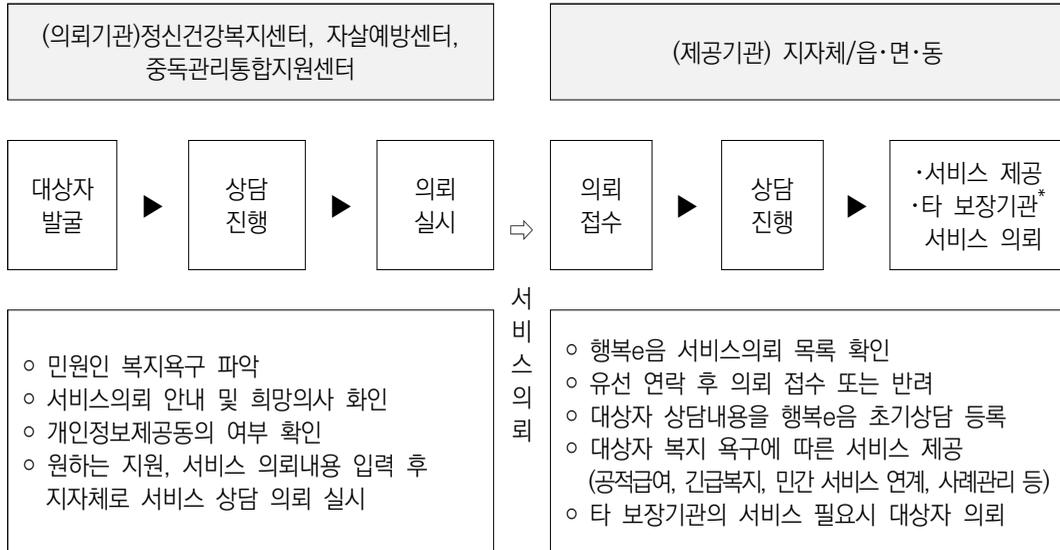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지자체 보건·복지서비스의뢰

< 서비스의뢰 개념도 >



* 보장기관: 고용복지+센터, LH공사, 지방의료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암센터, 병무청, 국가보훈처, 근로복지재단, 독거노인, 국민연금,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보건소 등

〈 서비스의뢰 절차 〉



※ 서비스의뢰 신청방법: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① 메뉴 및 업무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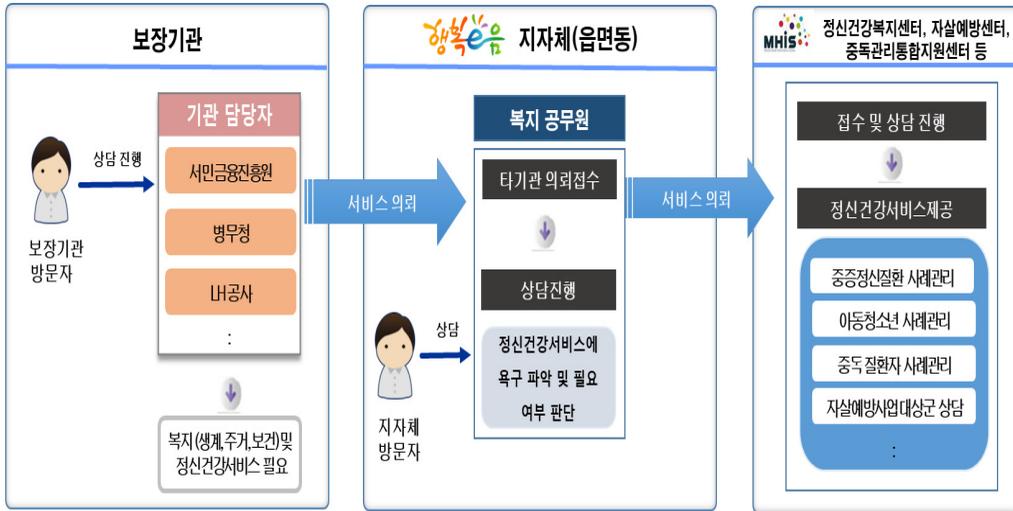
- 등록회원 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으로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사용하며, 대상자에게 제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여 체크하고 연계처리를 실시합니다.
- 업무처리방법
 - ① 행복e음 연계 대상자를 성명, 검색기간을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조회된 연계 요청 대상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회된 연계 요청 대상자를 클릭하면 하단에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 ④ 입력화면단에 의뢰자의 연락처, 대상자의 주소, 의뢰상세 내역을 입력한다.
 - ⑤ 입력사항 재 확인 후 접수 의뢰 버튼을 클릭하여 연계 대상자를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접수요청 처리합니다.
 - ⑥ 행복e음 연계 내역이 표출되고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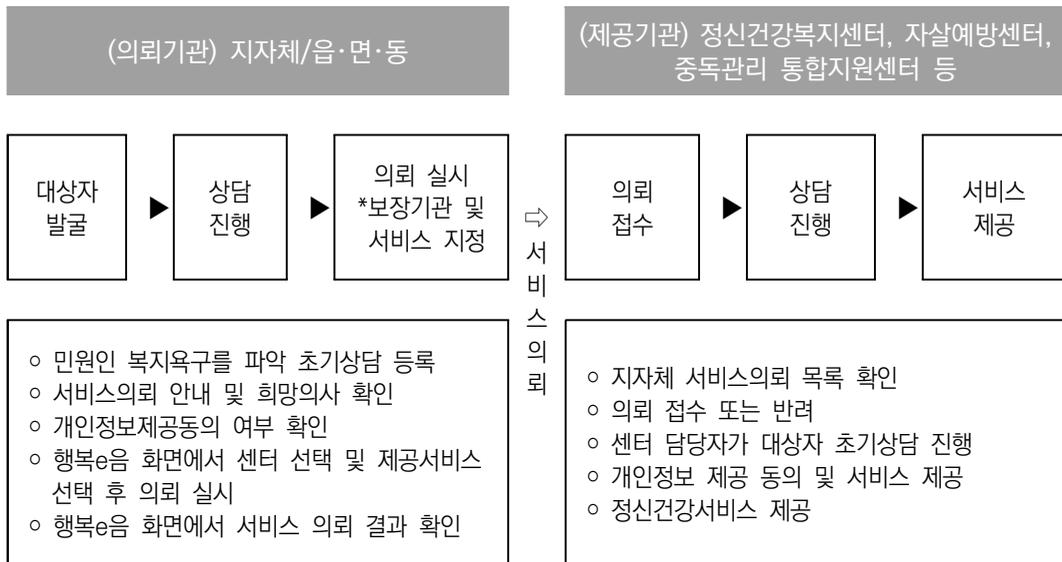
- 행복e음(등록) 연계는 반드시 등록회원인 경우 처리할 수 있음.
- 미등록일 경우 행복e음(미등록)에서 처리 할 수 있음.

- 지자체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의뢰

〈 서비스의뢰 개념도 〉



〈 서비스의뢰 절차 〉



※ 서비스의뢰 접수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매뉴 및 업무순서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읍면동) 행정기관에서 본 기관으로 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사용됩니다.
- 업무처리방법
 - ① 의뢰 요청대상자를 성명, 검색기간, 처리상태를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조회된 의뢰 요청 대상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③ 조회된 의뢰 요청 대상자를 클릭하면 하단에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 ④ 하단에 표시된 정보가 의뢰받은 정보와 동일하지 한다.
 - ⑤ 처리상세 내역을 입력한다.
 - ⑥ 입력내용을 확인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처리한다.

Tip

- 지자체(읍면동)에서 공문으로 대상자를 의뢰하여 등록된 경우 의뢰접수(수동) 메뉴단을 통해 입력한다.

※ 지자체 행복e음 → MHIS 서비스 신청 화면

상세설명

- ▶ 지자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비스의뢰를 신청하는 약관
 - 매뉴순로
 - "행복e음>상담신청>서비스의뢰관리>서비스의뢰신청"
- ① 조회 조건을 선택하여 초기상담을 1년 이내 한 대상자 목록조회
- ② 조회 대상자 목록 중 서비스의뢰 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 ③ 대상자선택 후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의뢰 신청 목록에 추가된다
- ④ 잘못 선택한 경우 서비스의뢰 신청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 후 [대상자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 ⑤ [돌보기] 버튼 클릭시 서비스의뢰 기관 및 제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 제공 서비스 조회 팝업" 이 호출된다
- ⑥ 신청사유(의뢰사유)를 입력한다.
 - 선택한 서비스의뢰 신청 목록의 의뢰사유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 하려면 [일괄적용] 버튼 클릭
- ⑦ 대상자들을 서비스 의뢰한다. 신청 후 서비스의뢰 현황 탭으로 전환된다.

기관 제공 서비스 조회

기관구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명
서비스명

조회

지역 경상남도
항원시마산회원구
---관할행정동선택---

③ 조회결과 ※ 파란색 결과는 지자체와 서비스의려 하려 체계가 구르디어 너비스이려 시려 가느하 기관임을 표시

checkbox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 상세설명
<input type="checkbox"/>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 정신질환 상담	만 18세 이하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지원서비스(단, 간질, 정신지체, 치매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중증 정신질환 상담	
<input type="checkbox"/>		자살 예방 상담	
<input type="checkbox"/>		중독 관리 상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 정신질환 상담	055-287-1223
<input type="checkbox"/>		중증 정신질환 상담	
<input type="checkbox"/>		자살 예방 상담	
<input type="checkbox"/>		중독 관리 상담	
<input type="checkbox"/>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 정신질환 상담	055-225-6691
<input type="checkbox"/>		중증 정신질환 상담	
<input type="checkbox"/>		자살 예방 상담	
<input type="checkbox"/>		중독 관리 상담	

※ 고품 의뢰 시 서비스 신청은 한 건만 가능하며, 제공서비스가 불분명한 경우 '취업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적용

선택
닫기

상세설명

- ▶ 지자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서비스의뢰를 신청하는 화면
- 메뉴접근
'영록&옴>상등산청>서비스의뢰 관리>서비스의뢰신청

- ① 조회 조건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 의뢰기관 및 서비스 목록을 조회한다. 서비스 의뢰 가능한 기관은 조회 결과가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 ②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서비스 상세설명]이 표시된다.
- ③ 서비스의뢰하려는 제공서비스 목록을 선택한다.
- ④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제공 서비스를 서비스의뢰 신청 화면에 반영한다.

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1)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2)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대상자 기준 〉

-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주민등록지 시군구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발급 원칙 (단, 증빙 제출 시 근무지 또는 학교 소재지에서 발급 가능)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6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및 대상자 상황 등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3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50%
- 단, 법정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율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180% 초과	40,000원	40,000원	80,000원	35,000원	35,000원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기준)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180% 초과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4) 신청방법

- 증빙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8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 사업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대상

- 소득 :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우선 선정

3)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1명 이상 채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4) 서비스 내용 및 절차

(1) 서비스 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기본서비스(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월 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 초기상담: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 위기상황 개입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일상생활지원: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 부가서비스(선택적 제공)
 -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 수립(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4)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2회)

PART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인식개선

05

- 1 권익보호
- 2 인식개선

1 권익보호

가 인권교육

1) 목적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2) 법적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3) 교육 내용

-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 법정 의무교육시간(4시간)과 교육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된 시간(이동시간 등)은 근무시간으로 함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피교육생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5) 교육 방법

-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교육대상기관: 정신의료기관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며, 1병상 이상 낮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도 포함됨.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허가·신고된 전체 시설임
 - ‘종사자’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현재 근무중인 자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되 의무교육 대상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자세한 시설유형별 및 의료기관 종별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등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참고

구 분	의무교육대상	권장교육대상
정신의료기관 (의무교육대상자)	의료인, 사회복지사, 심리사, 치료사, 치료보조원(보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행정, 원무, 관리, 전담직원 등 직접 고용된 직원	학생·실습생·용역직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전체 시설직원	학생·실습생·용역직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는 법정 의무교육대상은 아니지만 인권교육 이수 권장

- 교육시간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4시간을 1단위로 하여 4시간 미만 교육시간은 계산 시 ‘버림’으로 처리하고, 합산하지 아니함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시간 예시**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총 4시간 과정)」 이수 → 인정 가능
-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각각 이수하여 이수종이 여러개인 경우 → 불인정(시간 합산 불가)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3시간 과정)」만 이수 → 불인정(4시간 미만)

- 지정교육기관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형태와 관련하여 '26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참조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홈페이지(hrp.kohi.or.kr) 공지사항을 통해 지정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확인 가능
 - 지정교육기관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②~⑤ 4개 국립정신병원, ⑥~⑨ 공립정신병원(서울·경기·전북·부산), ⑩~⑳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구·경북·부산·울산·광주·충북·충남·전북·대전·세종), ㉕~㉘ 직능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㉙ 천주의성요한병원, ㉚ 한국보건복지인재원, ㉛ 대구정신병원

6)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각 병의원 및 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교육을 위한 시설 편의와 강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인권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관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지도감독 실시

나 권익보호 방안

1) 입·퇴원(소) 관리

- 관할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감독 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 실태를 수시 또는 정기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
 - ※ 대법원 판례(2006다19832, 2009.1.15. 판례)에 따라 계속되는 불법입원은 상이한 입원 종류간이나 다른 병원에의 전원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으며, 불법입원은 감금죄가 적용되어 위자료는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을 하지 못한 일일수입까지 “배상”할 수 있음에 주의(이 사례는 부산고법에서 3천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화해권고 되었음)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입원 연장하는 행위
-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시켜 계속입원 심사 절차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하여 계속입원 심사절차 회피 및 장기입원 유도 행위
- 보호의무자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이 없는 자에 의한 병원으로의 강제이송 행위
-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 혹은 그 수를 만족시키지 아니한 채 입원 및 입원 연장에 동의하는 행위
- 신원불상자의 입원 시 신상정보의 확인 요청 미실시 또는 퇴원명령 불이행 및 계속입원 심사 누락 행위(고의, 과실을 불문)
- 입원 및 입원연장 결정시 입원 또는 입원연장의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대한 사항 서면통지 미실시 등
- 입원환자의 퇴원 및 처우개선 신청 차단 및 관련 서식 미비치
-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의 유형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 입원이 결정이 된 자에게 의도적으로 권리고지를 시행하지 않는 행위
- 입원(소)환자가 퇴원(소)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 정신건강복지법 제89조에 의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폐쇄적 시설운영에 따른 환자 권익 피해 감독 강화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입원 또는 입소, 이용 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운영의 편의성 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실장(방장) 제도를 즉시 폐지
- 관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다음 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위법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편지, 전화 사용 등 통신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제한과 임의적 검열 사례
 - 위생, 오락과 운동, 목욕과 용변 모습 노출 등 환자의 인간적 품위 유지와 건강권, 사생활 보장 등에 대한 침해 사례
 - 특정 종교 신앙 및 행사 참석 강요 등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 초과 과밀 수용에 따른 환자 사생활 보호 조치 미흡 사례
 -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환자의 안전 확보 곤란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와 진정절차 고지 의무 위반 사례 등

3) 행동제한 및 격리의 제한

- 포괄적 행동제한의 금지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종교행사, 종교적 집회·결사, 선교의 자유, 학문·예술, 사생활의 자유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의료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음



행동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사례

P병원에서는 A,B,C로 환자들을 분류하여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A,B등급은 담배, 전화, 면회, 외출이 가능하며, C등급은 담배, 전화, 면회, 외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사건번호 : 06진인2621)

• 위반여부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즉,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병동 규칙화하여 모든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제한 사유의 기록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5년 보관)

● 환자의 격리 제한

-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 이 경우 격리는 안전과 편의가 확보된 당해 시설의 보호실에서 행하여져야 함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작업치료 규정의 준수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작업치료의 시행요건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작업치료의 예: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

● **작업치료의 시행방법(정신의료기관)**

- 시간제한: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실시
- 장소제한: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위·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특별히 관리
- 시행동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시행자: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지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실시
- 기록보존: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함(5년 보관)
- 수입지급: 작업으로 얻은 수입은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하고 해당 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

5) 정신보건기관 운영회의체 구성 운영 권장

- 시설 경영진, 직원(의료진, 종사자), 인권보호책임자, 환자 및 보호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가칭 “○○병원 환자 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공동개선안 마련 추진

6)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활성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인슐린수면요법 등 치료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 시행
 - 규정준수 여부 점검 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환자 및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 요구시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 또는 종사자는 요구내용을 수용 (의료법 제21조)
 - 규정준수 여부 점검 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환자 및 배우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 치료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협조

다 인신보호법 안내

1) 법 제정 개요

- 인신보호법은 2007. 12. 21. 인신보호규칙(대법원 규칙)은 2008. 6. 5. 제정되었으며, 각각 2008. 6. 22.부터 효력 발생함
- 제정이유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피수용자의 범위
 -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지자체·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임
 - ※ 형사 체포·구속자·수형자 등 제외
- 구제의 청구
 - 청구자격: 피수용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임(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
 - 청구사유: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상황임
 - 관할법원: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임(단독판사가 심판)
 - 청구방법: ① 구제청구자 주소·성명, ② 수용자 성명·주소 등, ③ 피수용자 성명, ④ 청구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 청구(인지첨부 불요)
 - 청구 각하: ①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②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 청구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때, ③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직권으로 청구를 각하함
 - 국선 변호인 선임: 구제청구자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

● 사건의 심리

- 심리개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심리 개시(심문기일을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임)
- 진단·의견조회: 필요한 때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 수용 적법성의 증명 의무: 수용자가 수용의 적법성과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함
- 피수용자 이송: 피수용자의 심문기일 출석을 위한 호송·감호는 수용자가 맡도록 함
- 불출석 수용자 제재: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재판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
- 준용규정: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며, 청구자와 수용자는 3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음

● 수용의 임시해제 및 신병보호

- 임시해제: 법원은 피수용자에 대한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구제 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하거나,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 수용시설에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음
- 이송책임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이송 받을 수용시설로 이송하도록 함
- 임시수용시설 지정: 법원장, 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이나 감호 등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사전에 수용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함

● 종국결정

- 재수용의 금지: 수용해제결정에 따라 피수용자가 수용해제된 경우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음
- 비용부담: 법원은 구제청구사건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2

인식개선

1) 목적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사업을 통하여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 및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정신건강증진 홍보사업을 통해 국민정신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3) 주요내용

가) 대국민참여형 인식개선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공모전, 캠페인, 챌린지 등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향상 및 동참유도 확산

나) 정신건강의 날 및 홍보주간 지정 운영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온국민 마음건강증진 도모

다)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정신건강정책 투자 필요성 및 부정적 인식개선·서비스 접근성 제고 위한 정보 제공

4) 사업 집행절차

- (보건복지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위탁 공모 및 선정·계약, 예산 지원 및 평가
- (사업수행기관)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등 사업 실시, 사업결과 보고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17개소)
 -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246개소)
 - 다.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6개소)
 - 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57개소)
 - 마. 자살예방센터(독립) 설치운영 현황(6개소)
 - 바.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369개소)
 - 사.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59개소)
 - 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현황(13개소)
-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ART

부 록

06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17개소)

시·도	기관명	운영구분	개소년도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5	종로구 동숭3길 40 3-4층	02-3444-9934
부산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0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1-12층	051-242-2575
대구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2	서구 평리로157,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3층	053-256-0199
인천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8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T타워 20층	032-468-9911
광주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2	광산구 무진대로246, KT우산빌딩 7층(우산동)	062-600-1930
대전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3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2층	042-486-0005
울산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5	북구 명촌10길 50, 3층(명촌동)	052-716-719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22	시청대로 583, 반곡종합복지센터 2층	044-865-4597
경기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08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031-212-043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0	춘천시 후석로 42 시티빌딩 4층	033-251-1970
충북	충청북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3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2층	043-217-0597
충남	충청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1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73 팰리피아 5층 504호	041-633-9183
전북	전라북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2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61 한산빌딩 401호	063-251-0650
전남	전라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4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국립나주병원 본관 2층	061-350-1700
경북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5	경주시 광충길24, 용황스타타워 402호	054-748-6400
경남	경상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6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종합관(3호관) 4층	055-239-14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2014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내 별관	064-717-3000

* 부설 청년마음건강센터(10개소)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임

* 부설형 광역 자살예방센터(10개소)는 별도 표기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246개소)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서울 (25)	강남구	직영	1995	강남구 자곡로100 자곡문화센터 2층	02-3423-8796
	강동구	위탁	2007	강동구 구천면로 297-5, 천호보건지소 1층	02-471-3223
	강북구	직영	1999	강북구 삼양로 19길 154, 3층	02-901-4860
	강서구	위탁	1997	강서구 공항대로 561, B1	02-2600-5926
	관악구	직영	2008	관악구 관악로 145, 3동 4층(봉천동)	02-879-4911
	광진구	위탁	2005	광진구 긴고랑로 110 중곡종합건강센터 4층	02-450-1895
	구로구	직영	2007	구로구 공원로21,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2층	02-861-2284
	금천구	위탁	2009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5층	02-3281-9314
	노원구	위탁	1998	노원구 노해로 455, 5층(상계동, MG노원빌딩)	02-933-4591
	도봉구	직영	2006	도봉구 방학로3길 117, 1층	02-2091-5231
	동대문구	위탁	2009	동대문구 홍릉로 81, 홍릉문화복지센터 4층	02-963-1621
	동작구	직영	2004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4층	02-820-9540
	마포구	위탁	2007	마포구성산로4길 15, 성산1동 주민센터 3층	02-3272-4937
	서대문구	직영	1997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보건소 별관 4층	02-3140-8081
	서초구	직영	2007	서초구 염곡말길 9 느티나무쉼터 3층 마음건강센터	02-2155-8215
	성동구	위탁	1998	성동구 행당로12,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층	02-2298-1080
	성북구	직영	1998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6층	02-2241-6301
	송파구	위탁	2005	송파구 양산로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402-5871
	양천구	위탁	2009	양천구 목동서로339, 양천구보건소 본관 2층	02-2061-8881
	영등포구	직영	2006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4층	02-2670-4793
	용산구	위탁	2010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구보건분소 3층	02-703-8340
	은평구	위탁	2008	은평구 연서로34길11 불광보건지소 3층	02-351-8680
	종로구	위탁	2008	종로구 성균관로15길 10	02-745-0199
	중구	위탁	2006	중구 서소문로6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3층	02-2236-6606
	중랑구	위탁	2005	중랑구 봉화산로 190, 중랑구청 제2청사 5층	02-3422-5921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부산 (16)	강서구	위탁	2014	강서구 공향진입로 8, 2층	051-973-3418
	금정구	위탁	1997	금정구 중앙대로 1793번길 37,3층	051-518-8700
	기장군	위탁	2013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11, 정관보건지소 4층	051-727-5386
	남구	위탁	2007	남구 유엔평화로 4번길 61 2,3층	051-626-4660
	동구	위탁	2012	동구 구청로1, 의회동 1층	051-911-4600
	동래구	위탁	2005	동래구 총렬대로 237번길 117, 동래구공공지원센터 2층	051-507-7306
	부산진구	위탁	2005	부산진구 시민공원로30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 내 2층	051-638-2662
	북구	위탁	2006	북구 만덕대로 89번길 9, 덕천보건지소 3층	051-334-3200
	사상구	위탁	2008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다누림센터 6층	051-314-4101
	사하구	위탁	2010	사하구 장림번영로41, 한국메디컬빌딩 5층	051-265-0512
	서구	위탁	2013	서구 구덕로127 서구가족센터 2층	051-246-1981
	수영구	위탁	2013	수영구 수영로 637-5, 2층 (광안동)	051-714-5681
	연제구	위탁	2007	연제구 연제로2, 연제구보건소 지하1층	051-861-1914
	영도구	위탁	2012	영도구 동삼북로3 주택공사영구임대아파트 상가 2층 209호	051-404-3379
	중구	위탁	2013	중구 흑교로 48, 3층	051-257-7057
	대구 (9)	해운대구	위탁	2011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해운대구보건소 306호
군위군		직영	2019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군위군보건소 2층	054-380-7411
남구		위탁	2004	남구 영선길 34 남구보건소 4층	053-628-5863
달서구		위탁	2006	달서구 월성로 77, 달서건강복지관 3층	053-637-7851
달성군		위탁	2007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58길 6-2, 3층	053-643-0199
동구		위탁	2007	동구 동촌로 79(검사동), 동구보건소 4층	053-983-8340
북구		위탁	2005	북구 침산남로 9길 27, 2층	053-353-3631
서구		위탁	1999	서구 북비산로71길 7, 3층	053-564-2595
수성구		위탁	2000	수성구 수성로 213, 수성구보건소 별관 4층	053-756-5860
중구		위탁	2007	중구 태평로 45, 3층	053-256-2900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인천 (12)	강화군	위탁	2001	강화군 강화읍 총렬사로26-1, 보건소1층	032-932-4093
	검단구	-	2026	개소예정	-
	계양구	위탁	2008	계양구 장기서로8 장기보건지소 3층	032-547-7087
	남동구	위탁	2008	남동구 인주대로819 문화빌딩6층	032-465-6412
	미추홀구	위탁	2007	미추홀구 수봉남로18번길 68	032-421-4045
	부평구	위탁	2017	부평구 부흥로 287, 부평구보건소 별관	032-330-5602
	삼산	위탁	2017	부평구 평천로 447, 108동 2층	032-330-1371
	서구	위탁	2005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4층	032-718-0625
	연수구	위탁	2008	예술로 20번길 15 기억과마음 치매정신통합센터 3층	032-899-9430
	영종구	-	2026	개소예정	-
	옹진군	위탁	2020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구보건소 3층	032-721-0560
	제물포구	-	2026	중구+동구 통합 개소예정	-
광주 (5)	광산구	위탁	2007	광산구 상무대로 239-1, 3층	062-941-8567
	남구	위탁	2004	남구 봉선로1 남구종합청사 5층	062-676-8236
	동구	위탁	1999	동구 서남로 14, 6층	062-233-0468
	북구	위탁	2006	북구 서암대로 190 2층	062-267-5510
	서구	직영	2004	서구 운천로 172번길 32 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정신보건팀	062-350-4196
대전 (5)	대덕구	위탁	2000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대덕구보건소 별동 2층	042-931-1671
	동구	위탁	2011	동구 현암로 22, 1층	042-673-4619
	서구	위탁	2000	서구 구봉산북로 300, 관저보건지소 2층	042-488-9741
	유성구	위탁	2008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구보건소2층	042-825-3527
	중구	위탁	2012	수도산로 15, 대전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2-257-9930
울산 (5)	남구	위탁	1998	남구 삼산중로 132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층	052-227-1116
	동구	위탁	2006	동구 봉수로 155 동구보건소 3층	052-233-1040
	북구	위탁	2012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2층 (연암동)	052-288-0043
	울주군	위탁	2008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 1길 67-12, 울주군보건소 2층	052-262-1148
	중구	위탁	2014	중구 화합로 465, 2층 (복산동)	052-292-2900
세종 (1)	세종시	위탁	2012	세종시 시청대로 583, 반곡종합복지센터 2층	044-863-9415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경기 (36)	가평군	위탁	2008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5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1층, 3층	031-581-8881
	고양시	위탁	199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00 일산동구보건소 별관 4층	031-968-2333
	과천시	위탁	1998	과천시 관문로 69, 2층(별관)	02-504-4440
	광명시	위탁	2008	광명시 오리로 1018, 5층	02-897-7787
	광주시	위탁	1997	광주시 파발로 194 별관 1~2층	031-762-8728
	구리시	위탁	1998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84. 3층	031-523-8672
	군포시	위탁	2002	군포시 군포로 221	031-461-1771
	김포시	위탁	1998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별관 2층	031-998-4005
	남양주시	위탁	1997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 제2청사	031-592-5891
	동두천시	위탁	1998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49, 2층	031-863-3632
	부천시	위탁	1999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어울마당 3층	032-654-4024
	성남시	위탁	1999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5층	031-780-7000
	성남시 소아청소년	위탁	2007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4층	031-751-2445
	수원시(노인)	위탁	2008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396, 영통구보건소 4층	031-273-7511
	수원시(성인)	위탁	2008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2층	031-247-0888
	수원시 (아동청소년)	위탁	2014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031-242-5737
	수원시(행복)	위탁	1996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장안구청 1층	031-253-5737
	시흥시	위탁	2004	시흥시 호현로 55 시흥시보건소 5층	031-316-6663
	안산시	위탁	1997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031-411-7573
	안성시	위탁	2008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24	031-8057-8356
안양시	위탁	1998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5층	031-469-2989	
양주시	위탁	2008	양주시 삼송동 315	031-840-7320	
양평군	위탁	2008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1 3층	031-771-3521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여주시	위탁	2007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2, 2층	031-886-3435
	연천군	위탁	1995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내	031-832-8106
	오산시	위탁	1998	오산시 경기동로 59 보건소2층	031-374-8680
	용인시	위탁	1997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신갈동행정복지센터 내 3층	031-286-0949
	의왕시	위탁	1997	의왕시 오봉로 34 의왕시보건소 별관 1층	031-458-0682
	의정부시	위탁	1997	의정부시 범골로 158, 건윤빌딩 2층	031-838-4181
	이천시	위탁	2006	이천시 부악로 36, 이천시보건소 2층	031-637-2330
	파주시	위탁	2008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68 1층	031-942-2117
	평택시	직영	1997	평택시 평택5로 평택시보건소 A동 2층	031-658-9818
	포천시	위탁	2008	포천시 포천로 1612, 포천시보건소 3층	031-532-1655
	하남시	위탁	1997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2층	031-793-6552
	화성시	위탁	2005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실내체육관 1층	031-352-0175
	화성시 아동청소년	위탁	2022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 1층	031-305-1010
	강원 (18)	강릉시	위탁	2007	강릉시 남구길 23번길 24, 3-4층
고성군		직영	2014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고성군보건소 내 2층	033-680-3856
동해시		위탁	2008	동해시 청운로 96, 1층	033-533-0197
삼척시		위탁	2013	삼척시 척주로 48 루안빌딩 2층	033-574-0190
속초시		위탁	2011	속초시 중앙로 17번길 6	033-633-4088
양구군		위탁	2013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보건소 3층	033-482-9339
양양군		직영	2013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보건소 2층	033-670-1730
영월군		직영	2015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6-43	033-370-5431
원주시		위탁	2007	원주시 원일로 139, 건강문화센터 4층	033-746-0199
인제군		직영	2015	인제군 인제로140번길 34.	033-460-2776
정선군		직영	2017	정선군 녹송로 33	033-560-2729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철원군	직영	2014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033-450-5104
	춘천시	위탁	1998	춘천시 중앙로 131, 춘천시보건소 별관 5,6층	033-244-7574
	태백시	위탁	2012	태백시 태백로 905	033-554-1378
	평창군	직영	2018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033-333-0199
	홍천군	직영	2008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5, 건강증진센터 2층	033-435-7482
	화천군	직영	2014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033-440-2863
	횡성군	위탁	2013	횡성군 횡성로 379, 횡성보건소 2층	033-345-9901
충북 (14)	괴산군	위탁	2014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43 별관 2층	043-832-0330
	단양군	직영	2000	단양군 삼봉로 53	043-420-3267
	보은군	위탁	2008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45	043-544-6991
	영동군	직영	2012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7	043-740-5924
	옥천군	위탁	2012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10,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	043-731-2199
	음성군	위탁	2008	음성읍 중앙로 49, 3층	043-872-1883
	제천시	위탁	2005	제천시 의림대로 242	043-646-3074
	증평군	위탁	2013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043-835-4276
	진천군	위탁	2008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진천군보건소 별관2층	043-536-8387
	청주시 상당구	위탁	2009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상당구보건소 1층	043-298-0199
	청주시 서원구	위탁	2012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5, 위너스빌딩 4층	043-291-0199
	청주시 청원구	위탁	2017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1층	043-215-6868
	청주시 흥덕구	위탁	2017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46, 강서보건지소 2층	043-234-8686
	충주시	위탁	2007	충주시 사직산21길34 충주시보건소 4층	043-855-4006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충남 (17)	계룡시	직영	2015	계룡시 장안로 54 계룡시보건소 3층	042-840-3582
	공주시	위탁	2007	공주시 금성길7	041-852-1094
	금산군	위탁	2007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다락원 스포츠센터 내 1층	041-751-4721
	논산시	직영	2007	논산시 논산대로 382, 논산시보건소 2층	041-746-8121
	당진시	직영	2007	당진시 서부로 56(채운동)	041-352-4077
	보령시	직영	2008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	041-930-0900
	부여군	직영	2013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1층	041-830-8600
	서산시	직영	2017	서산시 호수공원 6로6, 서산시보건소 2층	041-661-8252
	서천군	직영	2001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1층	041-950-6700
	아산시	직영	1999	아산시 번영로 216번길 18, 별관1층	041-537-3451
	아산청년 마음건강센터	독립	2021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12 4층	041-547-5580
	예산군	직영	2008	예산군 군청로 22, 예산군보건소	041-339-6113
	천안시 동남구	직영	2017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40, 3층	041-521-5005
	천안시 서북구	직영	2004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2층	041-578-9709
	청양군	직영	2012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청양군 보건의료원 3층	041-940-4542
	태안군	직영	2008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태안군 보건의료원 3층	041-671-5366
	홍성군	직영	2008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041-630-9794
전북 (14)	고창군	위탁	2009	고창군 전봉준로 90,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63-563-8751
	군산시	위탁	1999	군산시 공단대로 482 5층	063-451-0363
	김제시	위탁	2007	김제시 성산길 138, 김제시보건소 2층	063-542-1350
	남원시	위탁	2010	남원시 요천로 1285 보건소별관	063-625-4122
	무주군	직영	2017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063-320-8237
	부안군	위탁	2014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063-581-5830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순창군	직영	2019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063-650-5318
	완주군	위탁	2012	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0-10, 완주군보건소 2층	063-262-3066
	익산시	위탁	2000	익산시 무왕로 975, 익산시보건소	063-841-4235
	임실군	직영	2019	임실군 호국로 1680	063-640-3123
	장수군	직영	2019	장수군 장천로 255-10	063-350-2800
	전주시	위탁	2000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구청 별관 2층	063-273-6996
	정읍시	위탁	2007	정읍시 수성택지4길 11	063-535-2101
	진안군	직영	2015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진안군보건소	063-430-8529
전남 (23)	강진군	직영	2015	강진읍 목리길 11, 3층	061-430-3539
	고흥군	직영	2008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 5	061-830-6673
	곡성군	위탁	2017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 별관 2층	061-363-9917
	광양시	직영	2007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1층	061-797-3778
	구례군	직영	2012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061-780-2047
	나주시	위탁	2004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나주시보건소 2동 4층	061-339-4850
	담양군	직영	2017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5, 1층	061-380-2767
	목포시	직영	2007	목포시 석현로 48, 하당보건지소 2층	061-276-0199
	무안군	직영	2015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28, 3층	061-450-5102
	보성군	위탁	2017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3, 4층	061-853-5500
	순천시	직영	2007	순천시 중앙로 232, 순천시보건소 2층	061-749-6695
	순천청년 마음건강센터	독립	2021	순천시 중앙로 226, 4층	061-811-0130
	신안군	직영	2020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보건소 2층	061-240-5480
	여수시	직영	2008	여수시 시청서4길 47 여수시보건소 2층 별관	061-659-4288
	영광군	위탁	1999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보건교육관	061-350-5666
	영암군	직영	2019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3층	061-470-6028
	완도군	직영	2008	완도군 농공단지길 34, 완도군보건의료원 별관 2층	061-550-6745
장성군	직영	2012	장성군 장성읍 청운 11길 13	061-390-8318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장흥군	위탁	2007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 2층	061-864-0199
	진도군	직영	2014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진도군보건소3층	061-540-6932
	함평군	직영	2012	함평군 읍 중앙길 54-8	061-320-2509
	해남군	직영	2010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2층	061-531-3768
	화순군	위탁	2018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40, 2층	061-374-4600
경북 (24)	경산시	위탁	2005	경산시 남매로 158, 3층	053-816-7190
	경주시	위탁	2007	경주시 양정로300, 2층	054-777-1577
	고령군	직영	201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 고령군보건소 3층	054-950-7981
	구미시	위탁	2000	구미시 선산대로111, 구미보건소 2층	054-444-0199
	구미시 선산	위탁	2018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2층	054-480-5190
	김천시	직영	2007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3층	054-433-4005
	문경시	위탁	2015	문경시 점촌1길 13, 2층	054-554-0802
	봉화군	위탁	2017	봉화읍 거촌로 12-3	054-674-1126
	상주시	위탁	2015	상주시 경상대로 3023	054-536-0668
	성주군	직영	2017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건강증진센터 3층	054-930-8116
	안동시	위탁	2007	안동시 관광단지로 40, 응도빌딩 2층	054-842-9933
	영덕군	직영	2017	영덕군 군청길 53	054-730-7161
	영양군	직영	2018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054-680-5171
	영주시	직영	2017	영주시 영주로 159번길 73, 2층	054-639-5728
	영천시	위탁	2009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60	054-331-6770
	예천군	직영	2018	예천군 군청길 33, 예천군보건소 3층	054-650-8035
	울릉군	직영	2020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3층	054-790-6815
	울진군	직영	2018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울진군보건소 2층	054-789-5037
	의성군	직영	2018	의성읍 구봉길 228, 의성군보건소 4층	054-830-6660
	청도군	위탁	2018	청도군 화양읍 산성강변길 472	054-373-8006
	청송군	직영	2018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별관 2층	054-870-7362
	칠곡군	위탁	2001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0, 별관 2층	054-973-2023

시·도	시·군·구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포항시남구	직영	2001	포항시남구 동해안로 6119, 1층	054-270-4091
	포항시북구	직영	1999	포항시북구 삼흥로 98, 북구보건소 별관2층	054-270-4191
경남 (20)	거제시	직영	2007	거제시 수양로 506, 3층	055-639-6119
	거창군	직영	2013	거창읍 거함대로 3079	055-940-8388
	고성군	직영	2014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055-670-4057
	김해시	위탁	2001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	055-329-6323
	남해군	직영	2013	남해읍 선소로 6	055-860-8932
	밀양시	직영	2012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055-359-7078
	사천시	직영	2008	사천시 용현면 시청3길 43 사천시 보건소	055-831-3746
	산청군	직영	2017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의원원 별관3층	055-970-7642
	양산시	위탁	2007	양산시 중앙로 7-32, 4층	055-367-2255
	의령군	직영	2014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	055-570-4022
	진주시	위탁	2001	진주시 월아산로 983, 1층	055-759-0805
	창녕군	직영	2015	창녕군 창녕읍 군청1길 37 (창녕군 보건소) 1층	055-530-6260
	창원시 마산	직영	2001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마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055-225-6031
	창원시 창원	위탁	2007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2번길 9	055-287-1223
	창원시 진해	직영	1999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2, 3층	055-225-6441
	통영시	직영	2008	통영시 안개4길 108, 4층	055-650-6150
	하동군	직영	2008	하동군 황천면 경서대로 1189 2층	055-880-6623
	함안군	직영	2003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보건소 2층	055-580-3201
	함양군	직영	2015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2층	055-960-5358
	합천군	직영	2007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39 보건소 3층	055-930-4140
제주 (2)	서귀포시	직영	2001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2층	064-760-6553
	제주시	위탁	2000	제주시 노형9길 9-4, 2층	064-728-4074

* 부설 청년마음건강센터(5개소)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임

* 부설형 기초 자살예방센터(38개소)는 별도 표기

다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6개소)

시·도	기관명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경기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독립)	20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17 (이목동) 우성테크노파크 839~842호	031-269-6692
강원	강원광역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부설)	2022	춘천시 후석로 42, 4층	033-251-1970
충북	충북광역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부설)	2022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2층,5층	043-217-0597
전북	전북광역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부설)	2022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나눔동지타운 407,408,409호	063-251-0650
경남	경남광역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부설)	202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종합관(3호관) 4층	055-239-1400
제주	제주광역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부설)	2022	제주시 인다15길 10, 3층	064-717-3000

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57개소)

시·도	시·군·구	기관명	운영구분	개소년도	주소	전화번호
서울 (4)	강남구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25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5층	02-3443-0342
	강북구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1	강북구 삼양로 19길 154, 강북구보건소 삼각산지소 2층	02-989-9223
	노원구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4	노원구 노원로 16길 15, 중계주공@ 912동 1층	02-6941-3677
	도봉구	도봉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8	도봉구 방학로 53, 백운빌딩 2층	02-6082-6793
부산 (3)	사상구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2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다누림센터 6층	051-988-1191
	서구	부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3	서구 구덕로 179 S동(융합의학연구동) 2층	051-246-7574
	해운대구	해운대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8	해운반송로 853 1층 반송보건지소	051-545-1191
대구 (2)	달서구	대구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0	달서구 월성로 77 달서건강복지관 4층	053-638-3778
	동구	대구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6	동구 아양로 246-1, 3층	053-957-8817
인천 (5)	계양구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8	계양구 계양대로 126	032-555-8765
	남동구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4	남동구 백범로369 4층	032-468-6412
	동구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3	동구 송림로 113, 2층	032-764-1183
	부평구	부평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8	부평구 마장로 410번길 5, 청천행정복지센터 3층	032-507-3404
	연수구	연수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2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2층	032-236-9479
광주 (5)	광산구	광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2	광산구 상무대로 287, 3층	062-714-1233
	남구	광주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2	남구 독립로25-1 3,4층	062-413-1195
	동구	광주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1	동구 구성로 190, 흥국생명 2층	062-222-1195
	북구	광주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5	북구 중가로26, 4층	062-526-3370
	서구	광주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8	서구 풍금로 151번길 6-2, 연수빌딩 2층	062-654-3802

시·도	시·군·구	기관명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대전 (5)	대덕구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1	대덕구 중리서로 42 3층	042-635-8275
	동구	대전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6	동구 동대전로 333, 3층	042-286-8275
	서구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1	서구 갈마로 40, 3층	042-527-9125
	유성구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22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85-30, 3층	042-826-3250
	중구	대전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23	중구 계룡로 920번안길 74, 2층	042-251-9732
울산 (2)	남구	울산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2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빌딩 5층	052-275-1117
	중구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2	중구 태화로 216 3층	052-245-9007
경기 (10)	고양시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2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00 일산동구보건소 별관1층	031-932-7071
	김포시	김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부설)	2022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별관 2층	031-998-4005
	성남시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5	성남시 수정로218 수정구보건소5층	031-751-2768
	수원시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3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2층	031-256-9478
	안산시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0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2층(구 단원보건소)	031-411-8445
	안양시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7	안양시 안양로 119 7층	031-464-0175
	용인시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	031-326-0959
	의정부시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2	의정부시 둔야로33번길 8, 광희빌딩 5층	031-829-5001
	파주시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6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031-948-8004
	화성시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0	화성시 서봉로 998 정남면보건지소 1층	031-354-6614
강원 (3)	강릉시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6	강릉시 용지로 144 리치빌딩 4층	033-653-9667
	원주시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2	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시민문화센터 지하1층	033-748-5119
	춘천시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5	춘천시 중앙로 131 춘천시보건소 별관 4층	033-255-3482

시·도	시·군·구	기관명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충북 (1)	청주시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3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72번길 21, 흥덕보건소 별관 3층	043-272-0067
충남 (2)	아산시	아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영	2014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18, 아산시보건소 별관 1층	041-537-3453
	천안시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7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1층	041-577-8097
전북 (3)	군산시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0	군산시 공단대로 482, 4층	063-464-0061
	전주시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2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63, 1층	063-223-4567
	익산시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22	익산시 무왕로 975 익산시보건소 2층	063-855-9900
전남 (2)	목포시	목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영	2003	목포시 석현로 48 하당보건지소 2층	061-284-9694
	여수시	여수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영	2010	여수시 시청서4길47 여수시보건소 내	061-659-4288
경북 (3)	구미시	구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6	구미시 검성로 115-1, 2층	054-474-9791
	안동시	안동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25	안동시 경동로 663 남부빌딩 2층	054-857-7582
	포항시	포항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영	2003	포항시북구삼흥로98, 북구보건소 별관 2층	054-270-4191
경남 (5)	김해시	김해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0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29-1 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055-314-0317
	양산시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8	양산시 중앙로 7-32 5층	055-367-9072
	진주시	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3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20, 2층	055-758-7801
	마산시	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5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 3층	055-247-6994
	창원시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10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2번길 9, 창원보건소 4층	055-225-7851
제주 (2)	서귀포시	서귀포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영	2012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서귀포보건소 2층	064-760-6552
	제주시	제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2003	제주시 연삼로 264, 제주보건소 별관 2층	064-728-1410

마 자살예방센터(독립) 설치운영 현황(6개소)

시·도	기관명	운영 구분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서울 (2)	자살예방센터	광역	2009	중구 소월로 2길30 티타워 15층	02-3458-1000
	성북구자살예방센터	기초	2012	성북구 오패산로 21,4층	02-916-9119
인천 (1)	인천광역자살예방센터	광역	2011	미추홀구 경인로 229	032-468-9917
경기 (3)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기초	201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18 5층	02-2618-8255
	수원시자살예방센터	기초	2001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031-247-3279
	안산시자살예방센터	기초	2013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5 상록수보건소3층	031-418-0123

* 부설(48개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임

바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369개소)

(2025.12월 기준)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서울 (103)	강남구	태화해뜨는샘	주간재활시설	강남구 광평로 185,3층	02-2040-1780
	강동구	맑은샘	공동생활가정	강동구 구천면로 28길 21 401호	02-6012-7963
	강동구	서울우리집	공동생활가정	강동구 상일로25길 7-12, 201호	02-481-1272
	강동구	이음	지역사회전환시설	성내2동 136-18	02-475-1403
	강동구	행복정신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진황도로119, 4층	02-426-0981
	강북구	소담	공동생활가정	강북구 한천로166길 30, 3층	02-997-0444
	강북구	푸른존	주간재활시설	강북구 도봉로 66길 35, 1층	02-944-5811
	강서구	강서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강서구 초록마을로16길20, 201호	02-2699-7328
	강서구	강서양지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강서구등촌로35가길26, 301호	02-2696-3450
	강서구	공감플러스	직업재활시설	강서구 화곡로61길 130 3층	02-3663-2035
	강서구	새벗클럽하우스	주간재활시설	강서구 강서로52길 88 참빛빌딩 3층4층	02-3662-9004
	강서구	여울목	공동생활가정	강서구 화곡로13길66-28.301호	02-2605-2176
	강서구	예체르하우스	공동생활가정	강서구 방화대로6바길5-25 301호	02-395-5980
	강서구	한마음세상	종합시설	강서구 초록마을로32길 33-18	02-2699-7323
	관악구	관악좋은집	공동생활가정	법원단지32길 5, 201호	02-858-1019
	관악구	리커버리하우스	공동생활가정	관악구 신림로30길 17-9, 301호	02-877-9984
	관악구	새로돋는집	공동생활가정	관악구 대학18길 41, 401호	02-872-9961
	관악구	청소년정신건강센터 비상	주간재활시설	관악구 남부순환로 2054 광일빌딩 4층	02-522-4404
	관악구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관악구 장군봉길 46	02-877-9964
	광진구	가람슬기	공동생활가정	광진구 천호대로116길 109, 301호	02-444-9145
	광진구	광진오사랑의집	공동생활가정	광진구 긴고랑로 36길 57-11 301호	02-499-6162
	광진구	누리봄	지역사회전환시설	광진구 용마산로 25길 10	02-465-7065
	광진구	돌봄사랑채	공동생활가정	광진구 아차산로26길 28, B동 401호	02-3409-9444
	광진구	소망나무	주간재활시설	광진구 동일로 260, 3층	02-6403-7776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구로구	THE 해냄	공동생활가정	구로구 경인로 20, 화랑빌라 1동 210호	02-6104-1030
	구로구	구로구공동희망학교	주간재활시설	구로중앙로18길 50, 2층	02-6739-3500
	구로구	구로다온	공동생활가정	구로구 부일로12길 17, 미도빌라 401호	02-6338-2084
	구로구	꿈꾸는달팽이	직업재활시설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0 동일테크노타운 2차 302호	02-855-9135
	구로구	다솜	공동생활가정	구로구 고척로 10길 9-5 LG베스트빌 302호	070-8262-1330
	구로구	수린목	공동생활가정	구로구 고척로 3길 99, 대하쉐르빌 9동 101호	070-7740-2369
	구로구	한그루	공동생활가정	구로구 오리로21길 44, 블레스빌 나동 203	02-6213-0314
	금천구	가득한집	공동생활가정	시흥대로 133-7 301호	02-806-8524
	금천구	대길엘림	공동생활가정	금천구 시흥대로54길 19, 301호	02-802-9910
	노원구	가온길	공동생활가정	노원구 공릉로 58나길 17, 2층	02-6403-7790
	노원구	노원희망공간이룸	주간재활시설	노원구 한글비석로422	02-939-4200
	노원구	새롬마을	공동생활가정	노원구 동일로 237다길 43, 201호	02-934-5060
	노원구	평화정신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노원구 노원로331 3층	02-949-0121
	도봉구	그라따	공동생활가정	도봉로 139길 42-6, 302호	02-6369-1716
	도봉구	내동화세상	중독자재활시설	도봉산3길 17-16	02-954-2727
	도봉구	늘푸른집	지역사회전환시설	도봉구 시루봉로 295-3	02-3491-6620
	도봉구	디딤돌정신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도당로 27길 47	02-954-2279
	도봉구	상가	공동생활가정	시루봉로15길 95, 101동 401호(1호), 102동 302호(2호)	02-2652-8771
	도봉구	에스홈	공동생활가정	우이천로 38나길 53, 201호	02-908-0884
	도봉구	유쾌한집1	공동생활가정	도봉산3길 12-4	070-8670-7026
	도봉구	유쾌한집2	공동생활가정		
	도봉구	유쾌한집3	공동생활가정		
	도봉구	유쾌한집4	공동생활가정		
	도봉구	행복한하루	공동생활가정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동대문구	길벗동지	공동생활가정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8길 36, 1층	070-8180-7224
	동대문구	도담	공동생활가정	동대문구 답십리로 67길 29 삼화예코빌7차 104동 202,302,501호	02-3394-5079
	동대문구	마인드	주간재활시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217-3 4층	02-3394-5144
	동대문구	위드유정신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동대문구 한천로424, 4층	02-2243-1992
	동작구	노들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동작구 노량진로 248	02-3280-1275
	동작구	동작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동작구 국사봉길 109	02-817-5443
	마포구	한국중독연구재단 카프향나무집	중독자재활시설	마포구 성미산로 5길 50-15	02-325-4107
	마포구	카프감나무집	중독자재활시설	마포구 연남로 1길 50-8	02-3143-6693
	마포구	태화샘숫는집	주간재활시설	마포구 마포대로 173-20	02-392-1155
	마포구	해오름	주간재활시설	망원로11길 27-54	02-323-5765
	서대문구	로댐나무	공동생활가정	증가로24마길19.101호	02-376-3415
	서대문구	서대문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연희로 26 동방사회복지회 2층	02-332-8033
	서대문구	서대문해벗누리	주간재활시설	모래내로 173	02-375-5042
	서대문구	한마음의집	공동생활가정	연희로39길 75-5 비전파크빌301호	02-391-2504
	서대문구	한빛하우스	공동생활가정	증가로4길 64-5, 401~402호	02-379-8205
	서대문구	해비치	공동생활가정	증가로24마길11, 102호	02-3152-3013
	서초구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주간재활시설	서초구 남부순환로2124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4층	02-521-2364
	서초구	서초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서초구 방배로 173, 지하1층	02-535-2940
	서초구	서초열린세상	주간재활시설	서초구 신반포로33길22	02-3477-9817
	성동구	멋진월요일	직업재활시설	성동구 성덕정길 116 2,4층	070-8633-9051
	성동구	성모 다움	주간재활시설	성동구 청계천로 506 4층	02-2290-3159
	성북구	다함 정신건강상담센터	주간재활시설	성북구 보문로34길 39, 백옥빌딩 4층	02-926-2172
	성북구	한울림	공동생활가정	성북구 보국문로8다길 44, 현인빌라 202호	02-942-1037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송파구	송파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송파구 총민로 6길 17 아이코리아 사랑동 101호	02-2144-1140
	송파구	송파어우러기	주간재활시설	송파구 백제고분로446, 204호	02-488-2228
	송파구	하얀마음	공동생활가정	송파구 석촌호수로 20길 28-1 201호	02-425-1274
	양천구	더불어봄	공동생활가정	양천구 남부순환로62길 16 202호	02-6403-4030
	양천구	두드림마음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양천구 등촌로 194 4층	02-2645-1941
	양천구	마음자리	공동생활가정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16다길 9, 204호	070-4082-0454
	양천구	목동하늘샘	공동생활가정	양천구 목동중앙남로9길 28-1, 201호	02-2061-1367
	양천구	아름드리	공동생활가정	양천구 남부순환로59길 16-1, 201호	02-2696-7725
	양천구	열린세상	공동생활가정	양천구 남부순환로 450, 301호	010-7755-5995
	양천구	하늘소	공동생활가정	양천구 화곡로8길 21-4	070-7517-0281
	영등포구	대길푸른초장	주간재활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14	02-835-8011
	영등포구	영등포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14 2층	02-6264-9915
	영등포구	좋은사람들	주간재활시설	영등포구 도림로 188-1 3층	02-845-8880
	용산구	스롤라인	직업재활시설	용산구 백범로 90길 8, 이레빌딩 1층	02-701-5325
	용산구	일상	직업재활시설	용산구 청파로326 고려빌딩 4층 502호	02-6497-1226
	은평구	새빛	공동생활가정	연서로34가길	02-719-3369
	은평구	새오름터	지역사회전환시설	은평구 연서로 22길4	02-3157-0884
	은평구	에버그린하우스	주간재활시설	은평구 갈현로29길51, 예성베르빌 B01호	02-352-0079
	은평구	카프동지	공동생활가정	은평구 연서로37가길 10-10 201호	02-356-5415
	은평구	파란마음	공동생활가정	은평구 갈현로 33길 32 201호	010-3210-5959
	은평구	해맑은뜰	공동생활가정	은평구 갈현로 47길 32-14, 101호	02-389-8324
	은평구	해사랑	공동생활가정	은평구 연서로41길 41, 301호	02-2695-7328
	종로구	다정이네	공동생활가정	종로구 세검정로7가길 8, 301	02-395-5397
	종로구	종로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종로구 자하문로89	02-6395-7045
	종로구	종로행복일곱터	직업재활시설	종로구 종로 43길 9	02-744-9707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부산 (18)	중구	중구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중구 서소문로6길 16	02-2038-7650
	중랑구	드림하우스	공동생활가정	중랑구 망우로74가길 9 드림하이빌401호	02-909-4620
	중랑구	밝은길	공동생활가정	중랑구 용마산로94길 70-5,해피하우스501호	070-8286-9554
	중랑구	어깨동무	공동생활가정	중랑구 용마산로93길39-24 광진아트빌301호	02-6407-9974
	중랑구	어울림	공동생활가정	중랑구 용마산로331-1 강남캐스빌B동401호	02-432-9974
	중랑구	중랑아이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중랑구 동일로 830 3층	02-2213-3386
	중랑구	중랑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중랑구 용마산로115길65 우주빌딩4층	02-2207-9964
	금정구	동래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금정구 중앙대로 2093, 10층	051-581-4165
	금정구	위캔클럽	직업재활시설	금정구 중앙대로 2101, 2층	051-507-8008
	기장군	행복나무	주간재활시설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83 대한빌딩 301호	051-727-7235
	남구	행복한집	공동생활가정	남구 용소로 64번길 49-1	051-635-5548
	동래구	사직클럽하우스	주간재활시설	동래구 명장동 20번길 13, 1층	051-503-8785
	동래구	참살이클럽하우스	주간재활시설	동래구 중앙대로 1331 3층	051-554-0562
	부산진구	나눔과행복그룹홈1	공동생활가정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17번길 12 101호	051-894-8010
	부산진구	나눔과행복그룹홈2	공동생활가정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17번길 12 201호	051-894-8010
	부산진구	나눔과행복그룹홈3	공동생활가정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17번길 12 202호	051-894-8010
	부산진구	한미레사회복지센터	주간재활시설	진구 거제대로 16-4	051-646-7425
	사상구	정신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학감대로39번길 104-36 3층	051-710-7750
사상구	부산소테리아하우스	주간재활시설	사상구 삼덕로 59	051-302-0655	
사하구	꿈뜰	공동생활가정	사하구 사리로 37	051-997-0622	
사하구	하모니하우스	주간재활시설	사하구 사리로 37, 2-3층	051-997-0722	
서구	아미정신건강센터	종합시설	서구 아미로12번길25	051-244-2005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수영구	컴넷하우스	주간재활시설	수영구 망미배산로76번나길 27	051-759-1268
	영도구	기쁜우리 사회복지시설	주간재활시설	영도구 함지로 33-10, 1층	051-403-4388
	해운대구	송국클럽하우스	주간재활시설	해운대구 우동1로 57 대영빌딩 2,3층	051-747-0578
대구 (16)	남구	비콘	종합시설	남구 현충로 98	053-628-5868
	남구	행복한집	공동생활가정	남구 장전1길 149	053-625-0788
	남구	행복한집2	공동생활가정	남구 자유4길6 203호, 302호	053-625-0788
	남구	행복한집3	공동생활가정	남구 자유4길6 503호	053-625-0788
	달서구	대구재활센터	종합시설	대구 달서고 성서공단북로 124	053-582-5826
	달서구	베네스트 마음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달서구 학산로 246, 2층	053-635-5865
	달서구	우리동지	공동생활가정	달서구 와룡로 9길 75 파라다이스 빌라 A동505/503	053-583-5827
	달성군	꿈이있는사람들	공동생활가정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523길 3-26, 2층	053-641-7006
	달성군	해피하우스	주간재활시설	달성군 회원읍 성화로 20, 2층	053-638-7009
	동구	달구별정신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동구 신성로 63, 3층	053-941-8816
	동구	중독자재활시설 세잎클로버	중독자재활시설	동구 해동로8길 41	053-983-8817
	북구	미래지움	공동생활가정	북구 대학로 61-1	053-352-8312
	북구	참누리 정신건강상담센터	주간재활시설	북구 대학로133, 3층	053-959-9925
	서구	대구정신장애인 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종합시설	서구옥산로6길9, 4층	053-341-8310
	수성구	수성베네스트	주간재활시설	수성구 수성로 285 2,3층	053-762-5866
	중구	해인 정신건강상담센터	주간재활시설	중구 명덕로 261 2층	053-425-0425
인천 (17)	강화군	희망일터	직업재활시설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359	032-937-6801
	계양구	네모의 꿈	공동생활가정	계양구 아나지로 307번길 8-1 대경빌라트 601동 302호	070-7604-0804
	계양구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주간재활시설	계양구 길마로60, 5층	032-545-7585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남동구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주간재활시설	남동구 담방서로 23번길 17	032-472-6419
	남동구	마음자리	공동생활가정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26-6 좋은하루 다동 201호202호	032-502-7081
	동구	라운제나	공동생활가정	화도로 50번길 12 푸른좋은집 B01호	070-4032-8384
	미추홀구	꿈의동지	공동생활가정	미추홀구 소성로318번길 18-26, 현빌리지 302호	070-8616-4587
	미추홀구	늘품	공동생활가정	미추홀구 매소홀로 402 대동아파트 3동 201호	070-4046-1445
	미추홀구	미추홀하우스	공동생활가정	미추홀구 경인로268번길 33-13.2층	032-872-0320
	미추홀구	새숨	공동생활가정	미추홀구 매소홀로 402 대동아파트 2동 313호	070-4046-1445
	부평구	공동생활가정희망샘	공동생활가정	부평구 대정로 30, 5층	032-361-7880
	부평구	월산사회복지시설	주간재활시설	부평구 평천로 319-5	032-507-4892
	서구	정우사회적협동조합 (꿈을담다)	공동생활가정	서구 서달로 179번길 12-9, 인향아파트 2동 101호	032-287-0776
	연수구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 2층	032-813-4760
	연수구	인천정신재활시설 리앤리	공동생활가정	연수구 한나루로 186번길 54	032-207-9477
	연수구	해피하우스	공동생활가정	연수구 한나루로 186번길 54,101호	070-4090-0811
	중구	라운숨	공동생활가정	중구 도원로 20번길 34. 대건하이츠 202호	032-216-5678
	광산구	송광정신재활센터	주간재활시설	광산구 우산로 17	062-941-8250
	남구	소화햇살동지	공동생활가정	남구 봉선1로 86.102동 817호	062-676-4033
	남구	요한빌리지	주간재활시설	남구 서오층서탑2길 1,2층	062-367-3369
광주 (11)	동구	광주새생명보건센터	생활시설	동구 증흥로 197	062-514-0072
	동구	인광희망의 샘	주간재활시설	동구 금남로 170-24	062-233-4006
	북구	경희하우스	공동생활가정	북구 연양로105번길 14 스카이빌 301,302,303,304호	010-3360-8754
	북구	광주정신재활센터	주간재활시설	북구 서하로 240-18, 2층	062-512-7039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북구	빛고을베델	공동생활가정	북구 우치로 238번길 28, 드림빌 503호	010-3325-7218
	서구	광주맑은샘 사회복지시설	주간재활시설	서구 독립로 200. 2층	062-714-1288
	서구	광주해피라이프	주간재활시설	서구 화운로172 6층	062-364-7473
	서구	빛고을보건복지센터	종합시설	서구 쌍촌로 57번길 25	062-430-5000
대전 (32)	대덕구	마중물	공동생활가정	대덕구 중리동로27번길	042-582-2337
	대덕구	햇살한줄	주간재활시설	대덕구 한남로 150번길 16	042-622-7018
	대덕구	행복울타리	공동생활가정	대덕구 대전로1387번길 28	070-4222-2066
	대덕구	힐링타운	공동생활가정	대덕구 송촌남로 55-12	042-624-1329
	동구	뷰티플마인드	공동생활가정	동구 비래서로42번길 134 B1/2F	042-335-0330
	동구	생명의터	주간재활시설	동구 동부로 56-7, 3층	042-274-1982
	동구	해찬솔	공동생활가정	동구 대학로 50번길 53 용운한화꿈에그린아파트 106동 102호	042-933-4360
	서구	고운누리	공동생활가정	서구 도마로25번길 54	042-522-8875
	서구	라이즈	공동생활가정	서구 갈마로212번길 21, 가동 102호	042-534-0411
	서구	사랑채	공동생활가정	서구 정림동로 29-11	042-525-8582
	서구	섭리가정	공동생활가정	서구 관저로 83, 205동 201호	042-5447933
	서구	섭리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서구 관저로 48, 704동 101호	042-543-8532
	서구	섭리행복가정	공동생활가정	서구 관저로 48, 702동309호	042-545-1916
	서구	소망의집	종합시설	서구 실미길 116	042-586-9954
	서구	어울림	공동생활가정	서구 도마로25번길 54	042-533-8875
	서구	올리브	공동생활가정	서구 관저북로80, 204동 402호	042-543-0307
	서구	한가정	공동생활가정	서구 남선로60번길 45	042-488-0803
	서구	한빛동지	공동생활가정	서구 변동로12-1	042-587-7888
	서구	한울타리	종합시설	서구 도산로 131-1 2/3층	042-536-1239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충청	유성구	다솜	공동생활가정	유성구 한밭대로 144 베르디아망 1302호	042-822-7941
	유성구	다움공동체	공동생활가정	유성구 원내로 9-8	042-545-6567
	유성구	다원공동체	공동생활가정	유성구 노은동로 87번길 12-2	042-822-7169
	유성구	도란도란	공동생활가정	유성구송강로 42번길 61, 5111동 1009호	010-8200-0972
	유성구	보금자리	공동생활가정	유성구 유성대로694번길 95, 3층	042-824-1601
	유성구	쉽터공동체	생활시설	유성구 세동로 474-35, 1층	042-825-8269
	유성구	안단테	공동생활가정	유성구 진점로78번길 54 신동양주택 201호	042-543-1019
	중구	동행	공동생활가정	중구유천로48번길31	042-585-0552
	중구	밝은세상	주간재활시설	중구 대종로 449, 3층	042-224-1500
	중구	버팀목	주간재활시설	중구 문창로123, 4층	042-223-6767
	중구	아름드리	생활시설	중구 대흥로87, 2층	042-222-1140
	중구	정신재활시설 꽃피는집	공동생활가정	중구 테미로 8	010-2497-3337
	중구	좋은이웃센터	주간재활시설	중구 대흥로 171	042-223-8582
울산 (3)	남구	새마음 정신문화센터	주간재활시설	남구 화합로 105, 로하스빌딩 6층	052-275-1116
	북구	마음봄	주간재활시설	북구 동대로 72, 3층	052-288-2088
	울주군	좋은친구들	주간재활시설	울주군 온산읍 신경10길 12, 2층	052-238-7643
세종 (3)	세종시	꽃동네치료공동체	공동생활가정	부강면 노호등곡1로 237	044-269-3948
	세종시	늘푸른집	생활시설	연서면 효교로 135-22	044-868-0210
	세종시	한걸음	직업재활시설	연서면 당산로 330	044-865-7587
경기 (71)	고양시	기쁨해	공동생활가정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33-9 그린파크 103-502	010-3922-1863
	고양시	삶센터	주간재활시설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6, 414호	031-904-5705
	고양시	새희망동지	생활시설	일산동구 상지석길 443	031-977-9780
	고양시	카프이용센터	주간재활시설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86길 1층	031-810-9251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고양시	일산그리다 마음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32번길 60, 408호	031-977-3324
	군포시	우리동네	공동생활가정	군포시 공단로 214번길 9-7, 명지빌라 5동 202호	070-7776-4160
	김포시	바람숲	지역사회전환시설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8번길 21	031-989-5556
	남양주시	목화밭	공동생활가정	남양주시 경춘로양골2길 11-6, B동 201호	031-595-5068
	남양주시	푸른샘	공동생활가정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2번길 19-3, 1층 1호	031-510-9203
	부천시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주간재활시설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91번길 30 701-702호	032-323-3206
	부천시	마주봄	공동생활가정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389번길63	032-672-6721
	부천시	부천공동희망학교	주간재활시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79-3 골든타워 702호	032-679-1901
	부천시	세친구	공동생활가정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82번길 73 201호	032-662-3379
	부천시	쉐어하우스	공동생활가정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26번길 59-3	032-349-3312
	부천시	이름	공동생활가정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76번길 97 2층	032-341-3314
	성남시	꿈터	공동생활가정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51번길16-9,1층	031-786-1004
	성남시	고운누리	주간재활시설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93 금성빌딩 5층	031-753-2490
	성남시	남자담쟁이	공동생활가정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8번길 59-5, 1층	031-745-8253
	성남시	담쟁이	공동생활가정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16번길 45-6, 럭키아트빌 202호	031-745-8253
	성남시	자울	주간재활시설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34번길 5-1 2층	070-7733-3445
	성남시	해솔	공동생활가정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6번길 28-1 401호	031-626-8063
	수원시	집으로	공동생활가정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15번길 3, 3층	070-4177-4868
	수원시	향기로운 집	공동생활가정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 미영아파트 110동 102호	010-2331-6838
	수원시	홀로서기	공동생활가정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21번길 22	031-226-0030
	수원시	도담도담	공동생활가정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90번길 20-6(동양하이츠빌라)C-102	031-273-0997
	수원시	우리마을	지역사회전환시설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나동 201호	031-273-0224
	수원시	경기다사모	직업재활시설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36 3층	031-256-2258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수원시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주간재활시설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4번길 26-17	031-242-0877
	수원시	장안좋은집	공동생활가정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08번길 38-14(조원동, 1층)	031-242-4401
	수원시	네임클로버	공동생활가정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21번길 34-20 거창아트빌라 나동 2층 301호	031-248-9981
	수원시	더숲	공동생활가정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14번길 52-6	070-7721-5951
	수원시	새봄	직업재활시설	팔달구 경수대로480번길 11-1 2층	031-251-0557
	수원시	서희	공동생활가정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33-1	031-269-0180
	시흥시	금곡	주간재활시설	시흥시 승지로60번길17 201호	-
	시흥시	아름다운세상	주간재활시설	시흥시 군자로 466번길 37	031-492-9955
	시흥시	연안	공동생활가정	시흥시 승지로 67 401호	031-362-5830
	시흥시	회복	주간재활시설	시흥시 복지로90 시네마타워 5층 505호	031-362-5256
	안산시	마음토닥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 강지원시설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4 월드타운 C동 517호	070-4406-3900
	안산시	안산마음사랑	공동생활가정	안산시 태마당로1길 4 양지하이츠빌라 c동 101호	031-502-3236
	안성시	달팽이의꿈	공동생활가정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702-16	031-676-1060
	안성시	동그라미	공동생활가정	안성시 시금광면 배티로 702-18	031-677-1060
	안성시	온	공동생활가정	안성시 공도읍 정봉길 32	031-654-3220
	안양시	안양좋은세상	공동생활가정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88번길8, 203호	031-8033-9002
	안양시	다운집	공동생활가정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06번길 8 더존빌라2차 402호	031-468-9861
	양주시	양주사랑터	공동생활가정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1148번길 형제빌라 나A동 402호	031-824-0906
	오산시	늘푸름	주간재활시설	오산시 은여울로59	031-373-1900
	오산시	새동네	공동생활가정	오산시 현충로72번길 14, 우성그린빌라 104동102호	031-376-9129
	오산시	희망집	공동생활가정	오산시 경기동로 8번길 28	031-372-5410
	용인시	두온	공동생활가정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23번길 2	031-283-7940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용인시	우리집1	공동생활가정	처인구 금학로 277번길 8-4	031-352-8473
	용인시	우리집2	공동생활가정	처인구 금학로 277번길 8-4	031-322-3911
	의왕시	정스тей	공동생활가정	의왕시 부곡중앙로 32-1 동양다세대 201호	070-8834-8821
	의정부시	따듯함	공동생활가정	의정부시 신촌로 38-9	031-872-0645
	의정부시	이레	주간재활시설	의정부시 호국로 1304, 제이에스베네스트 301호	031-856-1500
	파주시	운정마음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파주시 미래로 624 세섬프라자 702호	031-946-4476
	파주시	파주혜민의원	공동생활가정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22, 성원아파트 102동703호	031-948-1191
	파주시	파주 혜민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시설	파주시 독암길3 세림타워2층	031-941-2758
	파주시	혜민재활의원	공동생활가정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87, 301호	031-948-1191
	파주시	혜민재활의원2	공동생활가정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87, 303호	031-948-1191
	평택시	나무	주간재활시설	평택시 평택4로 39 대신빌딩 6층	031-647-0909
	평택시	좋은날	공동생활가정	평택시 통미로 18, 가원주택 가동301호	031-618-7293
	평택시	해피하우스	공동생활가정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0-11 하애빌라 2동 103호	031-657-6223
	포천시	라운	지역사회전환시설	포천시 삼육사로2029 엘리트빌리지 가동	031-542-9500
	포천시	아름다움	공동생활가정	포천시 선마로24-2 현대팰리스102동 301호	070-4007- 0867
	포천시	헤세드하우스	공동생활가정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215	031-541-7191
	화성시	길벗	공동생활가정	화성시 병점로 17-7, 201호	031-226-7951
	화성시	남양집	공동생활가정	화성시 금곡로 68-6, 남양빌라 101호	031-376-0797
	화성시	봄해랑엘엔씨	직업재활시설	화성시 동탄대로 23길 121, 209호	031-375-9996
	화성시	사랑나눔	공동생활가정	화성시 봉담읍 복만터길72번길 7-18 일주빌라1-101	070-8223-2816
	화성시	사랑밭	종합시설	화성시 10 용사로 661-69	031-376-5690
	화성시	해바라기	공동생활가정	화성시 병점3로 38-2 태림빌라 1동 101호	031-222-3261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강원 (3)	강릉시	참좋은집	생활시설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033-651-6293
	원주시	별자리	공동생활가정	원주시 소초면 둔둔로 217-19	033-747-1127
	춘천시	우리내꿈터	주간재활시설	춘천시 중앙로 104-1 2층	033-255-0661
충북 (10)	괴산군	닛시복지마을	공동생활가정	괴산군 문광면 흑석2길 20-152	043-833-7549
	증평군	라파의집	공동생활가정	증평군 증평읍 외룡길32-24	043-838-3112
	청주시	디딤터	종합시설	서원구현도면 우록4길 126	043-269-0145
	청주시	세광복지마을	공동생활가정	청주시서원구청남로2098번길46	043-288-1355
	청주시	소망나래	공동생활가정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59번길 18-1	043-296-0901
	청주시	우리들 정신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89	043-267-5835
	청주시	청주정신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플레이관 501호	043-285-0102
	청주시	행복이룸	공동생활가정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길 13-9 301호	043-235-8400
	충주시	충주어울림센터	주간재활시설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2	043-856-0509
	충주시	해피하우스다솜	생활시설	충주시 대소원면 창현로 654-17	043-856-2001
충남 (23)	계룡시	세움공동체	공동생활가정	계룡시 엄사면 변영8길 15-2	042-544-3398
	공주시	도래섬	공동생활가정	공주시 큰우물길 3-1	041-858-1661
	논산시	보람의집	생활시설	논산시 연산면 한전2길45-13	041-735-9984
	부여군	정다운집	공동생활가정	부여군 외산면 외산로 79번길31 1동101호	041-837-0675
	서산시	내마음카페	공동생활가정	서산시 성연면 성연4로10 예다음A. 104-102	041-662-3455
	서산시	달콤하우스	공동생활가정	서산시 서령로 157, 102동 202호	041-664-0842
	아산시	가온누리	생활시설	번영로 169번길 6-5	041-548-3375
	아산시	보금자리	생활시설	아산시 초사길 3-88	041-545-0054
	아산시	좋은이웃	종합시설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75	041-544-4580
	예산군	사론의집	공동생활가정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256	041-334-7952
	천안시	늘봄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우영3길 21, 4층	041-572-4252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천안시	다우리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고재15길 19-4	041-622-3651
	천안시	소명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다가12길 32, 2~3층	041-579-6097
	천안시	좋은세상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구성12길 28-1	041-523-3328
	천안시	좋은우리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2길 45, 403호	041-522-3327
	천안시	하모니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구성15길 8	041-551-2854
	천안시	행복의꿈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봉서11길 9	041-577-2859
	천안시	희망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4-85, 401호	041-579-7768
	천안시	나래	공동생활가정	천안서북구 두정중7길 1-14, 402호	041-552-1258
	천안시	나비의꿈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26, 마천루빌딩 5층	041-522-0048
	천안시	마음터	공동생활가정	천안시 서북구 쌍용9길 6, 3층	041-592-7522
	천안시	비타민	주간재활시설	천안시 서북구 월봉7길 54, 4층	041-578-4774
	홍성군	정신재활시설 라운의집	생활시설	홍성군 홍성읍 대내길 97	041-631-2610
전북 (24)	군산시	희망의그루터기	공동생활가정	군산시 둔배미길 6-6(미원동)	063-442-4597
	군산시	희망의샘	공동생활가정	군산시 월명로 405 2층	063-442-4597
	군산시	희망의쉼터	종합시설	군산시 둔배미길 6-2(미원동)	063-442-4599
	김제시	서로돕는마을	주간재활시설	김제시금구면 낙산1길 46	063-544-3380
	남원시	성일유엔아이	종합시설	남원시 사매면 춘향로 822-129	063-634-2345
	완주군	한사랑	종합시설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61	063-232-7567
	익산시	둥근마음	주간재활시설	익산시 익산대로 76길 9-33	063-841-6446
	익산시	밝은마음남성홈	공동생활가정	익산시 목천로 229	070-4099-5177
	익산시	보배 정신건강상담센터	주간재활시설	익산시 인북로2길53	063-857-4031
	익산시	참마음	직업재활시설	익산시 황등면 황등중앙로112	063-837-6446
	익산시	참좋은	생산품판매시설	익산시 황등면 황등중앙로112	063-837-6436
	익산시	훈훈한마음여성홈	공동생활가정	익산시 목천로 229	070-4099-5177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임실군	동행	종합시설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16-15	063-643-0764
	장수군	장수보건복지센터	생활시설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400	063-351-7130
	전주시	꿈이있는집	공동생활가정	전주시 덕진구 아중1길23-3푸쳐빌 402	070-7561-3714
	전주시	마음건강복지관	주간재활시설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2길 20-29	063-232-5558
	전주시	마음건강해피홈	공동생활가정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2길 20-17, 3층	063-904-4335
	전주시	마음건강회복홈	공동생활가정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2길 25	063-224-7032
	전주시	마음건강힐링홈	공동생활가정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2길 20-17	063-904-4334
	전주시	아름다운세상	종합시설	전주시 덕진구 아중 7길 9-5	063-244-2816
	전주시	아름다운집	공동생활가정	전주시 덕진구 인교9길11 아중지1 401	070-8201-2816
	전주시	행복한집	공동생활가정	전주시 덕진구 인교로35-25 뉴도현빌501	070-4141-0052
	정읍시	마음사랑의집	주간재활시설	정읍시 서부산업도로483-9	063-533-8233
	진안군	소망의집	생활시설	진안군 진안읍 원반월안길 39-2	063-432-2194
	전남 (3)	순천시	사랑샘	생활시설	순천시 강변로 977
영광군		영광두빛나래	종합시설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8	061-350-3540
영광군		새롬채	공동생활가정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351-15	061-351-3063
경북 (18)	경산시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주간재활시설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디자인예술대학 3호관 1층(3105호)	053-850-5956
	경산시	희망의집	공동생활가정	경산시 자인면 설총로 841-9	053-854-1888
	경산시	희망의집2	공동생활가정	경산시 원효로36길 46, 창신백조1차 103동 307호	053-854-1888
	경산시	희망의집3	공동생활가정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 18, 서광골든빌라 202호	053-854-1888
	경주시	경주 정신건강상담센터	주간재활시설	경주시 북성로 124, 2층	054-741-8805
	경주시	한마음 정신보건재활센터	주간재활시설	경주시 동성로 35	054-777-5363
	김천시	사랑의집	생활시설	김천시 어모면 신애길142번지	054-435-6067
	상주시	그린나래	생활시설	상주시 만산8길 61	054-534-7585
	안동시	대성재활센터	종합시설	안동시 임하면 고곡길 260	054-822-9250

시·도	시·군·구	시설명	시설구분	주소	전화번호
	안동시	징검다리	공동생활가정	안동시 길주길 101-12, 현대아파트 212동 306호	054-823-9250
	영천시	깁알이공동체	공동생활가정	영천시 고경면 금정골길42	010-4450-2637
	영천시	깁알이공동체2호	공동생활가정		
	영천시	깁알이공동체3호	공동생활가정		
	청도군	요셉의집	공동생활가정	청도군 이서면 서원길 3-140	054-371-0024
	칠곡군	소중한사람들	생활시설	칠곡군 왜관읍 금남5길 60	054-976-0041
	칠곡군	행복자리	공동생활가정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28-18	054-976-0041
	포항시	벤엘의 사닥다리	공동생활가정	포항시 남구 중앙로91번길 12, 509호	054-293-0924
	포항시	브솔시냇가	주간재활시설	포항시 남구 상공로 204	054-275-0303
	경남 (8)	고성군	주순애원	종합시설	고성군 고성읍 우산 2길 312
김해시		리본하우스	공동생활가정	김해시 평전로93번길 10-19	055-328-6848
김해시		리본하우스2호	공동생활가정		
김해시		리본하우스3호	공동생활가정		
양산시		벤엘클럽하우스	종합시설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349-94	055-387-6127
양산시		송인사회복지시설	주간재활시설	양산시 모래들1길, 91	055-379-0220
진주시		사랑마을	주간재활시설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98번길 30	055-762-3618
창원시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73번길12	055-713-3763
제주 (6)	제주시	공생하우스	공동생활가정	제주시 아봉로 449-10	064-723-2259
	제주시	그루터기	직업재활시설	제주시 원당북로 65	064-759-2254
	제주시	길정신건강센터	주간재활시설	제주시 한림읍 한림밴디길 88-17	064-796-7003
	제주시	볼리션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청소년정신건강 지원시설	제주시 동광로 131	064-726-8476
	제주시	우리야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청소년정신건강 지원시설	제주시 신선동길 3-1	064-751-7400
	제주시	제주정신재활센터	주간재활시설	제주시 동광로1길 11 4층	064-742-9500

사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59개소)

* 종합시설의 경우 이용·입소자 모두를 포함

시·도	시·군·구	시설명	개소 연도	주소	전화번호	정원*
서울 (3)	은평구	시립은혜로운집	2007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02-3156-6400	200
	용인시	서울시립 영보정신요양원	2005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031-323-5703	200
	양주시	서울정신요양원	1984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22	031-826-3300	330
부산 (3)	서구	그리스도요양원	1983	서구 옥천로130번길 40	051-257-0103	300
	사하구	자매정신요양원	1982	사하구 사리로 37	051-207-3845	270
	양산시	송원정신요양원	2006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1870-63	055-375-1799	150
대구 (3)	동구	정심수양원	1988	동구 팔공산로 254길 123	053-982-7592	258
	북구	성부정신수양원	1971	북구 복현로 34길 18-17	053-382-2915	259
	달성군	아름마을	2006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053-267-4300	150
인천 (2)	강화군	강화정신요양원	1984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20번길 19-3	032-933-4574	161
	서구	소망의집	1986	서구 심곡로 132번길 22	032-563-2322	128
광주 (4)	나주시	진산요양원	1996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061-336-1911	169
	나주시	빛고을정신요양원	1996	나주시 다도로 287-22	061-337-3425	243
	남구	귀일정신요양원	1985	남구 용대로 74번길 21	062-672-9931	120
	남구	소화누리	1985	남구 용대로 74번길 27	062-675-4024	123
대전 (4)	동구	대전정신요양원	1985	동구 옥천로 315	042-284-6604	119
	서구	우리누리	1989	서구 장안로 835	042-585-2778	225
	유성구	심경장원	1978	유성구 진잠옛로 222-170	042-822-1601	300
	유성구	휴먼스토리	1976	유성구 원계산로 212	042-822-9215	90

시·도	시·군·구	시설명	개소 연도	주소	전화번호	정원*
울산 (1)	울주군	성애원	1986	울주군 두동면 남명리1길 34-48	052-262-7227	150
세종 (1)	세종시	방주의집	1987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솔티로 293-3	044-862-7000	136
경기 (6)	용인시	세광정신요양원	1981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 71번길 54	031-333-6881	283
	화성시	은혜원	1984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194-24	031-351-2772	274
	오산시	승우정신요양원	1988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69-9	031-373-3895	233
	고양시	박애원	1975	고양시 일산동구 상지석길 441	031-977-5280	308
	동두천시	동두천요양원	1993	동두천시 평화로 3208번길 43-15	031-867-9820	155
	가평군	가평꽃동네 정신요양원	1994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60	031-589-0210	595
충북 (4)	청주시	상록원	1986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58번길 301	043-253-4760	160
	옥천군	영생원	1979	옥천군 옥천읍 삼청3길 34	043-731-0601	217
	옥천군	부활원	1979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 109	043-732-5353	180
	음성군	음성꽃동네 정신요양원	1986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22	043-879-0210	400
충남 (10)	천안시 동남구	기독교성심원	1986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심원길 124	041-553-6031	142
	천안시 동남구	마음편한집	1986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행암길 44-67	041-523-2531	148
	공주시	공주벨엘 정신요양원	1984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20	041-855-6342	184
	아산시	파랑새동지	1973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842번길111	041-546-8312	133
	논산시	논산정신요양원	1987	논산시 상월면 월오1길 54	041-732-4227	191
	논산시	성지드림빌	1987	논산시 연산면 한전2길 45-14	041-735-0307	169
	논산시	한울빌리지	1973	논산시 양촌면 계백한전길 161	041-735-0921	260
	부여군	오석산정신요양원	1990	부여군 부여읍 청마로 61	041-835-5900	130
	홍성군	홍성정신요양원	1983	홍성군 홍성읍 대내길 97	041-632-3108	150
	예산군	예산정신요양원	1997	예산군 예산읍 간양길 258	041-334-7951	49

시·도	시·군·구	시설명	개소 연도	주소	전화번호	정원*
전북 (4)	전주시	참사랑낙원	1985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152	063-288-0484	176
	익산시	삼정원	1985	익산시 금마면 쌍능길 145	063-836-7021	230
	남원시	스마일빌	1979	남원시 대산면 대곡신계길 397	063-626-8666	145
	완주군	정심원	1984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343	063-243-1212	250
전남 (4)	목포시	성상정신요양원	1986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061-280-6530	356
	순천시	인선요양원	1992	순천시 매봉길 30	061-721-0264	128
	해남군	신혜힐링타운	1986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91	061-532-4048	240
	장성군	시일건강타운	1985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445	061-392-3213	177
경북 (5)	김천시	영남정신요양원	1971	김천시 어모면 작점로 640	054-435-5877	220
	안동시	대성그린빌	1981	안동시임하면고곡길261	054-822-8870	349
	영주시	새희망힐링스	1986	영주시 반지미로 275-15	054-634-3220	295
	영천시	마야정신요양원	1988	영천시 북안면 내서로 55-24	054-333-5006	257
	상주시	천봉산요양원	1986	상주시 만산8길70	054-535-4654	210
경남 (4)	창원시	마산정신요양원	1975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622-60	055-271-4664	300
	김해시	생림정신요양원	1985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775	055-323-9511	251
	고성군	고성정신요양원	1987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3268-92	055-672-6659	202
	함양군	함양정신요양원	1985	함양군 함양읍 월명길 12	055-962-2071	210
제주 (1)	제주시	무지개마을	1989	제주시 아봉로 449-1	064-723-2256	250

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현황(13개소)

시·도	기관명	개소 년도	주 소	전화번호	병상 수
서울 (2)	서울의료원	202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02-2276-8393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0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02-870-2114	3
인천 (1)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022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032-280-6116	2
대전 (1)	충남대학교병원	2023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042-280-6179	2
울산 (1)	울산대병원	2023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병원로 25	052-250-7565	2
경기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202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031-5189-9017	2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2023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2-621-6596	2
강원 (1)	강원대학교병원	20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033-258-2154	2
전북 (1)	원광대학교병원	2022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063-859-1042	2
경북 (2)	안동병원	2023	경상북도 안동시 양실로 11	054-840-0433	2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2024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054-770-8128	2
경남 (1)	창원한마음병원	202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57번길 8	055-225-0001	2
제주 (1)	제주대학교병원	2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2213	2

PART

서 식 07

- 1 지역사회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운영
- 2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 3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동추진사업
-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장애등록현황(0,00번 모두 입력, 소계 동일해야 함)										수급자 현황							이용기간 현황									
정신장애 ①					그 외 장애②					소계	일반 수급 가구	조건부 수급 가구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기타	해당 사항 없음	미파악	소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2년 미만	3-4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소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정신 장애 없음	미 파악	소계	자적장애	그 외 장애 (지체, 시각, 청각 등)	해당 사항 없음	미 파악																	

4. ____년 12월 31일 기준 아동·청소년 등록자 현황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록자 수	성별현황				의료보장분포				학년별 분포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정신건강문제 유형별 현황												
	소계	남성	여성	미 파악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미 파악	소계	미취학	유해 및 미등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소계	발달장애	ADHD 등 행동문제	정신병적문제	기타			
													초1 재학	초2 재학	초3 재학	초4 재학	초5 재학	초6 재학	중1 재학	중2 재학	중3 재학	고1 재학	고2 재학						고3 재학	물품남용	인터벡 등	기타 행위

장애등록현황(0,00번 모두 입력, 소계 동일해야 함)										수급자현황							이용기간 현황									
정신장애①					그 외 장애②					소계	일반 수급 가구	조건부 수급 가구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기타	해당 사항 없음	미파악	소계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2년 미만	3-4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소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정신 장애 없음	미 파악	소계	자적장애	그 외 장애 (지체, 시각, 청각 등)	해당 사항 없음	미 파악																	

[별지 제 II-1-5호]

정신건강복지센터 표준지도점검표

□ 수검기관

센터명	수탁기관/법인	센터장

□ 체크리스트

보건소 직영: 아래 [공통] 표기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이상없음/지적내역)	조치사항 (시정/보조금 회수/ 고발/기타)
운영관리	○ 위·수탁 협약서 준수 여부		
	○ 운영규정(사무편람) 제정·게시 여부 -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 등		
	○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개최/참석 여부 [공통]		
	○ 사업계획 이행의 적정성 - 연초 사업계획 수립 및 연중 사업계획 변경 시 운영위 및 지자체 보고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 종사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여부 [위탁]		
	○ 안전관리체계 구축 [공통] - 분기별 기관 및 종사자 안전점검 여부 (사업안내 별지 체크리스트 작성여부 확인)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종사자관리	○ 채용 절차 준수 [공통] - 채용 공고 여부 및 공개채용 여부 - 채용 기준, 절차, 방법 등에 있어 채용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 - 공고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종사자를 채용했는지 여부 - 채용예정자의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경력 확인 여부		

	○ 직급·호봉 책정의 적절성 [공통] - 근무경력 입증 서류 확인		
	○ 인사기록 비치 [공통] - 인사카드, 범죄경력 조회서, 인사발령대장		
	○ 복무관리 [공통] - 근무상황부(출근부, 연가, 병가 등) ※ 비상근 센터장 출근부 및 근무일지 확인 - 출장복명서 및 명령부		
	○ 직원 교육실시 및 이수 여부 [공통] - 법정 의무교육, 종사자 안전 및 권익보호 교육 실시여부 - 전문요원·간호사 등 직역별 의무 보수교육 이수여부		
	○ 노무관리 [위탁-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센터]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신고 여부 - 고충처리위원 1인 선정 여부		
급 여 관 리	○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실제 근무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조직도, 근로계약서 등 참고)		
	○ 급여지급기준 적정여부 확인 - 직급·호봉에 따른 기본급 책정 여부 - 신입직원, 퇴직직원의 해당 월 급여 일할 계산 지급 여부		
	○ 제수당 적정 지급·미지급 여부 - 제수당 지급 근거자료 확인 (시간외근무: 근무대장 및 지급적정성 확인) -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했는지 여부		
	○ 4대보험 적정 납부 여부		
	○ 원천징수의무 이행 여부(강사료 소득세 등)		
	○ 퇴직적립금 - 적립 여부 및 계좌 별도관리 여부		
	○ 절차 이행 여부 - 운영위원회 의결 (예산의 전용·관간, 관내 향간 전용 등) - 지자체장(보건소장) 보고 및 승인 (관간 전용, 결산 등)		
예 산 및 회 계			

관 리	○ 보조금 집행 관리		
	- 보조금 입출금 내역 통장 확인,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정산서상 잔액과 통장의 잔액 일치 여부		
	-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회계 관리		
	- 회계장부 비치, 작성, 관리 (일일/월별결산, 기재누락 등 확인)		
	- 회계담당자 지정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 후원금품 관리		
- 사업예산과 별도 관리			
- 후원금 수입·사용내용 공개			
계 약 및 물 품 관 리	○ 계약의 적절성 (계약방법 및 계약서 작성 내용 등)		
	○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동일 여부 (영수증, 송금내역 등 확인)		
	○ 대금청구 및 지급시 제반 관계서류 징구 및 지급절차의 적정여부		
	○ 2인 이상 비교견적에 의한 물품구입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인장 등 확인)		
	○ 물품검수조서 작성 여부		
	○ 물품관리대장(비품대장, 소모품대장) 비치 및 작성 여부		
	○ 재물조사 실시(연 1회 이상)		
	○ 불용품 처리 및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처리 여부		
	○ 장부상 물품 재고와 실제 재고 확인		
문 서 및 장 부 관 리	○ 문서 보관상태 (문서편철, 보존기간 지정 보관 여부)		
	○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비치 여부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수신하지 않는 경우)		
	○ 차량 관리 (임대차량 포함) - 명의, 차량보험,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 작성 여부		

지난 반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기타 특이사항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

○

20 . . .

수검자 :	소속	센터	직급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 II-1-6호]

20 년도 () 시도 지도점검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통)

센터 명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비고	
	계	입·퇴 관리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장부 관리	기타	계	개선 명령	보조금 회수	고발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별지 제 II-1-7호]

기관 및 종사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유	무
시설 장비	무다이얼링 시스템 또는 관할 지구대, 지역 경찰서와 연결된 응급벨 작동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화 녹취 시스템 작동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화 자동안내 멘트(욕설·폭언 예방) 작동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센터 공용 휴대폰 작동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상벨 작동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담실 내 상황 파악 가능한 환경(투명한 출입문·창문 등)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CTV 작동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피 공간(비상 대피실, 비상 전화 등) 확보 등 통로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적 자원 연계망	센터장(또는 임상자문의) 주재 사례회의를 통한 수퍼비전 제공 유무(최소 월 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 유무(최소 반기별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안전문업체 혹은 청원 경찰 연락망 작동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부 종사자 비상연락망 작동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방 및 대응 조치 체계	종사자 인권보호 안내 문구 포스터, 스티커, 배너 설치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방문용 가방 키트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호신장비(호루라기,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 작동 이상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 및 권익보호 매뉴얼 ²⁾ 이 비치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 관리 담당자 현행화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이용자의 고충 및 처리절차 현행화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규 입사자 안전관리 교육 시행 유무 (신규 입사자 부재한 경우 '유'에 표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건 발생 보고 절차 규정(또는 매뉴얼) 현행화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전체 종사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 및 유지 유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 II-2-1호]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예시)

(이하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실시한다.

- 다 음 -

1. 근로시간 : 본 합의에 따라 3주 단위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주의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 한도내의 연장근로 가능함.
2. 대상 근로자 : 센터내 위기개입팀 업무 담당자
단, 18세 미만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은 제외
3. 단위기간 : 매 3주[시작일 : 0000년 1월 2일(월요일)]
4.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1) 근로일 : 3주전 작성하는 근무스케줄(교대제) 의해 근로일을 정하며, 매주 평균 1일의 주휴일(매주 첫 번째 쉬는날)을 반영한다.
 - (2) 근로시간 : 주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야간 18:00 ~ 익일 09:00(휴게시간 24:00~03:00 / 01:00~04:00 / 03:00~06:00)
* 휴게시간은 업무상황에 따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으며, 1일 총 휴게시간은 셀 수 있도록 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실질적으로 셀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 (3) 휴무 : 3주전 작성하는 근무스케줄에 따름
- (4) 근무일 및 휴무일의 변경 : 최소 1주일 전에 변경하도록 하며, 위 단위기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5.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을 근무한 자에 대한 예외 : 제2항의 대상근로자가 중도 입,퇴사로 실제 근로한 기간이 제3항에서 정한 단위기간을 모두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한다.
6.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법정기준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7. 적용기간 : 0000. 1. 1.부터 0000. 12. 31.까지로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갱신 됨

년 월 일

사 용 자 : (인)

근로자대표 : (인)

[별지 제 II-2-2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참여현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작성함

※ 참여대상: 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이름	정신건강서비스 참여 여부 ¹⁾		SDQ-Kr ²⁾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 서비스	정신의료기관 치료 서비스 연계	도구 종류 ³⁾	1차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⁴⁾			
				점수		시행일	점수		시행일	점수		시행일	
				난점	강점		난점	강점		난점	강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1) 정신건강서비스 참여여부는 참여한 경우 “1”로 기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비워두면 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서비스 : 매뉴얼에 의한 집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것을 의미함
 - 정신의료기관 치료서비스 :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연계한 경우를 의미함
- 2) SDQ-Kr (강점 난점 설문지)는 1차(초기)검사 이후 서비스 제공 기간 6개월 마다 재평가하여 기입함. 서비스 제공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록할 시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2차 검사란에 기록함
- 3) 부모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1”, 교사 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2”로 기재하고,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으로 기재함. 또한 1차(초기)검사에서 사용한 도구유형을 계속 사용하도록 함
- 4) 3차까지 진행된 경우 작성

[별지 제 11-2-2호] 작성원칙

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참여 현황 작성원칙

- [별지 제 11-2-2호]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예산성과계획서에서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효과’, ‘서비스 참여율’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이에 당해 연도 1월~12월까지 발생한 내역을 작성하여, 하반기에 한번 보고함. 센터 자체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으로 인위적인 점수 조작은 지양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작성 방법은 심층사정평가 진행시 SDQ-Kr를 함께 이용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의 상태를 평가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 6개월마다 SDQ-Kr로 재평가하여 그 점수를 기재함 서비스 제공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퇴락할 경우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여 2차 혹은 3차 검사란에 기재하도록 함. 정신건강서비스 참여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매뉴얼에 의한 집단프로그램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경우를 “1”로 기재함
- SDQ는 부모보고형, 교사보고형, 자기보고형 세가지 종류로 구별됨. 종류별로 기준 및 사용된 문구가 다르기 때문에, 아동은 자기보고형을 부모는 부모보고형을 교사는 교사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해야 함. 다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간 지각의 차이를 비교, 아동의 행동유형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차, 2차, (3차)검사의 응답주체는 동일해야함. 즉, 아동이 1차검사에서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기록하였으면 2차 검사에도 그 아동이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완성해야함. 또는 1차검사에서 아동의 아버지가 부모형 설문지를 기록하였다면 2차검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님)가 부모형 설문지를 가지고 기록해야 함. 1차검사와 2차검사의 응답주체가 달라지면 반복검사를 통해 보고자한 효과의 의미가 없어짐

[별지 제II-2-10호]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일반/노숙) 업무실적

구분	피상담자 성인영	미등록 피상담자구분													미등록 상담 접수											
		성별(연인영)			연령(연인영)										정보취득경로(성인영)					상담이력(연인영)						
		소계	남자	여자	소계	18세 이하	19- 20세	29- 30세	39- 40세	49- 50세	59- 64세	65세 이상	소계	행정 기관	의료 기관	정신 보건 기관	지역 사회 기관	홍보물 (대중 매체)	기타	소계	최초 상담	중립 수계 재상담	다수계 재상담	기타		
상반기																										
하반기																										
누계																										

구분	미등록 상담 접수						미등록 조치 정보						미등록 의료 연계현황														
	상담수행방법(연인영)			중독상담 및 단계개입			주요조치(연인영)						의뢰접수			연계처리											
	소계	전화	온라인	방문	미등록 상담	내소	초기 상담 연수	상담 연 영	연 영	소계	지속 상담	치료 연계	기관연계	금 회 환 원	정 신 보 건 소	기 타 조 치	소계	행복 e 음	행복 e 음	행복 e 음	보 건 소	의료 기 관	정신 보 건 기 관	지역 사 회 기 관	기 타		
상반기																											
하반기																											
누계																											

구분	등록권한						의료·연계 현황																				
	등록관리				사정평가		의뢰접수						연계처리														
	소계	남자	여자	가족	외 가족	외 가족	소계	행복 e 음	행복 e 음	행복 e 음	보 건 소	의 료 기 관	정 신 보 건 기 관	지 역 사 회 기 관	기 타	소계	행복 e 음	행복 e 음	행복 e 음	보 건 소	의료 기 관	정신 보 건 기 관	지역 사 회 기 관	기 타			
상반기																											
하반기																											
누계																											

구분	등록회원사제관리												등록회원재활서비스														
	응급개입		사례관리수행										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직업재활		기타 재활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연인영	산인영					
상반기																											
하반기																											
누계																											

구분	정신건강증진																		SEOUL								
	소계		관리 요령		교육						지역수면						홍보물		홍보				관학	SMS	찾 수	영	
	찾 수	영	찾 수	영	교 사	학 생	다 사 자 (광 동 가)	기 타	홍 보 물	관 학	SMS	찾 수	영														
상반기																											
하반기																											
누계																											

구분	행사												행동연														
	소계		홍보물		대중매체				SMS				소계		홍보물		대중매체				SMS						
	찾 수	영	찾 수	영	관 학																						
상반기																											
하반기																											
누계																											

구분	정신건강증진						조사/연구 (영)	
	소계	행 학	당 지	자 문	MOU 협 정	기 타	소 계	영
상반기								
하반기								
누계								

[별지 제II-2-11호]

20 년도 시도 아동청소년 의료비지원 실적총계

(단위:원)

번호	시군구 명	성별			의료보장상태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소계	남자	여자	소계	의료급 여1종	의료급 여2종	건강 보험	기타		
총계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8		0			0						
9		0			0						
10		0			0						

[별표 제III-1-1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가. 입원실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나. 병상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이상		
다.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1개 이상	1개 이상	
라. 진료실	1개 이상	1개 이상	1개 이상
마.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1개 이상	1개 이상	
바. 상담실	1개 이상	1개 이상	
사. 재활훈련실	1개 이상	1개 이상	
아. 임상검사실	1개 이상	1개 이상	
자. 방사선실	1개 이상	1개 이상	
차. 조제실	1개 이상	1개 이상	
카. 소독시설	1개 이상	1개 이상	
타. 급식시설	1개 이상	1개 이상	
파. 세탁물처리시설	1개 이상	1개 이상	
하. 구급차	1개 이상	1개 이상	
거.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비고

- 환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휴게실·욕실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입원실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급식 또는 세탁물 처리는 의료기관이 함께 하거나 외부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와 경우에는 다목, 마목 또는 아목부터 하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진료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가. 입원실

- 1)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2)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3) 입원환자(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되, 그 끝수에는 보호실 1개를 추가하고, 보호실에는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이 개방병동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4) 입원실의 시설 및 비품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5) 병동 안에는 외부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경보연락장치를 해야 하고, 환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 6) 입원환자 50명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 병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 7)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 8) 입원실에는 손씻기 및 환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9) 입원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 10) 병상이 300개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격리병실은 3)에 따른 보호실로 사용할 수 있다.
- 11)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원실의 시설규격(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구급용 시설·응급처치장비·의약품 및 신체보호에 사용되는 장비와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진료실

- 1)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실을 두어야 하고, 전문 진료실에는 비상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2) 입원환자가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 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해야 한다.

라.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재활훈련실

생활훈련 또는 작업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 상담실

환자 상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사항

- 1)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
- 2) 비상경보장치 중 하나 이상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 3) 입원환자를 제2호가목3)에 따른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4) 보호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비 고: 위 표 제2호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별표 제Ⅲ-1-2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원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1명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간호사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 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보안 전담인력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둔다.		

※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진료과목 1개당 의사(「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1명을 둔다.

비고

1.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2. 낮병동 환자(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고 귀가하는 환자를 말한다)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별표 제III-1-3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 5)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2)가의 경우에는 4차 위반 시 사업정지 16일을 명령하고, 5차 위반 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19조제4항 제1호			
1)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제외한 종사자의 수·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4일	사업정지 8일
나) 미달 정도가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60 이하인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다) 미달 정도가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명령 1개월	사업정지 16일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나. 법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 제7항·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제2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다.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제3호	시정명령 7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마.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 제5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별지 제III-2-1호]

입소 통지서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호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입소자와의 관계
입소 사유			
입소 일시		입소 기간	
입소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 조치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신요양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III-2-2호]

촉탁의 업무 협약서

(갑) 시 설	상 호		대표자	
	주 소			
(을) 촉탁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 협약은 000(이하 “갑”이라 함)과 촉탁의 000(이하 “을”이라 함)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아 래 -

협약기간	협약 기간은 20 년 0월 0일부터 20 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협약사항	<p>“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촉탁의 업무 및 “갑”의 자문요청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며 “갑”은 “을”의 촉탁의 활동에 성실히 협조한다. “을”은 진료에 성의를 다하여 입소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록을 성실히 한다. “을”은 매주 8시간 이상의 촉탁의 활동을 수행한다. * 계약의 및 촉탁의 계약시, 근무 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근무일 조정 및 합의 가능함 “갑”과 “을”은 상기 활동시간을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24시간 이전에 상호 통지가 되어야 한다. “을”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권고 기준을 준용하며, 인건비 지급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
협약사항의 수정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 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
비밀유지	“갑”과 “을”은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 내용의 증명	상기내용의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000정신요양시설

촉탁의사

대 표:

(인)

성 명:

(인)

[별지 제III-2-4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명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입·퇴소관리	환자관리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종사자관리	회계물관리	장부관리	개방공개	기타	계	허가취소	사업정지	개선(시정)명령	보조금회수	고발	기타

[별지 제III-2-5호]

시설안전사고보고서

구 분		세 부 내 용
현 황	시 설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시 설 규 모	지하 0층, 지상 0층, m ² (0층 00명, 0층 00명 입소)
	설 립 일 자	
	인 원 (입소자, 종사자)	
사고개요	발 생 일 시	
	사 고 내 용	
	피 해 상 황	
현재까지의 조치사항		
조치계획		

입원자(입원경험자) 현황 (12.31. 기준 등록자 중 한해 동안 1회 이상 입원한 적이 있는 대상자의 실인원)												
연월	성인 입원자 현황						아동청소년 입원자 현황					전연령
	정신병적장애(초연병 제외)											

---년 연간 퇴원자(전연령)												
연월	퇴원형태		퇴소자 사후관리 서비스		퇴소 후 대처(전연령)		질환발 분포(전연령)					
			퇴소자 상담실적 건수	퇴소자 상담실적 건수			정신병적장애(성인)		정신병적장애(성인)		그 외(성인)	
	자살위험자 상담 건수	서비스종류	회소 후 1개월 이내	회소 후 1개월 이후	정신병적장애(성인)	정신병적장애(성인)	정신병적장애(성인)	정신병적장애(성인)	정신병적장애(성인)	정신병적장애(성인)	정신병적장애(성인)	정신병적장애(성인)

[별지 제III-3-2호]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시도명	시군구명	시설명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입·퇴소관리	환자관리	시설물관리	안전관리	종사자관리	회계물관리	장부관리	개방공개	기타	계	허가취소	사업정지	개선(시정)명령	보조금회수	고발	기타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1]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 보고

작성일시	0000.07.01.(목) (예시)	
장소 및 사유		사망한 사람 000의 잔여재산 목록 작성
청구인(시설장) 성명 및 주소		
입회자 성명 및 직위 또는 소속		
잔여재산 목록		
동산의 종류	금액	
부동산	금액	
채권	금액	
채무	금액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20		
신청자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 : 증빙서류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2]

잔여재산 활용 신청서

신청기관			
신청인		생년월일	
시설 소재지			
직위			
활용 예정 내역	<input type="checkbox"/> (예시) 장례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청구금액	(예시)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입금계좌 및 예금주			
20 신청자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 : 1. 통장사본 2. 증빙서류			

[별지 제Ⅳ-4-2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1 정신보건시설 현황

1. 기본현황

시 설 명		시 설 대 표 자	
시 설 규 모	부 지 ()㎡, 연 면 적 ()㎡		
시 설 주 소			
건축예정지(소재지) 주소			
입소자 현황	정원 ()명, 현원 ()명	이용자 현황	정원 ()명, 현원 ()명

2. 건축물 현황

※ 법인명의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참조하여 작성

주 1)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벽돌조), 철골조, 목조 등으로 기재

주 2) 입소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목욕실, 세탁실, 화장실, 강당 등으로 기재

주 3) 특히 최근 5년간 기능보강내역은 상세히 총별로 작성하되, 총별 사업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층을 명시하여 합산액 기재

주 4)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산액 기재

주 5) 개축 또는 개보수 대상시설 표시

(단위 : ㎡, 천원)

동 별 현 황					
동	층	구 조1)	면적	용 도2)	건축연도

(단위 : ㎡, 천원)

현재까지 기능보강내역3)						비고5)
보강 연도	면적	내 역	사업비4)			
			국비	지방비	자부담	

3. 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 국고보조 기능보강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적

2. 사업 필요성

※ 신축은 지역별 사업수요를 중심으로, 증·개축 등은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

3. 사업 내용

기능보강 내역 (신축, 증·개축, 개보수, 설비보강 등 내역)	사업량 (㎡, 식 등)	사 업 비(단위 : 천원)				산출내역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 건물배치도 첨부 : 신·증축예정부지, 개축 또는 개보수대상시설 등을 도면에 표시

▷ 층별 평면도 첨부 : 신·증·개축 또는 개보수대상시설의 실별 용도와 면적(㎡)을 도면에 표시

4. 사업추진 일정(사업단계별 월별 추진일정)

5-1. 지방비 확보 계획(확보방법 및 일정 포함)

5-2. 보조금 이외의 소요경비 부담 내역

(단위 : 천원)

경비 부담자 성명(명칭)	자부담 금액	부담방법	비 고

※ 경비부담자 명의의 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6. 기존시설 처리계획(개축사업에 한함)

- 철 거
- 활 용(동별, 층별, 실별 용도와 면적(㎡)을 도면으로 표시)

7. 사업 효과

[별지 제Ⅳ-4-3호]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1. 사업개요

시 설 명					시설 대표자			
시설 주소								
건축예정지(소재지) 주소								
사업비(천원)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시설 자부담				
기능보강내역 (신축, 증·개축, 개보수, 설비보강 등 내역)								

2. 사업에 관한 의견

- 가. 사업의 필요성
- 나. 사업장소의 적정성
- 다. 사업량의 적정성
- 라. 사업비의 적정성
- 마. 사업전망 및 사업수행능력
- 바. 건축예정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 사.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관련 의견

3. 시설운영관련 적정성 검토

구분	있음	없음	적발(처분) 일시	비고
인권침해 적발				
횡령, 비리 등 적발				
보조금 부적정 사용 및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기타				

* "인권침해적발"에는 인권위원회 적발사항 포함

20

시·도지사 (인)

[별지 제IV-4-4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 시설명 :
- 사업명 :
- 건물구조 :
- 건물용도 :
- 건축(신·증·개축, 개·보수) 면적 :
- 설계검토의견 :
- 사업비내역 적정여부 :
- 건축허가 가능여부 :
- 기타 검토의견 :

20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IV-4-5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도지사 (인)

○ 사업계획 변경내역

- 사업기간: 당초 00년 00월 ~ 00년 00월 → 변경 00년 00월 ~ 00년 00월
- 사업내역

(단위 : m², 식, 천원)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 량	예 산 (천원)				사업 량	예 산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내역별로 기 재)											

○ 사업계획 변경사유

○ 시·도지사 검토의견

※ 내역별 산출근거 첨부

[별지 제Ⅳ-4-6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정신보건시설확충)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 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합니다.

20 . . .

시·도지사 (인)

○ 20 년도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단위 : m², 식, 천원)

시설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자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 추가 자부담 등으로 당초 확정내시된 기능보강사업량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 집행액에 포함하여 계상한 후, 세부적인 추가사업내역(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효과, 재원조달방법 등) 첨부

○ 잔액 발생사유

○ 국고보조사업의 효과, 문제점 및 대책

[별지 제Ⅳ-5-2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시도명	시군구	계 (A+B+C+D+E+F)	심사건수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62조 입원기간연장 심사건수 (B)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청구심사건수 (C)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처우개선심사건수 (D)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외래치료명령 심사건수 (E)	기타 심사건수 (F)

계 (G=H+K)	입원 연장자 및 퇴원자 수						처우개선명령건수 (N)	외래치료명령건수 (O)
	입원기간 연장자 수			퇴원자 수				
	계 (H=I+J)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62조 입원기간연장 심사결과 계속입원자수 (I)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청구결과 계속입원자수 (J)	계 (K=L+M)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62조 입원기간연장 심사결과 퇴원자수 (L)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청구결과 퇴원자수 (M)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별표 제V-1-1호]

격리 및 강박 지침

2025. 9.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목 차

1. 정의	395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395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395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396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397
6. 격리·강박의 기록	398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398
[별지 제V-1-1호] 격리·강박 기록지	400
[별지 제V-1-2호] CCTV 설치안내판	401

1. 정의

-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

나. 구체적 상황

-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는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직원들은 해당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사·간호사) 부재 시에는 격리나 강박을 수행할 수 없다.
 -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 기록지[별지 제V-1-1호]의 “참여자명 란”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한 직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3시간 이하이다.
-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1시간) 처방될 수 있다.
-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6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세면, 목욕, 침구교환 등 환자와 격리실 위생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격리·강박 해제로 보지 않는다.
-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

구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3시간	6시간	1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6시간	12시간	2시간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대처해야 한다.
-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격리 강박 환자의 관찰(모니터링)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보호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 다음 사항을 권장함

- (설치 장소) 보호실 내부를 촬영, 환자 및 의료진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보호실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설치
- (인권 보호 노력) 환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
 - CCTV로 인해 환자의 증상 악화나 자해위험이 없도록 매립형을 권장
- (기기 사양 및 화질)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 보유
- (안내판 설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동시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V-1-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함

6. 격리·강박의 기록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 기록지(별지 제V-1-1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 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강박)실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보호실을 말한다.
 -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 * 강박실을 격리실과 분리하여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박실 벽면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척해야 한다.

[별지 제 V-1-1호]

격리·강박 기록지

환자	등록번호	성명	나이 (남, 여)	
	진단명			
시행	시행일시	지시자 (서명)	수행자 (서명)	참여자명
해제	해제일시	지시자 (서명)	수행자 (서명)	참여자명
제한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격리 <input type="checkbox"/> 강박 <input type="checkbox"/> 억제대 <input type="checkbox"/> 2포인트 <input type="checkbox"/> 3포인트 <input type="checkbox"/> 4포인트 <input type="checkbox"/> 5포인트 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보호복 <input type="checkbox"/> 보호조끼 <input type="checkbox"/> 주사제 사용 여부 ※ 중복 선택 가능			

격리·강박이 필요한 이유

-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 기물파손 등 병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
-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

격리·강박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필요시 기재)

※ 격리강박은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음

격리·강박 모니터링(간호기록지에 기록 가능)

※ 간호사정 실시 시간 및 혈액순환상태, 활력증후, 사지운동, 정서적 상태 확인 등 조치 내역 기록

격리·강박을 연장하는 이유 및 기록

※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이유 및 지시자, 수행자, 시행·해제 시간 등 기록

[별지 제V-1-2호]

CCTV 설치안내(예시)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영범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표 제 V-1-2호]

작업치료지침

1. 정의 및 목적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에 있어서 작업치료란 생활기능의 회복·유지·개발을 촉진시키는 작업활동을 이용하여 행하는 치료·훈련·지도 등의 활동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일과 신체적 활동을 통한 치료활동을 말한다.

2. 원내외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과정

가. 1단계: 기초적인 작업치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욕구를 자극할 만한 즐거운 작업수행,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작업수행을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작업동기 부여

나. 2단계: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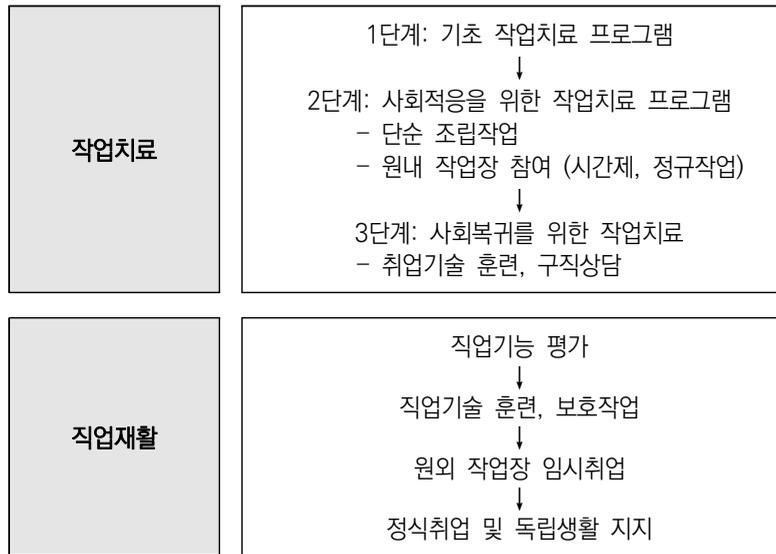
작업치료를 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신체적·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여러가지 집단활동 시행

다. 3단계: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평가하고 간단한 장비조립, 수리 등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훈련을 시행하며, 자신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취업상담 실시

라. 4단계: 직업재활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있어 가장 필요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활동 및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원내 및 원외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을 말하며, 직업재활에는 직업기술 및 구직 기술훈련, 보호작업, 임시취업, 지지고용, 개별취업 등 일련의 훈련 및 지도 포함



3.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적용기준

가. 적용원칙

- ①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은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②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의 참여는 담당 주치의(또는 치료진)의 치료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③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 작업치료 지침 및 적용기준
 - ㉡ 참여환자를 위한 기능평가
 - ㉢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진의 검토회의
 - ㉣ 주기적인 치료진 및 작업장 관리자의 평가
 - ㉤ 작업치료 일지 및 임금대장
 - ㉥ 작업치료 종결 후 직업재활 및 퇴원 계획
- ④ 작업시간 및 내용 등 작업치료에 관한 사항을 작업치료기록지[별지 제V-1-2호]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적용(참여)기준

- ① 증상이 안정되어 프로그램 참여 및 작업수행이 가능한 환자
- ② 동의능력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환자
- ③ 작업치료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 배제기준(사전)

- ① 작업에 지장을 주는 신체질환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환자
- ②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지체 등의 증상으로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
- ③ 간질증상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

라. 부적기준

- ① 작업 도중 발견된 신체질환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전문의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
- ② 사고 또는 무단이탈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③ 다른 환자와 대인관계로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
- ④ 정해진 업무 또는 의무를 빈번히 기피하는 경우
- 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⑥ 관리자에 대한 공격성향과 저항이 심한 경우
- ⑦ 규칙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마. 치료적 접근방법

- ① 약물치료 주치의가 처방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여야 하고, 투약을 거부할 경우 작업 치료를 유보할 수 있다.
- ② 개인정신치료 주치의는 병동의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면담 및 개인 정신치료를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정신사회재활치료병동내 집단치료를 포함한 재활 프로그램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작업장내 지도감독원내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 관리자를 참석시키고, 작업시간동안 생기는 문제나 환자의 작업상황을 주치의 및 병동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원내 작업치료의 종류

- ① 시간제(비숙련) 작업
 - ㉠ 직원의 지도하에 작업의 적응을 위한 단순작업을 시행한다.
 - ㉡ 작업시간은 환자의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② 정규(숙련) 작업

정규작업자는 원내의 작업치료 장소에 배정되어 작업기술을 배양하고, 사회적 기술 및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능 향상시에 지속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퇴원 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작업자의 시간관리

- ① 시간제 작업자

작업장 이동시에는 작업장 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

② 정규작업자

- ㉠ 작업자의 업무 시간의 시간관리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 ㉡ 출/퇴근은 시간표에 의하여 관리한다(계절별로 시간 재조정).
- ㉢ 모든 작업자는 일요일·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작업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 ㉣ 정규 출·퇴근시간(9:00~17:00) 이외의 관리는 해당병동 관리자가 직접 인솔하도록 한다.

아. 작업치료 참여자의 임금

- ①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 ② 작업치료시 환자의 작업에 대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임금은 작업의 종류, 작업강도, 숙련도, 작업시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작업치료자의 지도감독 비용,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공제하고,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지급되어야 한다.
- ③ 모든 작업치료에 의한 임금은 개인통장을 통하여 관리한다.
- ④ 작업장에서는 작업치료를 수행한 근무시간, 일수 등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정규작업자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임금을 일당제로 책정하여 지급하며 정기적인 임금조정을 실시한다.
- ⑥ 비정규 작업자는 업무량과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자. 작업장 관리자

- ① 작업장 관리자는 년 2회 정신장애인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 ② 작업장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하여 월 1회 평가한다(원내 작업치료 평가서 참고).

[별지 제 V-1-2호]

작업치료기록지

작업치료 대상자	생년월일		성명		나이 (남, 여)	
	진단명		작업치료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대상자 서명 (서명)	
작업치료 관여자	지시자(전문의) (서명)			수행자(자격요건) (서명)		
	1일기준 ()시간	1주기준 ()일	작업시작	년	월	일
작업시간 및 기간			작업종료	년	월	일
	작업내용					
작업명칭						
작업장소						
보수지급 내역	[] 없음					
	[] 있음					
	- 일 자 ()					
	- 금 액 ()					
	- 지급방법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은 행 명 ()						

작업치료 대상자 활동내역(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제 V-1-3호]

현 금 인 출 증

○ 병동 : 청구자(작업자)성명 : (인)

○ 청구금액 : (원)

○ 인출 사유 :

상기금액을 인출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병동책임자 : (인)

_____ 귀하

[별표 제V-1-3호]

인신보호제도 안내⁵⁾

 대법원 법원행정처(형사심의관실)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가 합동으로 작성하여 '09년 7월 전국 정신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자료임

1. 인신보호제도 개요

-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호시설,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2. 구제청구의 관할법원·방식

-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청구는 ①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 피수용자의 성명 ④ 청구의 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본 안내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절차안내-형사-'인신보호제도 시행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용자의 의무

가. 답변서 제출 의무

- 수용자는 구제청구서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수용의 사유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심문기일 출석 의무

-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 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합니다.
- 피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5. 임시해제와 신변보호결정

가. 임시해제

-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해제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나. 신변보호

-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위와 같은 법원의 신변보호조치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재판비용의 부담

- 구제청구자는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참고인의 출석 비용,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피수용자를 임시 수용시설에 이송하여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 구제청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용을 납부할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발 행 2026년 2월

인 쇄 2026년 2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자살예방정책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TEL : 정신건강전문요원(044-202-3861, 3856)

정신요양재활시설 운영(3859, 3868)

정신의료기관 운영(3869, 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3872,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3871, 388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운영(3871, 5)

FAX : 044-202-3940

<http://www.mohw.go.kr>

편집·인쇄 : 대승사 044-868-2027(비매품)